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 제 지 역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프랑스의 사회갈등과 통합

- 무슬림 이민자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



201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지역학연합동과정

이 정 욱

국제지역학박사학위논문

프랑스의 사회갈등과 통합

- 무슬림 이민자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해 조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지역학연합동과정

이 정 욱

이정욱의 국제지역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2월 18일



주	심	정치학박사	김진기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설한	인
위	원	사회학박사	이중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홍중	인
위	원	문학 박사	정해조	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선행 연구 : 국내 · 외 연구동향	8
3. 연구 방법과 내용	17
II. 이민자 사회통합과 다문화 담론	23
1. 이민자 사회통합의 필요성	23
1) 다문화 담론의 제기	23
2) 다문화 정책의 차원	27
2. 다문화 정책의 유형	32
1) 차별적 배제	33
2) 동화주의	35
3) 다문화주의	36
3. 다문화주의의 쟁점과 다문화 공존	45
1) 다문화주의의 쟁점	47
2)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과 기대	57
4. 민족의 개념과 다문화 정책	62
1) 민족과 국민국가	63
2) 민족 개념과 이민자 정책	67

Ⅲ. 프랑스 이민정책과 동화주의 사회통합의 원리	78
1. 프랑스의 이민자 현황	79
1) 이민자 관련 용어의 정의	79
2) 무슬림 이민자 유입 개관	81
2. 프랑스의 이주 역사	88
1) 프랑스 이민의 함의	89
2) 근대 이후의 이민 역사와 주기	91
3. 국적법과 이민법의 의의	107
4. 국적법과 이민법의 흐름	111
1) 구체제에서 19세기까지	113
2) 20세기 초반에서 1973년까지	117
3) 1974년의 이민중지에서 1999년까지	120
4) 2000년대 이민정책의 강경화	129
5. 사회통합의 원리: 동화주의	135
1) 동화주의 정책의 기원	137
2) 세속주의 공화국	138
3) 국민국가	140
4) 평등한 국가	141
Ⅳ.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와 갈등	143
1. 사회적 배제의 의미	143
2. 종교와 정체성	145
1) 히잡논쟁과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	147
2) 히잡의 상징: 저항과 공동체주의	153
3) 무슬림 이민자의 정체성과 종교	158
3. 경제 조건과 실업	168

4. 주거 조건과 사회·공간적 배제	181
5. 교육과 언어	195
1) 학교교육	195
2) 시민 언어교육	201
6.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	207
V.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와 사회통합 위기	215
1.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	215
1) 제노포비아 현상	215
2) 프랑스의 이슬람포비아와 정치화	217
2. 무슬림 이민자 소요사태와 프랑스의 선택	228
1) 1960년대: 1961년 10월 7일 사건	229
2) 1970~1990년대	232
3) 2000년대 이후	234
3. 무슬림 이민자의 현실	237
4. 프랑스인의 대 무슬림 인식	242
5. 무슬림 이민자 통합의 정도와 항변	253
6. 사회통합정책의 위기	260
VI. 결 론	264
<참고문헌>	277

〈표 목 차〉

<표 II-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모델의 특징 비교	31
<표 II-2> 다문화주의의 형태	43
<표 III-1> 외국인과 이민자 수의 현황	80
<표 III-2> 출신국가에 따른 연도별 이민자 분포	82
<표 III-3> 2003년도 한 해 동안 유입된 영구적 이민자의 이민 동기 ...	83
<표 III-4> 1947년 이후 노동자 체류증과 가족 재결합에 의해 입국한 ...	85
<표 III-5> 2003년도 한 해 동안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유입된 이민 자 수와 출신 국적	86
<표 III-6> 1998년과 2003년도 출신 대륙별 1년 동안의 유입 인구	87
<표 III-7> 연도별 이민자 추이와 현황	88
<표 III-8> 제 1기 외국인 수	96
<표 III-9> 제 2기 외국인 수	99
<표 III-10> 제 3기 외국인 수	103
<표 III-11> 제 4기 외국인 수	107
<표 IV-1> 1905년 국가와 교회의 분리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162
<표 IV-2> 당신에 의하면 라이시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63
<표 IV-3> 오늘날 라이시떼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4
<표 IV-4> 실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인식도	170
<표 IV-5> 2002년도 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직업군의 분포도	172
<표 IV-6> 2002년도 이민자의 출신국적에 따른 사회직업군의 분포도 ·	173
<표 IV-7> 1982년도 프랑스 내 국적에 따른 실업률 현황	174
<표 IV-8> 2002년도 원국적과 성별에 따른 실업률	175
<표 IV-9> 1992년과 2002년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실업률	177
<표 IV-10> 도시 폭력 범죄의 원인	179
<표 IV-11> 프랑스의 지역별 ZUS, ZRU의 비중	186
<표 IV-12> 대도시 외곽 도시민감지역(ZUS)의 청소년 환경	188
<표 IV-13> 편부모 및 외국인 가구의 변화	189

<표 IV-14> ZUS의 실업률 변화	190
<표 IV-15> 거주 형태	191
<표 IV-16> ZUS의 사회공간적 배제	194
<표 IV-17> 이민자와 비(非)이민자의 학위취득 현황	198
<표 IV-18> 프랑스 거주 이민자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204
<표 IV-19> 출신국가에 따른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형태	206
<표 IV-20> 이민인구의 정치적 통합	211
<표 V-1> 좌우파 집권에 따른 주요 이주민 정책	219
<표 V-2> 1975년부터 2000년 사이 각 유형별 외국인 범죄의 추이	224
<표 V-3> 당신이 보기에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주의의 주요 희생자와 차별의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39
<표 V-4> 이민자를 “쓰레기”라고 표현한 사르코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245
<표 V-5> 당신이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248
<표 V-6> 방리유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프랑스인 인식조사	248
<표 V-7> 치안 불안지역의 경찰 주둔에 대한 인식	249
<표 V-8> 사회통합의 주관적 지표	250
<표 V-9> 프랑스인의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인식	251
<표 V-10>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 : 정체성, 동료시민, 근대성에 대한 무슬림의 인식	254
<표 V-11> 모스크에 가는 횟수와 코란을 읽는 횟수	255
<표 V-12> 정체성에 대한 무슬림 이민자의 인식	257
<표 V-13> 종교적 관용, 남녀평등, 정교분리에 대한 이민자의 인식	259

<그림 목 차>

<그림 I-1> 프랑스 사회갈등과 통합 연구의 접근방법과 연구방법	19
<그림 II-1> 국적부여 및 이민자 통합의 국가별 유형과 방향성	75
<그림 II-2> 다문화 진행 프로세스	76
<그림 IV-1> 무슬림 이민자 사회통합과 위기	214
<그림 V-1> 제노포비아에 대한 요인별 영향관계	216
<그림 V-2> 지위박탈과 기대상승의 박탈감에 따른 혁명의 J-곡선	242
<그림 VI-1>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주류사회, 국가의 역할	275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and Conflict in France

- Focusing o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Muslim Immigrants -

Lee, Jeong Uk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rance, which is known as a typical immigration country in Europe, has faced a crisis of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An assimilationist policy aiming to induce social integration in France by harmonizing immigrants' cultures caused a national social conflict because of the request for cultural rights made by a group of Muslims sharing Muslim culture. The social exclusion of Muslim immigrants from North Africa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resulted in poor conditions for Muslims in all aspects of social life, including economy, culture, and politics. This led to constant disorders and riots which threatened French society. A riot that occurred all over France for 3 weeks in 2005 was a social expression of Muslim immigrants' anger.

France is a country which has allowed foreign immigration for a long time. The country is composed of many races, cultures, and religions.

France experienced waves of immigration in 4 cycles: the late 19th century, after World War I, after World War II, and after the 70s. Foreign labor power grew on a large scale due to a low native population and fast industrial growth. This labor power stabilized the French population and filled positions where French people hesitated to work. France, which is currently strong economically, owes much to the basis of the labor provided by low-paid foreign workers.

France is a good study case concerning issues of immigration. First, France has along history of immig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Second, Muslim immigrants promote policies for Muslim immigrants and are involved in variety of social conflicts. The third reason lies in the processes, methods, and crises of French national integration. Unlike the discussion on social integration in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French social integration model has many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to understand social change in Korea, as Korea moves to wards amore multi-cultural society.

The reasons why France was chosen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France is one of a few countries that maintains an assimilation model. There are two kinds of integration models: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assimilation model pursues the cultural assimilation of minorities and promotes the fusion of different cultures through assimilation with the mainstream. Multiculturalism aims at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protection of other cultures' rights as well as respecting the heterogeneous nature of a variety of individual cultures and minorities. Multiculturalism is defined as an active model for resolving social conflicts by allowing minorities to play a role as members of a society.

Those models have their own merits and demerits respectively. In the

integration through assimilation model, it is possible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a national identity, but this system may cause the settlers to have difficulty with adaptation and to express cultural resistance. In addition, the main group may exclude those immigrants from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Multiculturalism specifically acknowledges other cultures and protects the diversity of minoritie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but it may lead to resistance from the mainstream and a weak national identity.

As a matter of fact, no country tries to implement a one-sided assimilation policy aimed at the complete fusion into a single culture by making immigrants lose their identity. Most agree to acknowledge the diversity of minority's cultures. France is a typical example of a country that seeks to include the acknowledgment of diversity while promoting assimilation.

Second, France had no choice but to select an assimilation model. The French state's policy of *républicanisme française* applies the principle of assimilation to the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by viewing the adopting of immigrants as a basic value.

The value of republicanism is realized in two fields. The first one i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established in 1905. According to this principle, a country must be independent from any religions. The other is that a republic is a complete entity which cannot be separated into any particular religion or community. According to these two principles or values, France rejects the request of groups which are different from "France" and can apply sanctions against the communities that threaten the identity of a the republic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country and its people.

The “Hijob Argument”, which entangled France into a cultural war, is a good example. France considered that if Muslim girl students wear hijobs in public schools, it may stand for their Muslim culture and the growth of Muslim communalism, which in fringes the religious rights of an individual. The establishment of “the Laws Banning Students from Wearing Religious Symbols”(La loi sur les signes religieux dans les écoles publique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ird, the assimilation policy that France regarded as successful is facing a crisis. The disturbances accompanied by immigrants’ consecutive riots and the Hijob problem hurt the image of France as a tolerant country.

Fourth, the frictions caused by immigrants today is visible in all areas of social life, including politics, religion, culture, and the economy. It is useful to diagnose these problems directly through the French example. We may thus see how such frictions have occurred and were faced in reality, rather than try to predict these problems or seek hypothetical solutions.

The Muslim immigrant population in France, the largest immigration country in Europe, reached 7.4% of th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sus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l’insee,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 1999.

The influx of immigrants on a large scale makes French people feel uneasy psychologically because they think such an influx may force them to lose jobs. In addition, they believe that the problem may be extended to religious and political fields, which eventually brings about cultural war and even xenophobia. A party of extreme-rightists, FN (must write complete name when acronym appears for the first time), has appeared. Even leftist partie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moderate on immigrant issues, are now silent about immigration policy, fearing negative public opinion. If we look

at the French case, it is possible to reflect on the cultural and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communities and to set a foundation for objectively analyzing whether it is possible for different cultures to coexist.

This research will refer to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Korea and France.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analyze and interpret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internet, materials from the French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French government literature.

The introduction Chapter in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research as well a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eceding literature on the subject. Chapter II mentions the necessities and types of immigrant integration. Chapter III will look at immigrant history of social integration according to assimilation policies in France. Chapter IV will deal with the political issues and culture wars caused by social exclusion. Chapter V will mention the social troubles and crise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Muslim immigrants in France. In Chapter VI, the contents of the main discourses regarding immigration policy will be summarized as a conclusion.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근대 민족국가 형성 이후 문화의 통일성과 동일 정체성의 강조는 국가가 존재하고 유지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다. 국민국가는 가공된 정체성의 구축으로 이루어졌고, 민족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매개로 경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은 국가의 의미가 형성하는 영토적이며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국가간 이루어지는 활발한 인적 교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 공존의 사회로 이끌었다. 다인종·다문화 사회(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새로운 지구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이민 수용국이나 경제 부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非)이민 국가에서도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적 사회적 현상은 존재한다.

오늘날 이러한 다인종·다문화의 한 사회 내 공존이라는 현상은 예기치 못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단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질서와 틀 안에 이질적인 문화와 다른 정체성의 유입은 문화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로 사회불안을 초래하였다. 결국 문화간 나타난 갈등은 국민통합에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민자 사회갈등 중 2005년 발생한 프랑스의 소요사태¹⁾는

1) 2005년도 프랑스 전역에서 3주간에 걸쳐 무슬림 청소년이 주동한 차량방화와 건물파괴 등 소요와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전 세계 국가들을 긴장케 하였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소요와 같은 사건이 자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각 국가는 프랑스 소요사태를 계기로 자국의 외국인 이민자 실태와 환경 그리고 이민자 관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사회불안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계엄령까지 발동된 위협적이었던 소요와 폭동은 무슬림 청소년이 주동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소요사태의 원인은 무슬림 이민자 집단의 경제적 빈곤이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교육, 문화, 주거 등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조건과 박탈감에 의한 정서적인 감정은 소요 사태의 또 다른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프랑스의 소요사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현실이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하였을 때 커다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여러 이민국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다른' 정체성의 존재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이며 제도적·법적인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다문화 공존'이라는 개념의 실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 국가들에서 다문화 공존이라는 주제의 중심에 무슬림 이민자가 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는 사회 갈등의 한 요인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유럽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는 3천 8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²⁾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개별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의 문화와 정체성에 이슬람 이민자와 후속세대들의 등장은 위협적인 실체가 되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속된 무슬림 인구의 증가는 유럽이 '이슬람화(islamisation)'³⁾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두려움을 유럽 국가들에게 주었

2) 사실 유럽 내의 무슬림 인구의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면 인구조사할 때 개인의 종교를 질문하는 공식적인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각 연구 자료들마다 국가별 무슬림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한 아랍 문명권에서 유입되는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6년 미 공군 보고서는 유럽의 인구분포 변화로 미국과 유럽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EU 역내에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2,30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유럽 '이슬람 색깔' 짙어간다", 경향신문 2009년 08월 10일자).

3) 이슬람화(islamisation)는 하나의 사회가 이슬람교로 변해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로도 사용 된다. 근래에는 감소하는 세계적 출산율에 비해 무슬림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이 용어가 부각됐고, 유럽으로 이민 간 무슬림들의 2세대가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곳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회적 현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슬람교가 1970년대부터 이슬람주의와 결합돼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유럽의 무슬림들이 서구 문화를 접하며 살면서도 이슬람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데 이슬람주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 2008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럽 인구의 5%가 무슬림 인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5년에는 10%까지 증가하며, 205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20%는 무슬림 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⁴⁾ 유럽인의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도 무슬림 이민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슬람화를 넘어서 유럽의 국가들이 무슬림 공화국으로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유럽 사회에 반이민정책과 이슬람 혐오주의를 생산해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자국 내로 유입되는 다른 문화에 대하여 동화주의의 이민자 통합방식 고수하여 왔다. 유입된 문화를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주류집단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자연히 유입된 이질적 문화는 주류 문화에 융해되어져야 했고, 이주자는 수용 국가가 추구하고 만들어 온 가치나 정체성에 순응해야 했다. 그러나 융합이 되기를 바라던 이질적인 문화는 오랜 시간의 동화와 융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었다. 오늘날 문화적 권리가 이민자 집단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문화간 갈등이 일상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갈수록 밀려오는 이민과 이민자 고출산의 의미는 유럽인에게는 유럽 정체성의 소멸로 인식되었고, 이들과의 문화적 마찰은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인들에게 이민은 오늘날엔 무엇보다 ‘재앙적인 문제(problèmes catastrophiques)’로 간주되었고, 이민자의 유입은 자국에 ‘기회(chance)’로 간주되지 않는다.⁵⁾ 오늘날 유럽 각 국가들에게 이민 금지와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의 해결은 절실하다.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동일하다. 이민자와의 갈등은 프랑스 사회불안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소요사태가 그 예이다. 소요사태의 발생으로 프랑스 내 이

4) 유럽의회에 인구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헝가리 경제학자 카롤리 로런트는 “프랑스 마르세이유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무슬림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웨덴 말뫼에서는 20%,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버밍엄에서는 15%,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10%가 무슬림”이라고 밝히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가장 많이 등록된 남자아이 이름은 모하메드, 라이안, 아유, 메흐디 등인데 모두 이슬람식 이름이다. (“유럽 ‘이슬람 색깔’ 짙어간다”, 경향신문 2009년 08월 10일자).

5) “Toujours un problème, jamais une chance”, *Courrier international*, 16.10.2003. (<http://www.courrierinternational.com/article/2003/10/16/toujours-un-probleme-jamais-une-chance>)

슬람 이주민과 주류집단과의 커다란 간극이 잠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이민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국적법의 개정 논란과 시민성(citizenship, citoyenneté)의 문제, 국가 정체성, 외곽도시 폭력과 범죄, 통합의 위기 등에 따른 이민자와 연관된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공존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극우정당이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야기된 이민의 정치화나 제노포비아, 문화적 인종주의의 출현 등 오히려 반이민자 성향의 사회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띤다.

2) 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이민자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공존을 이루기 위한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동화주의 원리가 어떠한 이념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면서 프랑스 특유의 공화주의적 동화주의를 추출해 낼 것이다. 그리고 동화주의로 인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어떻게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조건들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전개할 것이다.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조건들은 정치적, 경제적, 거주, 교육, 종교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연구되어 접근될 것이다. 결국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조건들이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의 위기와 실패의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 낼 것이다.

프랑스는 오늘날 다문화사회로 형성되어 가는 국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주류사회로 완전한 동화를 통하여 융합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인 동화주의 모델이 사회적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다양한 문

화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다문화 공존의 모델들이 강조되고 있다. 동질성을 지향하던 근대 국가의 개념을 가진 정치체제 내에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문화 공존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실패한 이민자 정책 또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곳에서는 반면교사가 되리라 본다. 다문화 정책에서 프랑스를 자주 거론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유럽국가 중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동화주의 모델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민자 문제를 논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국가의 사회통합 모델과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이민자 통합 모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동화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주의이다. 동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주류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를 통하여 융합되는 정책이다. 다문화주의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이질성을 존중하면서 소수집단의 고유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타문화의 권리 보호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꾀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유형의 모델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국가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다루기보다는 동화주의 정책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 진행과정의 도입기에 있는 한국사회에 더 많은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이민자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문화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둘째, 프랑스가 동화주의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중요성이다. 이 문제가 중요시 되는 것은 오늘날 나타난 이민자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근본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에게는 무슬림의 문화적 권리 요구 또는 공동체주의의 성장 가능성은 프랑스 공화국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은 하나의 집단 정체성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프랑스를 분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정체성의 등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를 수용하는 사회통합의 원리가 동화에 기반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이 프랑스의 기본적 가치 즉 공화주의 이념에서 태동한 것이다.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가치는 두 영역에서 실현된다. 하나는 어떠한 종교로부터도 국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1905년도에 제정된 정교분리에 대한 법률적 원칙이다.⁶⁾ 다른 하나는 프랑스 공화국은 특정한 종교나 개인 혹은 어떠한 공동체도 절대 분열시킬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실체라는 전제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원칙 혹은 가치에 의하여 프랑스는 프랑스와는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하나의 공화국의 실체를 위협하는 공동체주의적⁷⁾ 행위에 대하여 국가와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문화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는 히잡사건, 즉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은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프랑스는 공공영역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개인에 대한 침해이며, 이슬람 공동체주의의 성장과 출현으로 간주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한 ‘공립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 착용금지법(La loi sur les signes religieux dans les écoles publiques)’⁸⁾이 제정된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세속문화와 생활종교 간의 갈등, 이질적인 공동체주의와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국 간에 발생하는 정체성의 마찰 과정과 결과가 곧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이다.

셋째, 동화주의 이민자 정책은 공존의 성공보다는 위기를 발생시켰다. 대표

6) ‘loi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Etat(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법)’

7) 양창렬은 프랑스에서의 ‘공동체주의적’이라는 표현은 일반의지가 모여지는 공적 공간과 공화국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특수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에 빠진 미국식 모델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74).

8) Loi n° 2004-228 du 15 mars 2004. 일명 ‘2004년 3월 15일자 법(loi du 15 Mars 2004)’이라 불린다.

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이를 잘 반영해준다.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이민자 정책으로는 진정한 다문화 공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민자 집단의 각종 권리 요구와 소요사태들의 지속적인 발생은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현실적으로 다문화 공존의 사실적 현실에서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다문화적 공존은 문화 집단 간 상호 권리의 수용과 비지배적 인정을 통해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프랑스 동화주의 정책이 위기의 현실을 드러낸 오늘날, 다양한 접근방법의 모색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 민족 간의 공생관계에서 과연 동화라는 정책적 기조로서 상호간 수궁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겠느냐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의의가 있다. 논의의 대상으로 프랑스 이민자 정책은 좋은 예가 된다. 인권이 중요한 세계적 문제로 부상한 오늘날에 주류 집단의 일방적인 동화의 강요로서 이루어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보여주고 있다.

넷째,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공존의 마찰을 통해 이민자와의 갈등 문제를 세부적이며 직접적으로 진단하는데 효율적이다. 오늘날 이민자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은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논란과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민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예측하거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성과 떨어진다. 따라서 이미 나타난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사회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실례들을 점검하여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민자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진단하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프랑스의 무슬림의 인구는 전술한 것처럼 6.9~10%인 약 43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내 무슬림의 인구수로 인한 프랑스인의 현실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심리는 크다. 프랑스인들은 이민자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실업의 주범, 치안문제 등 단순하게 경제적이며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만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프랑스 가치 즉 프랑스 정체성의 소멸에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정치적인 문제까지로 확대되어 차별

과 편견, 배제를 포함하는 인종 혐오, 즉 제노포비아 현상⁹⁾까지 야기하여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 국민전선(FN)¹⁰⁾이라는 극우정당의 출현과 국민적 지지에 따른 이민의 정치화, 비교적 온건했던 좌파 정당들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한 이민정책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가 된다.

이처럼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다인종 수용의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에서 나타난 갈등의 원인과 매우 이질적인 문화의 수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현상들을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의 예로써 연구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사회적 현실 상태를 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인식, 무슬림이 인식하는 프랑스라는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이들 상호간의 문화와 심리적 격차와 거리가 문화간 공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필 것이다. 그러므로 무슬림 이민자로 인한 프랑스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위기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연구는 타문화와의 공존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2. 선행 연구 :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에서의 연구

국내에서의 다문화·다인종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국외의 다문화 환경

9)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 혐오증, 기피증을 말하는 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경계하는 심리이다. '다른 존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경계의 심리가 나타나고, '다른 존재'를 배척하고 차별하는 인종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10) Front National. 극우를 표방하는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민족전선'이라고도 번역된다. 1972년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에 의해 창당되었다. 정당의 원 명칭은 '단일한 프랑스를 위한 국민전선(Front national pour l'unité française, FNUF)'이다. 2002년 르펜은 대통령 선거에서 16.86%의 득표로 사회당 당수 조스팽(Jospin, L)을 물리치고 작크 시락과 경합한 2차 투표까지 오를 정도로 이민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극우세력을 형성하였다.

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2005년 프랑스 무슬림 이주노동자의 소요사태는 이민자의 사회적 문제와 국민통합의 중요성과 연구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새로운 현상과 더불어 다문화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무관치 않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다문화 연구 사업에의 지원도 한 몫을 하였다.

다문화 관련 국내 연구자들은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등에서 겪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 갈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다문화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고자 한 것이 주된 연구였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문제점들이 소개되고 연구되어졌다. 따라서 국내의 다문화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이민 수용국가이었던 국가들의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각 국가가 선택한 다문화 정책의 성공 요인과 실패의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대비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박단(2005)은 프랑스의 2005년 10월의 소요사태가 있기 전 『프랑스의 문화전쟁-공화국과 이슬람』이라는 저서에서 프랑스 주류 사회와 무슬림의 사회갈등을 예측하였다. 그는 방대한 프랑스 문헌자료를 인용하며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 원리와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단은 프랑스의 동화주의에 의한 이주민 통합정책과 이슬람 이민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마찰과 갈등을 ‘문화전쟁’이라 정의하였다. 그는 문화전쟁의 한 측면으로써 무슬림 소녀들의 히잡착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박단(2007)은 공공기관에서의 히잡금지 배경을 공화주의와 세속주의 원칙에 따른 프랑스의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화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즉 프랑스가 이민자를 수용하는 기본정책으로써 동화주의(assimilation)를 선택한 것은 공화주의(républicanisme)의 이념에서 출발하

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오영주(2007), 조승래(2008), 김용찬(2001), 홍태영(2005) 등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이민자 정책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홍지영·고상두(2008)는 공화주의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프랑스인의 위기의식과 이슬람 관련 인식이나 정서를 살펴보면서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반이슬람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김민정(2007)은 프랑스에서 최근 나타나는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패 원인을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동화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통합의 위기가 이민자들의 배제된 사회적 현황과 조건들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연구하였다. 반면 그의 연구는 이민자의 취업현황과 경제활동 비율 등 경제적 실태와 연관된 사실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무슬림 이민자의 전체적인 사회적 조건들 - 즉 거주와 정치, 교육, 문화, 종교 등 - 을 파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남국(2004)은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출현은 사회적 갈등구도를 생산하는 중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갈등 구도를 정치와 종교 관계의 틀에 맞추어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승준(2008b)은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갈등이 나타난 원인을 배제와 차별을 야기하는 동화주의 모델에서 찾고,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다민족, 다문화 공존을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을 전제한 후에 다문화주의를 공간적, 제도적, 문화적, 국가정책으로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또 다른 연구(2008a)에서도 김리카(Kimlicka)와 밴팅(Banting)¹¹⁾, 잉글리스(Inglis)¹²⁾의 다문화주의의 상징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이주·교육·고용·문화의 네 가지 분석지표를 수립하면서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요사태 이후에도 프랑스는 부분적으로 배제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즉 이주민 통합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나, 분석 결과 프랑스는 다문

11) Kymlicka(W.) & Banting(K.)(2006).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2) Inglis(C.)(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4, UNESCO.

화주의 모델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양승태(2007)와 조홍식(2005)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민족 형성의 배경과 민족 개념을 정치·사회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두 연구자의 연구를 발판으로 본 연구에서도 민족과 국민의 형성개념에 따라 각 국가에서 선택한 다문화 정책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들어 비교 연구되어졌다. 송태수(2006)와 장명학(2006)의 연구들이다. 반면 이환식(2006)은 프랑스에서 나타난 제노포비아 현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인종주의가 발생한 원인을 산업사회의 해체와 보편주의 의식의 약화, 복지국가의 위기라 설명한다. 이민이 정치화됨으로써 제노포비아 현상이 확산된 원인중의 하나로 국민전선의 선동과 프랑스 주류 사회의 명시적 묵시라고 파악하고 있다. 엄한진(2007) 역시 이민의 정치화 문제를 2005년의 소요사태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주민 통합모델과 정부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엄한진은 현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민문제가 이용되었고, 치안담론과 통제전략의 희생양으로서 이민자 집단을 정당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어 설명한다.

한명숙(2008)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이민법과 국적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민사에 따른 국적법의 변화 추이를 큰 흐름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민 주기에 관해서는 강진희(이기라·양창렬 외 2007), 은재호(2005), 누아리엘(2002a) 등의 연구도 있다. 이민주기에 대한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19세기 후반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을 끝으로 이민 주기를 총 3시기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80년대 이후의 중요성으로 197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더 추가하여 4시기로 분류하였다.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갈등의 양상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학과 철학, 정치학의 시선으로 접근한 신진학자들(이기라·양창렬

외)의 책 『공존의 기술』(2007)은 주목할 만하다. 이민자들의 배제된 도시 방리유(banlieue)를 중심으로 발생한 도시소요의 의미와 원인을 다각도로 추적하면서 프랑스의 무슬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공존의 기술』은 프랑스의 이민자에 대한 갈등과 이민정치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 국내의 유일한 책이다. 이 책은 이민자의 배제와 편견의 뒤편에는 ‘민족주의적 공화주의(républicanisme nationaliste)’라는 용어를 찾아낸다. 『공존의 기술』에는 프랑스만의 가치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된 이민자들은 위험한 계급들이라는 왜곡된 표상을 들추어낸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소요사건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다문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고 또한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이론적 연구는 외국학자들의 논의와 논쟁을 도입하면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다문화주의 이론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문제, 즉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활발하다. 설한(2000)은 오래전 킴리카를 빌어 공동체주의의 이론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김창근(2009)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비교하면서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도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연대 침해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인성 침해, 역차별(Barry 2001) 등에 대한 도전은 다문화주의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말한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다원적 문화의식, 법·제도를 통한 상호신뢰와 공적 심의를 통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식, 열린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동일한 고민에서 출발한 박준혁(2007)은 다문화주의라는 이념보다는 다문화 공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김남국(2005)도 문화의 도구적 역할에 주목하며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대표의 위기와 연대의 위기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상호존중(mutual respect)과 합리적 대화(rational dialogue) 그리고 정치적 권

리(political right)라는 세 가지 규범 조건들을 내세운다.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심의 다문화주의 실천으로 그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외에서의 연구

외국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논쟁은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로 양분되어 전개되었다. 킴리카(2002)는 캐나다의 경험에 근거한 특수성을 자유주의 관점에서 일반화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그는 자유주의 국가의 중립성과 개인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어떻게 집단 대표와 집단 자치, 다문화의 권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반면 테일러(2003)는 공화주의 입장에서 존재론적 차원과 정책지지 차원의 분리를 통하여 소수집단의 문화적 생존과 사회적 인정 문제에 대해 지지를 하였다. 호네트(2002)는 존경과 인정에 대한 상호 주관성에 관심을 가지며 자기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를 융합한 이론가인 프레이저(2003)는 재분배나 인정 중 양자택일의 대립은 잘못된 구도라고 설명하고 오늘날 어느 하나로도 충분하지 못하며 재분배와 인정 모두를 요구한다는 양자 통합을 시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늘날 프레이저의 통합이론은 다문화 공존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프랑스에서 이민과 이민자 문제가 본격적인 학계의 관심을 끌고 학문으로서의 대상이 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사회당(PS)의 지원으로 이민공동체들이 활성화되면서이다. 이후 1983년에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프랑스인의 정체성이라는 정치담론을 들고서 정치계에 등장하였다. 국민전선의 출현은 본격적으로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난 계기가 되었다. 이슬람 출신 이민자들의 집단적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정당들이 정치화하자 이에 대하여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마르티니엘로(2002)는 실제적 사회현실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를 연구하였

다. 그는 다문화주의를 온건한 다문화주의, 정치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강경한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다. 온건한 다문화주의는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공적인 개입을 통해 소수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해 내는 것은 정치적 다문화주의, 국민적 정체성의 확장 논의로까지 이어지며 철학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강경한 다문화주의로 부른다. 그는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를 다면적으로 분석해 내면서 다문화주의가 주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문화적 차이나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사회를 폐쇄적이고 구별적인 문화적 집합으로 구성된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민 역사가인 누와리엘(Noiriel. G.)은 역사와 사회학의 관계에서 이민문제를 바라보았다. 『국가, 민족 그리고 이민(État, nation et immigration. Vers une histoire du pouvoir, 2005)』, 『1900에서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이민(La France de l'immigration de 1900 à nos jours, 2004)』, 『이민과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2007)』,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À quoi sert l'identité nationale, 2007)』 등이 있다.

Marie-Claude Blanc-Chaléard(2003)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이민사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누아리엘 역시 『프랑스의 이민지도(Atlas de l'immigration en France, 2002)』와 『프랑스 연구: 이민의 역사(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 XIX-XX siècle, 1988)』에서 이민주기를 나누며 이민의 역사와 동향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Boeldieu · Borrel(2000)은 25년 동안의 출신국가별 이민자의 실태를 다루었으며, Withol de Wenden과 Catherine(1987)은 이민에 따른 시민성과 국적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이민 청소년의 처안에 대한 문제는 프랑스 내에서 많은 논쟁을 생산해 내고 있다. Bernard Alidières(2006)는 국민전선의 선동으로서의 처안담론 그리고 Eiz Macé(2002)는 언론과 처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방리유 청소년들의 기질과 잦은 경범죄는 낙인찍기와 범

죄인화로 두려움과 공포를 양산하면서 내부의 적을 만들며, 정치화한다고 Henri Rey(1996)는 주장한다.

Jocelyne Cesari(1998)와 Bruno Étienne(1997)는 공화국의 가치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Guy Coq(2003, 2005)는 세속주의와 무슬림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Mohand Khellil(1991)과 Laurence · Vaisse(2007)은 무슬림 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한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Janine Pouty(2003)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민, 시민권 문제와 관련된 주요 법안 및 헌법 조항,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록까지 정리 분석한 사료집 『텍스트로 본 프랑스 이민, 1789-2002』¹³⁾을 내면서 이민과 시민권의 변천과정을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2004년도 『시떼(Cité)』의 특별호는 『프랑스에서의 이슬람』¹⁴⁾이라는 주제로 철학, 정치, 역사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 76명의 학자가 참여한 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내의 무슬림 수, 이슬람 단체의 구성 문제, 이슬람 여성문제, 유럽의 이슬람화 전략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히잡문제로 정체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었을 때 발간되었다.

마그레브 이민자 전문가인 브뤼노 에티엔느(Bruno Etienne)의 『프랑스와 이슬람』¹⁵⁾의 책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이슬람의 의미와 무슬림의 특징, 이슬람과 프랑스 사이에 제기되어질 문제점 등을 다룬다. 조슬린 세자리(Jocelyne Cesari)는 『무슬림과 공화국』¹⁶⁾에서 무슬림 2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슬람이 어떻게 이민 후속세대가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연구서이다. 또한 Geisser와 Zemouri(2007)은 『마리안느와 알라』라는 책에서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프랑스 정당의 정치화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으면서 무슬림 공동체주의라는 용어는 식민지 기억의 환영으로써 감

13) *L'immigration dans les textes: France, 1789-2002*, Collection: Belin Sup, 2003.

14) *Cités: Islam en France*, Hors série, paris, 2004

15) *La France et l'islam*, paris, Hachette, 1997.

16) *Musulmans Et Républicains*, Editeur:Complexe, 1998.

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화국의 발명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2005년도 소요사태 이후로 이민에 대한 역사성, 즉 이민의 동기나 이민주기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이민자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대 프랑스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무슬림 집단의 동화거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프랑스인으로서 이민 후속세대의 적응 여부와 실업과 교육 등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문제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가진다.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담론, 이슬람과 무슬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적지 않다. 다만 한국에서 나온 기존의 프랑스 이민자 관련 연구들은 갈등의 특정한 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되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적 문제와 사회통합의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내어 종합적으로 성찰해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이민의 역사만을 다룬다든지, 프랑스의 동화주의, 2005년도 소요사태에 따른 프랑스 이민자의 개괄적 현상, 제노포비아 또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있으나 경제적 영역만 혹은 정치적 영역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부분적 고찰의 원인은 학술논문의 특성상 제약받는 양적인 부분의 한계에서 파생된 것이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연구되어진 연구물로써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면 기존 연구물들의 대부분을 탐독하여 각각의 연구물들이 주는 조각들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따른 프랑스 사회통합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총체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논문은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자와 국가 그리고 주류집단 간의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사회통합의 위기 요인 등 통시적이

면서 공시적인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연구는 프랑스 이민의 역사에서부터 국적법의 흐름이라는 통시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다문화정책의 유형과 쟁점과 프랑스 공화주의적 동화주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시적 접근을 통하여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경제·주거·교육·언어·문화·종교·인식·정치적 측면에서 무슬림의 사회적 조건을 적실성 있게 다양하고 많은 통계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이로써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슬림 사회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 통합의 실패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성이라는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프랑스 사회통합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위기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다문화 공존을 위한 방안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물이라는 데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방법과 내용

1) 연구방법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관련 사회갈등은 그동안의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사회통합의 기본원칙과 정책적 지지방향 그리고 정치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민자로 인한 프랑스의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실시하였던 통합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사회갈등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크게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으로 파악하여 분석한다. 통시적 접근은 이민흐름과 이민법, 국적법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시적 접근은 정책, 정치, 교육, 거주 등의 제도적 요소와 문화, 경제 등과 관련된 심리적 요소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공시적·통시적 접근법을 통해 프

랑스 사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법으로 문헌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프랑스의 문헌과 특히 프랑스 인터넷 웹자료의 활용을 최대한 이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정부의 대 이주민 정책과 법안,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조건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기관과 여론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에 의지하였다. 특히 정부 문헌 사이트인 <http://www.vie-publique.fr/>와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 최고통합위원회(HCI, <http://www.hci.gouv.fr/>), 프랑스 상원(<http://www.senat.fr/>), 프랑스 국립 통계청(INSEE, www.insee.fr/), 인구 통계국(INED, www.ined.fr/), 이민국(www.immigration.gouv.fr/), 법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레지프랑스(<http://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인권위원회(<http://www.cncdh.fr/>)와 이민과 통합의 프랑스 사무국(OFIG, <http://ofii.fr/>) 등의 통계자료를 주요한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구 통계에 관한 각종 정부의 통계는 1999년 자료가 최종의 공식적 자료라는 데 있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인구 총선세가 200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간 10년간의 변화된 새로운 자료들은 2010년도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국가의 통계자료 외에 각종 여론을 조사하는 프랑스 여론전문 기관인 CSA(<http://csa.eu/>)와 BVA(www.bva.fr/) 등은 최근의 통계자료들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과 무슬림 이민자 관련 통계를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통계기관과 자료들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사례분석과 통계를 통하여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현상과 실재를 살펴보면서 연구의 접근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웹 자료를 이용한 연구 검토는 불가피하였다.

2차 자료로서는 프랑스와 한국에서 출간된 논문과 단행본 등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프랑스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무슬림 이민자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과 갈등 원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 프랑스 무슬림

사회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이라는 특정 주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I-1>은 본 논문의 접근방법과 연구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1> 프랑스 사회갈등과 통합 연구의 접근방법과 연구방법



그리고 사회과학적이며 지역학적인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회생활과 교육·종교·정치 등 사회적응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사회갈등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사회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갈등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특정적인 사건에서부터 국가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정한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아브카리안·팔머 1985: 18). 프랑스가 처한 이민자 문제의 해법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청과 정체성의 위기는 선택해야 할 동면의 양면으로 남는다. 개인(소수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원자적(atomist) 관점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공동체(국가 규범과 가치)에 기반 한 총체적(holist) 관점을 강조하느냐의 선택이 된다.¹⁷⁾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즉, 프랑스는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 성격과 사회 구조,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갈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에 대한 문제를 심리학적 차원에서부터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의 이론에서 설명되고 있다.

2) 연구 내용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은 이슬람 이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이민자 갈등은 두 가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충돌한다. 하나는 이슬람 문화의 생존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기존의 프랑스적인 문화의 지위나 프랑스라는 전통적인 국가 정체성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이다.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원인은 인종과 종교 그리고 문화적 소수집단이 주장하는 사회적 인정, 문화적 생존의 요구와 충돌하는 국가나 민족의 가치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소수집단의 출현이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소수집단이 직접적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 사회를 운영하는 규범의 틀이 존재하지만, 소수집단이 요구하는 문화적 생존의 요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 공동체는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배적인 다수 문화에의 흡수 동화를 시도해 왔다. 소수의 유입집단은 과거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17) Taylor, Charles(1997). "Cross-Purposes: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Philosophical Argumen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253.

통합하는 것을 전제되어 왔던 것이다.

프랑스는 이민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실시할 때 국가의 가치와 자국민 중심이었다. 그 결과 나타난 이민자의 사회적 조건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프랑스가 지니고 있는 가치나 원칙(공동선, 공동이익)에 대한 시민적 자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후,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생존 수용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제도적 실효성이 뒷받침되었다면 오늘날 프랑스가 처한 통합의 위기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선택한 이민자의 통합방식은 일방적인 동화주의였다. 현실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문화간 규범과 관습의 불일치는 한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에 따른 갈등의 야기는 국민 간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규범에 대한 무슬림 이민 집단의 문화적 불일치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 정체성을 가진 문화 간 갈등이 더 심화되고 구조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가 선택한 동화주의 정책에 따라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와의 갈등 원인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장인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방법과 내용을 다루었다. II 장인 “이민자 사회통합과 다문화 담론”에서는 이민자 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다문화주의의 쟁점과 다문화 공존 그리고 국가의 형성과 민족(nation)의 개념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모델을 다루고 있다.

III 장인 “프랑스 이민정책과 동화주의 사회통합의 원리”에서는 프랑스 이민자의 현황과 국적법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프랑스가 수용한 동화주의 이민자 통합모델의 기원과 인식 등 프랑스가 수용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IV 장인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와 갈등”에서는 프랑스를 향해 문화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생존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무슬림 이민자가 처한 사회적 조건들을 살펴본다. 종교적, 경제적, 주거, 교육, 정치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환경을 사례분석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무슬림 이민자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의 실태를 고찰하고 있다.

V장인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와 사회통합의 위기”에서는 프랑스가 수용한 동화주의 원칙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이 무슬림 이민자 집단과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는 각종 소요사태를 시기별로 살펴본다. 또한 동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무슬림 이민자의 항변과 프랑스인의 대 무슬림 인식, 히잡이 가지는 양 진영의 상징의미와 이슬람 혐오주의를 다루고 있다.

VI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본론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프랑스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갈등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의 위기에 불구하고 프랑스의 선택은 여전히 강경한 동화주의를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가 공화주적 동화주의 모델의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에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뢰, 합리적 대화 등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상호인정과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재분배로써 이민자 사회 갈등이 해소되는 방안을 결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II. 이민자 사회통합과 다문화 담론

1. 이민자 사회통합의 필요성

1) 다문화 담론의 제기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공산주의의 몰락은 전통적인 체제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인 전쟁과 분쟁을 외견상으로 종식시켰다. 이념의 시대보다는 평화적인 환경의 무대가 조성되자 세계의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로 국제질서와 환경이 재편되어 갔다. 경제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자본주의 자유 경제로 인한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에 모든 국가는 편입되었다.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자 새롭게 전개되어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인적 이동이다. 전 세계 인구의 2.5~3.0%에 이르는 약 1억 9천 만 명의 인구가 경제적 이유나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이주(migration)가 보편화되었다.¹⁸⁾ 인류의 이동이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자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수반되었다. 다른 국가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소수 규모이던 타 문화권의 유입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화권이 유입된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사회로 바뀌어 간다. 이는 하나의 국가 내에 민족적·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복수로 존

18) 2006년 6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이주의 새 시대를 위한 초기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억 9100만 여명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 밖에서 살고 있으며, 이주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의 형태는 부유한 국가로의 이주가 대부분이며, 개발 도상국간의 이동 인구도 7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도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의 정착지는 유럽이 35%로 가장 많았고, 북미(23%), 아시아(28%)권의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한겨레 2006-06-07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unit/130136.html>.)

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 한 체제 내에 공존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체성 간의 상호 인정과 공동의 생존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띤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는 보기 드물다.

국가라는 체제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문화나 관습, 언어, 종교, 정치체제 등 모든 영역에서 단일성과 공통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이 형성된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통일성을 주축으로 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가, 근대 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질적인 정체성은 사회적 저항을 받는 기본적인 맥락을 갖고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원인이 된다.

유입된 인종이나, 문화는 사회의 내부에서 소수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異)문화가 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의 주체를 형성하는 집단의 ‘관용(tolérance)’이라는 도덕적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관용이 내포하는 것은 사회의 법과 원칙, 가치, 분배 등 주류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인식에 도전하지 않는 한 소수자로 분류된 자들은 사회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구성원으로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시기를 겪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관용의 사회적 도덕심은 사라지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민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이민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난다. 어차피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국민들의 불만과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치적 이익을 다분하게 고려하겠지만-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실업이 가중되자 각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노동 제공을 제한하고 내국인 위주의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소수 집단의 고용배제와 이민자 유입의 억지정책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다. 특히 다문화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유럽의 경우에는 다른 시각에

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의 상대적 배제가 정착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라고 하기에는 이민자 인구의 구성비가 전체인구의 5-10%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이민 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등장한 이민자 집단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사회의 의도된 차별과 배제는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이민자 문제는 경제의 논리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까지 확대된다. 즉 이민자는 실업의 원인이며, 치안불안을 생산하는 주체이며, 또한 이질적인 정체성은 국가의 정체성을 변질시킨다는 논리로 주류집단은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한다. 심지어는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추방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 반면 이민자가 바라보는 사회갈등의 문제에는 주류사회가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수용국가에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노동인력을 사용하고 난 후, 이제는 배제되어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이민자들은 주장한다. 고용에서의 차별과 배제, 실업에 의한 빈곤, 열악한 사회적 조건들의 재생산은 정부의 의도적 방관에 의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민자라 취급받는 주류사회로부터의 정서적 배제감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더불어 좌절과 분노는 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통과 종교 등 문화적인 부분에서까지 제한되고 금지되는 사회적 환경이 이민자로 하여금 반사회적 시선과 제도에 불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문화간 사회갈등의 원인을 둘러싼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같은 사회 내 공존을 전제로 이민자의 사회적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문화 등을 구현하는 소수 정체성 집단들을 하나의 국가나 사회 내부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다문화 정책, 사회적 담론을 다문화 담

론 또는 다문화주의 담론이라 한다. 즉 사회에 내재한 ‘다름’과 ‘차이’를 가진 복수의 다양한 정체성 집단들이 어떻게 하면 다수를 구성하는 정체성 집단의 양식과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지의 실천의 문제이다. 주류집단 위주의 이민자 정책들과 배제와 차별을 통해 사회의 외부에서 주변화된 존재 집단의 권리 요청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대답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일한 정체성을 염원하는 많은 국가들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여 통합해야 하는 당위성에 고민은 깊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은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적 목표이다. 그만큼 모든 나라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관리되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어 극심한 분열을 겪는다. 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 통합의 문제는 오늘날 사회의 핵심적인 갈등 중의 하나이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다민족·다문화 정책은 ‘통치(governance)’를 의미한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종의 국민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각종 정책 수단으로서 통치의 영역에 기댈 필요가 있다.

먼저 이민자를 어떻게 사회 내부로 끌어들이어야 하며, 사회의 통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적인 인식과 형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다문화주의 담론 또는 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불과 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된 것은 그 이후이며 더욱이 시행된 정책의 결과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들을 유형이라는 잣대로 나누어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 외국인 관련 다문화 정책은 정책 초기에 정해지고 입안된 원칙에 따라 엄밀하고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쳤으며, 통합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다인종 관련 정책 모

텔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내용의 차이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2) 다문화 정책의 차원

문화적 다양성과 복수적인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제도적·정치적 개입을 통하여 사회적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외국인 통합정책의 유형은 크게 동화주의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시적 측면에서 구분을 위한 분류이다. 동화주의(assimilation)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두 공식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양성평등 등 보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면서 이주민들을 자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 내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경로 또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동화주의는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이민 수용국의 지배적인 가치관(values)과 권리체계(rights systems) 그리고 문화적인 실천(cultural practices)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주민이 모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가치관과 문화적인 실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경우 수용국의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이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정영태 2009: 324-325). 이 두 가지 정책 혹은 모델이 서로 완전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든가, 정책적 경계가 뚜렷하여 절대적인 사회통합의 준거 틀로써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다문화주의를 대표적인 유형의 통합정책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미시적인 부분에서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이민자 정책에 내포될 수도 있다. 또한 동화주의나 배제를 선택한 국가일지라도 인종차별금지를 입법화하고¹⁹⁾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

19) 프랑스의 경우에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1972년 7월 1일의 법안은 인종차별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고, 더불어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이 특정한 민족·인종, 혹은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차별과 증오 혹은 폭력 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타하르 벤 젤룬 2004: 73).

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절대적인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여 통합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뿐더러, 모델 그 자체도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과 이민자를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인식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선택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도 사회마다 지니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한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동화주의라는 다문화 모델을 받아들인 국가들에서 제각각 사회적, 정치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간에 관찰되는 차이와 간극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처럼 이민자를 사회의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은 각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선택되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다만 각 국가들이 취하는 통합의 방식과 그 정책을 유지·존속케 하는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을 놓고 보았을 때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의 대표성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구분은 단일문화주의와 다원주의²⁰⁾라는 이원론적 분류이다. 이는 두 모델의 대비를 통하여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순화된 시각을 보여준다. 동화주의는 주로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를 강조하는데,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문화를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평화와 공존을 허용하며 제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화주의가 나타난 배경은 국가의 역할과 연관된다. 국민 만들기의 의미와 시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문화적 사회는 정도가 달랐을 뿐이지 늘 인간 사회에서 존재해왔던 현상이다. 정치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일치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로의 시도는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문화적 동질화의 의지는 동화주의적 접근을 의미했다. 동화주의 사회에서는 문

20) 문화다원주의는 다문화주의와 혼용되기도 하고,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수의 독립적인 문화가 한 사회 내에서 공존가능하다는 것으로 다문화주의의 한 차원으로 문화적 특수주의(particularism)가 문화적 동질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는 입장도 있다(원숙연 2008: 525).

화적 동질성은 사회적 규범이었으며, 문화의 정체성의 다양성은 배제되고 혹은 부정되었으며 개인들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동화주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했다. 시민들이 공동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가 통치하기에 수월했던 것이다. 공동의 민족주의 문화로 통합된 사회는 상호 이해와 신뢰나 유대감의 형성에도 용이했다. 그러므로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들에게 이러한 목표는 국가 내의 연대성과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추구되었다(김창근 2009:31).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단일문화주의에 기초한 통합의 방식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개념은 국가가 ‘시민(citoyen)’의 사회계약(contrat social)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국가의 보편적 의지(일반의지)의 공동이익을 우선하는 공화주의 가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등 개인의 사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은 허용되나 이질적인 공동체의 형성이라든지, 일반의지가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질적인 정체성의 드러냄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에 결합된 개인들의 총체만이 인정되며,²¹⁾ 국가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적 발현은 국가의 보편적 가치의 유지와 수호를 위하여 당연히 금지된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 주류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있다면 비주류의 문화를 주류의 그것에 융합이나 동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일방적인 동화의 과정에서 억압기제가 작동하는데 주류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고유 의 전통문화나 정체성의 소멸이라는 문화적 억압과 불이익이 주어진다.

21) 루소(Rousseau J.-J)에 따르면 사회계약(contrat social)의 성립과 동시에 개인들 대신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 즉 하나의 정치체(국가)가 형성되며, 이 정치체가 갖는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이다. 일반의지는 국가 유지를 위해 각 구성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을 가지며, 전체에서 나오고 전체에게 적용된다. 일반의지의 기본속성은 항상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intérêt général)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구성원 전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므로 사적이익을 염두에 둔 전체의지, 즉 특수의지는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의지는 사회 내 기존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견해의 조정 내지는 타협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런 동질성 위에서 실현가능한 단일한 원리로 구성된 정의와 진리이다. 이러한 루소의 일반의지, 평등, 공동이익의 개념은 혁명의 원천이 되고, 공화주의 설립의 기본 이념이 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존재에 대한 동화주의의 접근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재고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의 다양성을 받아들인다. 다원주의 방식의 통합 개념은 소수 민족, 문화적 공동체가 가진 고유의 특수한 권리를 존중하며 그러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둔다. 소수자의 특수한 권리 요구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려 애쓰며, 문화적·정체성의 다양성을 함께 공존하려는 피자(pizza) 형태의 사회적 구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써 각 공동체는 고유의 문화가 사회 전체에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심지어 공동체의 정체성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세하기까지 하는 형태도 나타나기도 한다(마르티니엘로 2002: 67-69). 다문화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문화적 상대주의의 출현이다. 다원주의적 접근이 문화적 상대주의에 표류하면 모든 문화는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모든 문화적 관행을 용인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동시에 가치균등주의나 평등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가 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다문화주의일 뿐이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이탈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시민성의 강화를 법적으로 제시하며 다시금 동화주의 성향의 정책들을 구상하게 된 원인이다.²²⁾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두 유형의 분류로서는 현대 사회의 변모된 다민족·다문화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모든 유형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앞서 말했듯이 전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서 단일문화주의만을 고수하던가, 모든 정체성이 사회적, 제도적 권리를 갖는 다원주의 모델을 채택한 사회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화 아니면 배제만이 동화주의 정책의 상징이며 전유물이 아니듯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와의 공생, 더 나아가 공동체의 형성까지도 허용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절대적인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2) <그림 II-1> 국적부여 및 이민자 통합의 국가별 유형과 방향성 참조.

오늘날의 개념으로써 단일문화주의와 다원주의는 동화주의 정책 유형과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용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또한 역시 두 가지로 비교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각 유형의 틀 속에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이 개방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먼저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여 설명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복잡한 다문화 담론을 단순화하여 봄으로써 국민통합에 대한 상이한 철학, 두 가지 이데올로기 혹은 두 가지 상을 제시한다.

<표 II-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모델의 특징 비교

구분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문화적 지향	문화적 동질화 추구 추상적인 타문화 이해와 수용	문화적 이질성 존중 구체적인 타문화 인정과 보호
국가 역할	매우 제한적	매우 적극적
정책 목표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소수집단의 고유성 인정을 통한 사회 통합
갈등 해소 방안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정책 수단	소수집단 차별방지의 법제화 (소극적 수단)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보호의 법제화 (적극적 수단)
다양성 개념	사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사적·공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평등 개념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민자에 대한 관점	노동력, 이방인 통합의 대상	사회구성원 사회 다양성의 원천
비판	이주민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이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	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 초래

출처 : 한승준(2008b: 470)

두 유형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절대적으로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각 국가는 수용한 통합의 정책들이 의도한 것처럼 완전하고 무결점적인 통합정책으로 되고자 하는 기대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뒤따르고 있다. 동화주의거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다문화주의 방식이거나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이주민,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의 목표는 동일하다. 사회적 갈등이나 마찰 없이 함께 사는 것이다.

현실의 특수성은 이 두 유형의 온전한 선택과 적용을 어렵게 한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은 각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문화주의 경향이 동화주의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동화와 융합의 정책과정들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구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민자를 통합하는 다문화정책은 다분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용법의 일상성에 비해 개념적 명확성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종합적인 정책이나 실천적 담론, 아니면 사회적 규범이던지, 철학의 형태든지 그것은 외국인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의 변이가 늘 진행형으로 존재하는 사회화 과정의 작동이다.

2. 다문화 정책의 유형

캐슬즈와 밀러²³⁾가 제시한 통합정책의 유형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즉 배제나 수용이나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그리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하고 있다. 동화정책은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적 요소 등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체제에 순응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23) Castles & Miller(2003: 249-252), 김용찬(2008: 90)에서 재인용.

차별적 배제의 모델은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배타적인 이주정책, 제한적인 국적취득 등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하여 ‘독일은 이주국이 아니며(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 국민을 형성하는 조건은 자국에서의 출생과 인종적인 특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유형이다.

다문화주의 유형에는 다시 자유주의적, 조합적 그리고 급진적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예를 들면 급진적 다문화주의 유형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다양성을 포기함이 없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는 보다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오랜 동안 이주민의 유입으로 통합을 시행해 온 국가들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통합 정책의 유형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별적 포섭·배제의 정책을 시행하다가 동화주의 형태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간다던지, 동화를 통한 통합정책은 차츰 소수 집단들의 요구나 주류집단들의 인권 의식의 신장에 따라 소수의 정체성과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시행의 노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1)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차별적 배제의 정책은 동화주의와 함께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를 강조한다. 단일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가정에 입각한다. 국가나 민족의 강력한 동질성을 전제로 하며,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나타난다(한경구 2008: 90). 따라서 단일문화주의는 우월한 문화집단의 존재와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주민이나 소수자의 문화, 소수집단의 가치는 중심문화로 동화시키거나 배제를 통하여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이다(김용신 2008: 34).

차별적 배제 정책을 시행해 온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차별적 배제라는

다문화 정책이 태동할 수 있는 배경은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인식 때문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최고의 가치인 국가를 위하여 응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단결과 통일성을 위해서는 인종, 종족, 언어, 관습 등 동질적인 문화 집단들만의 결합인 하나의 민족이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혈통을 통한 종족적 결집의 공동체가 가장 순수한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이때 이질적인 문화 집단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위험이 있다.

단일문화주의를 고수하면서 차별적 배제의 이주민 통합정책을 실시한 전형적인 국가는 독일이었다. 1960년대 독일에서 노동 계약기간의 만료 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는 노동자나 그 후속세대들의 잔류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독일 정부는 차별과 배제라는 강력한 이민자 정책을 선택하였다. 법을 통한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을 통하여 외국인들을 직업 종목의 선택이나 거주, 노동 시간 등에서 통제를 하였다. 게다가 영구 정착을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연방노동사무소나 정부 기관들을 통하여 감시하고, 노동 이민자가 불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방을 전담하는 특수 경찰도 유지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에서 차별적인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국적의 부여라든지, 투표권의 문제, 교육 등에 있어서 배제의 동학이 지속되어 나타난다. 1995년 이후로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외국인인 지역의회와 유럽의회선거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나, 비유럽 외국인에게는 납세의 의무는 갖지만 투표권 같은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반면 독일인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역이민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은 해당 언어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귀국 즉시 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어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직업을 가진 이민자나 그 후속세대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차별과 통합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통제의 방법은 학교 교육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주민 자녀들을

독일 학생들과 분리하여 학급을 편성함으로써 이들이 독일인과 비교하여 좀 더 우월한 교육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을 두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게 하였다. 교육의 부재와 낮은 학력은 실업에 내몰리거나 힘든 일자리에만 종사함으로써 사회의 최하층에 머물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 공공 서비스 및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개별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⁴⁾

2) 동화주의(assimilationism)

동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동일한 정체성의 유지, 통일에 목적을 둔다. 동화주의는 차별적 배제의 유형과 같은 단일문화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동화주의는 동화대상 집단이나 개인들이 주류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일하게 변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행하는 흡수통합방식이다. 이민자와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가진 특성이나 관습, 종교, 문화 등을 융합 또는 용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이나 상실해나가는 반면 자연적이거나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일방적인 습득과정을 통하여 다수집단이 보유한 것들의 정체성과의 유사성을 취득해 간다.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이러한 문화의 전이를 가속화하게 하며 국민공동체로의 통일성과 정체성의 동일성을 시도한다. 언어와 역사 등 교육을 통한 동화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이용된다. 주류문화로의 융합과 동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에 대한 개인의 동의나 서약만 있다면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동화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는 다수집단의 사회 속에 용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에 힘입어 다수집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²⁵⁾

24) 독일의 통합정책과 이민자 차별연구는 박명선(2007)의 연구 논문을 참조하였다.

동화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비주류에 대한 주류문화 주입의 강제와 강요적 방식에 있다. 상대의 문화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아 정체성이나 문화 집단 정체성에 가해지는 억압되고 차별화하는 정책의 적용은 오히려 정서적 반감과 그들만의 문화 정체성 속으로 들어가는 역효과를 내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동화되었다는 징후와는 달리 소수집단들의 문화는 주류집단의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에 대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유지되면서 고유의 내구성과 정체성을 보존해온 것이다. 그러나 소수 집단들의 인구수의 증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이루어지면서 주류사회를 향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집단적인 행위로 발전하였다.

소수집단의 사회적 요구는 국가가 의도한 동화의 내적 원리에 근원적인 과정을 일으키면서 동화주의 정책 실행에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동화를 통한 이민자 통합이라는 이념은 국가 입장으로서는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소수자들의 권리가 제정되고 사회적 요구로 국가를 압박할 때에는 이들의 권리 요구 수용은 불가피하다. 만일 소수문화 집단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속되는 갈등에 사회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라고 알려졌지만 이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역시 동화주의의 원칙에서 외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3)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과의 확산이 고조되는 1970-80년대에 나타났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한 사회 내부에서 공존하면서 일으키는 정체성의 논란이 일자,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의 일환으로써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⁵⁾ 이때 학문적·정책적으로 부

25)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2002: 72-73.

26)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등장하였다.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퀘벡인들이 주류인 영국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즉 오늘날 다문화의 쟁점이 되는 시민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

상한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다. 사회 내의 소외계층이나, 마이너리티, 혹은 세대 간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이용승 2004: 181). 그러므로 초기 다문화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정상준 1995: 81).

다문화주의는 어떠한 영역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철학으로, 정치적 지향으로, 때로는 규범적 선호로도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²⁷⁾ 광의의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방식 내지는 전망이다. 또한 좁은 의미의 정의에서 다문화주의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라고 본다.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를 다문화주의라 정의되기도 한다(강휘원 2006: 8).²⁸⁾

지속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학문적·정책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오늘날 또다시 사회통합 혹은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으로 다문화 담론이 등장한 것은 이민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민자를 받아들인 각 국가들에서 이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화간 마찰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불러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를 사회로 흡수하는 방식은 동화 정책을 통한 수용이다. 그러나 동화주의의

의 배제의 문제인 동화주의의 위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정체성 모델'이 다문화주의 논쟁의 기원이 된 것이다(손철성 2008: 7).

27)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광의의 다문화주의라 전제한다면, 철학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차이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서구적 합리성과 이성을 수단으로 특정문화에 의한 타문화의 지배를 부정하는데 있고, 정치적 지향으로서 다문화주의는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 또는 '정체성의 정치'로 구현된다(원숙연 2008: 526에서 재인용).

28) 위키백과어는 다문화주의를 학교, 비즈니스, 이웃, 도시나 국가 같은 조직화된 특정 공간 속에서 인종, 문화, 민족적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된 실용적인 이데올로기라 정의한다.(<http://fr.wikipedia.org/wiki/Multiculturalisme>)

모델은 이민자의 반발로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각자 전통적으로 시행해 왔던 동화를 통한 통합 정책들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문화간 마찰로 사회 불안이 증폭되자 동화의 모델이 위기와 실패에 이르렀다고 인식되고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요구가 새롭게 부상되었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는 이민자를 통합하는 원리로서 다문화주의가 가장 발전한 형태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민자일지라도 개인의 자유 보장과 참여와 동의를 통한 의사표현 등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요구와 권리의 행사가 중요시되었다.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체의 출현도 나타난다.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이유를 제도적이나 도덕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소수집단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배제와 동화의 요구는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상충할뿐더러, 자주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물리적 요구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부상한 소수 집단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치·사회의 인식은 내부의 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통합의 원리는 수정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화 형태의 허용과 권리를 수렴하는 새로운 환경들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정체성 갈등으로 인한 분열된 사회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다. 다양성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국가의 역할과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였다. 버토백(Vertovec, S)의 용어에 따르면 ‘샐러드 보울(salad bowl)’의

29)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1971년 캐나다에서 출발하였고,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백호주의를 이민정책의 근간으로 삼던 고수하던 호주는 1972년 공식 폐기하고 1973년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뒤를 잇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무슬림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 등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위기와 폐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필요성을 의미한다. 다양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공존이 요구되었다.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되고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주의의 기본 인식으로 작동되어 이민자 정책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³⁰⁾

하지만 실용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다문화주의는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수준에서 모두가 공통된 인식과 정의를 토대한다고 볼 수 없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현이라 하지만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나 정체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수용하는 정도는 다르다. 국가마다 상이한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도입되고 발전해 온 다문화주의는 제각각의 형태로 정책 속에 스며들어 다양한 모습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차별적인 정책시행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단일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차별적 배제나 동화주의에 비해 보다 심화된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문화적 권리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한마디로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것이라 하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쉽지 않다. 다문화 정책 역시 그 다문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정형성을 정의내리기에는 쉽지 않다. 다문화주의를 선택한 국가나 사회의 수만큼 다문화 정책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다문화주의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념적, 이론적 정의가 존재한다(이용승 2007: 28). 다만 다문화주의의 이념이 지향하는 바는 이상적인 형태로의 다문화 공존이라는 사실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에서 출발한 다문화 정책이라는 정형성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갖는 기본적인 기준은 존재한다. 다문화 인정의 차이에 대한 척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파악된다(김복래 2009: 207).

30) Steven Vertovec,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p.19. 강휘원(2006)에서 재인용.

- ㄱ. 이중국적의 승인
- ㄴ. 소수인종(또는 민족)의 언어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TV,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
- ㄷ. 소수인종의 축제나 공휴일, 의식에 대한 지원
- ㄹ. 학교, 군대, 일반사회에서 전통의상이나 종교의상 착용의 허용
- ㅁ. 소수문화의 예술과 음악에 대한 지원
- ㅂ. 정치,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수학, 교육, 일터에서 소수인종의 대표를 권장하는 프로그램
- ㅅ. 각 인종집단의 구성원에게 다른 법률 코드를 시행하는 것³¹⁾ 등

다문화주의의 정의와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상정한 유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키네 마사미(關根政美)가 제공하는 세 가지 유형인 자유주의적, 조합적,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다문화주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³²⁾

(1) 자유주의적(liberal)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여 에스닉(ethnic)집단의 존재를 인정한다.³³⁾ 그러나 시민생활과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나 학교, 직장에서 다른 언어사용의 허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공

31) 예를 들면 호주의 원주민들은 원주민 공동체내에 발생한 원주민들의 절도 등 가벼운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호주의 성문법에 의해 적용되어 처벌되기보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관습법에 의해 구성원 사회에서 구성원에 의해 관습적으로 처벌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법적 처벌의 형식은 감옥에서 몇 년간의 형을 받으며 사회와 완전 격리되어 지냄으로써 교화의 근본 목적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출소 후 다시 사회로 재진입(사회화 과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광장에서 한 차례에 매질인 전통적인 처벌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도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처벌 받는 개인에게도 형벌을 다함으로써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32) 세키네 마사미(關根政美), 이용승(2007: 187) 논문에서 재인용.

33) 동화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인종집단의 허용에 있다. 동화주의는 인종집단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용어 교육이나 사회제도에 관한 교육에는 적극적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서 사적 생활영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공적 생활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관해서 시민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보장하지만 공식적인 종교는 승인하지 않는다.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이해로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자유의 보장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종교적 행위가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드러낸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 또는 종교적 상징물로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염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정교분리원칙으로 하는 근대에 형성된 국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문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허용되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에 반하는 이질적 문화나 관습의 드러냄이나 상징적 강요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의 구분이 명료한 제한적인 다문화주의의 특성을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보여준다.

이 유형의 다문화주의로는 다양한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통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이룰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젝(Zizek, S.)은 이처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내포할 수 있는 허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간 속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겠다는 관점인데 이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³⁴⁾

34) Zizek, S., “Multiculturalism, or the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1997, p.29-51 ; “Zizek Ethnicités?”. (<http://libertaire.free.fr/Zizek17.html>.)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에 관한 기회의 평등을 부여한다면 이민자와 주류 민족 간의 불평등한 구조는 소멸될 것이라는 가정은 동화주의 정책과 유사하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 모델보다 더 많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제한적인 다문화 인식과 정책의 한계로 차별과 배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소지가 다분히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는 있다.

(2) 조합적(coporate)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보다 다양성의 승인을 조금 더 보장한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즉 불합리한 조건에 있는 소수 집단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가능한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을 의도한다는 점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장 큰 차이이다.

따라서 조합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문화가 처할 수 있는 구조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공적 영역에서도 다문화방송, 다언어, 다문화 교육을 시행한다. 소수민족 학교나 공동체에 대한 원조 또한 사회 참가의 수단적 의미라기보다는 소수문화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취직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나 쿼터제를 도입한다. 사회적 마이너리티에게도 인구비례에 따른 교육과 직장에서의 대표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조합적 다문화주의의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적기관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언어 통역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시민에게도 지방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은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 선전 활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이용승 2004: 188).

(3) 급진적(radical)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수용과 허용에 대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적 접근법이다. 이는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경우이다. 공동체의 수준은 분리 독립이라는 매우 높은 요구수준에서부터 자신들과 관계된 정책결정에서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그 층위는 다양하다. 이러한 경향이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상정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분쟁의 불씨가 될 개연성이 높다. 공동체 간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질적인 문화 간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채택되는 정책은 연방제(confederation)이다. 캐나다, 스위스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아래의 <표 II-2>는 제시된 다문화 정책의 세부항목을 유형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II-2> 다문화주의의 형태

유형		자유주의적	조합적	급진적
문화적 다양성 (거시적)		인정	인정	인정
소수민족 존재		인정	인정	인정
문화적 권리 요구 (미시적)	사적영역	수용, 인정	인정	인정
	공적영역	수용 안함	인정	인정
주류문화로의 동화 요구정도		부분적 요구	삼각형	X
공동체 인정		안함	삼각형	적극적 허용
공공장소에서의 소수집단의 언어사용 허용		소극적	다문화방송, 다언어, 다문화 교육 시행	인정
국가의 가치와 규범, 법질서 준수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요구		준수요구	준수요구	준수요구

유형	자유주의적	조합적	급진적
소수집단 종교 허용	개인적-허용	허용	허용
	공식적-승인안함		
소수집단의 사회참여 유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 교육	국가의 역할- 중도적	국가의 역할- 방입적
차별금지	법적보호	법적보호	법적보호
소수집단 사회참여	기회의 평등	적극적 지원 결과의 평등	적극적 참여
시행 국가	영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유형’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유형에서 대표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한 사회에 특수한 형태로 적용되고 변화 가능한 것이기에 각 유형에서 주어진 형태의 범위는 개별적 특수성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소수집단의 문화나 정체성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의 확대와 심화는 오늘날 국민국가로 출발한 국가들에 적잖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도 오늘날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³⁵⁾ 다문화주의가 가진 한계도 드러낸다(이용승 2007: 27).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방적이고 급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동화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는 현실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권리 수용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주적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다.

35) 무슬림 청년들의 폭력이 잦아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무슬림의 시민권은 박탈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워드 연방총리의 발언과 실제 정책적으로 현실화 되어가는 시민권 제한 목적의 ‘시민권 테스트(citizenship test)’의 도입은 오랜 다문화주의 역사를 자랑해 온 호주에 다시 동화주의로의 회귀라는 일부의 근심을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세계의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관련 정책의 초점은 '소수 집단(minority)에서 다수 집단(majority)으로의 통합'에 맞춰져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다수 집단에 소수집단의 이민자들을 흡수시키는 데에만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급진적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측면만 고려하여 그들을 또 하나의 고립된 소수집단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도 있다. 이민자들의 고유문화 및 정체성 보존에 힘을 실어주는 균형도 필요하지만 다문화적 공존은 문화적 다양성의 허용과 관용³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적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간 합의를 통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반영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3. 다문화주의의 쟁점과 다문화 공존

사회는 잘 짜인 그물과 같다. 사회 구조의 속성은 세계관이나 관습, 가치, 언어 등의 동질성을 매개로 개인 생활의 형태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조직화한다. 그리고 또한 전승된다. 이것을 '문화'라 부르는데, 문화의 핵심에는 규범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규범은 하나의 원칙과 법규이다. 규범이 힘을 가지는 이면에는 규범에 대해 지지를 하는 '제재(sanctions)'가 존재한다. 규범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동의를 '합의(consensus)'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동의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합의는 사회가 이루고 있는 공적인 결속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아브카리안·팔머 1985: 17-19). 그러나 사회의 모든 규범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한결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합의로서 동의한 사회 유지의 조건들과 불일치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

36) 라즈(Raz)는 서구사회가 말하는 관용은 소수가 다수의 방식에 도전하지 않는 한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참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차별금지도 다수가 동의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법적인 보호제공을 의미한다고 본다.(Raz, Joseph(1995). *Ethics in the Public Domain*, Oxford: Clarendon Press, 183-188)

이다. 일탈의 행위자가 개인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제재의 형태를 띌 수 있다. 또한 규범으로의 양식을 개인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과 기준에 대한 특정한 구성원의 집단적인 저항은 차원을 달리 한다. 집단의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긴장을 가져오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와 체계를 분열시키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 오늘날 문제되는 사회적 일탈의 형태는 배제된 소수 문화집단의 문화적 권리 요구로 인한 갈등이다.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소수집단의 시민성 결여가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주류집단이나 국가의 차별과 배제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다문화 공존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나온다.

우선 소수 문화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론가로 홀(Hall)과 파레크(Parekh)를 들 수 있다. 홀은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에 바탕을 둔 인종차별은 소수를 상징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담론과 대표의 구조라고 본다. 그는 정치,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은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과 연동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홀은 문화의 차이는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이 때문에 현실적인 물질적 박탈이나 차별에 대해 소수자의 문화적 투쟁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³⁷⁾

파레크는 소수집단에게 예외적인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사회적 화합이나 문화적 다원성, 공동의 귀속감 등 집합적인 목표를 위해 가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집단과의 평등만을 의식한 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평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 사회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 역시 사회가 존중해야 할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하나여서 평등과 함께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³⁸⁾

37) Hall Stuart 1933. "Culture, Community, and Nation", *Cultural Studies* 7, n.3. 260-261.

38) Parekh, Bhikhu(2000a).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263.

홀과 파레크의 소수문화 존중에 대한 옹호의 입장과는 달리 베리(Brian Barry)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소수집단이 요청하는 문화적 권리 요구에 대해 비판을 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문화가 공정의 의무를 따져야 하는 도덕적 실체가 아니라고 것이다. 모든 문화가 똑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만일 모든 문화가 자기 폐쇄적인 도덕적 세계를 갖고 있다면 문화의 차이나 갈등을 다룰 어떤 원칙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문화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집단에 근거한 정치는 제도의 일관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에서 시민의 일체성을 분열시키는 것, 즉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라즈(Raz)⁴⁰⁾가 주장하듯 자기 문화를 보존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이듯이,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의해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 역시 그 과정에 강제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이론적 논쟁 속에서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념이 갖는 위험을 넘어서 새로운 다문화 공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다문화주의의 쟁점

다문화주의의 정책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것에는 극복해야 될 도전이 따른다. 즉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평화적 공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문화 공존의 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원천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김창근2009: 21). 마르티니엘로 역시 다문화주의의 위험에 대해 역설한다. 그는 사

39) Barry, Brian(2001). *Culture and 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8.

40) Raz, Joseph(1995). *Ethics in the Public Domain*, Oxford: Clarendon Press, p.176-180.

회적 시행의 층위에서건 정치, 이데올로기 혹은 시장의 층위에서건, 다문화주의에 관한 접근은 때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정치적 통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마르티니엘로 2002: 111).

초기의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으로 배제와 동화에 대한 도덕적·사회적·정치적 저항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세계화가 초래한 새로운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었다. 또한 인식론적으로는 근대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규범적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제기된 다문화주의의 논쟁에서 다문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또한 부의 재분배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를 도외시한 채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인정에만 주력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덧붙여서 다문화주의에 의한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는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종족적·민족적 소수집단 리더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로 다문화주의는 일상에서 정치화되기 쉬우며, 자유주의란 명분으로 동화주의에 빠지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또 다른 국민국가 형성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단주의로 인해 파괴될 개인성의 문제, 사회적 연대의 소멸 등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한 도전도 거세다(곽준혁 2007: 25). 집단 이기주의와 학문적 유행의 퇴행적 결합으로 까지 간주되고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가 갖는 현실적 도전과 논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동화주의의 위기의 결과로써 다문화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다문화주의의 대두와 논쟁

다문화주의 논쟁은 1970년대부터 자유주의 정치이론과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의 대립구도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사회의 정의,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공동체주의자들은 민족적·문화적 공동체의 인정을 주장하였다. 다문화주의 논쟁은 공동체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간의 이원적 구도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완전한 사회건설에 있어 각기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가를 두고서 이루어져 온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정의에 반(反)하는 집단적 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있어서 개인은 사회의 중심에 서 있으며, 사회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인의 사회적 권리란 공통의 공적 체도를 통하여 공통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공통의 권리로서의 시민권의 전통적 모델은 국민통합의 개념과 결부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화주의가 자유주의의 맥락에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헌법에 나타난 경우처럼 ‘기원, 인종, 종교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통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질적인 정체성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키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킴리카(Will Kymlicka)의 지적대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nationalist)를 국민의 통합 조건으로 내세웠다.⁴¹⁾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 된 동화와 융합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분배의 정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의 생활방식을 옹호해서는 안 되며, 문화와 종교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의 최소 개입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을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성토했던 자유주의의 취약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갈수록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데 있다. 다양한 문화집단의 존재는 사회 내에서 권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소수집단들의 요구와 사회가 그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갈등은 공적 영역에서보다 사적인 결사의 영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중재적 개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가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강제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1) Kymlicka. 장동진 2006: 480.

반면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규범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민족적·문화적 소수에 대해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된다(마르티니엘로 2002: 106-107). 그러나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는 소수집단의 결사와 정체성의 인정은 사회적 연대의 침해라는 위험성을 떠안고 있다. 동질적이지 않은 여러 집단들의 경쟁적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인정 요구는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가져오는 파편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공동체주의는 정치의 장(場)에서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일체감 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적 소수집단의 의견이 억압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념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소외와 배제의 위험성을 공동체주의는 내포하고 있다. 이때 다수를 이루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개인과 비주류의 소수집단의 정치적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적 권리만이 인정되는 다문화 공존의 한계적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2) 정치성과 재분배의 문제

사회적 삶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상의 다문화주의는 집단의 권리 주장에 부딪혔을 때 정치적 영역에 이른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다문화주의란 사회 안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즉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장려하는 공적인 시도이다. 마르티엘로는 정치적 영역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을 구별하여 공공정책과 특정 소수집단 성원에게 보장된 권리로 나누고 있다(마르티니엘로 2002: 93-94).

42) 손철성(2008: 1)은 특정 공동체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면 공동체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 수용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수의 공동체라는 다문화적 공동체주의 모델을 상정할 수 있지만, 공동체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라는 문제와 상위 공동체와 하위 공동체 사이의 관용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국가는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인 개입도 시행한다. 국가는 소수집단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한다.⁴³⁾ 하지만 공적인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집단 문화의 인정은 재분배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시행은 직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적극 장려하지 않지만, 각자에게 민족적·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마르티니엘로 2002: 96). 이처럼 한 소수집단의 권리가 공적으로 인정되면,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소수집단의 권리 자각과 주장에 따른 정치적 결사라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특수한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가 특별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더 나아가 독립된 정부를 주장하는 소수집단들의 출현도 예상된다.⁴⁴⁾ 소수집단들의 요구는 언어, 문화, 종교 등과 연관된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무슬림 이민자들은 사원의 건립이나 공립학교에서의 모국어수업,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건립, 이슬람 단체에 공적 지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소수집단의 다양한 권리 요구는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의 요구가 거부되었을 때 인권과 사회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들이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토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또한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리에 따라 그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삶의 유형을 규범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정은 개개의 문화 유형의 정체에 대한 ‘사실적’ 인정이지, 그 개개의 문화 유형에 모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송재룡 2009: 83). 그러므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거나 절대 보편적인 가치 및 행위의 준

43) 스웨덴에서는 유고슬라비아 민속춤 모임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퀘벡에서는 이민자 모임에서 발간하는 외국어판 신문들에 공적인 지원이 제공, 브뤼셀에서는 구역축제에 공적지원이 되는 예 등이 있다(마르티니엘로 2002: 95).

44) 프랑스의 알자스와 스페인 바스크 등 유럽에서 나타나는 지역분리주의 움직임이 그 예이다. 또한 오늘날 스위스나 벨기에의 언어권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자율권을 얻기 위하여 정치적 결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연방의 채택이다.

거 기준이 없다는 상대주의적 다문화의 요구⁴⁵⁾는 오히려 주류 사회공동체로의 동화(assimilation)를 요구하는 정치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즉 인정하는 주체와 인정받는 대상 사이에 권력 기제가 작동하면서 상호간의 기대가 마찰하고 결국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주류집단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김리카는 소수집단의 요구가 정치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⁴⁶⁾ 다문화주의가 기본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통합이론이지만 다문화주의란 이름으로 또 다른 국민 만들기(nation-building)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김창근2009: 26).

분배의 문제에서 또 하나 제기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다.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영역에서 다양성의 인정에 치중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의 영역에서 소홀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사고에서 경제 활동과 그 결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되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들의 갈등과 권리요구의 핵심에는 사실 빈곤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들의 빈곤은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의지부족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문화와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 집단들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경제적 현실의 간격이 심화된 때임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집단이 사회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개인에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마르티니엘로는 서양사회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은 사회·경제적 분열이 점차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공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라 본다. 공적으로 주창되는 평등의 이상이 실제의 불평등 사이와 간극이 클수록, 개인은 배타적인 문화와 정체성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 한다. 반대로 그

45) 상대주의란 모든 믿음은 개별 사회에 대해 상대적이며,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정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극단적이 되면 모든 문화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문화적 관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46) Will Kymlicka, 장동진 역(2006: 508-509).

간격이 줄어들수록 개인은 개방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펼쳐나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인정받거나 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오면서 사회적 갈등은 이념적 대립을 떠나서 부(富)로부터 배제된 자들이 방향을 잃고 결국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정체성만이 피난처가 되며, 때로 그러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마르티니엘로 2002: 39, 46-47). 이런 점에서 문화적 갈등은 사회·경제적 갈등과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오히려 그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가 집단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정만을 고집함으로써 계급의 역사적 의미와 분배의 문제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는 하이엄(John Higham)⁴⁷⁾의 견해도 이에 상응한다. 따라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연대의 위기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해치고 결국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적·문화적 소수에 대해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한다(마르티니엘로 2002: 106-107). 그러나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는 소수집단의 결사와 정체성의 인정은 사회적 연대의 침해라는 위험성을 떠안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문화는 각 개별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문화를 지속적으로 타자로서 확인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다양한 집단들의 경쟁적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인정 요구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가진다.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가져오는 파편화를 초래하고, 문화집단 간 경계를 구분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공동체주의를 약화시키며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손철성 2008: 12-13).

47) John Higham(1993).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ly*, vol.45, n.2, p.195-219.(김창근2009: 36에서 재인용)

오늘날 소수집단의 정치적 결사에 따른 요구는 다양하다. 캐나다 원주민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그 나라 최초의 주민이라는 자격을 내세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 혹은 사냥터, 낚시터를 수호할 권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민으로 형성된 소수의 집단은 언어, 문화, 종교와 관련하여 편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집단은 공적인 재정지원이나 기도장소 제공, 공립 학교에서의 종교수업 등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동일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한다. 극도로 다양한 이러한 요구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자기 이익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마르티니엘로 2002: 101-102).

그러므로 쉘레진저(Arthur Schlesinger)⁴⁸⁾는 다원주의도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존재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주장은 그러한 공통분모 없이 종족적·민족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⁴⁹⁾ 역시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은 ‘원격지 민족주의자’이자 동시에 분리주의적 성격을 띤 ‘신민족주의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김창근 2009: 34-35). 결국 다문화주의 그 자체가 평화와 통합의 유일한 정치적 원천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절대적 대안으로서 규범화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역차별의 위험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보호가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복수의 그리고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즉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들은 출신국의 정체성과 프랑스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문화적으로 출신국 문화와

48) Arthur Schlesinger(1998).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49) Benedict Anderson(1992). "The New World Disorder", *New Left Review*, vol.193. p.3-13.

관습을 지키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 동시에 프랑스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동시에 향유하면서 프랑스적인 정체성 또한 자신들에게 스며있다고 생각한다.⁵⁰⁾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무슬림 이민자의 정체성에 관한 설문에서 ‘무슬림이지만 또한 프랑스인이다’라는 응답이 나타나는 것에서 복수의 정체성이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의 문화적 권리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집단적 권리의 불이익 초래라는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개인의 자율성 침해에 따른 개인의 고립화이다. 개인은 소수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문화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인을 한 문화적 집단에 귀속시키려하는 배타적인 다문화주의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소속의 의무와 강제는 외부의 문화집단과 구분되어 동일한 문화나 종교, 정치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상실될 가능성이 많다. 공동체의 출발은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이중적 정체성과 개인의 다양한 가치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개인의 고립을 초래한다. 프랑스 무슬림의 예에서 보듯이 정체성은 복수적이어서 개인의 다양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처럼 소수집단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유도될 수 있다. 이를 집단적 권리에 대한 역차별의 현상이라 한다. 오늘날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수영장 출입과 금지 조항이 바로 그러한 역차별의 예로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 부르키니(burkini)⁵¹⁾를 입고 수영장에 입장한 이슬람 여성을 위생 규칙에 벗어난다는 이유

50) 소수집단들은 동질적인 실체가 아니다. 세대 차에 의한 문화적 틈이 있을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내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따라 요구의 조건 또한 다를 수 있다. 마르티니엘로(2002: 112-113)는 모든 개인은 언제나 한 가지 문화에 젖어 있고 한 가지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폐쇄된 문화 정체성의 본질적인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화는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정치적 구성의 항속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51) 부르카(burhka)라고 불리는 이슬람 여성의 복장과 비키니라는 수영복의 복합어로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몸을 모두 덮는 수영복이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이 신체를 가리는 전통을 가지고

로 출입을 거부하였다. 그와 반대로 영국에서는 일부 공립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부르키니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입장이 금지된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내에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⁵²⁾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이념에 의한 통합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존중을 내세운 새로운 역차별의 현상이다.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주류 집단과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분리를 강요한 것이다.

주류사회의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가진다. 국민들은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근원과 문화, 민족집단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거주하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언제나 자신들이 속한 문화 집단만의 구성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다. 당연히 이민자의 이미지는 주류사회와 대비되는 이질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민자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민자가 취하는 행동들은 상이한 소수집단의 문화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이민자 개인은 언제나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주류사회의 인식은 이민자는 결코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국민 안에 포섭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베리(Barry)는 이러한 현상을 다문화주의가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³⁾ 종족적·민족적 소수 문화집단에게 예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공동선을 위한 공동의 제도가 시행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집단의 특수한 권리의 인정은 특정 집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이슬람 여성이 종교적 또는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사실 부르키니라는 용어 그 자체에도 서구문화의 이슬람 경멸과 증오의 의미가 담겨있다. 사실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장은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한다. 부르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하는 히잡의 다른 이름으로써 눈만 내놓은 모양의 전신복장이다. 유럽에 거주하는 이주 이슬람 여성들은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보다 개방형이고 자유로운 머리쓰개인 히잡을 사용한다. 서구사회는 여성에 대한 남성 억압과 지배, 이슬람 문화의 비문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르카의 용어를 사용한다.

52) “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서울신문 2009/08/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8016015&relation=hit&spage=1>

53) Brain Barry(2001).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창근(2009: 37)에서 재인용.

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인종주의의 출현 등 역차별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소수집단의 인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수자의 문제를 당위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의무적 권리를 지적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개개인의 것이어서, 개인과 집단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 예외가 과연 정당한가를 보여준다.

2)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과 기대

앞서 다문화주의가 갖는 이론적 논쟁과 현실에서 부딪칠 수 있는 도전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존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하지만, 반드시 다문화 공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공존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없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의의와 개념은 여전히 필요하며 유효하다. 다만 규범적이며 당위적 성격으로서 다문화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다다른다.

다문화주의가 갖는 딜레마를 벗어나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해답을 찾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모든 사회는 특수한 다문화적 현상을 보이고 있기에 어느 국가에서 성공리에 시행되는 다문화 모델이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수집단이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것은 사회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논란과 쟁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이념은 수용해야 한다. 비록 그 자체로서 유일한 사회통합의 원천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의 집단적 평화공존이라는 이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보다 다문화 공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곽준혁 2007: 26).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원론적 논쟁에서 탈피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다양한 문화와 집단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복합적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공존의 틀을 제 3의 대안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된다. 재분배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강조하는 소속된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권리의 인정이다.⁵⁴⁾ 이는 비지배적 상호성을 바탕으로 실현된다.

(1)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

인정의 정치학은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논리이다.⁵⁵⁾ 인정의 정치학의 개념은 “인간의 정체성은 주체와 객체 양자 간에 ‘대화적’으로 진행되는 상호 인정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입장에 기초한다. 이는 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로부터 동등하고 유가치한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는 자아의 정체성 구성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불(不)인정(nonrecognition)과 오(誤)인정(misrecognition)은 인정의 대상이 되는 타자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며, 그들의 존재양식을 변형시킨다는 인식의 기원에서 출발한다.⁵⁶⁾ 인정의 정치학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학(politics of identity)’ 또는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정의 정치학은 그 어떤 타자나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의 유형이나 사고방식이 가지는 나름의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신분의 위계구조에 내

54) 소속된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권리의 인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정의에 주목하는 학자(Nancy Fraser)도 있다. 그녀는 재분배와 인정의 균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국가를 통한 공공복지와 민족국가 중심의 세계질서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한다(곽준혁 2007: 11).

55) 테일러와 호네프가 인정의 정치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이론가들인데, 설한(2005: 195-198)은 인정의 정치의 두 축으로 ‘존엄성’과 ‘진정성(authenticity)’을 들었다. 자유주의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윤리이다. 칸트에서 파생되어 루소에 의해 환기된 진정성은 개인의 고유한 존재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의 부여이고, 시민권의 토대가 된다.

56) Taylor, Charles(1994). “Politics of Recognition”,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송재룡(2009: 89)에서 재인용.

재된 불평등, 곧 문화적 지배와 억압, 불인정, 기회박탈, 경멸 등과 같은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이상환 2006: 134-135).

인정의 정치학에서 요구하는 덕목은 인정 또는 관용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작동하는 권력기제는 집합적 정서가 강한 사회에서는 동화에의 요구나 압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정의 정치학에 상대주의 혐의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테일러(Charles Taylor)가 의미하는 인정의 정치학은 그 어떤 문화적 삶의 유형도 그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즉 각각의 유형이 갖는 고유성과 차이에 대한 ‘사실적’ 인정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의 유형에 모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인정의 의미는 아니다. 테일러가 제시하는 인정의 정치학 개념적 전제에는 문화·언어적 및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인정의 정치는 공동체와 개인의 특수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인권의 보편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정성과 존엄성은 의미의 지평과 사회관계의 상호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자결의 권리를 내포한다(설한 2005: 198). ‘선한 경쟁의 정치학(politics of good competition)’으로 풀이되는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학에서 도덕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인정의 대상이 되는 개개 집단들의 문화 양식들은 상호간에 열린 태도의 선한 경쟁⁵⁷⁾을 전제하고 있다(송재룡 2009: 100-102).

호네프트(Axel Honneth)에 의한 인정의 정치는 상호주관성에 관계된 존경과 인정이다. 호네프트에게 있어서 자기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정은 심리학에 토대를 두고 감정적인 필요와 구체적인 타자들로부터의 사회적 존경을 주고받는 것에 의거한다. 인정의 세 유형으로서 호네프트는 법적 인정, 사랑 그리고 보편적 특수성의 구현으로서의 국가에 의한 인정을 구분한다. 법적 인정에 있어서 개인은 존엄성을 부여받고, 사랑에 있어서는 개인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국가는 개인의 특수성과 보편성 모두에 있어서의 인정을 의미하고 있다(설한 2005: 199-200)

57) 선한 경쟁은 다양한 삶의 유형과 문화 양식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성찰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본다.

(2)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

인정의 정치는 재분배의 정치학과 나란히 시행되어야 다문화 공존을 위한 완전한 정책적 시행이 된다.⁵⁸⁾ 사회·경제적 위계구조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착취, 배제, 주변화, 기회 박탈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부정의(socio-economic injustice)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분배의 정치학은 사회경제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정의 정치학이다. 마르크시즘이 기초 논리를 제공한 이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이 제거되면 신분적 위계 구조를 포함하는 문화적 불평등의 구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신념과 비전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사회통합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적 여건의 개선도 중요하다. 벤자민 프리드만(Benjamin Friedman)은 그의 책 『경제성장의 도덕적 귀결(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에서 ‘경제성장은 물질적 편익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태도 및 정치제도, 다시 말하면 사회의 도덕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⁵⁹⁾ 경제성장의 진정한 이득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다양성에 대한 관용, 공정성에 대한 의지 등과 같은 사회적 덕목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주의에 논쟁에서 다루어졌듯이 문화적 영역에서 다양성의 인정에만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경제적 위계구조는 사회계층과 계급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서는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되는 자유주의적 이념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렵다.⁶⁰⁾ 즉 설한(2005: 187)이 던진 질문처럼

58) 재분배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차이의 인정에 대한 요구를 허위허식이나 사회정의의 추구에 대한 방해물로 파악하고, 반대로 인정을 주장하는 일부 이론가들은 분배적 정치를 낡은 유물론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이러한 양자택일적 물음은 잘못된 것이라 선언하고 오늘날 정의는 재분배와 인정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주장을 펼친다(이상환 2006: 129-130)

59)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7542>

60) 평등주의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많은 연구는 불평등의 구조가 자율적인 개인들의 행위와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설한 2005: 190).

럼 “한 개인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가 다른 이보다 훨씬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한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님에도 가난한 신분이나 하류계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제기이다.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동등함의 원리, 즉 평등은 ‘정의(Gerechtigkeit)’이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형식적 원리에 따라 개인의 행위나 사회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의 원칙에서 모든 개인은 보편적 존재로 간주될 뿐 각 개인이 가지는 차이나 특수한 처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개인의 운(運)과 선택은 자원의 분배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변수지만(설한 2005: 190), 불평등 역시 구조적이어서 정의의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인식하거나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호네프(Axel Honneth)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설파한다. 그는 개인의 특수성을 보호하려는 윤리적 입장을 ‘정의의 타자(Das Andere der Gerechtigkeit)’로 등장시키면서 비대칭적 의무를 강조한다(호네프. 문성훈 외 2009: 11). 이는 인간적 ‘배려(Fürsorge)’, 도움주기, 특수성 인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이 된다.

(3) 비지배적 상호성

사회적 통합이 배제와 동화를 유발하지 않고 다문화 공존의 제도적 구성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비지배적 상호성(reciprocal nondomination)’으로 법과 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은 인정의 정치에서 은밀하게 작동할 수 있는 동화에의 요구나 압박의 권력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곽준혁(2007: 37-38)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지배(nondomination)’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비지배성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 협상의 원칙이자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행위

의 규범이다. 이때 비지배는 자유로운 ‘행위’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조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호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지배적 상호성은 정치적·도덕적 판단 근거가 된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준혁은 비지배적 상호성이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의 긴장을 해소한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 배제되어 오던 공화주의를 공론의 장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조정원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적 심의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갖는다. 그리고 비지배적 상호성은 심의의 조건이 가능하도록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귀속감을 제공한다. 이는 배제와 동화가 아닌 상호신뢰를 통해 상호 인정이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광준혁 2007: 38-39).

4. 민족의 개념과 다문화 정책

각 개별 국가가 수용하고 있는 이주민 통합정책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족 정체성의 차이에 따라 이주민을 수용하고 권리를 제공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민족 정체성은 국가를 이루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들의 인식론적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개념 정립의 차이가 각 국가의 다문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개념이 각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민자의 통합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략한 이민사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연관 지어 보고자 한다.

1) 민족과 국민국가

민족주의(Nationalism)는 오늘날의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란 정치 체제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기제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의식 즉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에 형성된 가치관 또는 신념 체계인 동시에 국가생활의 근본적인 목적 및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도 관련된 중대한 요소가 바로 민족 정체성이다(양승태 2007: 55).

사회과학에서 ‘민족(nation)’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실로 어렵다. 역사적 개념으로서 또는 역사성으로서의 민족은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하였기 때문이다. 주관적이고 사회·문화적이며 또한 정서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된다. 그렇기에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규정되고 정의되어 온 경향을 띠어 온 것이다. 민족을 정의한다는 것은 분명 어떤 집단의 성질을 확인하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집단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경계를 짓기 위하여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한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는 민족의 형성 개념에도 적용된다. 민족의 구분 속에는 나와 다른 집단의 관계에서 보다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고 유지하며 특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체계가 존재한다. 인종이라든지, 민족의 개념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담론의 하나였지만, 유독 근대 이후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노정에 있던 유럽 국가에서 이론적 논리로 체계화되고 민족의 개념을 확대 발전되었다. 예속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반영인 것이다. 즉 유럽에서의 민족 개념은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데올로기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민족 개념의 형성

민족(nation)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시대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다. 민족을 의미하는 nation은 ‘태어나다(natus)’의 의미와 ‘자연(natura)’을 의미하는 같은 동이의 어원을 가진다. 종, 인종, 종족 등 같은 혈통을 공유하는 같은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원초주의(primordialism) 해석(Hastings, 1997; Conner, 1993)에서 출발한다(조홍식 2005: 130). 종족 의식이야말로 개인적 정체성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자연히 종족 공동체에 대한 애착은 도덕적 의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한 윤리적인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원초주의 해석에서는 민족의 개념이 종족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족(race)과 민족(ethnic)은 혈연공동체이며 언어, 종교, 역사적 기억과 관습 등을 공유하는 데서 공통적이며 근대 이전에 형성된 민족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민족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면서 인위적 성격을 갖는다. 다종족으로 구성된 국가들, 예를 들면 스위스나 벨기에 등에서 나타나는 예이다.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종족 민족주의(원초주의)보다는 구획된 영토 내에서 단일한 경제권을 구성하며, 여러 종족들의 개별적 정체성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공공문화와 역사적 기억의 공유로써 민족과 민족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동일한 목표를 향한 공동체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생성된 문화적 단위라고 주장하는 정의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종족 공동체 즉, 혈통과 언어, 관습까지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민족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민족이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이 상상과 발명의 과정을 통하여 다듬고 만들어 낸 ‘상상의 공동체(Community of Imagination)’⁶¹⁾이다. 또한 겔너(Gellner)⁶²⁾의 주장처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다는 이데

61)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앤더슨은 민족은 다양한 인종·문화·종교적 다양성을 뛰어넘어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강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상의 공동체’임을 강조하였고, 지배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대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 혹은 균열을

올로지 측면을 인정하는 민족 개념이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나타난다.⁶³⁾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혁명의 정신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유럽 각국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잇달아 전개되었다. 국민국가(nation-state)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족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국가와 국민을 정의하는 중요한 실체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민족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기초한 계몽사상의 출현과 이념의 전파로 정치적 목적으로서 도구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서구 사회문화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게 되면서 근대의 새로운 산물로서 다시 태동하였다.

(2) 민족과 국민국가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유럽의 정세 속에서 외부 세력의 압력에 대항할 필요 등으로 인하여 근대국가로의 형성이 절박해졌다. 이는 영토의 구획뿐만 아니라 국민과 민족이라는 국가 구성원의 정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유럽대륙에서 국가의 성립을 위한 노력은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식과 사상 개념의 정의에서 역사적 현실의 실천 개념으로서의 전환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주권이나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적인 용어인 ‘국민(nation)’이라는 개념이 민족(ethnic)을 대체하기에 이른다. 국가 구성원의 개개인인 국민은 역

볼 수 없도록 은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민족 국가들 간의 경제적·군사적 경쟁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들의 충성과 헌신을 끌러 낼 수 있는 통합의 중심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지배 인종·문화·언어 집단을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 형성의 프로젝트로서 ‘상상의 공동체’ 개념이 태동되었다(김비환 2007: 322).

62) 켈너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능적 필요에 의해 민족이 생성되었다는 설명을 한다.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민족과 같이 커다란 단위의 대중 사회가 필요했고, 기술을 활용하는 생산양식은 대중적인 교육제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조홍식 2008b).

63) 앤드슨(Anderson)은 민족은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동체이며, 민족주의는 이러한 실재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호출한다고 본다. 결국 민족이라는 집단의 형성 행위 자체는 민족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민족주의는 구분 짓기이며, 그 구분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내부와 외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민족의 범주 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민족주의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존재의 모든 차이를 지워버린다(조홍식 2005: 130).

사, 국가, 국기, 영웅, 신화 등 국민적 상징의 조작을 통하여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상상의 공동체라는 정치적 개념의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정치적 의미가 짙은 사회 범주로서의 국민(nation)은 현대 사회에서 다른 국가의 국민과 구별되는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시 민족(ethnic)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은 민족이라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실제 같은 뜻으로 인식되기도 한다.⁶⁴⁾

이는 국적법이라든지 이민법 등 이민자에 대한 각종 정책이 나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다.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동일성 집단의 정체성 즉 민족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시기였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후속정책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의지표현 결과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혼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민자(immigrés, immigrants)’는 국적을 취득한 자 일수도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이민자의 용어 개념은 국가가 수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표출되고 있는 이민자와의 갈등에서 국가와 주류집단이 갖는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는 공동체의 일원 즉 국민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민자’의 용어에는 ‘타자’와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용어에는 정치적 또는 정서적으로 우리민족 대 타민족, 우리문화와 타문화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질성을 찾아 드러내고 배제함으로써 형성된 의미를 갖는다. 이민자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그대로 이민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반영되거나 배타적인 국민적 여론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민자가 아닌 ‘국민’이라는 개념은 소수 타문화에 대비되는, 소수문화를 통제할 수 있는 주류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족의 개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산물인 정치, 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 차이의 구분을 보인다. 유럽에서 민족을 정의하는 두 가지의

64)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국민과 민족의 두 개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모델인 프랑스식(사회계약집단으로서의 민족)과 독일식(종족, 문화적 동일성 집단의 혈연집단)이다(조홍식 2005: 131).

2) 민족 개념과 이민자 정책

(1) 계약으로서의 민족과 동화주의

프랑스식의 시각에서는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립되는 것은 구성된 개인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유하는가에 대한 의지표현의 결과라고 본다.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의 열망은 루소에서 보듯이 ‘사회계약(contrat social)’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계약을 맺은 개인들의 집단이 바로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루소(Rousseau)의 ‘일반 의지(volonté générale)’는 개인주의적 입장이기 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중요성을 관찰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다른 개인의 이익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개인은 그 자체가 국민주권인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권은 사회 공동의 선한 것(공동이익)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이다. 이러한 루소의 영향은 19세기 르낭(Renan)에게 미치는데, 르낭은 민족이란 “공동의 삶을 지속하려는 명백한 의지의 표현을 통하여 형성된다”⁶⁵⁾고 정의하고 있다.

당연하게 프랑스가 취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 정책은 일반의지가 행하는 공동이익의 기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은 지배적인 사회구조를 이루는 여러 층위의 그물망에서 사회·문화적 적응을 강요받는다. 사회는 일방적이고도 단선적인 과정을 통하여 융해되는 것을 목표로

65) RENAN Ernest, 1887. "Qu'est-ce qu'une nation?", *Discours et conférences*, Calmann Lévy.

하는 동화의 정책을 이민자에게 강요한다. 결국 소수의 정체성은 사회의 주를 이루는 다수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다수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동화주의 정책은 프랑스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

이러한 순응적 동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된다. 특히 국적의 부여는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속지주의를 채택한다. 또한 무료로 시행되는 언어 교육정책, 프랑스 역사 교육, 군복무 등을 통하여 프랑스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이끌어 낸다. 국적 취득의 유무와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기원과 차이를 막론하고 시행되는 각종 사회 복지정책(주거, 교육, 의료, 사회보조 등)은 동화를 위한 최상의 정책이다. 비록 국가를 이루는 민족의 일원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국민과 동일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프랑스’라는 긍정적 인식의 확보와 함께 문화와 정체성의 전이를 쉽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공유 뒤에는 동일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특히 국적이거나 영주권의 취득은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소속을 의미한다. 국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케 하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나 국가의 기본 가치에 대한 인정과 동의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최소한 가져야 할 의무라고 본다. 개인 의지의 정도에도 상관없이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에 따라야 한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프랑스의 사회 관습과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개인적이거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프랑스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있어서 이민자 통합정책의 근간은 동화에 있다.

(2) 종족·문화적 민족과 차별적 배제

독일에 있어서 민족의 개념은 프랑스처럼 민족 공동체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계약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정치적 계약 집단이 아니다. 종족적이

며 문화적 결집력을 통해 주어진 자연스러운 유기체적 문화 공동체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즉 혈통을 공유하는 종족의 집단들이 공동의 언어와 가치관, 관습에서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같은 구성원의 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이 민족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민족 개념은 국민은 최고의 가치인 국가를 위하여 응집력이 필요했다는데서 나온다. 국가적 단결을 위해서는 인종, 종족, 언어, 관습 등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도덕적⁶⁶⁾ 집단들만의 결합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같은 유럽권의 두 국가 간의 정치적 개념의 민족과 종족·문화적 민족의 개념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 국가가 겪어 온 역사적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의 전제군주와 절대왕권을 통한 단일 국가가 형성되어 국가 영토 내의 구성원은 같은 민족이라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프랑스에서의 민족 개념은 내부의 정치적 혁명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여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1871년 제국의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독일은 고유의 의회와 정부, 문화적 생활을 지닌 수많은 연방주들로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따라서 19세기라는 격랑 속에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며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 ‘국가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기치아래 국가적 통일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철저히 억압하면서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족적·문화적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일에는 로마인이나, 슬라브, 켈트, 츠에브, 게르만족 등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왔다. 그리고 이탈리아나 그리스 유대인 등 외래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발전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민족 개념은 종족과 종족문화를 토대로 한다.

66) 도덕적이라는 용어는 종족의식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즉 개인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착으로 질서를 깨트리지 않듯이, 같은 동질성을 갖는 집단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친족 같은 사회적 결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이주민을 수용한 국가이다.⁶⁷⁾ 현재까지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주민 수용국가이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이주민 통합정책에 있어서는 차별적 배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들을 통합의 대상이 아닌 귀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였다. 이주 노동자는 독일내부에 살고 있지만 비독일 민족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소극적이었다(김용찬 2008: 96). 이들이 출신국으로 환국을 목표로 하는 이민정책이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차이를 강조하는 차별적 배제 정책만이 진행되었다.

반면 300년 전 러시아로 이민 갔다가 재이민의 형태로 다시 유입된 독일계 교포(Aussiedler)들은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무지할지라도 귀국 즉시 독일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에서 태어나고 모국어로 독일어를 하며 독일 문화 속에 살며 독일의 국민인 이민자 가족은 아직도 이민자 또는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혈통을 중시하는 독일인의 사고가 그대로 독일의 법과 이민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민족개념은 앞에서 보았듯이 혈통을 통한 종족적 결집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국적법이나 이주민 통합정책에 있어서 개방적이 아닌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⁶⁸⁾

67) 19세기의 독일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들의 도시 유입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이민으로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의 노동력을 위하여 이탈리아, 폴란드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불러들였으나, 2차 대전 후 5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화는 심각한 노동부족을 초래하였고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등 인접국가로부터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2년마다 로테이션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귀국과 유입의 정책은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시작함으로써 실용성을 잃게 되고 70년대에 이르러 이주노동자를 취업이민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1973년 들어 260만 명이라는 이주 노동자 수는 노동시장에서 포화상태를 이루게 되고 노동자 모집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노동자들이 가족을 독일 내로 불러들임으로써 이주민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게 된다. 이처럼 1955년에 약 8만 명에 불과하던 이주 노동자는 1960년대에 100만을 넘어서고 70년대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꾸준하게 지속되었고(80년대 450만 명) 1999년도에는 약 700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2002년도의 통계에서도 보듯이 더 이상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8,200만 명의 독일 총인구에서 8.9%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강정숙 2001: 154-156)

68) 혈통주의적 전통에 따른 이민억제와 단기 인력정책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은 사회·문화적 갈등에 봉착하자 외국인 정책 또는 통합방식에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2000년 혈통을 기본(ius sanguis)으로 하던 국적법이 출생지역을 기본(ius soli)으로 하는 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3) 신민으로서의 민족과 다문화주의

영국의 민족 개념은 크게 유형화된 위의 두 부류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영토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문화적 동질성 집단을 민족이라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현재까지 군주제를 유지하면서 중세적 신민적인 정치적 관계 틀 안에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개념을 보여준다. 비록 오랜 동안 단일국가를 이루었음에도 오히려 주변부의 결집력이 더 강력한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중앙집권화의 전통이 부족했다. 이러한 원인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할 만한 역사적 사건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체제를 뒤바꾸는 정치적 혼란이나 외부와의 전쟁을 거치지 않았기에 신민은 국왕에게 충성을 하고 국왕은 신민을 보호하는 중세적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는 또한 제국의 확장과 함께 외부세계의 식민지화에다 시선을 두었을 뿐 국가의 개념은 추상적인 영국 통치령의 영토세계였다. 다만 식민지하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을 다스리는 국왕이라는 상징만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 1914년 영국의 국적법은 당시 제국의 모든 사람을 영국의 신민으로 규정한다.

1981년 제정된 새로운 국적법에는 영국민은 영국령 영토 시민, 영국 해외 시민, 영국 시민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국 시민만이 자유롭게 영국 본토에 드나들고 생활할 수 있었다. 나머지 부류는 법적인 국민의 신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이 영국에서의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미와 또한 모호성은 제국주의 경험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 내부에서 들여다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각자 강력한 독자적인 관습과 문화를 보유한 채 국가라는 틀 안에서 경쟁하며 공존한다. 결

반차별법(antidiskriminierungsgesetz)을 계획하여 법안 제출된 것이라든지, 2004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민법 제정과 시행은 이민자를 독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통합의 노력 없이는 사회적 안정과 국가안보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에 있다.

국 영국에서의 민족의 개념은 국가의 틀 안에서 공존하는 다수의 종족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다(조홍식 2005: 135).

영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영연방정부를 구축하면서 이주에 대해 방임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영국이주에 대한 제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거 식민지 국가 국민들의 영국이주를 자유롭게 보장하거나 묵인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대규모의 이주민이 입국하게 되었고 영국사회는 이주민 국가이자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다문화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영연방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⁶⁹⁾이 있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주의 경험과 더불어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영연방국가 출신들은 과거 식민지시기 영국의 영향아래 있었다. 영국은 이들이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이라는 영국의 국민적 신뢰에서 거부감 없이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종평등위원회(the Commission of Racial Equality: CRE)⁷⁰⁾라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형성과 정책이 시행되었다. 노동당 내상이었던 로이 켄킨스(Roy Jenkins)의 이주민 통합에 관한 발언을 토대로 다문화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이루어진다. 켄킨스는 통합을 “획일적인 균등화과정 이 아닌 상호관용의 분위기 속에서 기회의 평등에 의해 배가되는 문화적 다양성의 균등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차별을 방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다인종, 다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주류사회와의 우호적 관계의 증진이라는 필연성에 대한 제안으로서 영국 이민자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⁷¹⁾ 또한 존 렉스(John Rex)는 “다문화사회에서 개인들은 동등한

69) 영국은 식민지 국가들의 자치를 허용하고 순차적인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신영연방의 테두리 안에 과거 식민지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의도했다. 따라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대신 신영연방국가들의 국민들이 영국으로 대규모 이주를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되었던 것이다(김용찬 2007: 145).

70) 지역차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단체인 인종평등위원회는 1976년 수립되어 “인종차별의 금지를 위해 활동하며 이주민공동체간의 좋은 관계와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며 인종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을 위한 제안을 정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1) John Rex, *Ethnic Minorities in the Modern Nation State*, London, Macmillan Press, 1966,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들을 가지는 한편 분리된 인종공동체의 관습에 기초한 종교와 가족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 권리들을 간직할 수 있다”⁷²⁾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가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사적영역에서의 다문화주의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제시함으로써 영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한다.

영국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프랑스의 동화정책의 기본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주민의 문화 정체성과 가치는 주류사회의 가치와 관습 및 전통까지도 수직적인 방식으로 일방 흡수되어 주류 공동체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사회통합과는 다른 인식론적 배경을 가진다.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과 ‘좋은 인종관계(good race relations)’의 증진을 통한 통합의 촉진이다. 영국은 이로써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포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영국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이상적인 다문화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⁷³⁾

(4) 정치 공동체로서의 민족과 다문화주의

미국 민족은 하나의 독립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 전형적인 계약적 민족이라 할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수의 종족들이 제각각 고유의 문화를 보유하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국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공동체 집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p.55-56. 재인용: 김용찬(2007: 148).

72) John Rex, *Race and Ethnic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6, p.119-121. 재인용 김용찬(2007: 148).

73) 1989년 루시디 사건(Rushdie Affairs)을 계기로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영국 국민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인식 즉 ‘귀속에 관한 공통인식(a common sense of belonging)’이 이주민에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된다. 다만 무슬림이민자들의 종교와 관습을 포기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영국 무슬림으로서 영국의 가치를 존중해야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가 유지됨을 강조하였다. 이민자들을 통합하여 영국 사회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영국의 가치 또는 ‘영국성(britishness)’을 심어주는 길 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영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다문화주의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주류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동화주의 입장의 정책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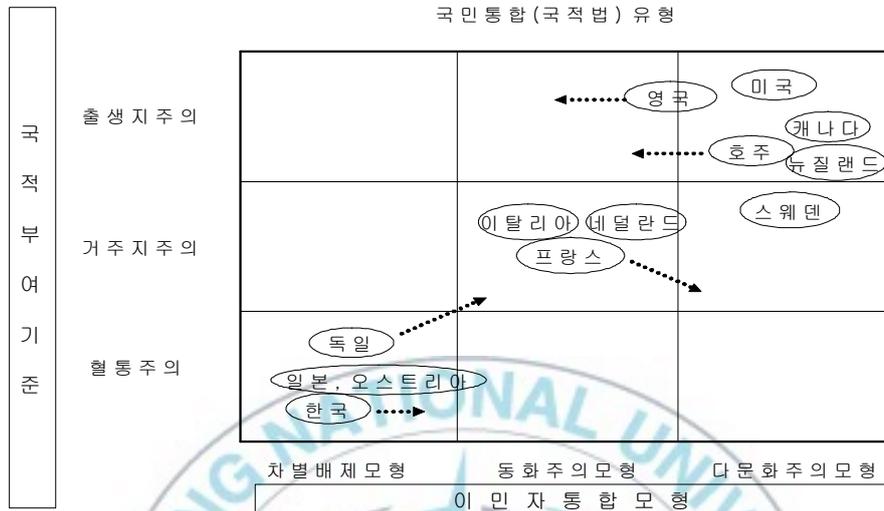
로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과 계기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국가나 민족의 개념을 성립하는데 있어 유럽과 마찬가지로 영토 경계나, 언어의 동질성, 역사와 문화의 공유 개념으로서의 민족을 논하기에 거리가 멀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미국 특유의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공존해야 될 공동체 사회’라는 기본 원칙에 중요한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개인이 자질을 요구되었다. 개인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로크나 루소의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과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고 보호받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행히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며 이끌었다. 미국 시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계약에 의한 ‘정치적 개념으로서 국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약하나마 특수한 성격의 민족적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즉 근대와 함께 등장한 민족이란 개념과 실체는 역동적인 역사의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인위적으로 형성되어져 왔다면, 미국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개개인인 시민은 미국이라는 국호와 성조기라는 상징아래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성립해 나갈 수 있다. 17, 18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민족주의가 애국주의(patriotism)라는 형태로 반영되었다면, 고정적이고 정적인 개념이 아닌 유동적인 산물이다. 그렇기에 미국 역시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을 거친 후에는 시민을 응집시키는 미국의 애국주의도 민족적 정체성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새로운 미국식 민족주의의 출현인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인종 또는 문화 공동체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각자의 문화 집단은 현재에는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국가라는 기치아래에는 공존하지만 언젠가지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늘날 미국의 소수집단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국가통합의 장애로 남는다.

다음 <그림 II-2>는 국적 부여 원칙에 따른 이민자 통합 유형의 모델이다.

<그림 II-1> 국적부여 및 이민자 통합의 국가별 유형과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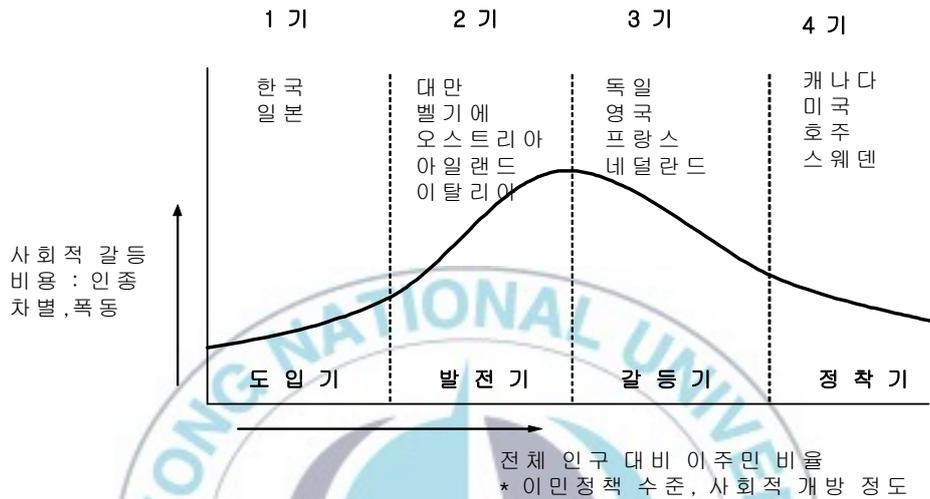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정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그림 안의 점선은 사회통합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영국이나 호주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민자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양산으로 인해 시민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동화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프랑스는 동화주의 이민 정책의 위기로 따라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비록 불법 체류자나 범죄와 연루된 이민자에게는 추방 등 단호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미 프랑스 사회에 깊숙이 존재하는 이민자 집단에게는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등의 정책으로 다문화적 지향점을 가진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의 유형과 이주자 문제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 과정을 전체 인구대비 이주민 비율과 사회적 갈등 비용의 관계를 정

리하면 다음 <그림 II-2>를 얻을 수 있다.

<그림 II-2> 다문화 진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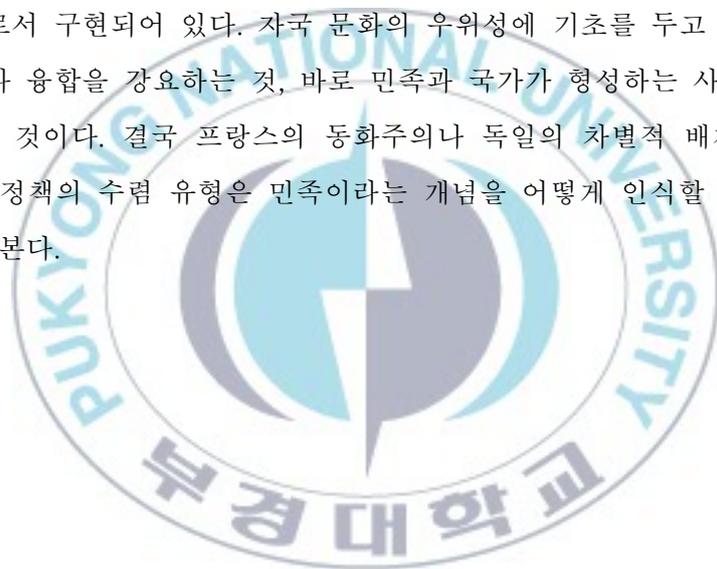
출처 : 최충욱 2009: 178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진행의 과정은 앞에서 나타낸 국적부여 및 이민자 통합의 국가별 유형과 방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한국과 같이 차별적 배제 모형의 사회통합정책과 국적법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 통합정책의 시행정도와 다문화의 개방적 성향은 오랜 이민국가로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갈등기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는 아직 이주민의 비율이 낮고 초보적인 이민정책 수준이어서 그에 대한 갈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국가정책이나 사회 인식에서 미처 정착되지 못한 도입기의 국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나라들은, 특히 차별적 배제의 유형을 갖고

있는 터라 발전기와 갈등기를 거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안정기나 정착기에 도달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한 논란과 논쟁, 국민들의 인식 수준 등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해 왔기에 독자적인 독일식의 통합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

위와 같이 프랑스나,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인식하는 민족의 개념은 모두 각각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사회적 의도에서 생성되었다. 따라서 국가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민족 개념의 형성은 각 국가가 시행하는 정치, 사회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식론의 바탕을 이룬다. 결국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민족과 국민, 국가라는 개념의 구체적이고도 정서적인 실현으로서 구현되어 있다. 자국 문화의 우위성에 기초를 두고 외국 이주자들의 동화와 융합을 강요하는 것, 바로 민족과 국가가 형성하는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결국 프랑스의 동화주의나 독일의 차별적 배제정책, 영국의 다문화 정책의 수렴 유형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따른 차이로 본다.



Ⅲ. 프랑스 이민정책과 동화주의 사회통합의 원리

이민자는 특정 국가에 유입되어 그 곳에서 장기적이거나 항구적인 삶을 지속하려 할 때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은 진입과 동화 그리고 통합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서 자기 역할의 찾아가는 적응을 통한 역할의 진입(insertion)은 사회 참여의 과정이다. 그 후에는 이민자가 갖는 문화적 정체성의 메커니즘을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과의 융합 또는 동화(assimilation)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영구 이주한 외국인 이민자가 겪어야 하는 과정은 국민으로서의 통합(intégration)이다. 이는 시민성과 정치 참여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민자는 이 과정에서 두 문화와 두 사회 공간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원활하게 적응과 동화를 거치면서 완전한 사회적 통합에 이르는 이민자도 있다. 또한 통합의 과정에서 혼란과 좌절을 겪는 이들도 있다. 대부분 인간 본성이 그렇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존엄을 지키면서 정착하고자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자의 노력은 수용국의 이민자 정책으로 인하여 쉽지 않다. 수용국가에 진입한 순간부터 이민자는 이민자라는 신분과 함께 수동적인 사회적 환경에 내몰린다. 더욱이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주민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국의 민족과 국민의 문화와 정체성에 동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민자로서는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민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의 조정은 국가의 역할에 있다. 그러나 국가 역시 이민자가 요구하는 권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오늘날 이민국가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민자 사회통합의 갈등의 전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수용국가의 이민자 현황과 이민자에 관련된 법안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번 Ⅲ

장에서는 무슬림 이민을 중심으로 이민의 역사적 흐름과 이민 주기, 그에 따른 국적법의 변천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의 이민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인구지형도로 전반적인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 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1. 프랑스의 이민자 현황

1) 이민자 관련 용어의 정의

이민에 관련된 용어는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의 정의에 따른다.⁷⁴⁾ ‘외국인(Etranger)’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으나 프랑스 국적이 없는 자이다. 모든 외국인이 모두 이민자는 아니다. 외국인 중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도 있고,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도 있다. ‘이민자(Immigré)’는 다른 국가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말한다. 또한 이민자가 반드시 외국인은 아니다. 이민자 중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도 있고, 외국인의 신분을 가진 자도 있다.

‘이민자 인구(Population immigrée)’는 국적과 출생지라는 이중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1991년 사회통합최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이민자 인구는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국적이 바뀌어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즉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인구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의한 프랑스인(Français par acquisition)’으로 분류되고 있다.

‘외국인 인구(Population étrangère)’는 단지 하나의 지표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국적의 문제이다.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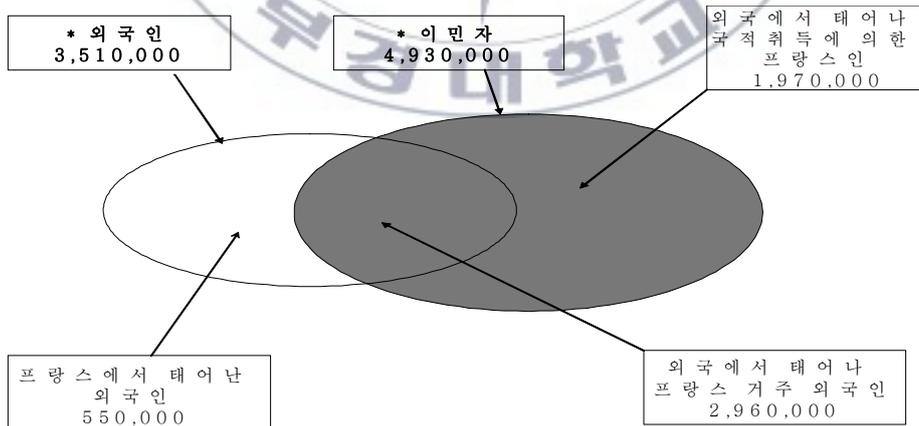
74) http://www.hci.gouv.fr/rubrique.php?id_rubrique=19

외국인을 외국인 인구에 포함하고 있다. 살고 있는 중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는 더 이상 외국인 인구로 간주되지 않고 국적 취득에 의한 프랑스인으로 분류된다.

‘이민자 가구(Ménage immigré)’는 배우자 중의 한 명은 이민자로 구성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주지를 말한다. ‘이민가정(Famille immigrée)’은 자녀가 있거나 없더라도 부부 중 적어도 한 쪽이 이주해 와서 가정을 이루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민을 말한다. 배우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주를 한 가정을 이민가정이라 한다.

‘이주자녀(Enfant immigré)’는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민자 자녀(Enfant d’immigrés)’는 그 자신이 이민을 왔거나 또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이민자 가정에 살고 있는 아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 중의 한 명은 이민을 온 가정에서 사는 자녀이다. 즉 부모 중의 한명이 프랑스로 이주해 와서 출산한 자녀이거나, 이주 당시 동반한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I-1> 외국인과 이민자 수의 현황



출처 : Insee, Enquête annuelles de recensement 2004 et 2005

외국인의 유입과 이민자 그리고 자녀의 출생으로 외국인과 이민자의 현황은 해마다 바뀌고 있다. 국제이주사무국(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과 내무부의 자료에 근거하여 국립인구조사국(INED, Institut national des études démographiques)이 이민자의 인구를 발표하고 있다. 2004-2005년도 의 이민자 수의 현황인 <표 III-1>에 따르면 외국인은 약 350만 명에 이르고, 이민자는 약 490만 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과 이민자 그룹에 공통으로 들어간 인구를 제한다면 프랑스 내 외국인과 이민자는 약 540만 명으로 예상된다.

2) 무슬림 이민자 유입 개관

20세기 동안 프랑스 영토에 들어 온 이민자의 출신 대륙은 다양하며 갈수록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거의 유럽인의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바로 이웃한 이탈리아, 벨기에의 이주민이다. 1910년경부터 식민국이며 프랑스의 보호국인 마그레브에서의 이주가 시작되나 소수에 그치고 있다. 1920년대에는 여전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유럽국가 위주의 유입이 강하게 지속되고, 동유럽에서의 이주가 시작된다. 이 시기 폴란드인의 이주가 가장 높은 비율로 성장한다.

2차 대전 후 유럽인의 유입도 용이하였으나, 알제리로부터 오는 이민자의 수는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세를 갖는다. 1962년도까지는 여전히 이민자의 수에서 이탈리아인이 수위를 차지하는데 이민자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스페인, 알제리, 폴란드인 순의 이민자 비율이 나타난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포르투갈과 모로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서 1999년까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출신의 이민자 수의 비율은 78.7%에서 44.9%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이탈리아인의 감소에 있는데, 60년대 세 명중 한명(1/3)이었던 이들의 비율이 1999년도에는 겨우 열 명중 한 명꼴로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다

음의 <표 III-2>는 이민자 출신국가에 따른 이민자의 유입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I-2> 출신국가에 따른 연도별 이민자 분포

(단위: %, 천명)

출신국	1962 (%)	1968 (%)	1975 (%)	1982 (%)	1990 (%)	1999	
						%	(천명)
유럽	78,7	76,4	67,1	57,3	50,4	45,0	1,934
-스페인	18,0	21,0	15,2	11,7	9,5	7,4	316
-이탈리아	31,7	23,8	17,2	14,1	11,6	8,8	378
-포르투갈	2,0	8,8	16,8	15,8	14,4	13,3	571
-폴란드	9,5	6,7	4,8	3,9	3,4	2,3	98
-기타유럽	17,5	16,1	13,1	11,8	11,5	13,2	568
아프리카	14,9	19,9	28,0	33,2	35,9	39,3	1,691
-알제리	11,6	11,7	14,3	14,8	13,3	13,4	574
-모로코	1,1	3,3	6,6	9,1	11,0	12,1	522
-튀니지	1,5	3,5	4,7	5,0	5,0	4,7	201
-기타 아프리카	0,7	1,4	2,4	4,3	6,6	9,1	393
아시아	2,4	2,5	3,6	7,9	11,4	12,7	549
-터키	1,4	1,3	1,9	3,0	4,0	4,0	174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0,4	0,6	0,7	3,0	3,7	3,7	159
-기타 아시아	0,6	0,6	1,0	1,9	3,7	5,0	216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3,2	1,1	1,3	1,6	2,3	3,0	130
국적불명	0,8	0,1	///	///	///	///	///
비율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이민자총수 (천명)	2,861	3,281	3,887	4,037	4,165	4,306	4,306

출처 : Insee, Recensements de la population, 1962-1999.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포르투갈인의 이주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면서 1982년 이후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의 수를 가진 출신국가가 되었다. 이후 1999년도에는 알제리 출신의 이민자 수와 동등하게 된다. 모로코

에서 이주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80년대까지 전체 이민자 수의 12.1%까지 차지하게 되는 강한 증가세에 있었다. 사하라 이남에서의 인구 유입은 80년대 9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아시아인 역시 1999년도에 12.8%의 이민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⁷⁵⁾

아래 <표 III-3>에서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유입된 영구적 이민자의 이민 동기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동기는 다양하다. 2003년도의 OMI(이민국)와 내무부의 자료를 통하여 프랑스로 유입된 이민자의 이민동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설문조사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유입된 인구를 제외한 그 밖의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유입된 135,400명을 조사로 한 것이다.

<표 III-3> 2003년도 한 해 동안 유입된 영구적 이민자의 이민 동기

국적	영구 노동자	가족 재결합	프랑스 가족	개인, 가족 사생활	정치적 망명	방문자	기타	총합계
유럽 (유럽경제공동체 제외)	1,144	1,032	624	4,499	3,097	906	485	11,787
아프리카	2,097	19,014	13,122	43,938	4,314	3,259	4,318	90,062
- 알제리	397	5,367	4,105	15,884	226	1,441	1,134	28,554
- 모로코	707	7,775	2,366	10,789	0	448	254	22,339
- 튀니지	194	3,068	3,610	2,265	16	163	109	9,425
- 기타 아프리카	799	2,804	3,041	15,000	4,072	1,207	2,507	26,923
아시아	2,013	4,772	1,517	8,779	1,960	1,949	1,202	22,192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1,244	1,948	961	4,927	366	1,496	316	11,258
기타	2	2	4	28	53	6	1	96

75) Boeldieu J. et Borrel C.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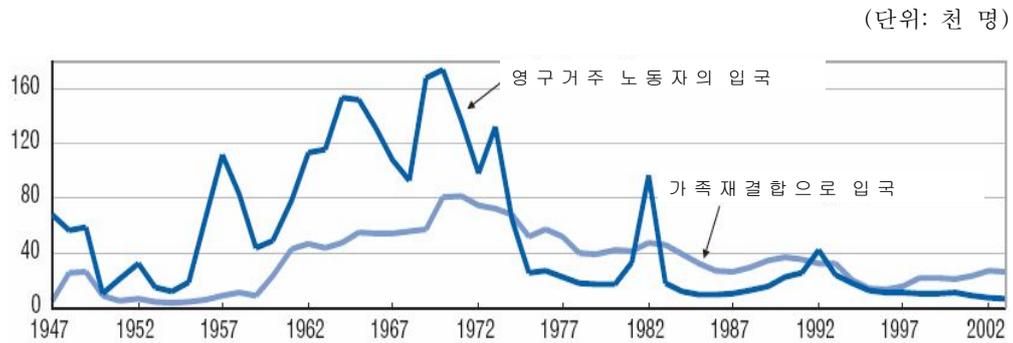
국적	영구 노동자	가족 재결합	프랑스 가족	개인, 가족 사생활	정치적 망명	방문자	기타	총합계
합계	6,500	26,768	16,228	62,171	9,790	7,616	6,322	135,395
2002년도	7,469	27,267	21,020	43,681	8,495	9,985	5,560	123,477
2001년도	8,811	23,081	18,765	34,682	7,323	8,968	5,026	106,656
2000년도	5,990	21,404	15,992	31,140	5,185	8,424	3,596	97,083

출처 : OMI, OFPRA et Ministère de l'intérieur, <http://www.insee.fr/>

우선적으로 2003년도의 이민자 인구는 2002년도에 비해 10%가 증가하였다. 2003년도에 프랑스에 장기 거주로 유입된 출신 대륙은 특히 알제리, 모로코를 포함한 아프리카로서 전체의 67%에 이른다. 이민의 가장 큰 동기는 가족에 관계된 이유로서 입국자의 79%에 해당한다. 가족의 합류 이유로 프랑스로 입국한 원인을 보면 유럽경제공동체 외의 국가는 단지 가족 재결합정책(regroupement familial)에 의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1998년도에 '개인·가족 사생활(vie privée et familiale)'이란 체류목적의 허가증이 신설됨으로써 2000년도와 2003년도 사이 증가세를 보이고, 거의 두 배가 되는 이민자 수가 이 타이틀로 입국하게 된다.

지난 세기 대부분의 유입인구가 노동자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에 비하여, 오늘날 유입되는 노동자의 체류허가로 유입되는 이민자 인구는 단지 5%에 불과하다. 일반 노동자 이민의 유입이 서서히 감소하는 원인은 이젠 대부분 엔지니어나 컴퓨터 등 정보산업 관련 분야의 고급 기술력을 가진 외국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표 III-4> 1947년 이후 노동자 체류증과 가족 재결합에 의해 입국한 연도별 추이



출처 :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위의 <표 III-4>는 유럽 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이민자의 입국 추이이다. 1947년 이후 노동 이민자의 유입과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유입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1977년 이후로 가족 재결합으로 입국한 노동이민자 가족의 프랑스 입국이 감소되었다. 그 이유는 1975년 유럽 경제공동체에 속하는 유럽 노동 이민자의 경우 가족 재결합의 형태로 프랑스로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반면, 알제리인들에게는 지속해서 이 정책이 유지되면서 통제된 상태로 유입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 독신 남성이던지, 결혼을 하지 않은 노동 이민자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뒤 가족재결합정책의 허용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입국하는 가족의 수와 형태는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2003년도 한 해의 수치이다.

<표 III-5> 2003년도 한 해 동안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유입된 이민자 수와 출신 국적

(단위: 명)

국적	세대수	입국 가족 수	가족 재결합의 형태				유입된 가족 평균 수
			배우자 혼자	배우자와 1자녀	배우자와 2자녀 이상	자녀 혼자	
알제리	3,636	5,367	2,016	388	326	906	1,5
모로코	4,423	7,775	2,738	424	906	355	1,8
튀니지	1,498	3,068	736	189	377	196	2,1
터키	1,692	2,768	1,132	137	285	138	1,6
기타국적	4,621	7,790	1,585	566	709	1,761	1,7
합계	15,870	26,768	8,207	1,704	2,603	3,356	1,7

출처 :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이민은 통상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즉 국제인구이동의 한 형태이다. 유엔통계처(United Statistical Division)에 의하면 1년 이상 일상적인 거주를 본거지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장기이민자(long term migrant)로 규정한다. 단기이민자(short term migrant)는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이라 하는 것은 전자, 즉 1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이다. 외국인이란 흔히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 즉 이주민과 혼동될 수 있는데, 사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 체류자를 지칭한다. 이민자는 현지 적응의 유형이나 기간에 따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귀화해서 내국인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르누치·황명진 2008: 159).

2004-2005년도 국립통계청(l'insee)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2004년 중반을 기준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수를 약 50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8.1%에 이른다. 1999년의 조사에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은 이민자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2005년도 통계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의 수가 유럽인의 수를 앞지른다. 이들의 원국적의 출신에 따라 가장 많은 인구수를 나타낸 이민자는 알제리, 모로코, 포르투갈의 순이다.

그리고 프랑스 영토 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세 지역은 일드프랑스(Ile-de-France)의 약 40%, 론-알프(Rhône-Alpes)의 11% 그리고 프로방스-알프-코뜨 다쥐르(Provence-Alpes-Côtes d'Azur)의 9%로서, 이 세지역이 프랑스 전체 이민자의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파리 주변 지역인 일드프랑스는 6명 중 1명이 이민자로 분포된 이민자의 밀집지역이다.⁷⁶⁾

<표 III-6> 1998년과 2003년도 출신 대륙별 1년 동안의 유입 인구

(단위: 명)

	1998	2003
총 유입인구 수	155,879	215,397
유럽연합국가	43,033	42,085
기타 유럽국가	16,289	25,712
아프리카	64,884	105,658
아시아	19,668	30,346
아메리카	11,255	14,958

출처 : INED, www.ined.fr

<표 III-6>에서 나타나듯이 유럽 국가들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는 5년 전과 비교해도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EU 국가에서의 유입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는 상당히 증가한 추세에 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유입된 이들의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76) insee première, n.1098, août, 2006.

<표 III-7> 연도별 이민자 추이와 현황

(단위: 천명, %)

인구조사 연도	총인구 (천 명)	인구 구성비		
		태생부터 프랑스인 (%)	국적 취득에 의한 프랑스 인(%)	외국인 (%)
1921	38,798	95,4	0,7	3,9
1926	40,228	93,4	0,6	6,0
1931	41,228	92,5	0,9	6,6
1936	41,183	93,4	1,3	5,3
1946	39,848	93,5	2,1	4,4
1954	42,781	93,4	2,5	4,1
1962	46,459	92,6	2,8	4,7
1968	49,655	92,1	2,7	5,3
1975	52,599	90,8	2,6	6,5
1982	54,296	90,5	2,6	6,8
1990	56,652	90,5	3,1	6,3
1999	58,521	90,4	4,0	5,6
2005	60,825	90,0	4,3	5,7
2006	61,400	89,9	4,3	5,8

출처 : <http://www.insee.fr/>

2. 프랑스의 이주 역사

현재의 프랑스인 가운데 적어도 20%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외국에서 태어났다. 조부모까지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23% 또는 30%까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⁷⁷⁾ 이같이 높은 비율의 외국인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민의

77) Jean-Claude Ruano et Borbalan, "Les mécanismes de l'intégration, Entretien avec Pierre Milza", *L'Histoire aujourd'hui*, Editions Sciences Humaines, 1999, p.119-123.

Insee의 조사 결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도 프랑스에 거주하는 0세에서 65세까지의 프랑스 인구 중에서 약 235만 명이 이민자 부모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는 66세 미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들 후속자녀들은 또한 결혼하여 약 1백만 명의 17세 미만의 자녀와, 1백30만 명에 이르는 17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대개 후속 자녀들의 절반에 해당하는(44%) 인구는 17세 미만의 젊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또한 17세 미

나라 프랑스에서 이민에 대한 담론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서 오늘날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이다. 이민문제는 오늘날 각 국가들의 핵심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처럼 크게 불거진 이민문제가 프랑스의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민자 문제는 통상 이민자들의 사회 부적응 상태에 따른 결과물이자, 대규모 이민 인구수에 따른 프랑스인의 우려가 겹쳐진 현상이다. 특히 무슬림 이민자의 집단적인 문화 표출과 동화에 저항하는 근래의 모습을 ‘하나의 프랑스’라는 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을 투영시킨다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강화된 모습을 가져왔다. 오늘날 이민제한 조치들이나 선별적 이민허용 등의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거나 불법 체류자들이나, 범법자들의 강제 추방, 국적 취득의 강화 등의 법적 조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이민자, 특히 무슬림 이민자의 집단적 저항은 과연 이들의 책임인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민자의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국가 주도의 이민정책이나 정당이나 언론 중심의 이민의 정치화 등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 프랑스와 프랑스 사회가 과연 이들의 융합이나 동화를 방해하지 않았나하는 공정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선 프랑스 이민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본 다음 이민자의 현실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프랑스 이민의 함의

프랑스의 외국인 유입은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이주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보다 더 멀리에서 이주 기원을 찾고자 한다면 프랑스 민족의 성립과정에서부터 보아야 한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듯 프랑스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인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베르덩

만의 총 이민자 후속세대 중의 절반은 마그레브 국가에서 이민 온 자녀들로 이루어졌다.(*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p.62. www.insee.fr)

조약(843)과 메르센 조약(870) 이전의 유럽은 거의 동일한 역사를 가진다.⁷⁸⁾ 프랑크 왕국의 분리는 근대 국가의 시초가 되는 영토와 국경개념이 태동하였다. 비록 오늘날의 유럽 각 국가들마다 그들의 조상이라는 원 민족을 규정하고 그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럽 역사에서 국가별 고유의 민족 개념을 찾는 것은 그다지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역사는 유럽의 형성 과정과 각 국가의 태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과 인간 이동의 역사였다. 로마인과 게르만인, 노르만인, 슬라브인으로 인한 민족의 대 이동은 유럽 인종 지도를 새롭게 만드는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다. 국가가 건설되고 국경이 이루어진 근대까지도 국가의 국민, 국가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무지하였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았다. 국경을 사이에 둔 주민들은 언제든지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이웃나라에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은 기원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유입과 유출의 땅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민족, 특히 유럽 개개의 국가들의 민족을 하나의 인종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민족은 골족(Gaulois, 갈리아인)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프랑스의 옛 영토인 골(Gaule)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프랑스인의 조상이라고 말할 뿐이다.⁷⁹⁾ 현재 프랑스인의 원민족을 크게 분류했을 때 골족,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예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은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복합민족국가였음을

78) 843년, 베르됭 조약으로 카를 대제의 손자인 루트비히 경건왕의 세 아들이 카롤링거 제국을 세 왕국을 동 프랑크 왕국, 중 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할하였다. 이 조약으로 카를 대제가 세운 프랑크 제국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서유럽의 세 근대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모태가 탄생하였다. 870년, 루트비히 2세와 카를 2세는 메르센 조약을 체결하여 프랑크 왕국은 사실상 분리된다.

79) 이브 르갱(Lequin. Y.)은 그의 연구(*La Mosaïque France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immigration*, Larousse, 1988)에서 프랑스인의 일부로서 프랑스 사회 발전에 참여한 외국인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19~20세기 국민 형성 과정에서 인구적인 기여를 토대로 이민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현대 프랑스를 '골(Gaule)인들만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덧붙여진 형성물임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로의 이주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의 민족의 이동과 19세기 중반 이후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이 근대에 이르러 국민국가를 형성될 때 국민 또는 민족의 개념에서 ‘계약에 기초한’이라든지 ‘일반의지’, ‘공공이익’ 그리고 ‘시민성’이 부각되는 이유이다.

2) 근대 이후의 이민 역사와 주기

이처럼 프랑스의 영토는 닫힌 적이 없는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⁸⁰⁾ 프랑스(France)라는 명칭이 생겨난 이래⁸¹⁾ 국왕의 신민으로서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근대까지의 외부 인구의 유입을 볼 때 프랑스는 이민자의 인구 구성비와 그 역사에서 파악될 때 다민족, 다인종 나라이다. 프랑스는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국가였다. 또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안정적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 신대륙의 중남미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등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인구 유출의 나라였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상대적으로 이웃 국가와 비교하여 겪게 되는 인구 증가의 둔화는 프랑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외국인 인구의 수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14년 프랑스의 인구는 실제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일례로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인구수를 가졌던 독일은 6천 5백 명의 인구수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⁸²⁾ 이웃 국가들의 인구

80) 오늘날 ‘국경’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고 완전하게 성립된 것은 ‘국가’가 성립된 근대의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국왕이 통치하고 권력이 미치는 영토라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상정한다.

81) 프랑스(France)라는 명칭은 약 1190년도 이후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필립 오귀스트(Philippe Auguste)왕의 재상이 국왕을 지칭하기 위하여 프랑크 왕(rex Francorum)이라는 용어 대신에 프랑스 왕(rex Franciæ)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서사시 ‘롤랑의 노래(Chanson de Roland, 11세기 말~12세기 초 추정)’에서 나오듯이 이보다 1세기 전부터 프랑스 왕이라는 용어는 국왕을 지칭하기 위해서 왕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http://fr.wikipedia.org/wiki/Histoire_de_France)

82) 1795년도에의 프랑스 인구는 러시아보다 많은 유럽 제1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으나, 1795~1866년도의 기간에는 러시아 다음의 인구수로 2위, 1866년~1911년도에는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인구수를 가진다. 그러나 차츰 프랑스의 인구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증가폭이 적어서 1911년과 1931년 사이에 프랑스의 인구는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의 4번째에 해당하고 있다. (http://www.fr.wikipedia.org/wiki/Population_fran%C3%A7aise)

증가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의 여파로 보인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그 효과로 자녀수의 증가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자 이민 인구의 유입 등을 통하여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였다(한명숙 2008: 151).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이었다. 독일의 경우처럼 빠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 원인으로 누아리엘(Noiriel)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상대적으로 느리고 더딘 산업화, 혁명기 정치사상과 세속화의 확산, 이와 병행된 변화된 삶의 형태(피임, 결혼의 지체, 독신) 등의 요인들을 거론하고 있다.⁸³⁾ 더불어 20세기 전반 두 차례 세계대전의 결과와 사망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구의 감소와 전쟁에 대한 혐오로 자발적인 산아제한 등의 간접적인 원인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1870년도에 도달했던 4천명의 인구가 1940년대에도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는다. 결국 프랑스는 인구의 증가 목적과 국내 노동시장의 노동력 결핍에 따른 경제적 국면의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전후의 국가 재건이나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이라 불리는 경제적 번영기에 필요했던 노동 인구를 외부로부터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프랑스로의 노동인구 이민 유입의 효과는 결코 전적으로 인구증가라는 직접적인 기능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⁸⁴⁾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라는 사회적 측면도 있지만, 군사적 역량을 높이는 데도 유인책들을 마련하면서 이민을 조직해 왔던 것이다.⁸⁵⁾ 그리하여 프랑스는 ‘근대적’ 이민 모델, 즉 국민들이 포기하거나 버린 직업과 필요한 산업분야에 종사할 임금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보충한 나라라고 평가된다.

프랑스 이민의 역사는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크게 네 단계의 이민주기

83) Noiriel, G., *Popula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en France XIX-X siècle*, paris, Hachette, 1992. pp.55-57. 한명숙(2008: 151)에서 재인용.

84) 그러나 19세기 이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인구 면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외국인의 유입의 효과로 프랑스 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중요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구수는 프랑스라는 강대국의 조건에 필수적인 것이다.

85)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시기는 군사적 긴박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이거나, 전쟁이 끝난 직후 경제 재건을 위한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 혹은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면서 토박이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에 충원할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로 나뉘어 설명된다.⁸⁶⁾ 개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이민을 원하는 소규모의 이동을 이민현상의 주기로 설명하기 보다는, 국제적 혹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사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유출국과 유입국 나라 간의 대규모 집단의 이동이 발생한 일정기간들의 흐름을 이에 따라 이민주기로 설명된다.

이민주기는 총 4주기로 나누어 분류한다. 제 1기는 19세기 후반의 제2제정기에서 20세기 초반으로 규정하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1년~31년대 까지를 제 2기로 나눈다. 제 3기는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된 2차 대전 후인 1945년에서 1972년까지를 제 3기로 분류하였다. 이민증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사회적 이민의 증가가 돋보이던 1974년 이후의 시기를 제 4기의 이민기로 분류하여 설명된다.

(1) 제 1기 : 19세기~20세기 초 - 초기 이민기

19세기의 프랑스는 중반부터 인구의 증가가 급감하여 이웃 독일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 증가의 폭이 둔화되자 국경을 접한 나라들로부터 이민자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851년 약 40만 명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1890년 전후에는 약 100만 명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로서는 제 2제정기((1852-70)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근대 이

86) 프랑스 대규모 이민주기는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 단계의 주기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진희(이기라·양창렬 외 2007: 212)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1920~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중반까지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은재호(프랑스 소묘사태와 프랑스 이민 실태분석) 역시 제1기(1920년~1930년), 제2기(1956년~1973년), 제3기(1973년 이후)로 나누고 있다, 한명숙(2008: 152) 역시 세 단계로 나누어 이민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1~1930년 사이 그리고 1956년~72년으로 나누고 있다. 강진희나 한명숙은 70년대 중반을 끝으로 이민 주기를 설정하고 있지만 은재호는 1973년 이후의 시기를 분류하고 있다. 제라르 누아리엘(Gérard Noiriel) 역시 그의 글(“Petite histoire de l'intégration à la française”)에서 이민의 대규모 유입을 제 2제정기(le Second Empire), 1920년대(les années 1920) 그리고 2차 대전 후(l'après-seconde guerre mondiale)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 갈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이 기간(1973~현재)으로 보고 그 중요도에 있어 이들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총 네 주기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인 1914년도까지 프랑스 인구가 약 4,200만 명으로 유럽 인구의 20%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폭은 이웃나라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이 시기에 경쟁국인 독일은 6,500만 명의 인가로 러시아를 제외하곤 유럽 최대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민의 형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축소될 수 있다. 하나는 19세기 중반 경 프랑스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적 접근이 유리했던 이웃나라 주민들의 단순한 소규모 단위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이주였다.⁸⁷⁾ 다른 하나의 이주 유형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노동이민의 유입이다. 오늘날처럼 국경이라는 확실한 영토적 경계가 세워지고 국가의 영토가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이 시기의 경계는 불확실한 시기였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벨기에 등 프랑스와 인접한 이웃나라의 주민들은 필요한 인력을 요하는 곳이면 가까운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국경을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이민은 이민자가 한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타국으로 이주하는 노동이민이라고 정의되기는 어렵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서 고향보다 더 비옥하고 일이 많은 땅을 찾아서 이주하는 형태의 단순한 목적의 이동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착지는 프랑스의 중심부로 향하는 이동이기보다는 고향 가까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단순한 형태의 이주이다. 이 시기의 이주는 비록 소규모나 개인적 이사 수준의 이동이었으나 국경지대 지역의 이주민은 그 당시 지역 주민의 7.5%에 이르는 수치까지 다다르게 된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213).

87) 대규모의 첫 이주는 이웃나라에서의 유입이 특징적인데, 벨기에인들은 아르덴 지방(Ardennes)이나 북쪽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월경하여 1901년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이주민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탈리아인들은 남동쪽 국경을 넘으면서 벨기에인의 수를 넘어 1968년 까지 프랑스에서 최대 이민자 집단을 이루었다. 독일인이나 오스트리아인 또한 동쪽 국경을 넘어오면서 프랑스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미 파리나 리옹, 마르세이유 같은 대도시는 외국 이주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였다. 1851년도의 인구조사를 보면 이 시기에 약 4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된다. 벨기에인 128,103명, 이탈리아인 63,307명 독일과 오스트리아인이 57,000명, 스페인 30,000명으로 나타난다.(Withol de Wenden, Catherine, *Citoyenneté, nationalité et immigration*, Paris, éd. Arcantère, 1987.)

농업 중심적이었던 프랑스 경제활동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⁸⁸⁾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과 농업 중심의 경제는 외국 상품의 대량유입과 대량생산, 금속, 기계 분야 등 새로운 산업 형태의 등장과 발달로 급격한 하락세를 가져왔다. 사회 경제구조는 농업구조에서 공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에도 불구하고 산업 중심 근로 종사자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다른 나라들이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오면서 경제적인 발전이 가시적으로 향상된 반면,⁸⁹⁾ 이때의 프랑스는 인구수의 제자리걸음으로 늘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의 여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자발적인 출산과 노동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구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유독 프랑스가 이 시기에 있어 인구수의 증가를 갖지 못한 요인으로 누아리엘(Noiriel, G)은 상대적으로 농업 부국이었던 프랑스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⁹⁰⁾

그러나 노동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민자가 차츰 증가함에 따라 1890년 전후 약 100만 명이 되던 이민자수가 1911년도의 인구 조사에서는 116만 명으로 비교적 느리게 증가한다. 제1차 대전 직후인 1921년도에는 153만 명에 이르는 비교적 가파른 증가를 보인다. 지역적 근접성에 따른 이민의 유형이기에 이탈리아, 벨기에를 중심으로 대다수 이주민들은 유럽인들로 한정된 시기였다.⁹¹⁾ 다음 <표 III-8>에서 나타나

88) 1880년대 까지 경제활동 인구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만큼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89) 1914년 프랑스의 인구는 실제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일례로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인구수를 가졌던 독일은 6천 5백 명의 인구수로 급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의 여파로 볼 수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 그 효과로 자녀수의 증가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자 이민인구의 유입 등을 통하여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 Noiriel, G., *Popula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en France XIX-X siècle*, paris, Hachette, 1992. pp.55-57. 한명숙(2008: 151)에서 재인용.

91) Marie-Claude Blanc-Chaléard, *Les immigrés et la France XIX XXe siècl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3, p.3.

듯이 1921년도 이민자는 93.70%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유럽인이 차지하고 있다.

<표 III-8> 제 1기 외국인 수⁹²⁾

(단위: 천명)

년도	총거주민	국적취득의 국인	외국인 주민					
			총 외국인	%	유럽국적	%	북아프리카 (알, 모, 튀)	
1851	36,472	x	400	x	x	x	x	x
1891	39,946	x	1,000	x	x	x	x	x
1911	41,420	x	1,160	x	x	x	30	x
1921	38,798	미확인 ⁹³⁾	1,532	3.9	1,436	93.7	36	2.3

92) 4차례 이민 주기에 따른 이민자 수의 통계는 Insee, ined, wikipedia français, Jacques Dupaquier의 책 *Histoire de la population française* 등 여러 자료들에서 찾아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사용된 통계는 타 연구 논문의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51년부터 1911년까지의 수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의 인구조사의 담당기관은 제2제정 때 설립된 중앙통계기구였다. 이후 명칭은 '프랑스 일반통계국(Statistique Générale de la France, SGF)'로 바뀌어 1946년 '국립통계 및 경제 연구원(INSEE)'이 설립될 때까지 인구 조사통계를 맡아왔다. Insee는 인구조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관한 통계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1989년 창설된 '사회통합최고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HCI)'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민통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2004년에 HCI내에 설치된 '이민통계조사국(Observatoire Statistique de l'immigration, OSI)'은 각 행정부처에 산재된 자료를 종합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통계를 모으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인구연구원(Institut National des Etudes Démographiques, INED)' 역시 국가수준과 국제수준에서의 인구현상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통계의 간행과 배포를 맡고 있는 기관이다.

93) 국적취득에 관한 설문은 이 당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인구조사 때 국적에 대한 질문항목이 있었던 해는 1851년(종교도 포함)을 시초로, 1872, 1876년도 뿐 이었고 그 이후 1886년 이후로 국적을 기입하는 항목이 항구적으로 삽입된다. (http://fr.wikipedia.org/wiki/Recensement_d_e_population_en_France참조).

그러나 인구조사 때 국적 항목을 묻는 것이 있었지만, 분류상 불확실성과 오류 등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식민지 원주민들은 대다수가 프랑스의 주권범위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비록 프랑스 국적은 가졌지만 프랑스 시민권을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원국민과는 차별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외국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Alexis Spire et Dominique Merlié, "La question des origines dans les statistiques en France. Les enjeux d'une controverse", *Le mouvement social*, n.188, juillet-septembre 1999. 르누치·황명진(161)에서 재인용.

(2) 제 2기 : 1921년~31년 - 1차 대전 후

제 2기의 이민 시기는 1920년대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이민은 이웃국가에서 유입되는 흐름은 지속되지만 주로 동유럽 출신의 이주노동자, 특히 폴란드인의 모집 이주가 특징적인 시기이다. 또한 1921년 이후부터 포르투갈 이민자들의 유입이 서서히 눈에 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는 전쟁의 휴우 증으로 약 14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들을 내게 되었다. 이 시기 인구학적 불균형과 심각한 노동력 공백과 부족 현상은 프랑스에 닥친 커다란 시련이었다. 전후의 국토 재건은 시급했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의 이민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유럽 국가들인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와 폴란드⁹⁴⁾, 북아프리카 등에서 협약을 통하여 이민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외국인 유입이 개인적인 이주의 성격을 넘어 국가가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뀌어 간다. 프랑스 정부는 이주자에게 노동증⁹⁵⁾을 발급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원칙을 채택한다.⁹⁶⁾ 그러나 이민자의 모집은 주로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1924년도에는 ‘이민총협회(Société générale d’immigration)’라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설기관도 발족한다. 자연히 이 시기의 프랑스는 이민 수요량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기록하였고, 인구대비 이민노동자 비율로도 세계 제2위를 기록하는 이민 대국이 된다.⁹⁷⁾

94) 정부는 폴란드와 노동자 협정을 맺고 대규모의 폴란드인(1931년도 약 50만 명)을 유입하는데 모집된 이들은 주로 농업이나 광산의 일을 도맡아 한다. 주로 프랑스 북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탈리아인들은 남부 쪽에서 이민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 시기의 이탈리아 이민자 수는 전체 이민자수의 1/3을 차지하는데 1931년도의 통계를 보면 270만 명의 총 외국인 이민자수에서 10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95) 노동허가증은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1889년 국적법 (la loi de 1889)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신분증에 ‘노동자(travailleur)’라 명시되었고, 1926년 8월 11일자로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이 태동하여 이후로 노동허가증(carte de travailleur)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96) 1917년 4월 2일 법령(le décret du 2 avril 1917)으로 처음으로 국가가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민자들의 모집에 관여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증(carte de séjour)을 발급한다.

97) 20세기 초까지도 이민인구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대표적인 이민국이었던 미국만 하더라도, 1900~1910년 사이에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인 이후 유입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1927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1년에 약 10만 명 정도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비교적 쉬운 귀화 조건을 내세우는데 프랑스에서 3년을 거주하면 '1927년 8월 10일 국적법(la loi du 10 août 1927)'의 6조 1항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프랑스 국적법 역사 중에서 가장 완화된 취득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구학적 관점에서 프랑스인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외국 남성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들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전 나폴레옹의 민법전에 따르면 외국 남성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은 자신의 국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20년대에는 이러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여성들이 약 20만 명이 되었다. 한편으로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전체적인 인구 증가를 고무하기 위해 프랑스인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선서에 의해 프랑스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⁹⁸⁾

그러나 1931년 세계공황으로 인한 프랑스 경제의 침체는 외국인 이민자를 실업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법이 상정되고 노동허가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는 추방 대상자가 되었다. 정치적이자 사회적인 이슈⁹⁹⁾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게다가 뒤이은 2차 세계 대전은 외국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을 맞는다. 그리고 1962년부터 북아프리카인들에 의해 다시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까지 170만 명 수준으로 축소되는 시기를 갖게 된다.

이미 국가별 이민자의 수를 조정하는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주민들에게 프랑스는 매력적인 이민국으로 여겨진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215).

98) '1927년 8월 10일 국적법'의 제8조

99) 대규모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경제 호황기 때에는 환대를 받지만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적대적인 담론들이 형성되는 틀을 갖는다. 이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이를 이용하는 극우세력이 나타나면서 이민은 본격적인 정치화의 제물이 되기 시작한다. 실업의 주범인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의 파탄을 야기하는 문젯거리이며 또한 사회적 일탈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반 이민자 성향의 국민적 담론을 형성한다.

<표 III-9> 제 2기 외국인 수

(단위: 천명)

년도	총 거주민	국적취득 외국인 (%)	외국인 주민					
			총 외국인	%	유럽국적	%	북아프리카 (알, 모, 튀)	
1821	38,798	미확인	1,532	3.9	1,436	93.7	36	2.3
1826	40,228	0.6%	2,410	6.0				
1931	41,228	361(0.9%)	2,715	6.6	2,458	90.5	83	3.1
1936	41,183	1.3%	2,450	5.3				

전체적으로 경제적 침체와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 시기 노동 이민자의 유입은 프랑스에 인구증가와 인구 노령화에 제동을 걸었으며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대부분의 이민자 인구는 유럽계들이어서 프랑스의 적극적인 동화정책에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이민자와 프랑스간의 문화적 차이나 적대감은 크게 볼 수 없었던 시기였다.

(3) 제 3기 : 1945~1972 - 2차 대전 후 영광의 30년

1930년대의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잠시 주춤한 이민율은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스페인 내전으로 인한 스페인 망명객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스페인 내전이 끝나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본국으로 귀환함에 따라 다시 감소하였다.¹⁰⁰⁾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에는 167만 명으로 외국인 수가 급감하였다. 인구의 유입이 줄어들었고 전쟁으로 인한 귀국이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시정부가 수립되는 시기에 대규모의 이민자가 귀화

100)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국가들의 정부는 외국으로 나간 자국민의 귀환을 촉구하였고, 또한 이탈리아인의 노동력 감소는 북이탈리아가 경제발전과 독일의 높은 임금 제공에 따른 귀환과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한 것이다(박단 2009: 21).

를 하면서 이들이 프랑스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통계에 나타난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전후의 정국이 안정되고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자 1945년을 기점으로 다시 이민율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1956년에서 1973년도 사이에는 외국인 이민자 유입 비율이 정점에 달한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는 경제부흥기를 맞아 이 시기를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¹⁰¹⁾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된다.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경제 재건을 위한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¹⁰²⁾ 혹은 경제적 변영이 이루어지면서 토박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충원되는 노동력이 당연하게 필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노동 이민자의 유입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해결책이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기업주의 요구에 따라 이민 노동자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이민 장려책이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로 1954년도까지 이민의 증가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외국인의 유입이 점차 활성화된다. 그러면서 1962년에는 이민 노동자수가 300만에 도달하면서 1931년도에 이루었던 최다 이민자수(270만 명)의 기록을 갱신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시기부터 대규모 단위의 이민자의 모집과 계약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1945년도에 ‘이민국(1’ONI, Office National de l’Immigration)’¹⁰³⁾을 창설하여 노동시장에 필요한 수만큼 이민자를 엄격하게 선발하고 모집하였다.¹⁰⁴⁾ 정부가 이민 노동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창구를 일원화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였다. 독과점적인 이민국의 설립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을

101)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은 프랑스 경제의 예외적인 성장과 변영을 이룬 30년의 기간을 지칭하기 위하여 장 푸라스티에(Jean Fourastié)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프랑스 사회는 직업으로 넘쳐 났고, 대규모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3년 오일쇼크로 막을 내린다(Fourastié 1979).

102) 2차 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는 사망자가 적었지만 군인보다는 일반인의 피해가 더 컸다. 약 60만 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는데 일반인 희생자는 35만 명, 군인 희생자는 2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103) 현재 ‘국제 이주국(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1988년 개칭)’의 전신이다.

104) ONI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에서 432,000명의 영구 노동이민자를 모집하였다.

통해 개선된 노동조건을 내국인 노동자처럼 똑같이 보장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 시기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지역적 근접성으로 이웃 나라에 치우치던 유럽인의 유입에서 벗어나 프랑스 식민지의 역사를 지닌 북아프리카계 출신의 마그레브인들(le Maghreb)의 대규모 이동이다. ‘에비앙 협정(Les accords d’Evian)¹⁰⁵⁾의 체결로 북아프리카인이 프랑스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경우 식민지 출신이지만 이미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동이 자유로워서 이민국의 통제 밖에 있었다. 게다가 이 협정으로 인하여 프랑스와 알제리 양국 간의 자유왕래 원칙을 조인함으로써 보다 쉬운 이동이 가능했다.

점차 다른 식민지국(말리, 세네갈)으로까지의 협정이 확산 적용되었다. 에비앙 협정을 폭넓게 적용시키면서 프랑스 정부가 기대한 것은 식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인의 귀국을 중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알제리 국민들이 프랑스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218-220). 1946년도 2.3%에 불과했던 이들의 비율이 1954년도에는 13%에 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에비앙 협정은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로 들어올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특히 1962년의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프랑스군을 지원했던 35만여 명의 알제리인들이 난민의 자격으로 프랑스로 들어왔다. 이후 이들이 가족을 불러들임에 따라 알제리 출신 이주민의 수는 1968년 47만 명에서 1982년 80만 명으로 늘어났다. 갑자기 불어난 무슬림 이민자는 1968년도에 이민자 총인구의 23.6%에 이르고, 1975년도부터는 30%를 넘게 되면서 유럽인과 사뭇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최대의 이민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¹⁰⁶⁾

105) 1962년 3월에 있던 에비앙 협정은 알제리의 독립을 인정한 조약으로서 8년간의 프랑스와 알제리간 전쟁이 종식되었다.

106)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민 인구의 출신들을 보면 70%에 육박하는 비율로 유럽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출신 국가가 각자 다르고 개개인은 프랑스에 동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문화적 동질성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유럽인이 공통으로 가지는 문화적 유사성과 정서로 프랑스에 반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은 거의 없다.

알제리 이주민은 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1830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1954년부터 시작된 독립전쟁으로 1962년에 마침내 프랑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2차 대전 직후 1947년부터 알제리 전쟁의 발발 시점인 1954년까지만 하더라도 알제리 이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프랑스에 건너왔다. 게다가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농촌이 파괴되고 경제 공업 기반의 황폐화되자 많은 알제리 주민들은 고국을 떠났다. 이주민들이 향한 곳은 식민지 모국인 프랑스였고, 영구 이민으로 정착하면서 이민의 형태에 변화가 왔다(박단 2006: 229).

알제리의 전쟁 이후 양국의 마찰로 이주를 제한하자, 프랑스는 알제리를 대체할 노동력을 찾는다.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던 모로코(1975년 25만 명)와 튀니지(1975년 14만 명)가 그 대상이 되었다. 알제리 독립 이후 이루어진 이러한 북아프리카인들(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대규모 인구 유입은 유럽계 중심의 이민사회에서 아프리카계로 옮겨 가면서 이민의 지리적 기원이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이민의 정치 중심에 서면서 지속적인 정치적 논란과 핵심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의 프랑스와 프랑스 인과는 많은 분야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너무 뚜렷했다.

이 시기 북아프리카인의 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뚜렷하였으나, 유럽인의 이민 역시 지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다.¹⁰⁷⁾ 포르투갈인들은 여권 없이 자유롭게 프랑스로 이동할 수 있었다.¹⁰⁸⁾ 이주 포르투갈인의 인구가 1962년도에 5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68년도에는 296,448명, 1975년도에는 758,92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알제리인(1975년 75만 명) 대신 이들을 노동력으로 맞이하고 싶어 했던 프랑스의 정책과도 부합하였다(박

107) 이탈리아인의 유입은 줄어들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오는 이민자는 오히려 늘어난다. 1968년도에는 스페인 이민자수가 제일 많다가,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포르투갈인이 수위를 차지한다. 이후 알제리인이 이민자가 그 수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시기의 특징은 북아프리카인의 대규모 유입의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108)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에게는 회원국 내 자유이동권(right to free movement)이 주어졌 있었으며,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영구정착에 따른 부담감이 적었다.

단 2006: 230).

전체적으로 프랑스에서 나타난 이민의 형태는 노동이민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체류는 일시적인 것이고, 프랑스에서 실업이 증가할 경우에는 집으로 돌려보내질 의도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이들 이주민 노동력의 도움으로 전후의 복구와 경제적 재건을 이루었고 경제적 번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민자의 존재나 이민자의 수, 또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거나 우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석유 위기가 도래하고 프랑스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침체 시기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미 1930년대에 한번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까다롭고 힘든 직종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던 이민자를 보는 시각과 인식으로 방관자적 입장에서 있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표 III-10> 제 3기 외국인 수

(단위: 천명)

년도	총 거주민	국적취득외국인	외국인 주민					
			총 외국인	%	유럽국적	%	북아프리카 (알, 모, 튀)	
1946	38,798	2.1%	1,670	4.4				2.3
1954	42,796	1,068(2.5%)	1,765	4.1	1,431	81.1	227	12.9
1962	46,459	2.8%	2,861	4.7	2,231	78.7	429	14.9
1968	49,253	1,320(2.7%)	2,621	5.3	1,800	66.7	619	23.6

(4) 제 4기 : 1974년 이민중지 공식선언 후부터 현재까지

1970년 초반에 일어난 석유 위기는 프랑스 경제의 침체 국면을 가져왔다. 영광의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경제 부흥기는 1973년 세계 경제공황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경제의 지속적 침체는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결국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로 전환되어 이민문제가 부각되었다. 프랑스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1974년 7월7을 기점으로 이민에 대해 긍정적이던 프랑스는 이민 중지(Arrêt de l'immigration)¹⁰⁹⁾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합법적인 이민의 통로가 차단되고 이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60년 이상의 오랜 이민의 역사로 프랑스 인구지도의 변화를 초래했던 이민과 이민자의 역할은 경제 침체로 인해 마침내 중단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당시 귀국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임시 노동자의 신분으로 건너 온 마그레뱅(Maghrébins)¹¹⁰⁾들에게 가족은 없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인들 또한 곧 귀국할 사람들이며 프랑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 대해 어떠한 우려와 경각심 또한 없었다. 그러나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대통령과 작크 시락에 의해 발표된 이러한 이민의 공식적 중지조치는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임시 노동자 신분으로 건너 온 노동자들이 지중해를 다시 건너가기를 바라던 의도와는 달리 이들이 영구 정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정착 이민자가 늘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중용하기 시작했다

109) 이 시기에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데 새로운 이주의 형태도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의 망명자들과 특히 보트 피플(boat-people)이라 불리는 서남아시아로부터의 망명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민의 중지는 '노동 이주의 중지(suspension de l'immigration du travail)'를 뜻한다. 노동 이민이 중지된 기간 동안의 프랑스 이민자에 대한 르포 영화는(1974-1981 : la fin de l'immigration de travail, Réalisation : Jean-Luc Millet et Daniel Martin) 당시 이민자의 생활상이나 이민의 정치화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준다. (<http://www.crdp.ac-creteil.fr/edition/immigrations/complements/1974.htm>).

110)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마그레뱅이라 부른다.

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귀국 보조금(prime au retour)’을 지불하면서까지 자발적 귀국 권고안을 시행하였다.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50만 명의 이민자를 귀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예상과 의도는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프랑스를 떠난 후 경제적인 문제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길 원할 때, 두 번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노동자들은 한국 보다는 궁극적으로 프랑스에 남기를 선택하였다. 오히려 프랑스에 남아서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이민 금지조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프랑스에 체류하게 된 이주 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민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분노하던 일부 여론과 지식인들의 의견 수렴이 있는 다음의 후속조치였다. 이것이 1981년 미테랑의 집권으로 이루어진 ‘가족 재결합 정책(le regroupement familial)’의 시행이다. 30년 동안 이민을 조절하고 통제해 왔던 이민정책이 가족 재결합정책으로 인하여 한 순간에 고삐가 풀린 것이다. 오히려 노동 이민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일반인의 신분으로도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법안은 1974년 이민 금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조치여서 프랑스인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이민의 형태가 바뀌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1975년 이후로 이민자 세 명중 한 명의 비율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수는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전 외국인의 유입이 남성을 위주로 하는 노동 이민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1975년 이후의 유입의 형태는 남성과 여성을 비율이 같아지는 형태의 가족이민이 주종을 이루면서 ‘사회적 이민(immigration sociale)’으로 전환된 것이다.¹¹¹⁾ 1968년도에 61만 명에 불과하던 북아프리카인들의 수가 가족 재결합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1975년도에 112만 명

111) 프랑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결혼률이 외국인들에게서는 1973년 6.8%에서 1981년 8.3%로 증가하였고, 가족재결합에 의한 이민 수가 노동자의 이민 수를 초과하였다. 이 시기 동안 외국인 여성의 활동인구가 증가하였고, 1982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 인구의 33%가 20세 이하였으며, 가구당 가족 수도 외국인인 3.34명으로 프랑스 평균 가족 수 2.70명 보다 높았다. 특히 6명 이상의 대가족 비율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알제리인의 경우 28.1%, 모로코인 25.6%, 튀니지인 17.3%를 보임으로써 이민자의 대가족화, 여성증가, 청소년화이 특징을 볼 수 있다.

으로 급증하는 원인이 된다.¹¹²⁾

또 한편 1997년에는 ‘합법화조치(mesure de régularisation, Circulaire du 24 juin 1997)’¹¹³⁾가 시행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합법적인 체류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구제하는 정책이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가족 단위의 이민과 여성 이민의 유입률이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외국인 이민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가족 재결합정책과 합법화조치 등 비교적 유화적이고 인도적인 정책¹¹⁴⁾을 병행하여 시행해 왔다.

2004년도의 중반에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57만 명에 이르렀다. 1999년에 비해 45%나 증가하는 빠른 유입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인들도 1970년대를 기점으로 프랑스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이들은 정치적 망명자의 신분으로 프랑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1970년도에만 하더라도 총 외국인수의 0.3%를 차지하던 아시아 이민자 수는 1982년도에는 3.0%가 되는 약 12만 명의 인구를 보여준다.¹¹⁵⁾

112) 이 시기 북아프리카(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와 포르투갈의 이민자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박단의 논문(2006)을 참조하라. 본 논문의 국적법의 흐름에서 1981년도 편을 참조할 수 있다.

113) 프랑스국적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망명자,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한 자, 프랑스국적 아이를 가진 외국인 부모, 가족재결합정책이 아닌 상태로 프랑스에 입국한 아이 등 많은 조건들에 합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 시켰다. 이때 80,000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http://www.gisti.org/doc/publications/1997/circulaire/index.html>)

114) 당시 경제침체와 실업의 급증으로 프랑스 극우파에 의한 문화 갈등이 조장되었고, 정부는 증가하는 인종차별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지역의 주택, 교육, 보건, 모국어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하기도 한다(김민정 2007: 11).

115) 망명자에 대하여 수용을 해야 할 권리는 구체제시기 가톨릭의 구호원칙이 시초가 되었다가 1789년 혁명헌법에 의해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다가 1948년 유엔의 인권선언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1970년대 프랑스 정부는 공산 정권의 위협을 받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인들을 정치망명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가장 많은 수의 정치 망명자를 받아들인 국가가 된다.

<표 III-11> 제 4기 외국인 수

(단위: 천명)

년도	총 거주민	국적취득 외국인	외국인 주민					
			총 외국인 (명, %)		유럽국적 (명, %)		북아프리카 (알, 모, 튀)	
1975	52,599	1,392(2.6)	3,887	6.5	2,612	67.2	1,122	32.6
1982	54,273	1,425(2.6)	4,037	6.8	1,760	57.8	1,436	33.2
1990	56,635	1,778(3.1)	4,165	6.4	1,309	50.4	1,412	35.9
1999	58,521	1,554(4.0)	4,306	7.4	1,934	44.9	1,692	39.3

3. 국적법과 이민법의 의의

18세기 말 이후 서유럽 사회는 비교적 무질서했던 국가들 간에 영토적 개념으로 경계가 정해지고 기본적으로 영토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라는 거대 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었다. 영토적 경계와 거주지 시민을 일치시키고 집단적 성향의 아이덴티티를 발전시키면서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배양시켜 왔다. 구성원간의 동질성에 대한 정서적 감정의 생성은 전쟁이나 혁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구성원간의 동질감은 '우리/타자'의 구별하는 민족주의 강화정책을 통해 하나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의 태동을 가져오게 된다.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가 형성된 것이다. 국민국가의 요점은 일체화이다. 이를 위해 국적이라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국적의 유무는 '우리'와 '우리 아닌 자'를 구분해 주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국적의 개념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존재를 가능케 하며, 국가에 의해 그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즉 국적이란 특정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법률적 범주가 된다. 그래서 국적이란 단어는 구성원들에게는 하나로 엮여있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같은 국적의 구성원들 간 정체성의 동질성은 이미 국가가 형성되던 때 담보되어 있었다고 믿게끔 만들어져 왔다. 허구의 공동체나 상상의 공동체라는 용어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바라보는 시각이듯이 국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투자되는 것 또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강하다. 특히 인종과 민족이 고대로부터 섞여져 내려오던 유입과 유출의 땅이었던 유럽의 제 국가에서는 국적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그러하다.

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출현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적법은 근본적으로 법적 카테고리이다. 그러나 국적법의 체계는 유동적이며, 역사의 산물이고, 사회적 변동에 대한 정치적 조정과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 법적 지위 부여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의 산물이기도 하며 역으로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민의 자격은 시대의 결과물인 것이다. 특히 오랜 이주민의 유입을 겪었고, 현재에도 겪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게 국적법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더 나아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국민에로의 통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국적법은 그러므로 이민자에 관련되는 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산업화 이후의 인구 이동은 국가와 국민에로의 편입과 더불어 기존의 국민과의 정체성과 처우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통합의 방식은 초창기 시기의 이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국가에 융화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융화, 동화를 요구받는 이주민은 수용국의 시민화 또는 국민화 과정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관리되었다. 특히 집단 정체성과 집단 동일성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국적의 개념은 국민국가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국적 부여의 법적 근거인 국적법은 엄밀하고 부동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내적 논리의 목적으로 변화해 왔다. 또한 국적 부여의 기준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가 국적법의 제정에서 간

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부집단에게는 정체성의 강화와 외집단에게는 내 집단과의 정체성 가르기(구분)를 하는 국적 부여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며 처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가 된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나타난 국적에 관한 개념 인식이 국민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당시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혁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면 인종과 종교를 막론하고 개인은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었다. 혁명의 산물로서 개방적인 프랑스 특유의 국적법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⁶⁾ 오늘날까지 프랑스 국적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한다. 그러나 의지에 기초한 국적의 개념은 혁명 중에도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의심으로 이러한 보편주의 가치의 상실을 가져왔던 시기도 있었다. 평화가 올 때까지 외국인은 억류된다든지, 더 이상 프랑스 인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든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등 오히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¹¹⁷⁾

프랑스에 있어서 국적조사에 관한 통계의 기원은 1851년 인구조사 때에 국적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한 설문 형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실시되어 왔다. 1866년도에 이르러 피조사자가 자신이 ‘태생적으로 프랑스인’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것인지 답하도록 하는 국적의 취득 형식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채택되었다. 프랑스 원국민과 취득이나 귀화에 의한 외국인으로서의 프랑스인의 구별을 하면서부터 가르기와 구분을 하게 되는 범주 설정이 시작되었다.

116) 1793년 헌법 4조에는 21세가 된 모든 외국인 남성은 프랑스에서 1년 동안 거주했고, 일하는 자, 재산을 획득한 자,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자, 아이를 입양한 자, 노인을 부양하는 자는 프랑스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17) 혁명 정부는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이 반혁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여권 제도를 강화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 하나는 혁명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결집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단기적인 내적 공고화를 넘어서, 국적은 혁명 이후에도 출신국가를 기준으로 개인들을 구분하는 틀로 자리잡아간다는 점이다. (Noiriel, G., *Etat, Nation et immigration: vers une histoire du pouvoir*, Berlin, 2001), 이경일(2009)에서 재인용.

이후부터 다른 인구조사에서도 이러한 원국적 질문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871년에서 1946년 사이의 인구 총 조사에서 국적에 대한 항목은 출생부터 프랑스인, 귀화에 의한 프랑스인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이중 외국인만이 그들의 이전 국적을 명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다가 1962년에는 귀화 프랑스인들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원국적을 명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르누치·황명진: 160).

일반적으로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전통에 대해 말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 국민은 자유의지에 따라 인민의 동의에 의해 모이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관념은 “국민은... 일치이며 공동의 삶을 지속하고자하는 염원이 표현된 것이다”라는 르낭의 텍스트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르낭의 인식은 독일의 종족적 자기인식 개념과 대조를 이룬다.

두 번째로, 프랑스는 출생지에 의해 개인의 국적이 결정되는(jus soli) 원칙의 전형적인 나라이다. 혈통(jus sanguinis)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법보다 더 개방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결정하는 범주들은 비록 출생지 전통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프랑스 국적법의 변화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급증하는 이민자의 추세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을 통하여 국민을 일치시키고 소속과 정치적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프랑스 국적법에 의한 국적 취득은 프랑스적인 통합모델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민자 개개인의 동화 가능성에 대한 확증 절차인 동시에 통합의 최종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적법은 이민법과 사회통합의 원칙과 상호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외국인 특히 무슬림이 너무 많다는 생각과, 무시할 수 없는 이들 종교 세력의 실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그리고 유럽적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이슬람 세계의 가치와 이슬람 종교에 대한 혐오 인식은 이민자 정책과 국적법의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범죄와 실업 등을 일으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인식된다면 프랑스인

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국적부여 원칙에 강경한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국적의 허용을 불허한다. 당연히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이민법과 국적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¹⁸⁾

한명숙(2009: 154-155)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국적의 역사가 체계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국적법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 사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무슬림의 후속세대들의 성장과 맞물려 나타났다. 이민 2세대와 3세대라 일컫는 후속세대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치적 세력화를 우려하던 입장에서 국적법의 문제가 부상했다. 자발적인 의지와 동의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주의 공동체에 이를 거부하는 무슬림 집단의 뜻하지 않은 정치적 세력의 출현과 권리 행사에 프랑스 국민들은 의문을 던졌다. 국민을 정의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관념이 이민자들에게도 항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출발에서 국적법에 대한 연구가 나왔던 것이다.¹¹⁹⁾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국적법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들의 도전과 그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배제나 포함으로 나타나는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자 정책에 대한 시대정신의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4. 국적법과 이민법의 흐름

프랑스 이민의 역사는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구 감소의 원인과 경제의 활성화 정책, 또는 전쟁을 피하는 정치적 이동, 빈곤을 피하기 위한 개인의 경

118)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 이래 프랑스에서는 크게 6차례(1889, 1945, 1973, 1993, 1998)에 걸쳐 국적법 개정이 있었다(한명숙 2009: 167).

119) 르 갈루(Jean-Yves Le Gallou)는 국적에 관한 법은 자신이 프랑스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프랑스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프랑스인의 신분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프랑스 국적법에서 이민자들이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Jean-Yves Le Gallou et le Club de l'Horloge, La Préférence Nationale: Une Réponse à l'Immigration, paris: Albin Michel, p.82. 한명숙(2009:160)에서 재인용.

제적 이동 등 여러 유형의 특성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이민의 유입이 발생하였다. 이민은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에서 유입되는 노동 이민자이거나 또는 유럽권에서 유입되는 특성을 가진 채 출발하였기에 프랑스 국적의 부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 국적 취득의 법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¹²⁰⁾

- ㄱ.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프랑스인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 (혈통주의).
- ㄴ. 부모가 없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도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출생지주의).
- ㄷ.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지만 그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는 프랑스인이 된다.¹²¹⁾
- ㄹ. 프랑스인과 결혼한 후 최소 3년이 지난 배우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질 수 있다.¹²²⁾
- 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프랑스에서 나고, 11세에서 18세까지 최소한 5년 간 프랑스에 거주한 아이는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 ㅂ. 프랑스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난 모든 성인 외국인은 일정 조건하에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교적 손쉬운 국적 취득의 형태를 가진 느슨한 통합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적 부여를 통한 이주민의 통합정책은 완전한 동화에 기초한다. 프랑스의 통합방식은 유입된 소수자들이 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형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120) Pierre Bernard, 2002, *Immigration: le défi mondial*, paris, Folio actuel.

121) 이 규정은 1962년까지 프랑스의 한 도(département)로서 자격을 가졌던 알제리에서 태어난 부모의 경우 등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서 태어난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122) 유예기간이 2년 이었던 법은 사르코지에 의해 개정된 '2006년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la loi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에 의해서 3년으로 바뀐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의 국적취득 여부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우선시 되는 바로 개인의 사회통합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 구체제에서 19세기까지

(1) 구체제(Ancien régime)의 속지주의

이 시기에 프랑스인(le Français)은 왕국과 왕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었다. 왕국의 영토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자는 왕의 시민으로서 인정된다. 이러한 원초적 개념으로서의 속지주의(jus soli)는 국왕의 영토에 결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영토를 떠날 때는 상속의 권리와 함께 국왕에 종속되어 있는 조건에 상응하는 권리들을 모두 상실한다.¹²³⁾ 대혁명의 초기에는 프랑스인의 자격을 이러한 기준으로 유지하지만 공화국은 마침내 봉건적 개념을 대체한다.

(2) 1789년 혁명기의 혈통주의와 속지주의의 이중의 국적 부여 원칙

구체제의 시스템을 타도한 혁명(Révolution)을 거치면서, 당시 더불어 사는 의지에 따라 개방적 국적부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 민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속인주의(jus sanguinis), 즉 혈통주의가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에 있어서 우세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프랑스는 근대적인 국민의식에 기초한 통일된 국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시민(citoye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체계가 성립되었다. 외국인에게도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프랑스에

123) Sous l'Ancien régime, seul le roi peut délivrer des "lettres de naturalité" conférant aux "aubains" (étrangers vivant sur le territoire) la qualité de régnicoles (ou sujets du roi), "Un peu d'histoire : le droit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www.vie-publique.fr/documents-vp/nationalite_histoire.pdf)

거주하면서 공화국에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졌다.¹²⁴⁾ 즉 프랑스 땅에서 거주라는 조건은 혁명기 시절 충성의 표시였고, 혁명에 대한 찬성과 동의라는 개념으로서 속지주의 국적법의 이중적인 형태였다.

(3)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Le Code civil des Français)

나폴레옹 민법전은 단순한 출생지 원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직계 혈통을 통해 프랑스 시민권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화하였다(“est français l’enfant né d’un père français”).¹²⁵⁾ 즉 영토적 권리를 포기하고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이 정해졌다. “프랑스인 아버지에게서, 프랑스 혹은 외국에서 태어난 자”만이 프랑스인으로 규정되었다.

국적은 혈연관계에 의해 전달되었고,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기더라도 상실되지 않았다. 즉, 1804년의 민법은 이민을 떠난 프랑스인들과 아이들의 프랑스로의 귀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제도였던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성인(21세)이 되었을 때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⁶⁾ 그러나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은 자신들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¹²⁷⁾ 혈통에 기반을 둔 국적법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단점들이 나타나자 1831이후 지속적인 논쟁이 의회에서 전개되었다.

124) “Un peu d’histoire : le droit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www.vie-publique.fr/documents-vp/nationalite_histoire.pdf)

125) “Nationalité française : L’histoire du droit du sol”, (http://perso.nnx.com/marion/nation29.htm)

126) En 1804, le Code civil revient sur ces dispositions pour permettre aux émigrés et à leurs enfants de revenir en France et institue la possibilité pour tout étranger, né en France d’acquérir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sa majorité(21ans), “Un peu d’histoire : le droit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www.vie-publique.fr/documents-vp/nationalite_histoire.pdf

127) 프랑스 민법전에 의하여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국적을 상실한 여성의 수가 1920년대에 약 20만 명이나 이르자 1927년의 국적법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들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1851년 2월 7일 법(la loi du 7 février 1851)의 속지주의로의 회귀와 이중속지주의(le double droit du sol)의 원칙의 수립

산업혁명시기 프랑스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자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노동자들을 프랑스로 유입하였다. 인구의 증가를 원하였기 때문에 제 2공화국의 프랑스는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들을 완화하면서 이민자를 끌어들이었다. “외국인이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날 때에는 그들 자녀는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est Français à la naissance tout individu né en France d’un parent qui y est lui même né)”라는 프랑스의 독창적인 이중 속지주의(double jus soli)의 원칙이 세워진다.

그러나 이 법은 곧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군의 의무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대다수의 이민자 자녀들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회피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에 직면하였다. 또한 성년에 이르러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89년 제 3공화국에서는 다른 방식의 속지주의를 채택한다. 이들이 성년이 되어도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5) 1865년 7월 14일 법(la loi du 14 juillet 1865)

이 법으로 무슬림 알제리 원주민과 이스라엘인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6) 1889년 6월 26일 법(la loi du 26 juin 1889)

국적에 관한 1889년 6월 26일 법(Loi du 26 juin 1889 sur la nationalité)은

민법을 수정하고 완전하게 개혁하면서 이중속지주의 원칙을 다시 확립¹²⁸⁾하였다. 출생에 의하거나, 취득에 의한 국적의 부여 조건을 용이하게 하여 알제리인에게 즉시 적용하였다. 그리고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Naturalisation par déclaration)’¹²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적 부여요건이 만들어졌다. 이 법으로 인하여 프랑스 국적의 역사에서 ‘국적의 취득은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대전제가 확립되었다. 1889년의 법은 모든 젊은 프랑스인 사이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프랑스 태생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하며 취득된 국적은 포기할 수 없게 규정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성인이 되어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¹³⁰⁾ 그러나 성인이 되는 그 해에 프랑스 국적을 거부하면 외국인으로 남는 여지를 둔다. 이는 이전의 속지주의보다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서 평등이나 국적 취득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하면서¹³¹⁾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이탈 이민(émigrant)에 대해 경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¹³²⁾

한명숙(2006: 154)은 프랑스 국민이 자유의지, 개인의 동의에 의해 존재한다는 개념은 철학적 발명에 불과한 것이고, 오로지 프랑스가 그 시대적 상황에 내 몰려 1889년 법에 있어서 출생지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1882년 르낭과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의 의도 중에는 독일 제국에 의

128) Est Français toute personne née en France d'un parent qui y est lui-même né.

129) 나중 1893년 법에 의하여 보다 명시적이 된다. précisée par la loi du 22 juillet 1893. Naturalisation par déclaration : nouveau type de naturalisation introduit par la loi du 26 juin 1889, précisée par la loi du 22 juillet 1893. Sans attendre sa majorité, les parents étrangers d'un enfant né en France peuvent réclamer pour lui la qualité de Français par une déclaration souscrite auprès du juge de paix du domicile des parents et enregistrée au ministère de la Justice.

130) 23조

131) 당시 거주 외국인 주민들이 군복무를 비롯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도 영토 내에 머무르며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복무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병역면제를 폐지한다. (Weil 1997 a:16), 한명숙(2009: 168)에서 재인용. Gérard Noiriel, *Popula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nationale en France*, p.108.

132) 한편으로는 1851년과 1889년 사이에 외국인 수가 두 배로 증가하자 프랑스 정부는 이들 외국인이 프랑스 국민과는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며 성장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보다 확장된 속지주의로 전환한 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르누치·황명진: 159)

한 알자스, 로렌의 합병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독일 국민, 프랑스 국민을 구별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1871년 독일과의 전쟁으로 알자스와 로렌을 독일에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프랑스는 인구증가의 의도와 군인(3년의 의무 복무)을 확보하기 위해 1851년의 국적법을 거주지 원칙 즉 출생지주의 원칙으로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¹³³⁾

봉건적 시기 또는 구체제 시기에는 국왕의 영토에 내에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왕의 시민이 되는 자격이었다. 반면 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개인 또는 시민이라는 관계의 정립되어 속지주의와 혈통주의를 서로 오가며 보완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적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1899년의 법에서는 ‘영토 내 거주(résidence dans la territoire)’라는 조건이 국적 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국적의 취득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화(socialisation)에 중요성을 두는 기본적인 원칙이 서게 되었다. 이처럼 출생지주의의 원칙은 거주라는 의미의 사회적 개념을 합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약에 기초한, 혹은 종족적 혈통에 기초한 시민자격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의지와 동의 를 동반한 사회화에도 중요성을 둔 것이다. 결국 프랑스 사회통합의 원칙이 되는 동화주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이 1889년 법에 의해서 세워졌다.

2) 20세기 초반에서 1973년까지

(1) 1927년 8월 10일 법(la loi du 10 août 1927)

1차 세계대전의 커다란 인명 손실(150만 명 가까운 사망자와 200만 명이 넘는 부상자)로 프랑스는 인구를 보충함과 동시에 국토 재건과 경제 사회 기반을 위하여 외국 노동자의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귀화

133) “Naturalisation”, Un article de GeneaWiki. (http://fr.geneawiki.com/index.php/Archives_des_naturalisations#Sous_1.27ancien_r.C3.A9gime)

규정을 내세우면서 유입된 인구들에게 프랑스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완화된 귀화의 조건들은 정착 후 프랑스에 3년의 거주 기간만 도달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민법에 의하면 외국인 남편을 둔 프랑스 여성은 프랑스 국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27년도 법의 제정으로 해당되는 여성들은 국적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프랑스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혜택으로 1927년에서 1938년 까지 국적을 취득한 수는 연평균 38,000명에 이르렀고, 1938년도에는 최대 81,000명이 국적을 취득하였다.

(2) 비시체제 하의 1940년 7월 22일 법(loi du 22 juillet 1940)

1927년 법에 의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쉽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비시정부는 결국 귀화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27년 이후 시행되어 오던 국적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1940년의 법의 시행¹³⁴⁾으로 이미 부여된 국적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국적 취득자 중 500,000명의 서류를 심사하여 15,000명의 국적을 박탈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

(3) 해방 후의 1945년 10월 19일 법(loi du 19 octobre 1945)

해방 후 드골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적법을 공포한다. 이는 비시 정부 때 세워진 억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대부분의 법령들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드골의 1945년 10월 19일 법은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를 혼합한 형태의 국적법 형태를 띤다(한명숙 2006: 56). 이 시기에 국적을 부여한 것은 레지스탕스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

134) 이 법은 1944년에 폐지된다. 한편으로는 이법이 공포된 다음날 또 한 차례의 법령 시행이 있었는데 1940년 7월 23일 법령이다. 이 법으로 인하여 드골(De Gaulle), 르끌레 드오프클로끄(Leclerc de Hautecloque) 등 수 많은 레지스탕들이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하였다. (http://fr.geneawiki.com/index.php/Archives_des_naturalisations#Sous_1.27ancien_r.C3.A9gime)

기 위한 측면과 대중정치의 수단으로 삼은 의도도 있었다.

(4) 1962년 7월 21일 시행령(l'Ordonnance du 21 juillet 1962)

조상이 알제리 원주민일지라도 알제리인들에게 법정의 판사들 앞에서 프랑스 국적 취득을 위한 옵션(option)이라 불리는 '서약(confirmation)'을 한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 1962년 7월 21일 시행령인데 알제리 독립(1962년 7월 3일) 후부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국적 취득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알제리인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의 범주를 확대하였는데 사하라 이남 국가(세네갈, 말리)에서 온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었다(한명숙 2008: 158).

(5) 1973년 1월 9일 법(loi du 9 janvier 1973)

프랑스 연방(Union Française)으로 구성되었던 대부분의 영토가 독립함으로써 국적법의 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¹³⁵⁾ 개정된 1973년 법의 23조에 따르면 “적자이든 혹은 사생아이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적어도 그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프랑스인이다.”¹³⁶⁾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4조에 의하면 “외국인 부모를 두었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이들은, 16세부터 21세까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의지선언(manifestation de volonté)’을 해야 하는데 이때의 조건은 프랑스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전의 5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거주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¹³⁷⁾

135) 예를 들면 알제리의 경우 독립 전까지 프랑스의 도(département français)로 인정되었다.

136) “Est français l'enfant, légitime ou naturel, né en France lorsque l'un de ses parents au moins y est lui-même né.”(article 23)

137) “Tout étranger né en France de parents étrangers peut, à partir de l'âge de seize ans et jusqu'à l'âge de vingt et un ans, acquérir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condition qu'il en manifeste la volonté, qu'il réside en France à la date de sa manifestation de volonté et qu'il

이러한 조항들의 근거는 프랑스에서 부모 세대가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살아왔을 경우, 그 흐른 시간만큼 이미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둔 것이다. 이중속지주의 원칙의 보다 완화된 형태의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국적체계에서도 남녀평등이 보장되었다.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이전에는 귀화에 의해서만 프랑스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 직후 하는 의지선언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¹³⁸⁾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 물론 프랑스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의지선언 후 프랑스인이 된다.

1973년도 국적법의 개정으로 알제리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의 국가(세네갈, 말리 등)에서 온 자들에게도 이중 속지주의원칙이 확대 적용된다. 즉 독립 후 알제리 소속민들의 경우, 1962년 7월 21일 행정령에 따라 보통법(droit commun) 호적부에 올라 있는 프랑스인은 계속 프랑스 국적의 권리를 유지한다. 현지법(droit local) 지위를 갖는 사람들-식민지 시절 대다수 무슬림과 그 아이들은 1967년 3월 22일 이전에 프랑스인 시민선서를 하고 프랑스에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면 완전한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되었다.¹³⁹⁾

3) 1974년의 이민증지에서 1999년까지

(1) 1974년도 이민증지 선언

70년대 초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프랑스가 취한 첫 정책은 노동이민의 공식적 중단¹⁴⁰⁾이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justifie d'une résidence habituelle en France pendant les cinq années qui la précèdent." (article 44)

138) 이 조항(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rédaction de la loi n73-42 du 9 janvier 1973, 37-1조)은 1993년도 법 조항(loi du 22 juillet 1993, 제 9조)에서는 의심스러운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으로 늘어난다.

139) Ministère de la Justic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247-248. Ordonnance n.6-2825 du juillet 1962.

140) 이민중단 정책으로 공식적인 이민은 줄지만 정치적 망명, 가족 재결합정책, 불법이민 등 다양한

내놓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 재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이민 즉 노동이민이 아닌 사회적 이민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토착화를 가져왔다.¹⁴¹⁾

이민 중지 선언은 이후에 외국인 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사회적 이민과 이민자의 토착화는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프랑스의 엄연한 시민으로서 살게 된다. 1981년 이후부터 미테랑 대통령은 이민자 안정화정책을 취하지만 가족이민과 불법이민(immigration clandestine)이 성행하였다. 불법이민자의 유입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마그레브에서 오는 불법이민자보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과 아시아, 중동, 터키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2) 1981년 10월 27일 법(La loi du 27 octobre 1981)

1981년 정권을 잡은 사회당의 미테랑은 이전 우파 정부의 자발적 귀국 혹은 강제 추방과 같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¹⁴²⁾을 일단락 지으며 이민자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이민자에 대한 유입의 통제는 유지하지만 프랑스 내에 정착한 외국인의 삶은 개선하는 인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갔다.¹⁴³⁾ 물론 이 시기에도 정부의 지원 아래 자발적으로 귀국한 이민자의 수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45,000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그 수는 외국인 부모를 가진 아동이민자의 강제추방금지 조치¹⁴⁴⁾와 1981년 한 해 동안 합법화된 외국인 노동자가

방법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지속된다. 이 시기 이러한 이민에 대한 중단의 조치들은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1973년을 중심으로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민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다. 즉 각 국가에 너무 많은 외국인의 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974년이 통계를 보면 스위스 28%, 독일 9%, 프랑스 8%, 벨기에 7.2% 등 외국인 비율의 수치가 높았던 것이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272).

141) <http://www.regards.fr/article/?id=430&q=date:1997-04-01>

142) 당시의 1980년 ‘보네법(la loi Bonnet,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압력과 추방에 대해 아주 엄격하고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었다.

143) 불법 체류자에게도 현재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1981년 1월 1일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체류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비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따른 법률’의 시행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14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가족재결합의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며, 이에 대한 권리가 재확인되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동등한 결사권까지 인정되었다.¹⁴⁵⁾ 결국 이민자에게 보다 온정적인 법률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민자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프랑스에서 출생하는 이민자 아동이 증대함에 따라 이민자들의 체류가 장기 혹은 영구체류의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민자의 인구 구성면에서도 가족화, 여성증가, 청소년화의 특성을 띠면서 서서히 이민자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3) 1984년 5월 7일 법(loi du 7 mai 1984)- 이민의 정치화 시작

1980년대 초반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나 배척의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던 시기이다. 특히 민족전선(FN)의 등장은 실업과 범죄율 증가, 국가정체성의 상실 등 사회적 위협을 이민자에게 뒤집어씌우며 이민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던 사회당 정부의 정책들을 비난하며 국민을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 이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 감정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테랑 정부는 더 이상의 유화정책을 펴지 못하였다. 1984년 파비우스(Fabius)는 7월 7일 법령으로 외국인이 프랑스인과 결혼 한 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있었다. 반면 1984년부터 오랜 기간 프랑스에서 거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10년 기간의 체류증(Un titre de résident 또는 carte de résident)을 부여하였다. 이는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다면 프랑스에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정부의 확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¹⁴⁶⁾ 이는 유럽에서

144) 이 조항은 후일 2006년도에 사르코지 이민법에 의하여 비록 아이가 프랑스에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였을 시 아이를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145) 외국인이 단체를 결성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1939년 법을 대체한 1981년 10월 9일 법에는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사전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146) <http://www.meltingpot.org/stampa1717.html>.

가장 관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4) 1986년의 반 이민적 정치적 상황

1986년 총선에서는 우파 공화국 연합(RPR)과 중도 우파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UDF)이 연합하여 좌파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제 1차 좌우동거정부의 총리가 된 시락은 국민에 대한 선택적인 개념, 공동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의 ‘의지주의’와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정을 제안한다. 법무부 내 국적과(Bureau de la Nationalité)의 개정안들은 4가지 방향으로 확정하였다. 출생 시 국적 자동부여 조항 삭제(23조), 의지적 동기 확인(44조, 79조 확대), 위장결혼 적발(37-1조), 다른 의심스러운 사기들(52-54조, 84조) 등이다.¹⁴⁷⁾ 내무부 장관인 파스쿠아(Charles Pasqua)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민에 대한 제한적인 법(파스쿠아법, loi Pasqua)¹⁴⁸⁾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이민자들의 지탄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889년 이래 프랑스 국적법의 토대가 되고 있던 출생지주의를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를 떠나는 외국인의 숫자를 단기간 내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르낭이 주장하는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volonté)’에 기초한¹⁴⁹⁾ 국적취득은 국민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세대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147) 국적과는 1889년 이래 비시체제 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중속지주의를 문제 삼기를 꺼려했다.

148) Loi n° 86-1197 du 24 novembre 1986, 일명 파스쿠아법(loi Pasqua). 당시 내무부 장관인 파스쿠아는 마그레브인들을 범죄와 마약확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생계수단을 증명하게 하고 도지사의 결정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안은 후일 두 번의 개정을 더 거는데, 1989년 사회당의 재집권으로 폐지되었다가 1993년 더욱 강화된 이민자 정책(loi n° 93-1027 du 24 août 1993)으로 재등장하고, 이민정책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1997년 쥐페 정부(gouvernement Alain Juppé) 시기에 드브레에 의하여(loi n° 97-396 du 24 avril 1997, 드브레법:loi Debré) 다시 등장한다.

149) “민족은 영혼이고 정신적인 원리이다...하나는 과거 속에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 있다. 하나는 풍부한 기억의 유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동의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이며 개인이 받은 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 같은 이민자에 대한 우파의 강경한 보수주의적 성향의 태도는 민족전선(FN)의 영향이 컸다. 우파는 1981년 대선에서의 좌파의 승리를 염두에 두었고, 또한 민족전선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했었다. 그리고 경제침체와 실업의 위기는 이민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지지 세력, 즉 국민의 요구에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파 정치인이나 국적법 개정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2세대 이민자녀들이 국적을 너무 쉽게 취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프랑스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회와 문화에 적극적인 동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⁰⁾ 우파의 주장 중 하나는 프랑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만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인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귀화 신청을 받아 심사 후에 국적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1987년 국적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¹⁵¹⁾를 보면 프랑스에서 국적 취득이 쉬운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서 ‘너무 쉽다’가 48%(좌파지지자:39%, 우파:64%), ‘평균적이다’가 31%(좌:43%, 우:24%)로 나타났다.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좌파 지지자는 24%의 긍정적 답변, 우파는 67%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민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요구도 거세었다. 이들은 최고행정재판소 뿐만 아니라 좌파 정당과 연합한 각종 시민 단체들과 성직자, 학생들이었다. 결국 이들의 반대 집회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지 요구로 1987년 1월에 마침내 제안자인 시락 총리는 법안을 철회하게 된다.

150) 1986년 Le monde-IPSOS 여론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개정을 지지했고, 심지어 사회당을 지지한다는 시민들도 46%나 되는 높은 수치로 개정에 찬성하였다(Le monde, 86/3/25). 기존의 ‘자동 부여’ 대신 ‘의지적 절차’로 대체하자는 안이 가장 분명한 지지를 얻었다. Paris Mache에서 출판된 1986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이상 18세에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한명숙, 1980, 161)

151) 1987년 10월 7일자 파리 마치(Paris Match)의 설문조사, (<http://www.ipsos.fr/CanalIpsos/poll/1680.asp>)

(5) 1988년 대선 정국 이후

작크 시락이 대선에서 참패하고 결국 미테랑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국적법에 관한 논의는 미테랑의 선택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미테랑은 국적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시켰다. 80년대 초부터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는 이민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 문화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원적이고 탈중심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이슬람을 대표하는 공식기구를 조직하고, 파리 모스크 관리를 알제리 정부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아랍어 수업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사회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0년에서 1986년 사이에 이민자와 소수집단을 위한 기금(FAS, Fonds d'Action Sociale)에 예산을 배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지원 협회의 수도 4배로 늘리는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⁵²⁾

(6) 1993년 7월 22일 법(loi du 22 juillet 1993)- 히잡 사건의 후폭풍

잠정적으로 국적법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1989년의 히잡사건은 다시 국적법의 재개정이라는 논의가 재 점화되었다. 1993년의 총선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우파의 정부 장악에 표심을 보냈다. 그럼으로써 1986년 1차 좌우동거 정부 이후, 두 번째의 동거정부(미테랑 대통령, 발라뒤르 총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우파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었다.

총선에서 이민법과 국적법 개정을 중요한 선거 전략의 하나로 공표를 하였기에 국적법 개정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이민을 제한하는 내무장관의 이름에서 온 파스쿠아법(loi de Pasqua)¹⁵³⁾의 제한적인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152) Romain Garbaye, *Getting into Local Power*, p.71-76. 한명숙(2009: 163)에서 재인용.

153) 파스쿠아법(Loi Pasqua du 24-29 août 1993)은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 부모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가 16-21세 사이에 ‘의지선언(manifestation de volonté)’을 통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 1889년 법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16세에서 21세 사이에 프랑스인이 되겠다는 ‘의지선언(manifestation de volonté)’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73년 법안에서는 성년이 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 받았던 것이 1993년 개정법에서는 공동의 삶에 대한 개인의 분명한 의지표현이 국적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뒷받침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조항은 ‘1962년 이전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에 관한 것이다.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이상 연속 거주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였다. 이로써 중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아이의 출생 시에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부모에 대한 거주 조건은 1973년도 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슬림의 사회적 동화에 의심을 품은 프랑스의 국민 통합정책의 강화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옛 식민지 국가들의 출신자들을 위한 이중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전의 법에서는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었던 프랑스 국적을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후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국적법 개혁의 목적은 국적법 취득에 용이한 이런 저런 조건들을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면서 국적의 취득 조건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1889년 이래, 프랑스에서 출생, 성년에 프랑스 거주라는 조건은 프랑스인이 되기를 요청하는 데 충분하였다. 그러나 1993년 법으로 ‘의지선언’이라는 필수적인 조건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법안의 이면에는 적극적인 동화를 통하여 프랑스인이 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을 강제하며 법률적으로 담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이민자, 특히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들을 동화하기 위한 강제적 성격을 띤 것이다.¹⁵⁴⁾ 또한 중요한 것은 프랑스 국적취득의 기본원칙을 지

파스쿠아법으로 더 이상 자동적인 국적취득은 없어진 것이다. (http://fr.wikipedia.org/wiki/Loi_Pasqua)

154) 1985년 SOFREX-MRAP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포르투갈인이 프랑스 사회에 가장 잘 통합되어 있고, 같은 70%의 비율로 알제리인이 프랑스의 사회통합에 가장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되어

켜오던 출생지주의를 서서히 축소하거나 삭제하는데 있었다.

(7) 1997년 P. Weil 보고서

1995년 시락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사회당 당수인 조스팽이 총리가 되면서 세 번째의 동거 정부가 형성되었다. 이전 두 번의 동거정부에서는 우파가 정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이민법과 국적법의 법안들이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의 국적 취득에 불리한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형태는 이민자에게 보다 관용적인 좌파정당이었다. 즉 사회당(PS, parti social)이 다수당을 차지함으로써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국적법 논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국적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종합하고자 했던 조스팽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하여 연구 의뢰를 맡겼던 베이(Patrick Weil)의 보고서¹⁵⁵⁾에 따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이민과 국적에 관한 이듬해의 법안에서 속지주의 원칙으로의 회귀, 의지선언의 폐기 등 이민자에게 유화된 정책들이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불법 체류자(sans-papiers)들에 대하여 강경했던 파스쿠아법은 드브레에 의해 완화된 모습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드브레법(loi Debré, loi n° 97-396 du 24 avril 1997)은 불법체류자들을 인권존중의 입장에 비추어 시행하고자 한 법이다.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추방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까지도 처벌하는 등 비인간적인 법의 시행으로 파스쿠아법의 연장으로 간주되었다.¹⁵⁶⁾

쥐페가 총리였던 사회당 정부(gouvernement Alain Juppé)는 이민자의 입국보다는 이미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의 처우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불법으로 거주

있다(한명숙 2008: 161).

155) "Pour une politique de l'immigration juste et efficace - Rapport au Premier Ministre", 1997.

156) <http://www.regards.fr/article/?id=430&q=date:1997-04-01>

하던 많은 사람들이 ‘합법화조치(Régularisation, Circulaire du 24 juin 1997)’의 시행으로 합법적인 지위부여를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 영토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불법 체류자들의 가족들도 방문의 자격으로 프랑스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방문의 조건으로 유입된 이민자의 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 여성의 이민이 증가하고 가족 단위의 이민이 한층 더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8) 1998년 3월 16일 법(loi du 16 mars 1998)- 국적 취득의 조건 완화

베이의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1998년의 국적법 개정은 문화적인 폐쇄 경향을 보였던 1993년 법안에 비하여 외국인에게 실질적이고 혜택이 부여되는 호의적인 조건들을 다시 보완하였다. 이민자 차별에 반대하는 통합정책을 재정비하였고,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수정하였다. 사회당 정부는 이민자 차별 반대 정책을 폈다. 정치적 이슈를 ‘이민’에서 ‘차별반대’로 전환시키기에 애를 썼다(김민정 2007: 14). 베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자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강요된 의지선언의 폐지¹⁵⁷⁾라든지, 부모가 5년간 프랑스에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자녀의 국적취득의 조건이 되는 부모거주 조항의 삭제(23조항) 등의 완화된 조항이다.

또한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발부해 주었다. 북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중속주주의 권리의 복구 등 국적법에 있어서도 출생지주의로 회귀를 가져왔다. 이민자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는, 18세에, 프랑스에 일상적으로 거주했다면, 혹은 그것이 불연속적이라도 11세 이후 최소 5년 동안 거주했다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2조). 또한 16세 이상은 거주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간단한 선언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13세 이상은 8세 이후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살았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157) 32조

주었다(6조). 한편으로는 이 법안에서는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의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다. 법에 규정된 망명자들에게는 국적 취득을 보다 쉽게 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태생의 아이들에게는 이중속지주의 원칙을 재도입하였다.

4) 2000년대 이민정책의 강경화

(1) 2003년 사르코지 법(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à la nationalité)¹⁵⁸⁾

이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사르코지 법(La loi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 LSI ou Loi Sarkozy II)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범죄에 대항하는 치안(sécurité intérieure)에 대한 담론의 결과였다. 치안 부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투표로 확정된 '내부 치안 프로그램과 방향에 관한 법(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 LOPSI)'을 보다 더 확장한 개정안으로 이루어졌다.

(2) 2006년 7월 24일 법(Loi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

2005년의 소요사태로 프랑스 이민정책은 또 다시 변화를 맞는다. 프랑스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가져온 것이다. 이 법은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3월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민 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안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158) http://fr.wikipedia.org/wiki/Loi_pour_la_s%C3%A9curit%C3%A9_int%C3%A9rieure

프랑스에 10년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 이민은 장려하지만 가족이민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행정 당국에 의해 체류증 허가가 거절되면 프랑스 영토를 즉각적으로 떠나야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¹⁵⁹⁾

또한 장기 체류허가(*carte de résident*)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항이 나타났다.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는지, 프랑스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명 ‘사르코지 법(*loi Sarkozy*)’이라 불리는 ‘이민과 사회 통합에 관한 법안’은 이민에 대한 강경책과 이민 집단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치권 일부 및 사회단체들, 이민자 공동체 등의 반발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6년 6월 17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상원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당시 1974년 이래 중단되었던 노동이민이 다시 재개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선별적 이민(*l’immigration choisie*)’¹⁶⁰⁾정책이 도입되었다. “프랑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프랑스를 떠나라”, “우리는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르코지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다. 이 법안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프랑스어 능력시험의 도입과 추방에 관한 것이다. 또한 재학 중인 자녀들이 있는 불법 체류자 가족이 고국에 돌아갈 경우 커플 당 3,500유로, 아이 당 1,000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제시하는 조항도 눈에 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수년째 학업을 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까지 체류증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추방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¹⁶¹⁾ 이로써 좌파

159) 1998년 세벤느망법(*loi Chevenement*)에 의해 프랑스에 10년을 거주하였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 (“Sarkozy pour l’immigration choisie”, *Ouest-France*, 06 fév 2006. <http://www.contreimmigrationjetable.org/spip.php?article37>)

160) 2006년 이민법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바로 ‘선별적 이민’의 도입이다. 선별적 이민 혹은 ‘선택적 이민’으로 번역된다. 이민자가 이민 수용국가를 선택하여 정착하는 기존의 이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용국인 프랑스가 주체가 되어 이민자를 선별한다는 의미가 강하기에 선별적 이민의 용어가 더 적합하다. 예를 들면 이 법안에서 신설된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국위선양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연장 가능한 3년 기한의 체류증을 발급하는 조항이 있다.

정치인들 및 종교인들, 아프리카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불거져 나왔다. 사르코지 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선별적 이민’이란 ‘쓰고 버릴 이민(L’immigration jetable)’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선별적 이민과 성공적인 통합’을 주창하는 2006년의 이민법 개정안은 ‘가족 재결합 규정’, ‘국제결혼’, ‘체류증’, ‘외국인 학생’, ‘노동자의 선별’, ‘불법 체류자의 신분 합법화’, ‘영토 추방 명령’ 등의 사안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다음은 개정된 이민법의 사안별 변화이다.¹⁶²⁾

- ㄱ. 가족 재결합 규정 :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불러 오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간 합법적인 체류로서 최저 임금(SMIC)에 준하거나 상회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전엔 최근 1년이었음).
- ㄴ. 외국 노동력 수입을 재개한다.¹⁶³⁾
- ㄷ. 국제결혼 : 프랑스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3년 후에야 프랑스 영주권(une carte de resident)을 얻을 수 있다. 위장 결혼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된다.
- ㄹ. 체류증 : 체류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기 체류 비자가 반드시 요구된다. 프랑스에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은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안내 및 통합서식(contrat d’accueil et d’integration)’, 즉 ‘통합계약’이라 불리는 서식에 사인해야 한다.

161) 프랑스 정부는 2006년도에만 불법 체류자 2만 5천여 명을 본국에 송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들 불법 체류자 가정의 아이들을 소환 및 추방하기 위해 각 학교에 경찰이 직접 나타나는 장면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이내 “아이들에 대한 사냥”이라는 사회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7만 5천여 명이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http://www.oniva82.com/news/print.php?idno=1788>). 프랑스에 거주 중인 불법 이민자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40만에 이르는 불법이민자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발표되었다. (http://www.valeursactuelles.com/magazine/france/visu_france.php?position=0&nb=3&num=3621)

162) “De quoi s’agit-il?”, “Loi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http://www.vie-publique.fr/actualite/panorama/texte-vote/loi-du-24-juillet-2006-relative-immigration-integration.html>.

163) 노동 이민의 재개는 최근의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인력의 확보 차원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노동 이민의 재개는 관광, 건설, 계절노동, 무역 등 몇몇 직종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프랑스 공화국 정신을 준수한다는 서약과 함께 프랑스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의 발전에 이바지할 재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갱신 가능한 3년 연한의 체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ㄷ.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의 학업 계획서는 출신 국가에 의해 먼저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한해 이전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체류증을 준다고 법안은 설명하고 있다.

ㄹ. 노동자의 선별 : 고용주가 외국인을 원하는 분야들에서는 고용 계약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한 일 년 연한의 임시 체류증이 신설된다.

ㅅ. 불법 체류자의 신분 합법화 제도 폐지 : 1998년 세벤느망 법(loi Chevenement)에 의해 마련된 10년 이상 프랑스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자동 구제, 신분 합법화 조항이 삭제된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 합법화는 특정한 경우를 참작해서만 가능해진다.

ㅇ. 영토 추방 명령 : 행정부에 의해 체류증이 거부된 경우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의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애초 법안에서 15일이었으나 하원에서 1개월로 그 기간이 연장 확정되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추방 명령과정의 간소화(‘프랑스 영토를 떠날 것에 대한 권고’에서 ‘국경으로 강제 추방’) 및 10년 이상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자동 영주권 부여 관행의 폐지 등은 이민자 사회에 강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고 자녀가 프랑스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경우,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나 13세 이전에 프랑스에 온 경우, 자녀의 부모가 아이의 양육 교육비를 담당하고 있고 아이가 부모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고국과 더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경우에 신분을 합법화하는, 즉 국적을 부여하는 완화된 조항을 새롭게 내놓은 것도 있다.

(3) 2007년 11월 20일 법(loi du 20 novembre 2007)-선별적 이주정책의 시행

대선에서 승리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를 신설하였다. 이 부서를 통해서 선별적 이주정책, 가족 여부 검증을 위한 DNA검사, 불법 이민의 통제를 위한 단속쿼터제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안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loi du 2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l’asile)’을 통해 이민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즉, 가족 재결합 요건들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 유치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려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0년간의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던 이주민의 수가 감소하였고, 망명허가 역시 감소한다.¹⁶⁴⁾

(4) 2009년 유전자 법안 통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DNA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전자(DNA) 법안(Test ADN-Test de paternite en France)’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반 인종차별단체들이 ‘반인권적 처사’, ‘나치 망령의 부활’이란 비난과 시위를 하였다. DNA 검사가 나치 시절 비시정권의 우생학 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물학적 가족으로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지적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전자 법안은 ‘착한 이주민’과 ‘나쁜 이주민’을 구별하는 시도여서 위험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선별적 이민정책의 법안에 상정된 유전자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또한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로 이민을 신청하는 자는 프랑스 최저임금의

164) www.interieur.gouv.fr

1~1.2배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재정 요건도 포함되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출신의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노골적인 차별이 될 위험이 소지가 많은 것이다. 프랑스는 또 한 번 새 이민 법안으로 ‘이민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였다. 사르코지 정부의 의도는 여러 번의 수정에 걸쳐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불법이민의 근절을 핑계 삼아 이민의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여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하려 한 것이다. 유전자 법안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시절부터 시행하고 제안해 온 강력한 반이민정책들의 결정판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국적법에 관한 프랑스의 기본 원칙이 일관적인 가치나 의미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기에 사실상 어렵다. 표면상으로는 속주주의에 의한 국적 부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국적법의 개정 과정들을 살펴본 바대로 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국적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존재하는 원칙의 적용은 없었다. 프랑스는 정치적인 이용이나 국가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민자를 보아왔었다. 논란이 되고 개정을 해 왔던 국적법의 흐름은 지극히 프랑스의 입장에서만 고려된 것이다. 1927년도의 법에서 나타나듯 3년만 거주하면 국적을 허용하거나 또는 국적취득을 위하여 의지선언이라는 법적 카테고리가 그러하다. 이민자들에게는 국적법이라는 틀로서 자신들을 묶어매는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실로 기만으로 비취질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인’의 근대개념에 묻혀있는 연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었다. 이러한 성질의 민족과 국민의 개념은 국적법의 논란과 개정을 통하여 구성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프랑스의 국적법의 흐름에 따른 이민자 정책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이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¹⁶⁵⁾ 그러나 그 반면 프랑스 사회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가 다른 이질적인 정체성

165) 특히 히잡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2004)’ 이후 프랑스의 강경한 이민자 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요구하는 이민자 집단과의 마찰로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파 정당의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은 이민 정책의 단호함은 여전히 이민자 집단-특히 무슬림 집단-과 프랑스 정부 간의 대립이 불씨로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프랑스인과 동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이민의 성격¹⁶⁶⁾에 따라 이민자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존속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질 부분도 있다. 어쨌든 그것이 가치의 논리이건, 인구정치의 논리이건, 경제적 논리이건간에 프랑스 특유의 이민자 동화정책으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으로의 완성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이민자에 대한 통합의 노력을 고스란히 국적법의 흔적에서 배제와 포용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5. 사회통합의 원리: 동화주의

프랑스 인구 구성에 이민이라는 요소는 항상 존재하는 상수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인구를 프랑스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공화주의의 원칙아래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통합의 표시가 국적취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⁶⁷⁾ 프랑스 정부에 이민에 관한 문제들을 조언하기 위하여 1989년에 출범한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가 내놓은 프랑스 통합모델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통합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문화적 특수성은 사적영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룹의 권리, 차이에 대한 공공의 인정은 확보될 수 없다.
- 통합과정의 정점은 프랑스 국적의 획득이다: 시민권 획득은 상대적으

166) 이민의 성격은 노동이민에서 이주 이민으로, 경제적 이민에서 사회적 이민으로, 독신 이민에서 가족 단위의 이민으로, 임시체류 이민에서 항구적 영구 정착의 이민으로 변화해 왔다.

167)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Pour un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p.18-19: 한명숙(2009: 164-165)에서 재인용.

로 개방되어 있다. 역으로, 국적과 시민권을 분리하는 개혁은 권고되지 않는다. 가령, 지방자치 투표권의 확대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은 권고되지 않는다.

- 통합은 평등의 개념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정책은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와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⁸⁾

최고 위원회는 통합의 목적에 대하여 “통합은 모든 사회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결속이 보장되도록 (...) 문화적 특수성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채택한 통합모델의 기본 원칙은 동화주의의 합법화이다.

프랑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은 동화나 적응사이의 중간 단계의 길이 아니라 프랑스만의 특수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에는 톨레랑스의 가치나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적인 통합 개념은 소수자의 존중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개인의 평등원칙이라는 가치와 논리가 따른다. 이 개념은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한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공화국 통합 모델, 즉 동화주의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이민자와의 갈등을 부추긴 주원인이 된다.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본질은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국 내에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수집단에 대한 공동체성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적 양식은 단일하고 유일의 정체성을 가진 공화국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민담론이 프랑스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박단 2007: 39). 따라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거센 문화적 권리요구는 무슬림 공동체의 형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 갈등의 증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168) 박단 외(2009: 37-38)

1) 동화주의 정책의 기원: 하나의 프랑스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이민자 정책은 공화주의를 통한 동화정책이다. 즉 프랑스 특유의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이다.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변화하지 않고 이민자 정책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논리는 ‘공화주의(républicanisme)’이다.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외국인 이민자들은 프랑스에 살기 위한 조건으로서 프랑스 국민으로서 통합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이미 구성된 공동체 집단에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에게 동화는 이민자의 국가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당연하게 프랑스가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동화의 노력과 결실이다. 그러한 조건에서 프랑스는 공화국의 기본 이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삶을 프랑스 영토 내에서 국가로부터 보장받는다. 평등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은 인종적,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 또한 개인들이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을 때 프랑스인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공화국 이념으로 대표되는 자유, 평등이 정신은 1946년 제 4공화국 그리고 5공화국 헌법 전문에 구체화되어 있다.

“프랑스는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기원,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앙을 존중한다.”¹⁶⁹⁾

169)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화국(une République indivisible)’이란 프랑스 공화국 하나의 정체성만 인정한다. 프랑스 공화국 존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 내용이나 모습이 지고하거나 숭고한 가치를 가지던 간에 외부의 어떠한 정체성도 공화국이 가진 단 하나의 가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공화국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이질적이고 다른 정체성은 함께 존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오직 국민국가의 중앙집권화, 지속성 그리고 통일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공화국만이 국민통합을 위한 최상의 존재 방식이다. ‘공화국과의 다름 권리’는 헌법에서 프랑스의 영토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프랑스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가치도, 집단도,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어떠한 정체성도 용인을 하지 않고,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적법성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적 요소들을 동화과정을 통하여 프랑스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관,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게 변형시키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스스로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공화주의 대원칙이 이민자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2) 세속주의 공화국(République laïque)- 라이시떼

프랑스에서의 국가와 교회의 배타적 관계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성을 사용할 능력을 가진 철학자들에게 종교는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어서,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배제하였다.¹⁷⁰⁾ 이러한 종교를 배제하는 인식의 흐름이 정교분리원칙으로 나타난 것은 프랑스 혁명이다. 1790년 프랑스 헌법은 계몽운동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사상을 내포하였는데, 교회가 국가 정치와 정부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였게 명시하였다(강휘원 2007: 257).

프랑스에서는 1905년에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위한 법(Loi relatif à la sépa

170) “참된 도덕의 원리들을 배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신학, 계시, 또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이성만을 필요로 한다.” Paul F. Scotehmer, “Church and State in Western Christendom: an Historical Typology”, *Christian Scholar's Review* XI, 1981, p.57. 강휘원(2007: 257)에서 재인용.

ration des églises et de l'Etat)¹⁷¹⁾이 태동함으로써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이루게 된다. 이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교육에 대한 가톨릭의 영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를 교권주의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19세기 말의 공화파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1882년 3월 28일에는 법의 시행으로 의무 교육과 교육과정의 세속화가 제도화되었다. 그 후에 교사들의 세속화까지 이루어 내게 된다. 1886년 10월 30일에 “모든 분야의 공립 학교에서 교육 종사자는 전적으로 라이크(laique), 즉 성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된다”라는 법적 규정이 명시되었다(박단 2005: 91). 교육은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나 교권주의자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공화주의자들의 굳건한 이념이 제도화된 것이다.

계몽주의를 계승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 특히 공화국 가치의 견습장으로써 학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은 근대적 국민교육의 이념을 공론화시켰고 또한 제도화시켰다. 1792년 콩도르세에 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 무료교육, 학교 내 특정 종교 교육의 불허용 등이 그것이다. 그 후 제3공화국의 질 페리는 콩도르세의 이념을 이어받아 학교를 세속화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적 기틀을 만듦으로써 공화국의 이상을 학교에서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프랑스 공화국이 확립되기까지 정교분리원칙과 학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 총리였던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는 “학교는 다른 곳과는 다르다. 이곳은 우리의 어린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우리 사회에는 3개의 주축이 있는데 그것은 라이시테(laicité), 공화국 그리고 학교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3개의 다리다”라고 강조하였다(지규철 2009: 36). 즉 라이시테는 공화국과 분리될 수 없는 원칙이고 그 핵심이 교육영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근대적 공립

171) 정교분리법(La loi de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은 1905년 12월 9일 사회당 의원인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이전 25년 동안 지속되면서 프랑스를 양분하였던 두 개의 프랑스, 정부와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던 성직자 프랑스(la France cléricale)와 공화주의적이며 세속적인 프랑스(la France républicaine et laïque) 간의 격렬한 대립을 종식시켰다. 따라서 이 법으로 1801년 제정일치의 체제(le régime du concordat de 1801)를 대체하게 되고, 20세기 이후의 프랑스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형성한다.

학교는 정교분리원칙과 더불어 탄생했으며, 정교분리 원칙 역시 근대 교육제도에서 비로소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라이시페 원칙은 통상적으로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결합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라고 해석되어져 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라이시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자유,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화국의 원리가 라이시페와 결합되어 민족, 종교 등을 초월한 모든 시민의 통합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도 규정되었듯이 국민통합과 라이시페는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다. 공화주의의 보편적·이상적 가치 하에서 비종교적인 학교 교육으로 공화국의 모든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하기 때문에 공화국의 성역인 것이다(지규철 2009: 36). 비록 현재에는 당시의 세속화의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성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속화와 문화적 권리를 내세우면서 종교적 자유의 싸움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 학교를 중심으로 무슬림의 히잡 사건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위한 법’이 채택됨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종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공화국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프랑스 공립학교와 정교분리 원칙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 사회에서 히잡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민자의 문화적 권리문제의 핵심적인 논란으로 부상하였다.

3) 국민국가(Etat-nation)

프랑스에서의 “민족은 영혼이고 정신적인 원리이다(...) 하나는 과거 속에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 있다. 하나는 풍부한 기억의 유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동의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이며 개인이 받은 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이다.”¹⁷²⁾ 르낭의 이러한 민족에

172) Ernest Renan, *Qu'est-ce qu'une nation?*, 1882

대한 정의는 프랑스의 민족 개념과 국가의 정의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르낭의 역사적인 이 문구는 외국인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발적인 의지와 자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프랑스의 이민자 국민통합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민자 담론이나 정치에 있어서도 오늘날 이민자의 동화 정도를 르낭의 글을 통해 의심의 기준을 삼는 잣대가 되었다. 르낭의 텍스트는 프랑스식 민족주의를 생산해 왔으며, 프랑스 민족을 정의하고 유지시키는 최고의 상징성을 갖는 유산이라 볼 수 있다.

흔히 프랑스가 국민국가를 형성한 과정은 종족적 혈통에 기초한 독일적인 경로와는 달리,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관한 프랑스적 모델은 프랑스 혁명기의 담론에서 유래하였다. “당신은 국민 편인가?(Etes-vous de la Nation?)”라는 문구는 1789년 국민 방위군의 암호였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공화주의 혁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이념을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기에 공화주의 시민이 된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유대인을 비롯하여 유색인, 노예 등 그 누구에게도 프랑스인의 자격을 개방하였다.

외국인에게도 국적을 개방하고 시민적 자유를 공유한다는 보편주의 이념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적인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핵심적인 특성으로 인식된다.

4) 평등한 국가(l'égalité devant la loi)

프랑스가 이민자의 통합의 논리에 적용하는 프랑스적 가치 중 하나는 평등에 기초하는 보편주의 원칙이다. 헌법의 전문에서 보듯이 “프랑스는 기원,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한다(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는 것이다. 프랑스의 인권자문위원회는 이를 ‘프랑스의 통합 개념은 반드시

소수자의 논리가 아니라 평등의 논리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기초하여 재천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통합모델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소수자들에게 일정한 배려를 하여 그들의 사회적 진입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없다. 예를 들면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라든지, '긍정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이라는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분류되는 소수집단만을 위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아예 이러한 소수자 집단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 시기 사회당 정부는 이민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 문화의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원적이고 탈중심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아랍어 수업과 이민자와 소수집단을 위한 기금마련, 교육취약지구(ZEP)지정 지원프로그램 등 권익보호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소수집단을 위한 제도적 배려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처음부터 동일한 출발선에서의 경쟁은 분명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프랑스의 가치와 원칙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담론에 간혀 오히려 사회적 약자, 이민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IV.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와 갈등

1. 사회적 배제의 의미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라는 개념이 대두된 것은 1970년대 경기침체의 시기에 실업이 장기화되고 감소하던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면서이다. 프랑스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¹⁷³⁾은 1980-90년대 유럽연합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러면서 각 국가의 사회 일반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자리 잡으면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의미는 경제구조에 따른 빈곤의 양상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되었다. 빈곤과 장기적 실업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겪는 사회적 어려움 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틀로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르네 르노와르(René Lenoir)¹⁷⁴⁾가 제시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외연적으로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즉 당시 프랑스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하며, 빈곤과 실업은 경제 성장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빈곤과 실업의 구조화에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만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르는 결과물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족제도의 불안,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의 요인들이 위기의 사회를 재생산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173) 1974년 시락 정부의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네 르노와르(René Lenoir)는 『배제된 자들, 10명 중 1명이(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éd. du Seuil (1974), collection Points Actuels)라는 그의 책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중독자, 문제 가정 등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les exclus)’이라고 범주화하고 프랑스 인구의 약 10%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강신욱 2006: 11).

174) Secrétaire d'État à l'action sociale du 8 juin 1974 au 31 mars 1978.

(빈곤이나 실업)로도 포착되지 않는 집단들, 소외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들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적 맥락에서는 사회적 배제란 비숙련 노동자나 이민자들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들, 사회로부터 고립된 1인 가구, 노숙자 등이 경험하는 개인과 사회와의 단절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는 정의된다. 다음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포괄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⁷⁵⁾

- ㄱ. 사회적 배제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또한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그대로 두면 사회적 기본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이 중 구조 사회기 나타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ㄴ. 사회적 배제란 실업, 미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나쁜 건강 상태, 범죄율이 높은 환경, 가족 붕괴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고통 받는 개인이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 ㄷ.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한 사회에 거주하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 시민으로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ㄹ. 사회적 배제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당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주로 빈곤과 저소득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 낮은 교육 수준, 척박한 생활환경 등에서도 비롯된다.
- ㅁ. 사회적 배제란 빈곤과는 달리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부인당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예컨대 사회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사회적 참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총괄될 수 있다.

이상의 정의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원초적으로 빈곤에 대한 개념에다 사회와 개인 혹은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주류문화와 소수문화 간 등의

175)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의 내린 개념이다. 강신욱의 논문(2006: 15)에서 발췌·인용하였다.

단절, 고립, 소외, 차별, 배제를 통한 ‘필요한 자원에 대한 결핍과 박탈’이라는 모든 사회적 양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역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빈곤은 실업을 유발하며, 실업은 가난을 만든다. 또한 가난과 배제에 의한 빈곤은 다시 배제된 자에 의해 심리적(정서적)이거나 물리적인 다양한 사회 현상을 잉태함으로써 반복되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시간을 걸쳐 나타나는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고립을 통해 ‘경계 밖으로 추방(marginalization)’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양극화나 갈등으로 사회적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회적 배제의 정의에서 그리고 그 반작용의 사회 현상으로서 프랑스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이민자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도 엿볼 수 있다. 이민자는 빈곤이나 실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종 소요사태는 그러한 배제의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30년 전에 전 세계 국가들 중 처음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과연 오늘날에도 프랑스에서 배제된 자들의 역사는 반복되는지,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형태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과 주거 등의 분야에서 접근해 볼 것이다.

2. 종교와 정체성

세계정치는 문화와 문명에 따라 재편되며, 가장 전파력이 크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다. 현대 세계에서 다른 정체성들에 비해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 간의 교류가 이전의 시대보다 월등하게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즉 이질적인 문화 간 대면하는 순간에 ‘나’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는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정체성의 본질은 그 순간에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문화적 동질성은 사람들의 결속과 응집을 낳고 문화적 이질성은 반목과 갈등을 낳는다. 보이는 수준, 직접 마주 대하는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헌팅턴의 지적(헌팅턴2005: 168)처럼 한 사회 내부에서 일상생활처럼 마주치는 ‘타자로서의 이질성’은 ‘내가 구성하고,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물질 같은 느낌으로 와 닿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주류집단으로서의-와 같은 수준의 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비이성적이며 민주적이 아닌 타자들의 존재는 그들에 비해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우월감을 갖는다.¹⁷⁶⁾ 한편으로는 세련되지 못하고 문명화되지 못한 이들 ‘야만인’들에 대하여 갖는 원초적 두려움조차 동시에 갖는다.

권력을 장악한 우월적 지위의 주류 집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 제도에다 상이한 문명의 배경을 가진 소수자들을 문화와 제도적으로 융해시키려는 일련의 노력과 정책들을 시행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가공되는 담론은 이민자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이주민들은 동화를 원하지 않는다. 즉, 이질적인 정체성(들)은 제도권의 문화와 일치하지 않으며,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민자 담론의 형성된다. 근대 국가에서 민족의 실체는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라 하였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민자 관련 의 논쟁은 그것으로써 이미 정치화되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서유럽에서 히잡 사건은 이러한 총체적인 이민자 담론에서 문화

176)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는 통상 자기 집단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전통적으로 서구의 제국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한경구는 자민족 중심주의란 오직 자신의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 자신들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해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 설명한다. 그는 19세기 유럽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사상가들조차도 서구 문명은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였으며, 미개인의 사고는 서구의 어린 이들이나 정신지체자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한다(한경구 1997: 212-213).

적 권리 요구에 따른 국가 주도의 배제 혹은 통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히잡 논쟁과 그에 따른 히잡 착용에 관한 법 제정의 살펴봄으로써 공화주의 국가 프랑스가 히잡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히잡논쟁과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

2003년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¹⁷⁷⁾안 작성을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듬해 2월 프랑스 하원에서, 3월에는 상원에서 여야 의원들 대다수의 찬성으로 법안은 채택된다(박단 2005: 87). 첫 히잡사건은 1989년 10월 파리근교 크레이(Creil)시의 가브리엘-아베 드 크레이 중학교(Collège Gabriel-Havez de Creil)에서 발생하였다.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은 후, 13~14년 만에 일명 ‘히잡 금지법’의 제정된다. 그럼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던 프랑스인과 무슬림 이민자 간의 문화적 갈등 논란과 논쟁은 제도적으로 일단락된다. 공공기관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프랑스 공화국의 입장이 법의 제정으로서 정립된 것이다.

히잡금지법은 공립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종교를 드러내는 상징이나 의복을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4년 9월부터 프랑스와 해외 프랑스령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무슬림 이민자 간의 문화간 갈등, 종교간 갈등으로 야기되어 문화전쟁이라 일컫는 ‘히잡 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¹⁷⁸⁾

177) 이 법안은 2003년 초부터 정치권과 주요 언론에서 추진한 바 있는, 학교와 병원, 정부청사와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 무슬림의 히잡착용을 금지시키는 캠페인을 좇아 입안되었다. 학교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히잡 착용을 금지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정교 분리 원칙의 적용에 있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적 외양을 드러내는 옷이나 상징물의 착용을 포괄하는 2004년 3월 15일 법’(Loi n.2004-228 du 15 mars 2004 encadrant, en application du principe de laïcité, le port de signes ou de tenues manifestant une appartenance religieuse dans les écoles, collèges et lycées publics)이다. 일명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 또는 ‘2004년 3월 15일 법’이라 한다. 이 법의 의도성을 비하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히잡 금지법’이라 한다.

(1) 1989년의 히잡 사건

히잡사건(l'affaire de Hijab)은 반 이슬람 정서, 반 프랑스 정서 표출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화마찰의 상징성을 갖는다. 1989년 첫 발생한 히잡 사건은 크레이 시(市)의 중학교에서 발생하였다. 무슬림 여학생 세 명이 수업 시간에 히잡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였다. 표면상의 이유는 단순하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세속주의에 원칙을 둔 공화국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¹⁷⁹⁾ 그 후 교실 안에서만 히잡을 벗는 조건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 올 수 있었지만, 다시 이 문제는 언론들과 종교계, 정치계의 관심으로 확대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여학생들의 변론을 맡은 베르제스(Jacques Vergès) 변호사와 학교 교장 사이에 히잡의 문제 이외에 새로이 부상된 인종차별 문제로까지 전개되었다. 가톨릭 종교계의 반발과 SOS-Racisme의 엄격한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비난 등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결국 11월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은 국가자문위원회(Conseil d'Etat)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학생들의 히잡착용이 종교적 의미를 띠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수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정교분리원칙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¹⁸⁰⁾이다. 그러나 몇 개월 후 1990년 노용에서 다시 발생한 세 명의 히잡 여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는 국가자문위원회의 이러한 원칙과 결론

178) 라이시페의 원리와 히잡사건과 관련된 정치권의 판단, 재판 판례, 비종교적 교육 등은 지규철의 논문(2009)에서 상세하게 잘 분석되어 연구되었다.

179) 1989년 9월 18일, 여중생인 파티마(Fatima), 레일라(Leila) 그리고 사미라(Samira)는 에네스트 셰니에르(Ernest Chénier) 교장에 의해 퇴교를 당한다. 이 학교에는 25개 국적의 876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 무슬림은 500명이 있었다. 이슬람 히잡은 공공 학교의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교장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이다 : "우리의 목적은 문화적 혹은 종교적 모든 외양이 지나치게 외향적인 것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그들이 학교의 세속적인 성격을 존중하기를 설득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fr.wikipedia.org/wiki/Voile_islamique)

180) le port du voile islamique, en tant qu'expression religieuse, dans un établissement scolaire public, est compatible avec la laïcité, et rappelle qu'un refus d'admission ou une exclusion dans le secondaire «ne serait justifié que par le risque d'une menace pour l'ordre dans l'établissement ou pour le fonctionnement normal du service de l'enseignement». (http://fr.wikipedia.org/wiki/Voile_islamique)

을 여기게 되면서 지속적인 히잡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된다.¹⁸¹⁾

히잡사건은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며, 두 문명 간 문화 충돌을 알리는 서곡이며, 이민을 정치화한 논쟁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9월에 처음으로 히잡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언론에 의한 여론 형성에 의한 측면이 크다. 첫 히잡 사건의 이전에도 히잡을 착용하고 다니던 무슬림 여학생들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들이나 종교계, 지식인들 그리고 히잡을 착용한 당사자들 역시도 히잡착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히잡착용은 단지 무슬림 이민자들의 전통의복에 맞닿아 있는 문화적 전통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였다.

새로운 상황으로 발전한 것은 1989년 6월 중순 경이다. 크레이의 첫 히잡 사건이 있기 3개월 전부터 프랑스의 언론은 ‘학교에서 차도르를 쓴 여학생들(les filles qui portent le Tchador à l’école)’에 대해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르 꼬띠 디앙(Le Quotidien)지의 특파원인 지슬렌 오펜하이머(Ghislaine Ottenheimer)가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는 세속화 원칙을 주장하는 학교 교사들과 무슬림들의 전통 의복의 착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양쪽의 논쟁과 대립을 보여주는 “통합의 제 문제점들(Tout le problème de l’intégration)”이란 글을 실었다. 사회적 이슈로 세속주의, 히잡, 통합, 무슬림 등의 용어가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몇 년 앞서 1985년 10월 26일자의 르 피가로 마가진(Le Figaro Magazine)의 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안느(Marianne)에 차도르를 입힌 사진을 잡지의 표지에 게재하면서 “30년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프랑스인일 것인가?(Serons-nous encore Français dans 30ans?)”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 기사는 즉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

181) 교사들은 국가자문위원회의 마지막 구절을 구실 삼아 학생들의 히잡착용을 반대하였다. 즉, “교사들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수업)과 학교의 질서를 위해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시(par le risque d’une menace pour l’ordre dans l’établissement ou pour le fonctionnement normal du service de l’enseignement)”이다. 위원회 판단의 이러한 문구는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의 모호한 상태로 되어있어서 히잡 금지를 요구하는 학교나 교사들의 히잡 여학생들의 퇴학조치라는 빌미가 된다.

었다. 신문기사는 무슬림의 위험성이 프랑스 내부에 극도로 달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무슬림에 의한 프랑스 정체성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였다.¹⁸²⁾ 그러자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이민자를 다루면서 사회제의로 부상시키고 이민자 집단은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야기되었다.

1989년 10월 1일자의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 역시 눈만 내놓은 채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는 차도르를 입고 있는 젊은 여인을 표지로 내세우면서 “광신, 종교적 위협”이라는 부제를 달았다(박단2005: 179). 프랑스 수아(France Soir) 역시 1989년 11월 2일자에 프랑스의 이민자 인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비용과 높은 출산율¹⁸³⁾ 그리고 범죄율에 대해 언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부쩍 증가한 외국인 이민자의 숫자에 대하여 언론들이 부정적 견해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언론들은 종교적 광신의 표현, 동화에 소극적, 이슬람 공동체주의의 상징으로서의 히잡을 공격하면서 반 이슬람에 대한 정서적 여론을 형성

182) 이 기사에는 북아프리카 이민의 출생률 추이를 나타내면서 2015년까지 520만 명의 프랑스인 감소하고, 그 수만큼의 이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다.

183) 1999년도의 조사 수치를 보면 이민자 가정의 경우 많은 아이를 출산한다. 세 명이나 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보면 비이민자 가정의 경우 약 열 가구 중 한 가구만이 해당되지만, 이민자 가정의 경우에는 1/3이나 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 기혼 여성 당 평균 2.4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터키의 경우 각각 2.7명, 2.8명이라는 수치로 이민자 그룹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이러한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프랑스는 이웃나라(이탈리아, 스페인 각1.2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가진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6명 또는 1.8명이다. 또 한편으로는 높은 출산율을 가지는 여성들은 가장 낮은 교육 수준에 있는데, 이민자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p.58-64, www.insee.fr)

한편으로 프랑스가 우려하는 것은 또 존재한다. 바로 외국인 이민자와 혼인하여 이루어진 혼혈가정의 출산율이다. 다음은 프랑스인 부부, 외국인 부부, 혼혈가정의 출산율을 비교한 표이다.

결혼의 형태	출생자녀 수		신생아 증가 수	증감비율
	1998년도	2004년		
부부 두 사람이 프랑스인	631,000	628,100	-2,900	-4.6
두 사람이 외국인	49,200	55,700	+6,500	+13.2
혼합 가정	57,900	84,000	+26,100	+45.1
프랑스 내 합계	738,100	767,800	+29,700	+4.1

출처 : http://www.fr.wikipedia.org/wiki/Population_fran%C3%A7aise (검색일:2009.10.5)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혼혈가정의 출산율 증가는 가장 높은 비율의 증가세를 보여준다. 2004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139,700명의 신생아는 부모 둘 다 외국인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한명이 외국인이었다. 프랑스 전체 신생아 비율의 18.2%를 차지한다.

하였다. 프랑스 문화에 순순히 동화를 하는 대상으로서의 이슬람이 아니라 항상 프랑스 사회에 내재적이고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의 요인으로서 이슬람과 무슬림을 이미지화했다.

1989년 히잡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이민자 문화, 종교 등이 사회의 쟁점이 되자, 리오넬 조스팽은 이러한 대 무슬림 인식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풀려져 과장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프랑스의 언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¹⁸⁴⁾ 결국 언론은 히잡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또한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인구의 대규모 이주와 프랑스에의 영구적 정착을 프랑스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으로 부각시켜(박단 2005: 103), 무슬림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자극한 결과이다. 이처럼 히잡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표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슬람 이민자들의 소극적 동화에 대하여 사회적 불만을 형성하는 역할을 언론이 주도하였다.

(2) 그 외의 히잡 사건들과 국가 자문위원회의 판결

이 사건 이후에도 히잡 사건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 이슈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 1월에도 노용의 파스퇴르 중학교(collège Pasteur de Noyon)에서 세 명의 여학생이 퇴학을 당하였고, 가브리엘-아베즈 중학교(collège Gabriel-Havez)에서도 여중생들이 같은 이유로 퇴학을 당하자 학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교장을 고발한다. 이러한 사건이 지속되자 낭뛰아(Nantua)의 한 중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이슬람 베일(voile islamique)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¹⁸⁵⁾

184) 1989년 제 2방송의 인터뷰(JT de 20heures, 17 octobre 1989) : “학교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쫓아내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언론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머리에 히잡을 쓴 소녀가 학교에 다닌다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국가적 문제를 만든다면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http://www.ldh-toulon.net/spip.php?article3466>. 검색일 :2009. 8.20.)

185) 실제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단지 종교적 상징물의 착

그러자 두 번째로 국가 자문위원회는 첫 번째 판결과는 달리 이제는 ‘공공학교에서의 세속주의 원칙(le principe de la laïcité dans les écoles publiques)’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1994년 9월, 교실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수수한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복장(symboles discrets)’과 공공기관에서는 금지되는 ‘보란 듯이 드러내는 종교적 복장으로서의 상징(symboles ostentatoires)’의 차이점을 다루는 ‘바이루 안(circulaire Bayrou)’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망트-라-졸리(Mantes-la-Jolie)에서는 교실에서 히잡 착용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생텍쥐페리 고등학교(lycée Saint-Exupéry)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11월 24명의 이 학교 여고생들이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다. 파리의 북쪽 도시인 릴(Lille)에 위치한 페테르브 고등학교(lycée Faidherbe)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에서 히잡 착용에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되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히잡 착용 여학생의 두 명 중 한명 꼴로 퇴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1994년부터 2003년 까지 약 100여명의 공립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학되었다.

학교 밖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2000년 한 학교의 여성 수위가 히잡 착용의 이유로 직무정지를 받았고, 2001년 3월에는 히잡 착용의 여성이 해고를 당하였다. 2002년 7월에도 달릴라 타리(Dallila Tahri)라는 여성이 히잡 착용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2003년도에는 근무처에서 히잡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실직하였고, 2004년에도 무슬림 여성 경찰관의 히잡 착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대부분 히잡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기업 내에서는 사적인 갈등의 측면으로 보면서 히잡착용은 개인의 형식적인 문제라며 신앙의 자유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 판결의 경우에는 공적

용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 수업의 거부나 무단결석 등 다양한 종교적 행위로 번지는 것이다. 무슬림 여학생들은 생물수업은 비도덕적이며, 체육수업과 수영수업을 거부하고, 음악수업은 사탄과의 내적소통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방해하곤 하였다. 가톨릭이나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 여학생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만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박단 2005: 93-94).

자가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부착할 경우, 이는 분명 공화국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가치인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명백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고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박단 2005: 67-68).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인하여 히잡 소송이 복잡해지고 각 경우의 수마다 재판의 결정이 다른 결과들을 초래하자,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 사회는 정교분리원칙의 옹호와 개인의 신앙의 자유 혹은 퐁레랑스라는 명분을 두고 국민들이 양분되었다.

그렇다면 정교분리 원칙 혹은 여성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히잡 착용을 학교에서 금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통합의 방편으로서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히잡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의 의미와 프랑스가 바라보는 히잡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2) 히잡의 상징: 저항과 공동체주의

이슬람 여성의 의상의 일부로 간주되는 히잡(hijab)은 다양한 형태와 착용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제각기 다르며, 명칭 또한 다르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제각각의 특수성을 가진 히잡을 단순하게 베일(veil, voile)이라는 명칭으로 공격성과 추방의 대상이며, 낙후성의 상징, 반 인권적, 반 페미니즘적인 상징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히잡은 서구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권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원천에서부터 사회,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 알제리 독립전쟁과 70년대 이슬람 운동, 팔레스타인의 인티파타(intifadah)동안 히잡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이며,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베일(veil)이 이슬람이 내려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문명에 존재하던 문화적 관행이었다면,¹⁸⁶⁾ 히잡(hijab)은 단어의 기원(hajaba)에서 ‘장막, 커튼, 은폐’

를 의미한다. 이슬람 여성의 히잡 착용의 의무에 대해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꾸란이나, 하디스의 어떤 법령에도 명령한 적은 없다. 다만 꾸란의 24장 30, 31절에 나타난 정숙과 순결을 요구하는 이슬람식 복장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¹⁸⁷⁾ 이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슬람 문명에서 히잡은 시야에서 가린다는 시각적이고, 분리하는 공간적인 의미, 그리고 금지를 나타내는 도덕적 의미까지 포함한다. 무함마드는 어려운 시기에 무슬림 공동체의 질서와 교양을 위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그리고 신성한 장소와 불경스러운 장소를 구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조희선 2001: 110). 그럼으로써 히잡은 1970년대 이집트의 이슬람운동¹⁸⁸⁾의 영향으로 인한 종교적인 사람들의 전통적인 모습, 보수적인 모습으로 재발견과 함께 서구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반 식민주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기제로 떠올랐다.

저항의 도구로서의 히잡은 알제리 독립전쟁 중에 형성되었다. 프랑스는 여성의 히잡을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규정하였고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남성문화에 억눌린 이슬람 여성의 히잡을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의 의도에는 식민지의 사회 개종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히잡이며, 히잡을 벗기는 데에서 동화의 의미를 규정하려 했다. 알제리 여성의 히잡을 벗긴다는 것은 탈(脫)남성, 탈불평등 그리고 프랑스화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 여성의 히잡이 식민지 전략에서 근절시켜야 하

186) 베일과 히잡의 유래에 대한 자료는 조희선의 논문(2001)을 참조하라.

187) “믿는 남성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할지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라”(꾸란24:30),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희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꾸란24:31)

188) 1967년 이집트의 제 3차 중동전쟁의 패배와 제 4차 중동전쟁의 승리에서 이슬람 운동이 일어난다. 67년 전쟁은 이집트인들에게 좌절,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이는 도덕적 타락에 의한 신의 응징이라고 종교적 해석을 내린다. 4차 중동전쟁의 승리는 라마단 달에 일어난 것이어서 종교적 의미에 무게를 두며 이슬람적 전통과 보수에 회귀하는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슬람 운동에서 의상은 중심적이고, 상징적이며, 의식적인 정치적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1970년대 이란과 터키에서 이슬람식 전통의상을 강제하면서 서구식의 세속적인 의상을 대체하면서 의상 그 자체가 민족, 민중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는 제 일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알제리인들은 무슬림 여성의 히잡 벗기기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식민주의 전략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복장에 불과했던 히잡은 식민주의의 공격을 받으면서 알제리 민중에게 저항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결국 히잡 착용은 무슬림들에게 있어 반(反)서구와 식민주의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이슬람 정체성의 유지라는 새로운 기의(signifié)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린 무슬림 여학생들에 의해 착용되는 히잡에도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는 히잡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왜 젊은 여성이거나 어린 여학생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딸이 프랑스에서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히잡 착용을 반대한다.¹⁸⁹⁾ 이민 1세대들은 히잡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은 전통을 따르더라도 자녀가 히잡 때문에 편견과 차별 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2·3세대들은 자발적으로 착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 의지는 정체성이 혼란기에 있어 저항의 기체로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일 수 있다.¹⁹⁰⁾ 그렇지만 프랑스인이 히잡에서 저항의 상징을 추출해내듯이 전적으로 히잡 착용이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에 소극적이며 선동적이며, 반사회적인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앞서서도 보았듯이 이들은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성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⁹¹⁾

189) 히잡을 반대하는 어머니에 대한 글은 이기라·양창렬 외(2007: 150-153)의 “히잡을 벗은 어머니와 히잡을 쓴 딸: 비레트 아이콘의 해체”에서 읽을 수 있다.

190) 젊은 무슬림들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프랑스인인가, 알제리인인가? 내가 프랑스인이라면 나는 왜 조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다. 히잡 착용에 대한 무슬림 어린 소녀들의 입장은 박단의 책(『프랑스의 문화전쟁』, p.60-65, 2005)에 리베라 시옹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실려 있다.

191) 히잡이 공화국을 위협하는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공화국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후로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오영주(2007: 494)는 히잡이 공화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화국의 위기가 히

2004년 3월 15일, 프랑스 내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착용으로 야기된 히잡 논쟁은 ‘종교적 상징물 착용금지법’으로 거친 논쟁의 막을 내리고 제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이 법의 근거는 정교분리원칙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어떻게 보면 1905년의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위한 법(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의 세부적 시행규칙의 하나로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1905년 정교분리법의 제 1조는 “국가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이다. 제 2조에는 “공화국은 그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종교에 대해 보상하거나 후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었다.¹⁹²⁾

프랑스가 2004년 법을 제정한 근거는 바로 제 1조의 해석을 따랐다. 즉 종교적, 철학적 신념과 무관한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심화된 형태의 공동체주의적 요구와 차이를 주장하는 선전·선동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해석이 도출되었다(박단 2005: 89). 프랑스가 인식하는 가장 심화된 형태의 공동체주의는 이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공화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르낭의 텍스트에서 출발하였듯 이슬람에 대한 르낭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낭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1862년 플레쥬 프랑스에서 연설한 대목이다.

이슬람은 공공의 종교로서만 존재한다. 만일 이슬람을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의 상태로 끌어 내린다면 이슬람은 소멸할 것이다. 이슬람은 국가의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은 국가를 배제하는 종교이다. 바로 여기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이스마엘(Ismaël)의 마지막 후손이 사막의 한 귀퉁이에서 공포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는다면 끝이 날 것이다. 이슬람은 유럽 세계에 있어 가장 완벽하게 부정성을 가지고 있

잡사건을 초래했다고 바라보고, 히잡으로부터 공화국을 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방리유의 청년들이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192) ARTICLE PREMIER. - La République assure la liberté de conscience. Elle garantit le libre exercice des cultes sous les seules restrictions édictées ci-après dans l'intérêt de l'ordre public. ART. 2.- La République ne reconnaît, ne salarie ni ne subventionne aucun culte. (<http://www.assemblee-nationale.fr/histoire/eglise-etat/sommaire.asp> 검색일: 2009.9.20.)

다. 이슬람은 광신적이다. 이슬람은 과학의 멸시자이며, 시민사회의 제거자이다. 이슬람의 정신은 인간의 두뇌를 축소시키는 놀라운 정도로 단순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섬세한 모든 사고에 닫혀 있다. 오직 '신은 신(Dieu est Dieu)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뿐이다.¹⁹³⁾

프랑스가 르낭에서 공화국의 가치를 보았듯이 르낭에서 다시 이슬람을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혐오해야하는 원리를 보았다. 물론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공립학교 내에서 히잡을 착용하려는 학생의 신앙행위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프랑스 공화국은 가톨릭과 유대인의 종교와는 달리 이슬람을 공화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무슬림의 히잡착용을 '하나의 프랑스(une France)'를 격리하고 계도화하는 공동체주의의 형성이라고 간주하였다. 반-히잡법의 제정은 프랑스가 히잡을 하나의 의복문화로 보지 않고 이슬람 정체성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히잡사건이 단순한 정교분리원칙의 적용에만 연계된 법과 제도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인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학자들은 히잡을 둘러싸고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주의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첫 히잡 사건인 크레이의 퇴학사건의 예가 그렇다. 잠재적 위험인 무슬림 이민자에 대해 두려움은 이슬람 공동체주의의 출현이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고, 프랑스 정체성에 대한 변질을 경계하는 것이다.¹⁹⁴⁾ 이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슬람 혐오주의와 반이민자 정서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민자에 관대하던 사회당을 비롯한 정당들 역시 프랑스 정체성의 소멸이

193) Discours au Collège de France De la part des peuples sémitiques dans l'Histoire de la civilisation, 1862. (http://fr.wikipedia.org/wiki/Ernest_Renan)

194) 국민전선(FN)의 부총재였으며, 현재 공화국 민족운동(Le Mouvement National Républicain)의 대표인 부뤼노 메그레(Bruno Mégret)는 히잡을 이슬람 문화의 상징으로 파악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대비시킨 후 프랑스인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조성하였다 : "이슬람 문화가 오고 있다. 프랑스 영토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온 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차도르를 착용하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그 문화가 정착된다. 프랑스인이 이민자들의 관습에 적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가?"(박단2005: 47).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⁹⁵⁾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파악하자면 히잡을 이슬람 문화의 상징으로 두고 보았을 때, 문화의 지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히잡을 통한 문화적 지배를 사회적 지배로 전환시키며, 식민지 담론으로 지배체제의 재생산 구조를 유지시키려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 그 자체는 사회지배의 중요한 기제이지만, 정당하지 못한 지배에 의한 사회적 구조는 자동적으로 모순을 발생시킨다. 문화에 대한 지배와 억압은 사회적 생존권의 억압으로 간주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저항의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제정자들은 ‘2004년 3월 15일 법’을 모든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 변명하지만, ‘이슬람 히잡에 관한 법(loi sur le voile islamique)’ 또는 ‘반-히잡법(loi anti-foulard)’이라 칭하는 것처럼 그 대상은 누구인지 명백해 진다. 종교가 인종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종주의를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히잡사건과 논란에서 보여준다.

3) 무슬림 이민자의 정체성과 종교

실즈(Shils)¹⁹⁶⁾의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친족 유대 고유의 관계적 특성을 서술하기 위해 ‘원초적 애착(primordial attachments)’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원초적 특성은 단지 상호작용의 기능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혈연에 부여된 형언할 수 없는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개념을 직계 친족 관계보다 더 넓은 사회집단에 적용한 기어츠(Geertz)에 따르면, 원초적 애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95) 공화국의 가치와 히잡착용으로 인한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당의 의원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당시 사회당(PS) 총리였던 미셸 로카르(Michel Rocard)조차 “여러 종교가 허용되는 다종교 학교는 더 이상 세속학교가 아니다”라고 밝힌다(박단 2005: 51).

196) Shils, E. A., 1957, *Center and Periphery: essays in macrosociology. Selected papers of Edward Shils*, vol. II, pp.111-126,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사회적 실재의(...) ‘부여된’ 면들, 다시 말해, 주로 일차적 접촉과 친족관계, 그리고 이 범위를 넘어서면 특정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특정 언어를 말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사회적 실천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이처럼 혈연, 언어, 관습 등을 공유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종종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제력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사람은 사실상 모두 누군가의 친족이며, 누군가의 이웃이고, 누군가와 같은 종교를 갖는 신앙인이다. 이는 단지 개인적 애정, 실제적 필요, 공동의 관심 또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관계 자체에 부여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 의미 덕분이다.(Geertz, C., 1963,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in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pp. 105-157, New York, The Free Press.), 시안 존스(2008: 101)에서 재인용

기어츠의 이러한 ‘원초적 애착’ 개념을 프랑스에 살고 있는 무슬림 집단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 인구들이 단일한 한 국가에서 이주를 해 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 모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동일한 사회 계층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처럼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종교적 특성에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식민지 이민자 또는 외국인처럼 인식되어지며 차별 받고 배제되는 빈곤한 집단이라는 동일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들의 집합들이라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북아프리카에서 왔던, 사하라 이남에서 왔던 간에 이들에게는 기본집단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애초에 태어나거나 또는 태어나면서 취득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공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은 원초적 정체성을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이주 노동자 특히 북아프리카 노동 이주민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상 출생과 더불어 집단의 기억과 역사¹⁹⁷⁾를 사회적 유산으로 상속받았

197) 식민지 기억과 집단의 기억에 대해서는 이용재(2003)의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인: 식민통치의 상흔과 기억의 정치학”을 참고하라.

다는 것이다. 외부적이거나 개개인 내부에서 대립하는 정체성의 마찰은 또 다른 소속감과 자존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 후속 이민세대들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교육과 문화, 가치체계를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에 관심을 돌리는 이유는 어쩌면 피 속에 흐르는 원초적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기보다는 정체성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종교를 통한 개개인의 원초적 유대감과 정서의 공유는 ‘기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물학적 틀에서 문화적으로 동일한 사람끼리 느끼는 친족 정서는 민족성의 원초적 요소라 설명되고 있다.¹⁹⁸⁾ 동일하게 사회문화적 틀에서 종교는 개개인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집단적 행동과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원초적 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랑스 속의 섬처럼 떠도는 작은 무슬림 세계라는 인식은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 분파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가지며 친족의 정서만큼이나 강화된 내적 집단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종종 문화적 상징들로 나타나고,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계에 있음으로써 정체성의 혼란기에 선택한 것이 바로 이민 후속세대들의 히잡 착용이라고 설명된다.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틀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거가 되며,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소수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틀을 포기해야 하거나,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집단에 가해지는 하나의 폭력으로 간주된다. 문화의 동화와 흡수는 문화적 폭력이고, 탈주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 차원에서 개개인의 삶에 가해지는 전횡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 정체성의 표명은 문화적 차이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생산되고 변형된 집단 간의

198) 반 덴 베르그(Van den Berghe)는 ‘친족은 우리가 민족주의, 부족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강력한 정서들의 기초가 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실제적이다’라고 설명한다(시안 존스 2008: 104).

권력 관계 속에 내재된 과정들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 라이시떼와 무슬림

라이시떼(세속주의)는 종교와 정치, 또는 교회와 국가는 별개의 것이며, 따라서 분리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근대의 사회적·정치적 삶의 이론적 기준이 성서의 계시나 교회의 권위에 바탕 한 종교적 믿음이라 아니라 이성과 사회적 경험으로 대치되었다. 이후 라이시떼는 유럽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로 유지된다. 프랑스에서 무슬림의 히잡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권리 요구는 라이시떼와 부딪히면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정체성 문제의 핵심이 바로 라이시떼에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프랑스 국민의 인식을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허용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2008년도에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Ifop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1905년의 정교분리법(*la loi de 1905 sur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Etat*)’에 대해서 응답자의 71%는 법의 유지를 찬성한다. 그리고 21%는 몇몇의 조항에서의 부분적 개정을 찬성하며, 7%는 이 법안의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¹⁹⁹⁾ 다음의 <표 IV-1>는 2005년과 2008년도에 실시되었던 국가와 교회의 분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교한 것이다. 정교분리에 대한 법의 유지와 존속에 대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의 생각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국가 유지 원칙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인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표 IV-1> 1905년 국가와 교회의 분리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99) Ifop의 La Croix의 설문조사로서 2008년도 3월 22일자.

	2005년(%)	2008년(%)
법의 유지에 찬성한다	74	71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	18	21
법을 폐지해야 한다	7	7
무응답	1	1
합계	100	100

출처 :<http://www.ifop.com/europe/sondages/opinionf/laicite122005.asp>.와 <http://tempsreel.nouvelobs.com/actualites/societe/20080321>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에 이른다. 그 뒤로 ‘세속주의’가 30%, ‘노조의 자유’가 12%로 따르고 있다.²⁰⁰⁾ 그만큼 정교분리의 원칙과 세속주의는 프랑스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원칙으로서 국민들이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으로는 종교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가치와 삶의 지표를 제시한다는 의견을 밝히지만, 열 명 중의 아홉 명에 가까운 수치(87%)는 종교는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리고 79%의 프랑스 국민은 라이시페의 원칙 속에는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종교를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피력한다.

이러한 프랑스 국민들의 종교관에 대한 인식은 2008년도 1월 달에 발표된 Ifop의 설문조사²⁰¹⁾를 통해 설명된다. 즉 응답자의 54%에 이르는 다수의 프랑스인들은 더 개방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라이시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각자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수 있는(comme la possibilité laissée à chaque citoyen de pratiquer sa religion)”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이시페에 대한 프랑스인의 이러한 자유적이고 개방적인 인식과 개념을

200) “laïcité: 71% de Français favorables au maintien de la loi 1905”, sondage, le 23.06.2008, Nouvelobs.com, <http://tempsreel.nouvelobs.com/actualites>.

201) “Les Français et la laïcité-janvier 2008”, Ifop pour Valeur Actuelles, <http://www.ifop.com/europe/sondage/opinion/laicite2008.asp>.

가진 프랑스 국민은 엄격하게 라이시떼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공적 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l’interdiction de manifester son appartenance dans les services publics)”하는 엄격한 정의로서의 라이시떼를 지지하는 프랑스인은 22%에 이른다.

<표 IV-2> 당신에 의하면 라이시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2005년	2008년
	전체 프랑스인(%)	전체 프랑스인(%)
시민 각자는 자기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다	51	54
공적 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한다	30	22
종교 건축물의 설립에 국가 원조는 안 된다	8	12
공동체주의를 나타내는 모든 형태를 거부 한다	11	12
합 계	100	100

출처 : Sondage Ifop-Valeurs Actuelles, 24 janvier 2008.

2005년도의 설문을 보면 거의 같은 비율을 가진 개방적 라이시떼의 적용에 눈길을 끈다. 2005년 10월의 소요사태 직후에 조사한 통계에서도 51%의 프랑스인이 라이시떼의 원칙에도 각자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05년도 종교적 상징물 착용의 금지에 대한 찬성은 비교적 높은 30%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3년도와 2005년도에 실시된 라이시떼의 존립 위험도에 대한 설문조사²⁰²⁾에서는 2008년도의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아래의 <표 IV-3>에서 나타나듯이 라이시떼가 ‘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수치가 각각 20%(2003)와 25%(2005)에 달하면서 ‘다소 그렇다’

202) <http://www.ifop.com/europe/sondages/opinion/laicite12005.asp> (검색일: 2009.8.20.)

는 응답자(36/39%)와 함께 무슬림에 의한 라이시떼의 존립 위협성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합계 56%(2003)와 64%(2005)를 차지하였다.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이 많은 부분에서 훼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무슬림에 의해 발생하였던 소요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파악된다.

다음의 <표 IV-3>는 2003년도와 2005년도에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이시떼가 위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이다.

<표 IV-3> 오늘날 라이시떼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 6월(%)	2005년 11월(%)
전적으로 그렇다	20	25
다소 그렇다	36	39
- '그렇다'는 응답의 합계	56	64
다소 아니다	24	20
전혀 그렇지 않다	18	16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합계	42	36
무응답	2	-
- 총합계	100	100

출처 : Sondage ifop- Acteurs Publics, décembre 2005.

<표 IV-3>에서처럼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라이시떼가 이질적인 문화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한다. 2005년도의 라이시떼에 대한 위협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64%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또한 국가와 종교의 분리법 100주년(2005)을 맞아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하였는데 응답자의 74%는 현재 그대로의 법을 유지시켜야 하며, 18%는 부분적 개정, 7%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무슬림에 대한 라이시떼의 필요성, 라이시떼의 엄격한 적용을 원하는 프랑스인의 정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히잡사건에 얽힌 담론과 논쟁은 이민자 집단과 주류집단 간의 대표적인 문화 갈등의 사회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시도에서 히잡을 금지한다는 ‘3월 15일 법’의 채택은 정교분리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 이민자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비록 ‘3월 15일 법’이 기독교의 십자가, 유대교의 키파(kippa, 작은 빵모자)를 포함하는 모든 종교 상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목적은 히잡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종교에 대한 혐오와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은 오늘날 교회가 학교 교육제도에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도, 히잡 금지법을 도입한 것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이슬람교 세력들을 겨냥한 배타적인 프랑스 법제도의 극명한 일례라는 것이다. 이들은 히잡이 이슬람의 대표적 상징물인 만큼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반감과 혐오에서 이 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비록 ‘3월 15일 법’으로 법적이며 제도적인 결론은 내려졌지만 법의 정당성과 히잡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 자리 잡은 정교분리원칙이 마그레브 이민자들을 대한 인종주의 논리를 교묘하게 감춘 것이라면 내일에도 미래의 히잡 사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 종교적 배타성과 예고된 배제

역사를 통틀어 아주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과 전통, 생활방식, 관습과 의례, 기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언제나 차이를 의식하고 차이를 경험한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TV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와는 이념이나 이상이 다른 문화를 만난다. 다름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면서 우리를 다시 인식하게 된 정체성의 시대가 온 것이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압도했던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정체성 정

치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정체성은 ‘쪼개고 분리한다’(조너선 섉스 2007: 30). ‘우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 자체는 ‘그들’, 즉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종교가 다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교가 다시 세계무대에서 국제관계의 역학 구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정체성의 문제에서 종교만큼 모든 인간들 내부에 깊숙이 개입되어 민감하고 위압적이며 양보하지 않는 것은 없다. 종교는 확고한 경계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밖의 다른 것들과는 확실하게 가르며 구분 짓게 하는 역할을 역사 속에서 수행해왔다. 종교는 불화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종교는 갈등 해결 방법도 될 수 있다(조너선 섉스 2007: 20).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였지만 결과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전환되었다.²⁰³⁾ 종교적 갈등은 절대적인 갈등이며, 상호 인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신념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화해나 조정, 평화적인 타협의 여지가 쉽지 않다는데 종교간의 마찰은 그 어려움이 있다.

종교는 평화를 갈구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원천이 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가 하나(유일성, unity)뿐만이 아니라는 데서 갈등이 시작된다. 신앙이 다르고 경전이 다른 종교와 ‘한 자리에 있음’은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점으로 표출된다. ‘나의 신’과 ‘나의 종교’에 대한 신앙과 신념만이 유일하게 평화를 줄 수 있으며 인간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는 편협한 사고 때문이다. 역사에서 종교적인 평화는 정치적 평화보다 공존의 원리나 의미를 찾는데 인색하였던 것이다. 종교는 신념이자 정체성으로도 표현된다. ‘자기 신념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야만인과 구별되는 문명인의 태도’라는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²⁰⁴⁾의 말을 빌린다면 오늘날의 문명인은 이미 타협과 소통으로부터

203) 조너선 섉스는 서양의 다섯 가지 보편적인 문화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기독교, 이슬람교, 계몽주의를 꼽고 있다. 세 가지는 세속적이며, 두 가지는 종교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여섯 번째의 보편적인 질서 속에 살고 있는데 바로 세계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지역적이고 전통적이고 특수한 것을 모두 위협하는데 9.11 사태는 심각하게 서로 위협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와 극단적 형태의 이슬람교라는 두 개의 보편적인 문화가 충돌해서 발생한 것이라 본다. (조너선 섉스 2007: 46-47)

먼 거리에 있다. 신념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다른 많은 가치들이 박해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종교가 갈등의 한 원천이 되었다.

종교가 갈등과 불화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정치의 세속화에 이르는 현대성(modernity)²⁰⁵⁾이 나타났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퇴출시킨 것이다. 또한 계몽주의와 자유사상이 세상에 널리 퍼질수록 종교적 열정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크빌(Tocqueville)은 종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불멸성에 주목하였다.²⁰⁶⁾ 오히려 종교가 각 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정의내리고, 그 정체성에 의해 집단이 구분되고, 구별되어가는 오늘날에 오히려 ‘세계의 탈세속화(desecularization of the world)’²⁰⁷⁾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헌팅턴은 현대화는 서구화가 아니어서 미래의 정치는 서구와 다른 지역 간의 깊은 차이와 반목이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생산과 소비, 권력과 분배라는 도구성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문명, 즉 언어와 역사, 종교, 관습, 전통 등의 의미와 행동의 기준이 국제 갈등을 작동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 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패션을 따라 재편되고,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다. 따라서 문명 간 갈등이 발생할 것(헌팅턴 2005: 21)이라는 헌팅턴의 문제제기는 그대로 오늘날 각 국가에 나타난 이민의 사회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 내부의 영역에서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 정체성, 집단의 정치가 ‘구별짓기(distinction)’로 나타났다.

종교가 집단을 구별 짓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상한 이유는 세계화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끊임없이 급변하는 세계화의 현상 속에서 종교는 변화지 않은 채

204) Isaiah Berli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217. 조너선 섉스에서 재인용, p.44.

205) 현대성의 탄생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한다. 현대성은 진리(종교적)로부터 받아들여진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지식은 전통과 권위가 아니라 이성과 관찰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실험은 진리를 구성하며 이성은 편견을 몰아낸다.

206) Tocqueville Alexis de, 1968, *Democracy in America*, London: Fontana, p.364.

207) Berger Peter,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로 ‘나’를 보살펴주고 위협으로 불안한 ‘나’에게 안정감을 주며, 변화에 불안한 ‘나’들에게 동질감과 위안을 준다. 또한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종교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역할, 즉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누구’와 ‘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인간과 인간적인 사회질서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종교(religion)는 ‘religare’이란 어원에서 보듯이 ‘묶고’ ‘구속하고’ ‘결합’하는 이념으로서의 도구라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의 신앙은 의례와 이야기, 공동의식, 상징 등을 통하여 통일성과 체계로 전체를 만들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였다. 종교는 집단 정체성을 만들며, 종교로 형성된 동일성의 심리적 감정은 정치적이나 경제적 감정보다 더 유대적이다. 종교적 유대성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경계와 가르기의 행위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종교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정체성은 배제하는 것’이라는 조너선 섉스(2007: 87)의 언급은 오늘날 정체성의 시기에 음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적 문제는 타문화의 유입 초기부터 종교적 측면에서 유발될 배제나 배타성으로 인한 갈등이 이미 예고되었다. 실로 유럽에서의 무슬림 이민자 문제는 정치나 경제, 문화적 실천 문제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나 마찰이 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종교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인종, 문화, 정체성의 다름을 표면으로 장식한 세계화 시대의 종교 마찰이다.

3. 경제 조건과 실업

2005년의 소요사태는 이민자 2세, 3세의 후속세대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중층적인 이민문제이다. 여기에는 문화적 권리의 주장이나 각종 차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앞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민자와 그 후속세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구조에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다. 이들은

절대 다수의 취약계층을 구성하며 프랑스 사회위기를 조성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빈곤이나 장기적인 실업의 문제라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를 이해하는 담론에서 기초하여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빈곤과 실업에 대한 지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다.²⁰⁸⁾

대규모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영광의 30년’ 같은 경제 호황기 때에는 환대를 받지만, 1930년대나 1970년대 발생하였던 경제 침체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다. ‘외국인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여론의 형성과 함께 경제적 파탄과 실업의 주범으로 인식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방의 대상이 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8-2009년도 세계 경제침체로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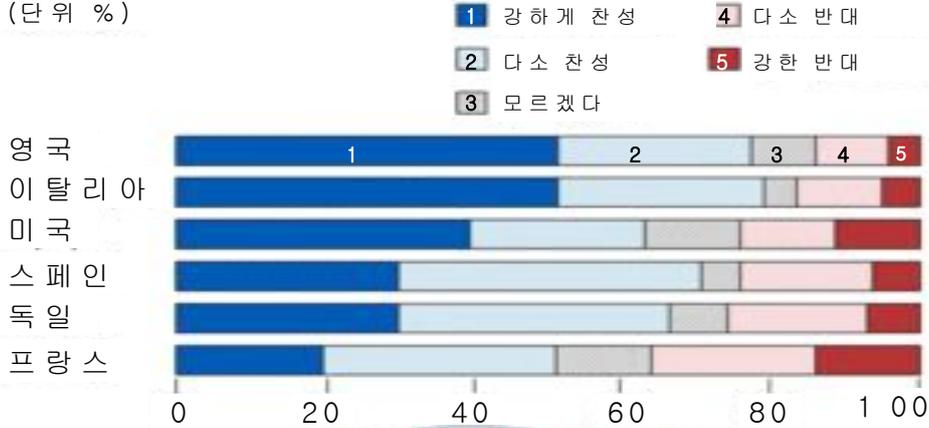
파이낸셜타임스(FT)가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공동으로 2월 하순부터 3월 초에 걸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대 주요국의 국민과 미국인 6,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민자 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직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²⁰⁹⁾ 다음의 <표 IV-4>는 이를 잘 보여준다.

<표 IV-4> 실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인식도

208) 유럽연합의 빈곤과 실업에 대한 측정으로 나타난 사회적 배제의 지표는 EC Commission의 Social Protection Committee에서 발표한 자료(*Report 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1)에서 찾아볼 수 있다.(강신욱(p.19-20)에 재인용 됨)

209) 이탈리아는 응답자의 79%, 영국은 78%, 스페인은 71%가 정부가 일자리 없는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쓴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도 각각 67%와 51%가 실직 노동자를 떠나보내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국에선 과반이 넘는 55%가 “EU 다른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서 일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답했다. (<http://www.fdesouche.com/articles/30988>, 검색일 : 2009. 8.30.)

실직 이주자의 본국 송환은 ?
(단위 %)



자료: 파이낸셜 타임즈, 해리스 폴

출처: 한국경제신문 2009년 03월 16일자

즉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²¹⁰⁾ 이처럼 프랑스에서의 이민은 국토 재건 또는 산업화의 계기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일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력자로 국한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자는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로 이해되었던 기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경제의 침체시기 대규모 실업이 유발되었을 때, 해고되는 주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현상과 같다. 추방과 배제의 정치적 시행에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안불안 같은 사회적 위기의 원인들을 외국인에게 전가시키면서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정책들을 보수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입장으로서 내부의 결속을 공고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외부의 위기와 내부의 사회적 위기들을 희생양의 논리²¹¹⁾를 통하여 해결해 왔다.

210) 한국경제신문 2009년 03월 16일자, “일자리 잃은 이민자 유럽 떠나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1687481&intype=1>)

211)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mechanism)이론: 희생양 살해는 위기극복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이민자는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²¹²⁾ 처음부터 내국인의 일자리와는 차별적인 구조를 가진다. 유입된 노동 이민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장소나 업종이 아니라 노동증이나 노동 계약서에 의해 정부가 원하는 곳의 일자리에 배치되었다. 내국인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숙련된 직종에 두는 반면, 이민인구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비숙련 직종과 일일노동의 단순직에 집중되었던 체계였다.²¹³⁾ 육체적 힘이 많이 필요한 단순 노동의 분야와 비숙련 노동은 값싼 외국인 남성 노동자의 몫이었으며 서비스 산업, 즉 수위, 관리인, 집안 일을 도와주는 하인과 같은 일자리 역시 이주노동자²¹⁴⁾의 당연한 일자리였다 (이기라·양창렬 외 2007: 222-223). 프랑스는 이주 노동자들을 통제함으로써 농업 분야 또는 내국인이 일하기 싫어하는 중공업, 광산, 건설 같은 분야의 일자리 영역에다 배치하여 프랑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고용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표 IV-5>는 2002년도에 Insee가 발표한 비이민자와 이민자의 사회 직업군의 분포도이며, 바로 다음의 <표 IV-6>은 직업군을 이민자의 원국적에 따라 분류, 비교한 것이다.

- 다. 희생양의 죽음과 함께 공동체 내의 위기와 불안 요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희생양의 실체는 집단적인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개별적인 특성이나 욕망은 어떤 것이라도 위험한 것으로 거세되고, 이를 통해 집단의 가치와 질서, 안정이 유지된다.
- 212) 1945년 이민국(l'ONI)의 창설로 국가는 노동시장에 필요한 수만큼의 이민자를 엄격하게 선발하고 모집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경제 성장을 통해 개선된 노동조건을 내국인 노동자처럼 똑같이 보장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외국인 통제와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219).
- 213) 1차 대전 이후 노동시간과 노동공간의 합리화로 특징된 미국식 생산방식이 프랑스에 도입되어 발전하면서, 자동차 산업 같은 세분화된 분업이 프랑스 산업의 전분야로 확대된다.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동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대구모의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북아프리카 중심의 비숙련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는 원인이 된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317).
- 214) 이민 여성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 편입되었다는 것보다는 프랑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가사 노동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성격의 가사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 1997년 Insee의 통계에 의하면 이민 여성의 82.2%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이 중 개별적으로 프랑스 가정을 위해 일하는 탁아나 집안 청소 등 가사 노동에 종사하였다.(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1997)

<표 IV-5> 2002년도 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직업군의 분포도

(단위: %)

사회직업군	전체			남성		여성	
	전체인구	비이민자	이민자	비이민자	이민자	비이민자	이민자
농업	2.7	2.8	1.7	3.5	0.7	2.0	0.7
장인, 상인, 기업주	5.9	5.8	8.2	7.4	10.7	3.8	4.6
임원, 고위지식인	14.7	15.0	10.4	17.6	11.8	12.1	8.2
중간 간부	21.5	22.3	12.4	21.6	12.9	23.1	11.8
직원	29.3	29.4	27.8	13.2	11.5	48.6	52.2
노동자	25.9	24.7	40.5	36.7	52.4	10.4	22.5
-숙련 노동자	16.9	16.4	23.4	26.9	35.0	3.9	5.8
-비숙련 노동자	9.0	8.3	17.1	9.8	17.4	6.5	16.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Insee, enquête Emploi 2002.

직업을 가진 이민자들 중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에 있어서 52.4%를 기록하면서 비이민자의 36.7%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게다가 불안정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17.4%로서 프랑스 전체 비숙련 노동자의 9.0%에 비해 두 배의 높은 수치를 드러낸다. 다음은 사회 직업군에 따른 분포도이다.

<표 IV-6> 2002년도 이민자의 출신국적에 따른 사회직업군의 분포도

(단위: %)

사회직업군	전체 이민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기타 유럽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기타 아프리카	터키
농업	1	3	2	1	2	0	0	0	0	1
장인, 상인, 기업주	8	8	9	8	9	7	8	10	4	17
임원, 고위지식인	10	9	12	2	24	7	9	9	9	2
중간 간부	12	15	16	9	20	15	10	8	11	5
직원	28	33	27	30	24	30	22	24	38	11
노동자	41	32	34	50	21	41	51	49	38	64
-숙련 노동자	24	20	24	32	13	25	24	28	18	33
-비숙련 노동자	17	12	10	18	8	16	27	21	20	3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Insee, enquête Emploi 2002.

노동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드러내는 원국적 출신은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북아프리카와 터키 출신임을 볼 수 있다. 거의 50% 가까운 북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은 유럽출신의 이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업군의 조건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직업군의 특성은 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에 따른 퇴출의 위기를 항시적으로 갖고 있다.

애당초 프랑스에 이주해 온 노동력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농촌 노동자들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노동력이 대부분이었다. 알제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55년에는 알제리 노동자 가운데 단지 5%만이 숙련노동자였고, 71%는 단순 노동자였다. 나머지 24%는 비숙련전문 노동자에 해당하였다. 비록 1975년도에는 단순 노동자의 비율이 68.5%로 줄고, 1990년도에는 38%로 줄어들었으나(박단

외 2009: 29), 이와 같이 기술이 없는 단순직의 노동자는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해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70년대 이후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와 노동의 숙련 정도에 따라 해고의 위험이 뒤따랐다. 더욱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 없는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은 주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변화와 배제는 기술적 실업, 또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에 의한 경제적 참여에의 배제에 의한 실업이 아니라 분석이 주도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자본주의의 가변성에 대처하기 위한 ‘실업예비군’으로서 쉽게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은 이미 예상되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276-277). 70년대를 지나면서 나타난 대량실업에 따른 Insee의 1982년도의 실업률의 지표에서 이를 뒷받침 해준다.

<표 IV-7> 1982년도 프랑스 내 국적에 따른 실업률 현황

(단위: 만 명, %)

직업분포	전체	프랑스	외국인 전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외 유럽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활동인구	23,525	21,969	1,556	147	137	388	65	319	168	76
실업자	2,059	1,841	218	13	13	30	6	70	25	14
실업률(%)	8.8	8.4	14.0	9.1	9.7	7.7	8.9	21.9	15.2	18.2

출처 :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업 증가율을 살펴보면, 1982년 외국인 실업자는 22만 명에 이른다. 프랑스 전체 8.8%의 실업률에 비해 외국인의 실업률은 1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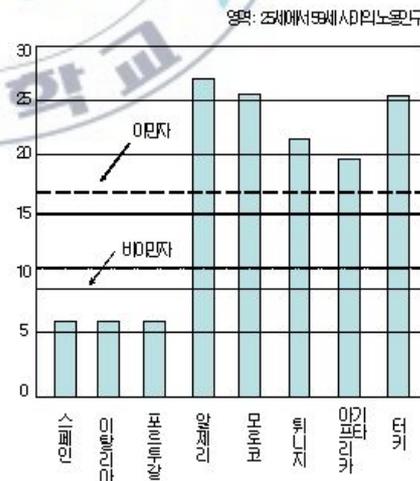
달한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노동 이민자의 실업률은 거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을 뛰어 넘는 높은 수치의 실업률을 보인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약 53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이나 혹은 자발적으로 귀국을 한 수치를 뺀 비율이다. 그러므로 조사된 비율의 실업률보다 더 높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1981년 미테랑의 집권으로 강제추방 금지 등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자 정책의 시행과 ‘가족 재결합’ 정책으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하자 1986년도에는 18.6%(전체 실업률 9.6%)에 이르는 실업률의 수치만 살펴본다. 이주민 노동자의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 파악된다.

도시민감지역(ZUS)이나 소외계층, 빈곤 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지원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관에 의해 전체 실업률이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갖는다. 그러나 2002년도의 이민자 인구의 실업률을 이전의 1992년도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두드러진 실업률의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표 IV-8> 2002년도 원국적(pays d'origine)과 성별에 따른 실업률

(단위: %)

원국적	전체	남성	여성
스페인	6	자료없음	자료없음
이탈리아	6	자료없음	자료없음
포르투갈	6	6	6
알제리	26	25	30
모로코	26	23	31
튀니지	22	자료없음	자료없음
기타 아프리카 국가	20	18	23
터키	25	자료없음	자료없음
이민자 전체	16	15	17
비이민자	7	6	8
합계	8	7	9



영역: 25세에서 59세까지의 활동 가능한 인구

출처 : Insee, enquête Emploi,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http://www.insee.fr/fr/ffc/docs_ffc/IP1042.pdf

위의 2002년도 실업률을 나타낸 <표 IV-8>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은 16%까지 치솟는다. 이민자의 실업률은 비이민자의 두 배나 뛰어넘는 수치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26% 가까운 실업률을 가지면서 4명 중 1명은 직장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설사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의 특성상 자주 일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배제될 수 있는 직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설사 임원 등 고위직 간부에 있는 자라도 이민자의 경우에는 프랑스인들보다 두 배나 더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기간은 프랑스 전체 평균 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교육 수준의 낮음이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이민자 세대가 15.4%의 실업률로 5.5%의 비이민자 세대에 비해 세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이다.²¹⁵⁾

다음 <표 IV-9>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실업률과 함께 젊은 연령층의 이민자 후속세대들의 실업률을 보여준다.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남자는 4명 중 1명, 여성 집단에서는 약 3명 중 1명이 무직 상태에 있음으로써 젊은 청소년 이민자층이 가장 높은 실업군을 형성한다.

215) Insee, "personnes actives âgées de 25 à 59ans", enquête Emploi, 2002,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표 IV-9> 1992년과 2002년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실업률

(단위 %)

성별과 연령	1992			2002		
	전체인구	비이민자	이민자	전체인구	비이민자	이민자
남성	7.9	7.4	14.6	7.9	7.1	15.5
15-24세	16.6	16.3	22.6	18.2	17.9	24.9
25-39세	7.9	7.5	13.6	8.4	7.5	18.0
40-49세	5.3	4.6	11.7	5.6	4.7	13.8
50-59세	7.3	6.2	18.4	6.0	4.9	13.7
여성	12.8	12.2	24.6	10.1	9.5	17.7
15-24세	26.1	25.5	37.6	22.8	22.3	33.2
25-39세	13.4	12.6	28.7	10.8	10.0	20.3
40-49세	8.7	8.3	17.0	7.9	7.2	16.0
50-59세	9.8	9.4	18.6	7.4	6.9	13.2
합계	10.1	9.5	18.0	8.9	8.2	16.4

영역 : 15세 이상 활동 가능한 인구. 출처 : Insee, enquête Emploi,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앞의 <표 IV-9>에서 나타나듯이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실업률의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가 이민자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이민자는 주로 사적 기업에 고용된 형태가 많다. 물론 프랑스 대부분의 직업군이 사(私)기업에 고용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민자의 경우 평균 87%로써, 비이민자의 사기업(약70%) 취업 비중보다 높다. 개인 기업에

취업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민자의 경우 대개 공공기관의 취업의 문이 가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조사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출신국가에 따라 취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포르투갈인이나 터키인의 경우 취업한 5명 중 1명은 정규직 월급의 고용형태가 아니다.²¹⁶⁾ 반면 이민자 중에서 스페인인이나 알제리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의 취업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사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민자의 경우 고용의 형태는 파트타임의 일자리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고용 형태를 보이는 것은 임시직 또는 기간제의 한시적 고용이다.²¹⁷⁾

앞에서 나온 모든 도표들을 정리해보면 직업에 있어서 유럽출신의 이민자는 전반적으로 동화이든지, 통합의 상태이든지 간에 프랑스의 사회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스 전체 평균 실업률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무슬림 이민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면서 실업률에서 가장 두드러져 있다. 또한 청소년들, 이민자 2·3세대라 불릴 수 있는 후속세대들의 실업률 역시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높은 실업률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환경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회적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민자 후속세대들의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회 경제적 비관과 절망은 각종 폭력과 소요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볼 수 있다.

앞의 <표 IV-2>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인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치안불안을 꼽았다. 프랑스 국민들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청소년들의 실업에서 찾았다. 다음의 <표 IV-10>은 도시나 방리유에서 폭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하여 조사 한 것이다.

216) 고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민 온 포르투갈인이나 터키인의 경우에 자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217) Insee, enquête Emploi,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표 IV-10> 도시 폭력 범죄의 원인

특정한 지역과 방리유에서 폭력의 발생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청소년들의 실업	63
부모의 고용 해직	51
이민	19
시민성의 부족	16
교육 시스템의 실패	13
국가 공권력 부재	12
언론의 과대 부풀리기	10
관련 지역 정부의 공권력 부재	7
경찰의 실패	6
무응답	1

출처 : Sondage IFOP-Libération 1998, Les Français et la violence urbaine.

많은 이민자가 비숙련 중심의 노동직에 종사함으로써 고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용불안의 직업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업의 커다란 요인 중 하나이겠지만, 무슬림 이민자를 대상으로 나타난 인종차별에 의한 배제도 무시할 수 없다. 무슬림 이민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들면서 이들이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었다. 제도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차별은 이민자가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어렵게 한 것이다. 1976년부터²¹⁸⁾ 실업률과 외국인 노동자와의 정

218) 1976년 1월 자크 시락 총리는 TV 출연에서 “90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동시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면, 고용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이는 곧 외국인이 실업의 주범이며, 이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면 프랑스인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실업률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곧 시락은 1977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으면 10,000프랑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특히 알제리인을 중심으로 50만 명을 목표로 하였다. (“Chronique législativ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http://www.legavox.fr/blog/etrangers-sans-droit/chronique-legislative-histoire-immigration-710.htm>)

략적인 연관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극우정당의 ‘외국인이 프랑스인의 빵을 빼앗아 먹으러 왔다’라는 선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내 인종차별의 확산을 초래하고, 직업에서 배제되고 차별되면서 결국 이민자들의 실업 상승률의 원인이 되었다.

인종차별에 의한 경제적 배제의 현상을 파악하고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는 1998년 이에 대한 논의와 방지책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조스팽 총리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차별과 불법적인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어 이민자 고(高)실업률의 원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법적인 차별로는 외국인은 대학교수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지역공공단체, 국립병원에서 취업을 금지되었고, 철도청,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 혹은 무기관련 무역이나 공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까지도 외국인의 배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고용되지 못하는 결과는 외국인과의 실업률 차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공적기관 전체 고용율은 18%를 차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차별의 사례로는, 고용광고를 낼 때 은어(隱語)를 사용하면서 외국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내국인만을 모집하는 고용 광고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프랑스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막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유색인 고용을 금지시키는 사례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면접 시 회사의 고객들은 프랑스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문화가 다른 회사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에서도 유색인을 배제하고 백인을 위주로 추천하는 예도 있다. 고용주들이 유색인들의 고용을 꺼려한다는 이유에서이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303-306). 다른 하나는 회사의 채용서류 접수 시, 이슬람의 이름을 가진 지원자는 서류면접에서 이미 우선적으로 탈락하는 많은 사례를 보인다. 후일 이는 ‘의명의 이력서’²¹⁹⁾라는 법안을 태동하게 하는 원인

219) 실업과 장기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초점으로 떠오를 때, 고용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 총

이 된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은 본래 경제 외적인 사회적 요소이지만 프랑스에서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배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인종차별이라 할 수 있다. 또한편으로는 비숙련에 의한 기술적 실업 역시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이유이다. 이러한 이중의 고통이 따르면서 주변화된 이민자들의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으로 도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EU보고서²²⁰⁾는 유럽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절반의 몫은 이민자의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의 힘이였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없었더라면 1인당 GDP는 -0.2%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민자들의 기여도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30%, 5년간 경제성장의 50%에 달했으며, 2001년 이래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30억 유로(약 28조원)로 나타났다. EU 보고서의 이러한 내용은 이민 수용국의 국민과 극우정당들이 주장하듯 이민자들의 역할이 과연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정치적 선동으로 인해 실업의 주범으로 내몰린 이민자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의 주범이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잠재우게 하기에 충분하다.

4. 주거 조건과 사회·공간적 배제

프랑스의 각 소요사태들은 방리유라고 불리는 대도시 외곽도시에서 발생하

리었던 라파랭(Jean-Pierre Raffarin)이 제안하였다. 2004년 정부는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 '성명, 성별, 국적을 명기하지 않은 이력서에 의한 후보 선별'을 권장하는 시범 안을 실시하였다.

220) 내일신문, 2007년 6월 11일자,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였다. ‘방리유’라는 이미지는 프랑스인들에게 이민자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폭력의 온상지라는 상징적인 장소로 전유되었다. 그러면 방리유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이민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소요사태를 ‘방리유 소요’라는 대명사로서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일까?

위키백과에 따르는 방리유(banlieue)의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를 연장하고 있으면서 가장 밀집되고 도시화된 그 주변 지역들을 지칭한다.²²¹⁾ 산업화 과정에서 그저 도시 변두리에 불과하던 지역이었던 곳이 철도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대규모 노동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파리 주변의 라-꾸르네브, 라-빌레트, 생-드니, 이브리 등과 파리 남부의 발-드-마른(Val-de-Marne)의 주변 공간들이 이미 1891년도에는 파리의 가장 중요한 이민 노동자인구 중심의 방리유가 되었다.²²²⁾ 그리고 제 2차 대전 이후 방리유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HLM(Habitation à Loyer Modéré, 공영임대주택)이 대규모 이주민 유입에 따라 1949년부터 1972년까지 약 100만 세대가 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HLM의 주택은 극히 일부분의 이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1966년 내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알제리인의 43% 가량은 여전히 판자촌에 거주하였다.

1980년대가 되어도 그러한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주류 프랑스인의 96%와 유럽계 이민자의 90% 이상이 정상적인 거주지에서 살았다. 그러나 마그레브 출신의 이민자들은 70-80%만이 정상적인 거주지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정상적인 거주지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주거지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본다면 거주 환경은 프랑스의 평균적인 것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가졌다. 예를 들어 알

221) <http://fr.wikipedia.org/wiki/Banlieue> : 방리유의 어원을 살펴보면 ban(제후의 소집, 소집령)의 lieue(공간, 장소)이다. 12세기부터 유래된 프랑크 왕국의 봉건시대 용어인 ban의 뜻은 제후의 법을 의미하였고, 그러한 법이나 소집령이 발동되는 도시 주변의 장소를 banlieues(방리유)라고 불렀다.

222) 1891년 당시 생-드니에는 13,500명, 서쪽의 노동자 방리유였던 볼로뉴에는 9,500명, 오베르빌리에에는 8,100명의 노동자가 집약되어 있었고, 도시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1911년도에는 파리를 포함한 일드 프랑스(Ile-de-France)의 전체 인구 중 30.5%가 방리유에 거주하였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72).

제리인 가정의 11%정도는 목욕탕이나 화장실이 없으며, 16%는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살았다.²²³⁾

대규모 주택단지의 획일화된 주거 공간과 대규모 인구를 위한 밀집형 거주지는 전형적인 프랑스풍의 도시 형태와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인상을 받는다. 원래 살고 있던 프랑스인들은 차츰 늘어나는 이민자들의 유입과 증가에, 이들이 야기하는 절도,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자 그 지역을 떠난다. 치안부재²²⁴⁾에 따른 불안감과 종교·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질감으로 그 지역에서 벗어나 옮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외곽도시들은 주변 환경이 가난한 노동 이민자 중심으로 인구의 구성이 변하였고, 게다가 월세나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민자나 실업자,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드는 ‘게토화(ghettization)’²²⁵⁾가 되었다. 방리유는 북아프리카의 옛 식민지 출신들이 게토화된 집단 거주지에서 모여 살면서 매년 10만~15만 명의 또 다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프랑스 내부의 식민지’이다.

방리유와 방리유자르(banlieusards)라는 단어는 이제 차별적인 존재들의 거주지로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은유로서 표현된다. 이처럼 방리유는 프랑스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²²⁶⁾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남는

223) Véronique de Rudder, “Le logement des maghrébins”, *Les Temps Modernes*, n.452-453-454, 1984, p.1957-1959; 박단 외(2009: 28-29)에서 재인용.

224) 방리유는 경찰이나 행정 당국도 함부로 받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치안 부재, 국가 부재의 지대로 변모한다. 젊은 패거리들이 집단으로 충돌을 할 때에도 경찰은 멀리서 방관만 할 뿐이다. 개입을 할 시에는 경찰의 인적 피해가 따르기에 경찰노조는 이를 피해왔고 정부도 용인해 왔다. 이러한 국가의 부재에서 폭력의 문화가 더 확산되고 정착된 것이다. 피에르 모렐(Pierre Morel) 감독의 영화 『13구역』은 이러한 방리유의 모습을 그려낸다. 높은 벽으로 둘러쳐진 위험지역인 13구역은 경찰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온갖 범죄의 온상이자 범법자들의 소굴로서 외부사회와 철저하게 단절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국가적 위험지대인 이 지역에 폭탄을 터트려 전 주민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원제 『B13』의 B는 방리유(Banlieue)를 뜻한다.

225) 게토(Ghetto)는 유대인이 모여 살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도시의 거리나 구역을 가리켰다. 유대인에 대한 최초의 강제 격리구역은 1280년 모로코에서 만든 밀라(millah)였다. ‘게토’라는 말은 1516년 베네치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게토’라는 섬으로 보내지면서 유래되었다. 19세기 와서 유럽 전역의 유대인 강제 격리지역인 게토가 폐지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다시 만들었다. 오늘날 소수민족들이 따로 모여 사는 도시의 특정지역을 게토라 부른다(타하르 벤 켈론2004 :28-29).

226)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1960년대 중반 피에르 마스(Pierre Masse)에 의하여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난다. 당시 이 개념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도 전혀 받

다.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등 다원적인 요인에 기인한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주류사회의 자원과 기회로부터 단절되는 공간이 바로 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다. 배제된 공간은 빈곤의 확산과 강화를 가져오고, 거주자들은 외부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편견으로 인하여 그들만의 공동체적인 습관과 습성을 공유하며 유지되는 곳이다.

방리유가 가지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 표상사적 접근을 한 양창렬의 글은 현대적 의미가 갖는 방리유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여 거론할 만하다. 방리유(banlieu)는 ‘ban의 권리가 실행되는 공간(espace d’une lieue autour d’une ville où s’exerçait le droit de ban)’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방(ban-)의 어근에서 추방(**bannissement**), 추방된 자(**banni**), 도적(**bandit**), 포기하다/버리다(**abandonner**) 등의 단어가 파생되었다. 여기에서 장소를 뜻하는 lieu가 합성되어 방리유란 ban-lieu, 즉 추방된 자, 중심도시로부터 버려진 자, 마치 도적떼들이 도시를 위협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lieu)로 해석된다. 보다 명쾌하게 말하자면 방리유는 ‘추방의 공간이요, 주권자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포함되는 공간, 바깥으로부터 가두어진 공간’이라고 지오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논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76).

방리유나 시떼는 위상학적으로 도시-국가의 ‘주변부’이며, 상징적인 일종의 ‘공백’의 상태에서 존재한다. 형식적으로 권력의 영향력 안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제되고 방관되어진 정치적 진공의 상태이다. 중심과 참여의 공간의 경계 밖에서, 가두어진 공간에서 존재하는 방리유자르²²⁷⁾들은 시민(civilité)성을

지 못하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다. 역사적으로 ‘시민권’이나 ‘사회통합’의 가치를 중시해 온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의 약화 내지 단절이라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개인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무력한 존재로 소외되는 것은 이상적 사회통합을 해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다양한 차원의 불이익으로서 사회적 배제는 어떤 사회의 주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불이익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정인철·배미애 2007: 65).

227) 1889년 지방 선거에서 파리의 한 후보자는 “문명화된 도시의 문가에 숙영하는 천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방리유자르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단순히 방리유 주민들(habitants de banlieue)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상한 품행’, ‘무례함’, ‘비

지닌 자)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비시민(incivilité)의 역할만을 하면서 법과 권위에 감시당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방리유는 배제되고 격리되어진 그리고 분할되고 이웃한 공간으로서 위험한 계급들의 군상지라는 특수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심에 대한 주변이며, 참여에 대한 미 참여, 부에 대한 빈곤, 문명에 대한 야만²²⁸⁾이다. 추방된 이민자의 이미지와 속성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공간이며 지역이다. 프랑스의 방리유는 이처럼 행정적 명칭이 아니라 표상과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명칭이며 용어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방리유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1996년에 ‘도시재활성화법(La loi n°96-987 du 14 novembre 1996 relative à la mise en oeuvre du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으로 ‘도시민감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이라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전국 751곳의 도시지역을 지정하면서²²⁹⁾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와 지방정부는 협의하에 1,300개의 후보지역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25세 미만 인구 비율, 총인구, 해당 지역의 담세 능력, 중졸 이하의 학력자 비율을 변수로 하여 각 후보지역의 종합배제지수(Indice Synthétique D'exclusion)를 측정 한 뒤, 지수 점수가 높은 751개 지역을 ZUS로 선정하였다. ZUS로 선정된 지역들 중에서 지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410개 지역을 ZRU(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 도시재활성화지역)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지수가 높은 44개 지역을 ZFU(Zones Franches Urbaines, 도시비과세지역)로 설정하였다(정인철·배미애 2007: 67).²³⁰⁾

행의 원인’으로서 지목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85-87)

228) 사회학자 로랑 무칠엘리의 개념으로서 방리유의 청소년들은 북아프리카 이슬람계 이민자 출신의 게으른 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 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자로 조작되고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예절이 부재된 야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공간으로서의 대비를 하고 있다(이기라·양창렬 외 2007: 70-86).

229) http://i.ville.gouv.fr/divbib/doc/ZUS-ZRU-ZFU_Liste_recap_textes%20_07.pdf

230) 2006년도에 ZFU의 수는 100개가 되는데, 1997년 38개의 지역이 20년의 기한으로 추가 지정되고, 4년의 기한으로 정해둔 41개가 2004년도 재추가로 지정된다. 2006년도에는 3세대(3e génération)라 불리는 15개의 지역이 다시 추가로 지정되어 존속하고 있다.(http://fr.wikipedia.org/wiki/Zone_urb)

그러므로 ZUS는 도시정책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기 위해 설정한 개념으로서 개발이 덜 된 지역을 더 쉽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기타 사회보장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1999년도 ZUS의 인구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8.2%에 해당하는 467만 명에 이른다. ZUS의 분포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지역에 157개로서 가장 많이 밀집되었다.

<표 IV-11> 프랑스의 지역별 ZUS, ZRU의 비중

지역	ZUS(%)	ZRU(%)
프랑스 전체	8.2	5.7
알자스(Alsace)	8.9	5.4
아키텐(Aquitaine)	5.2	4.3
오베르뉴(Auvergne)	5.9	2.4
마스-노르망디(Basse-Normandie)	3.7	3.0
부르고뉴(Bourgogne)	7.7	5.4
브레타뉴(Bretagne)	3.8	1.7
상트르(Centre)	6.1	4.8
샹파뉴-아르덴(Champagne-Ardenne)	13.2	10.3
코르시카(Corse)	12.7	0.0
프랑슈-콩테(franche-Comte)	9.1	7.2
오프-노르망디(Haute-Normandie)	8.8	7.8
일-드-프랑스(Ile-de-France)	12.9	7.3

aine_sensible)

지역	ZUS(%)	ZRU(%)
프랑스 전체	8.2	5.7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7.1	5.3
리무쟁(Limousin)	2.7	2.1
로렌(Lorraine)	7.8	6.5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3.1	2.1
노르-빠-드-갈레(Nord-Pas-de Calais)	10.9	10.1
페이 드 루아르(Pays de Loire)	5.6	4.3
피카르디(Picardie)	8.4	7.3
푸와투-샤랑뜨(Poitou-Charentes)	4.7	3.3
프로방스-알프-코뜨 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9.4	7.1
론-알프(Rhone-Alpes)	7.5	4.4

출처: Insée première, n.573, avril 1998.

이러한 주거정책이 나오기까지 1980년대 이후 프랑스는 많은 도시사회문제에 직면하였다. 대도시 인근 이민자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적 실업의 증가와 폭력은 일상이었다.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이민자의 거주 환경은 열악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에서 1981년 사이에 행해진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을 시행하면서 사회적 배제와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1977년에 이르러 ‘사회적 삶과 주거(HVS, Habitat et Vie Sociale)’라는 정책의 시작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HLM을 재정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빈민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6년도의 ‘도시재활성화법’으로 구체화하였다.²³¹⁾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ZUS의 열악한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의 1999년 통계에 따르면 ZUS 주민

231) http://fr.wikipedia.org/wiki/Politique_de_la_ville.

26.5%가 최저생계비(연간 7,300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나타난다. ZUS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민자 인구는 이민 2세대와 3세대를 제외하고도 전체인구의 24.4%나 되는 수치에 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청소년이 처한 환경은 프랑스 전체의 비율로 볼 때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진다. 다음의 <표 IV-12>에서도 보여주듯 실업률이나 빈곤한 가정의 비율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은 방리유의 각종 비행에 연관된 범죄나 소요사태의 원인을 제공한다.

<표 IV-12> 대도시 외곽 도시민감지역(ZUS)의 청소년 환경

(프랑스 내 총 751개 ZUS, 거주민 467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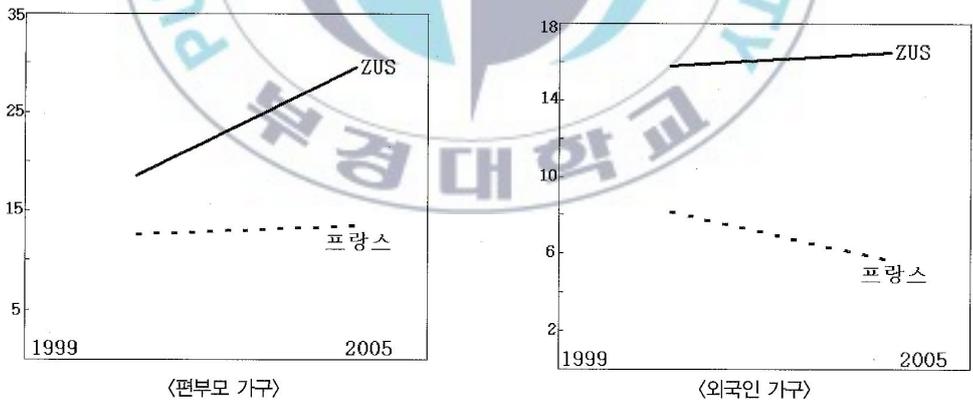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신문 2005년 11월 9일

프랑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빈곤 퇴치를 통하여 이민자에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가닥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정부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미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ZUS의 설정으로 빈민지역을 개선하려 했지만 여전히 사회

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유지된 원인은 정부가 단지 ‘빈곤’에 대한 경제적 배제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물론 빈곤은 개인 혹은 가족에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가해지는 생존의 위협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오히려 ZUS의 설정 이후에 편부모 가구의 증가는 눈에 띈다. 또한 외국인 수의 지역적 증가에 있어서는 프랑스 전체 도시와 비교해볼 때 ZUS이외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ZUS 지역은 일정 수준의 외국인 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ZUS 지역의 설정으로 도시 환경을 개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주민들의 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고, 이민자 지역이라는 지역적 이미지의 부정성을 떨어트리지 못하였다. 여전히 ZUS는 외국인 이민자의 지역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프랑스인들이 진입하기 꺼려하는 경계 밖의 도시였다.

<표 IV-13> 편부모²³²⁾ 및 외국인 가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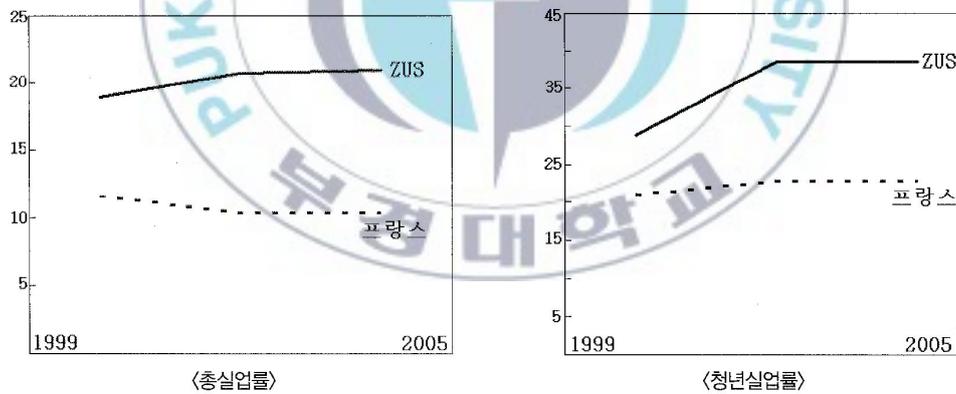


232) 이민자 청소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편부모 가정의 비율은 비이민자 집단보다 높다. 비이민자 가정의 편부모 비율이 12,6%에 그치는 반면, 이민자 가정은 19,5%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편부모의 가정에 3명이나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23%에나 이르고 있다. 대개의 경우 이혼이나 비결혼 자녀의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51%),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여성의 경우 약 3/4가량이 아버지 없이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p.58. www.insee.fr)

출처: l'Express du Mercredi 23, novembre 2005

실업률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총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프랑스의 도시와는 상당한 비율적 차이를 보인다. 도시정책은 보다 많은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빈곤을 퇴치하여 사회적 배제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기본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의 20.7%가 실업의 상태에 있음으로써 기대에 못 미쳤다.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군으로서는 하급의 서비스 작종과 일용 노동자에 머무르고 있음으로써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성취도가 낮은 것이 실업의 주원인일 수도 있으며, 노동시장의 차별과, 정보 부족,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 지속된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기인된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²³³⁾

<표 IV-14> ZUS의 실업률 변화



출처 : l'Express du Mercredi 23, novembre 2005

233) ZUS의 관찰기구인 ONZUS(Observatoire National des Zones Urbaines Sensibles)에 따른 평가에 의하면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ZUS의 설정효과는 투자미비, 투자된 기업의 적은 면세효과 등으로 인하여 미비한데 반해, ZRU와 ZFU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규 기업의 유치가 증가되었고, 공장과 상업지역 시설물의 현대화는 물론 상당수의 고용효과까지 창출되었다. 예를 들어 ZFU지역에서 신규 고용된 종업원의 약 30%가 지역 거주민으로서, 실업률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정인철·배미애 2007: 80).

실업에 의한 빈곤은 순환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ZUS 전체인구의 43%가 빈곤 수준에 해당하고 있는데 프랑스 전체 도시의 2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건강 수준 역시 평균 32%가 불량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²³⁴⁾ 소득이 낮음으로써 의료보험의 낮은 지급이나 대체의료보험(Mutuelle) 등의 혜택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의 현황도 2002년도의 Insee자료를 보면 독립된 주택을 소유한 프랑스인이 58%인데 반해 이민자는 32%에 그친다. 그러나 그나마 32%에 해당하는 이민자 주택소유의 비율에서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이주해 온 유럽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6%에 달하는 비율의 이민자 가정은 HLM같은 공동형 건물²³⁵⁾에 머무른다.

<표 IV-15> 거주 형태

(단위 %)

거주의 형태	비이민자	이민자
주택	58	32
공동형 건물	40	66
기타(여관, 임시거주)	2	2
합계	100	100

출처 : INSEE, enquête Logement, 2002,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살고 있는 거주지의 면적 또한 프랑스 평균(89.6m²/75.1m²)에 비해 작다. 당연하게 ZUS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전반적인 빈곤과 생활환경, 치안

234) 1999-2003년의 기간 동안 조사한 이민자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다. 14%가 아주 나쁘거나, 나쁜, 좋지 않은 수치로 나왔고, 26%는 평균적, 60%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 이민자의 경우 각각 8%, 21%, 71%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INSEE, enquêtes sur les conditions de vie des ménage, 1999-2003,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235)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건물을 의미한다.

부채 등에 노출되는 열악한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러한 환경은 거주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주원인이 된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09년 8월 10일자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의 기사를 통해 이들의 삶에 대해 조명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이 기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어찌면 갈수록 심화되는 방리유의 삶의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다.

“파리 북쪽에 위치한 센-에-마른(Seine-et-Marne)의 41%의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도 실업과 폭력에 대한 노출의 걱정이 이들 삶의 최우선적인 고민거리이다. 최고의 고민거리인 실업은 2003년 이후로 39%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제자리이고,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에이즈(Aids)나 도시공해에 대한 고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은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무려 25%나 치솟았다. 두 명중 한 명(50%)은 갈수록 확산되어 가는 폭력의 노출에 두려움을 갖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히 RER(파리외곽 급행열차)을 탈 때, 밤에 혼자 거리를 걸을 때, 마약, 폭력, 젊은 청소년들의 패거리 때 등 수 많은 형태의 두려움은 도시 곳곳에 있다.”²³⁶⁾

ZUS의 설정 이후 다양한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사회적 배제의 해소 문제는 경제적 결핍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소외 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빈곤의 문제와,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정부가 주도하여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설정하여 극복하려는 의도는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는 ZUS의 설정으로 이민자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 노력하

236) Le Parisien, 2009년 8월 10일자, “41% des habitants redoutent le chômage”, (<http://www.leparisien.fr/seine-et-marne-77/41-des-habitants-redoutent-le-chomage-10-08-2009-602803.php>)

면서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배제가 의도되지 않은 부분에서 창출되었다. 즉 이전의 경제적 빈곤에 의한 사회적 배제라는 것이 강했다면, ZUS의 지정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는 공간적이며,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물론 이 모든 배제라는 유형의 저변에는 빈곤에 대한 요소가 제일 크다. 반면 이 못지않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주류집단과 주류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격리된 공간에 내던져졌다는 버림과 추방의 정서적인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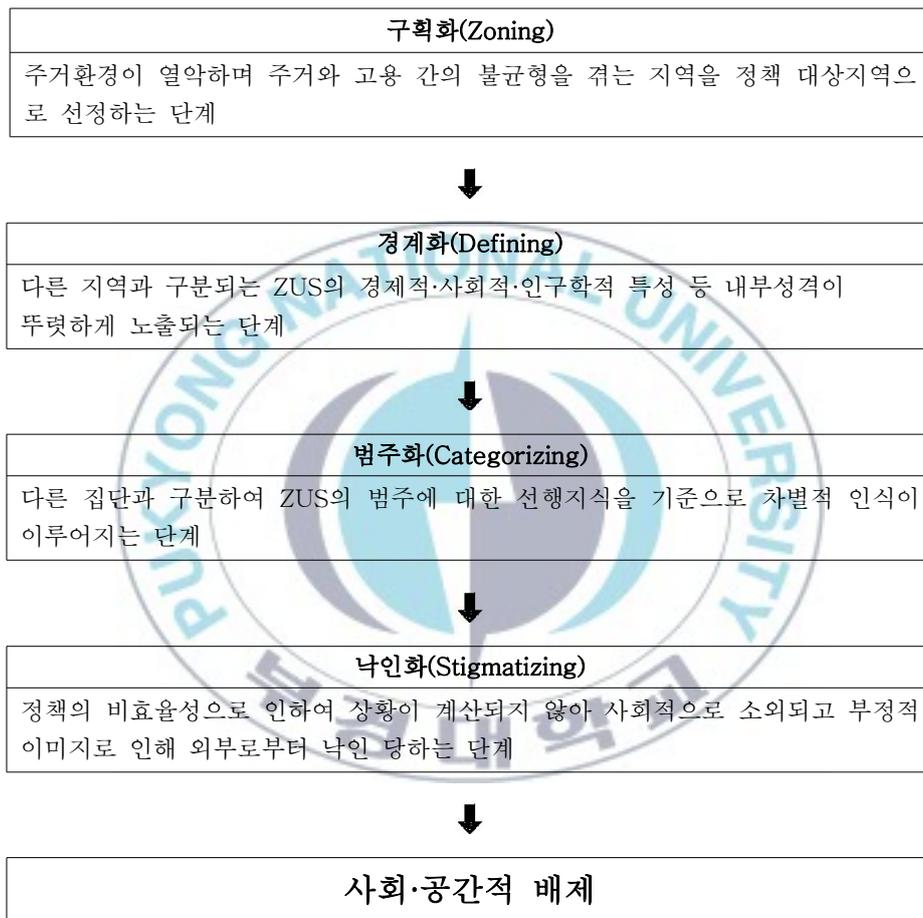
사회적 배제는 전체 사회 안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회적 과정을 가리킨다. 소수 민족이나 인종, 소수 문화의 이민자들은 개인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문화 집단이든, 인종 집단이든 간에 정치적, 문화적으로 온전한 사회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얻지 못한 채 격리된 존재로 살아간다. 지속되는 집단 간의 공간적 격리는 상호적으로 각자가 속한 집단의 시선으로 경계 너머의 집단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만든다. 따라서 다수 집단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만드는 편견으로 왜곡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배제와 차별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반사회적 사고를 갖게 된다. 나를 배제한 사회에 대한 증오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 집단 간의 배제와 차별은 끝내 사회의 위험과 위협의 요인으로 남는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법적인 보장보다도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상호 간에 갖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라는데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이미 불이익을 지니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거지 격리와 같은 물리적인 경계의 설정은 사회적 배제를 더욱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정인철·배미애(76)는 프랑스 ZUS의 사회적 배제가 구획화(zoning), 경계화(defining), 범주화(categorizing), 낙인화(stigmatizing)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심화되었다고 본다.

아래 <표 IV-16>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의 오류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구획의 설정과 통제는 오히려 기대하는 목적은 달

성되지 않고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외부의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물리적 공간의 설정은 사회적, 공간적 배제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적절한 자료이다.

<표 IV-16> ZUS의 사회공간적 배제



출처 : 정인철 · 배미애 2007: 76-77

이처럼 ZUS라는 특정 사회구역의 설정은 사회화 과정을 통한 통합의 조건들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을 준다. 주

민들은 사회적, 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더욱 공간적으로 배제하고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³⁷⁾ 사회적 배제와 편견, 차별의 극복정책은 단지 경제적 결핍을 보장하고 분배위주의 단기적인 경제적 측면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이고 심리적이며 문화적인 측면들과 동시에 배려되고 그에 대한 법적 보장이라는 측면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ZUS가 가지는 사회·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빈곤과 실업으로서만 인식한 정치인들의 정책의 한계와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5. 교육과 언어

1) 학교교육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최상이자 최선의 정책은 언어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인식된다. 그러므로 프랑스도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프랑스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되면 프랑스 국적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11세부터 5년 동안의 기간의 체류라는, 지속적으로 그렇지 못하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이러한 체류기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프랑스의 의무적인 공교육을 받았다는 계산에서 나온다. 프랑스 교육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받았다는 것은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가 되었다는 의미이다.²³⁸⁾ 그러

237) 오늘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특구’에 대해 프랑스의 경험을 참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38)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가 프랑스 교육을 받고 있지만 18세까지는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프랑스인이라 생각했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채로 있다가 국적을 취득할 시기 혹은 그 이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나이의 시기라는 점이다.

므로 교육을 통한 프랑스인으로서의 탈바꿈 과정을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사회화의 조건들을 습득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프랑스인으로서의 시민성을 겸비해 나가며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 곳이 학교이다.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프랑스적 동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프랑스에서의 교육정책은 이주민을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프랑스의 공교육제도는 인종·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프랑스 동화주의 모델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주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은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자에게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것(Ouellet 2002: 146-167)이다. 이는 집단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의 자질에 따른 능력의 발휘에 기초를 두는 프랑스의 보편주의적 전통에서 기원한다. 자유와 평등, 능력 등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회화의 강조는 이론적으로 어떤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특성도 동화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인간이라는 동질성을 공유하는 보편적 존재로 간주될 뿐, 각 개인이 서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차이나 특수한 처지는 고려하지 않는 부당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은, 호네프의 원리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의(Gerechtigkeit)'로 규정 될 수 있다(호네프 2009: 11). 정의의 원칙, 즉 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은 보편타당하고, 우월적인 윤리적 입장에 있으며, 사회운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타자는 이러한 운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개념이다. 정의의 원칙과 '정의의 타자(Das Andere der Gerechtigkeit)'²³⁹⁾ 사이에는 배제와 억압이라는 위계질서가 생성된다. 이것이 바로 학교 교육과 언어를 통한 프랑스식의 용광로(melting pot)의 통합 방식이 갖는 의미이다. 학

239) 호네프에 의한 '정의'는 칸트적 전통에 따르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형식적 원칙에 따라 개인이 행위나 사회운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정의의 타자'는 보편적 정의가 가지는 불편부당한 원칙에 대하여, 개인적 특수성을 보호하려는 윤리적 입장의 개념이다(호네프 2009: 10-11).

교 교육은 이민자의 특수성의 부분들을 프랑스식 보편주의 전통으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인 것이다. 프랑스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녹여서 프랑스의 공화주의라는 촉매제로 다시 프랑스인으로 태어난다는 논리가 존재한다.

히잡 사건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통합의 갈등 사례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와 라이시떼의 가치와 원칙을 주입하려는 프랑스 정부와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무슬림 여학생들 간의 문화와 가치 전쟁이다. 학교라는 장소에서 공교육 제도를 통하여 자국민과 이민자의 후속세대를 교육하고 동화시키려 한 프랑스의 의도는 일단 벽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는 공화주의 이상의 전달과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관은 학교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논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이 상하원을 통과하여 법적·제도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방주의적 동화의 정책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여겨진다.²⁴⁰⁾ 하지만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종교관 등 인식의 전환 장치, 멜팅 pots의 기능으로서 ‘학교’라는 개념과 문화적 특수주의는 프랑스의 반사회적이라는 인식에 프랑스 정부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어 보인다.

교육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민자에 대한, 특히 이민자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환경과 교육 실태는 열악하다. 고등학교의 진학률과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반면 중퇴율도 상당히 높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남학생은 40%, 여학생은 32%의 높은 수치로서 프랑스인(각각 20%, 13%)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²⁴¹⁾ 우수한 교사들도 이주

240) 2005년 이후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나 교사들의 재교육,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프랑스 역사교육(프랑스가 불편해하는 식민지 시대를 포함하는), 불평등한 부의 분배 등 사회적 조건이나 현상들을 이민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주민 취약 아동들의 학교교육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이주민 취약 아이들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프랑스어 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이 개설, 이주민과 같은 국가 출신의 교사 임용 등이 시행되었다.

241) OECD, *Jobs for Immigrants, volume 2: Labor Market Integration in Belgium, France, the Netherlands and Portugal*, OECD, 2008.

민 자녀들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 임명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표 IV-17> 이민자와 비(非)이민자의 학위취득 현황

2005년(단위 %)

학위	이민자	비이민자	전체
대학교 이상	13	12	12
전문대학	5	11	11
고등학교	14	18	17
기술고등학교	13	25	24
중학교	6	11	11
무학 혹은 초등학교	48	23	25
전체	100	100	100
인구수(단위:1000명)	3,440	36,352	39,792

출처 :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프랑스인들에 비해서 교육의 수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 IV-17>에서 나타나듯이 이민자의 경우 전체의 48%가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다. 비이민자의 경우에는 23%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않은 이민자가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비교적 낮은 학력의 결과는 이미 프랑스에 올 때 무학인 상태로 이민 온 경우가 많았고, 학교에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처럼 이민자의 학력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랑스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을 이루며, 고용 역시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에 편입하였다. 저학력 이민자의 직업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다. 또한 이민자가 비이민자가 비해서

기술고등학교 졸업자가 크게 적은 것은 이들 특징 중의 하나이다.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민자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졸업생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자연히 이러한 학위 취득 현황은 곧 그들의 경제적 활동과 연결된다(김민정 2007: 24). 하지만 교육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민자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비이민자의 수준과 비교해서 낮지 않다. 오히려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나 그 자녀의 경우에는 실업률의 상승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학력의 이민자 후속세대들이 실업에 노출된 원인은 인종주의 등 다른 이유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의 하류계층을 형성하며 빈곤의 대물림과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교육의 부재, 즉 언어 능력의 부재에 있다고만 판단하였다. 이주민 청소년의 높은 실업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소양사태의 원인 또한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된 탓으로 보았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주민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이를 범죄발생의 가능성과 연결시켰다. 언어지식과 의사표현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동화의 가능 척도를 언어능력에다 두었다(박명선 2007: 295-296).²⁴²⁾ 그러므로 정부는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프랑스 사회 정착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충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²⁴³⁾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는 2003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의 학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2005년부터 ‘학업성공 프로젝트(PRE, Projet Réussite Educativ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진 학업능력미달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제도였다.²⁴⁴⁾

242) 다음 장에 나타난 ‘프랑스 거주 이민자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도표를 참조하라.

243) De même, parce que les inégalités se creusent dès le plus jeune âge, à l'école, en fonction des origines sociales et culturelles, le plan de cohésion sociale prévoit, dès la maternelle, le bénéfice du soutien d'équipe de réussite éducative pour les enfants fragiles : 불평등은 가장 어린 나이 때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통합 계획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을 위한 성공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Haute Conseil à l'intégration)

244) 이는 2-16세까지의 취약계층에서 태어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이 가능한

이듬해 2006년 발족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국(l’acsé, 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égalité des chance)’은 보다 활발하고 적절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유치원부터 실시된 이 교육 정책은 교육과 과외활동, 문화, 사회 또는 보건 영역까지 포괄한다. 그리고 ZUS(도시민감지역)나 우선교육이 강조되는 지역(ZEP, 교육우선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시행하며 2009년도까지 목표로 한다. 필요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법령도 내놓으면서,²⁴⁵⁾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영역에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의 실현을 현실화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시도는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의 제안(2003년도)이 있기 이전에도 시행되었다. 프랑스가 시행해 왔던 이전 이민자 교육정책들 중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우선지역(ZEP, Zone d’éducation prioritaire)’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프랑스의 집중적인 정책의 시행은 ‘도시민감지역(ZUS)’과 ‘교육우선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ZUS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정책의 시행은 이미 언급을 하였기에 피하기로 하고, ‘교육우선지역’이라 불리는 ZEP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는 슬로건 아래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의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테랑 대통령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정책은 학업성공의 실패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데 363개의 지역이 설정되었고, 이를 ‘교육우선지역(ZEP)’이라 하였다. 시행의 초기에 4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행정을 시행하려던 것이 지역선정의 유지요구가 나오면서 수정과

한 빠르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에의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프로젝트의 테마를 살펴보면 53%가 학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이고, 이어서 부모지원 테마가 15%, 정신적인 치료를 포함한 건강 관련 테마가 13%, 야간교육이 9%, 여가활동이 6%, 시민성 교육이 3%, 문화가 2% 그리고 스포츠가 1%를 차지하고 있다(이가야 2009: 274-279).

245) l’acsé, “Synthèse du bilan de la mise en oeuvre du programme de réussite éducativ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juillet 2008, p.7.

보완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ZEP가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은 지식의 평등한 접근, 읽기와 언어활동의 숙달, 영상교육 강화, 조기교육, 진학지원, 시민교육,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긴밀한 유대, 학교 개방, 평가도구 마련, 교사지원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적인 중점 사업으로 되었다. 학부모 교육과 학교 개방 등 교문 밖에까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조항까지 포함된 배경에는 이주민의 만성적인 실업, 무지와 편협, 폭력과 가난, 소외가 사회내부의 위협을 조성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주민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위협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일찍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2005년도의 교육정책은 ZEP의 교육환경에다 ‘학업성공 프로젝트(PRE, Projet Réussite Educative)로 더욱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민자의 교육 수준은 위의 <표 IV-17>에서 본 것처럼 비이민자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낮지 않았으나, 빈곤과 실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젊은 층의 교육에 대한 기회는 상실되었다. 결국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의 평가는 도시민감지역과 교육우선지역에 대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학업성공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학업성공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교육정책 시행에 대한 결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앞서 시행한 교육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2) 시민 언어교육

1992년에 개정된 헌법 2조는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1999년 유럽연합의 ‘지방어, 소수언어에 대한 유럽헌장’ 비준을 반대하였다. 프랑스는 이 헌장을 거부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로서 거부의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의 불가분성, 법 앞의 평등,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단일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언어, 즉 프랑스어는 민족의 근대적 형성에 있어서 전통의 발명, 근대국민의 형성, 언어를 통한 지배라는 언어의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16세기 프랑스어는 당시 유럽사회를 지배하는 가톨릭의 언어인 라틴어를 대체하면서 국가의 중앙집권화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18세기에는 유럽의 왕족 및 귀족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언어, 보편언어로 등장하였다. 프랑스어에 대한 프랑스인의 자부심은 대단하여 자부심만큼 프랑스인은 언어에 상징을 부여하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 콩도르세(Condorcet)와 그레구아르 신부는 언어를 통한 민족의 통합을 주장하였고, 바레르(Barère)는 다음과 같이 언어와 정치, 언어와 영토, 그리고 언어와 의식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면서 언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와 민족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방주의와 미신은 브르타뉴어를 한다. 공화국을 증오하는 이민자들은 독일어를 한다. 반혁명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맹신주의는 바스크어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국어를 모르면 권력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다. 모든 프랑스인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공공 사고의 도구이며 혁명의 가장 확실한 장비인 공동의 언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유로운 인민에 있어 언어는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언어이어야 한다.²⁴⁶⁾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근대 민족의 형성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이미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혁명의 프랑스어는 구성되어 있지 못한 분열된 인민을 하나의 프랑스 민족으로 구성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민자에게 언어의 습득 필요성과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프랑스인의 역사 인식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민족의 정치

246) Chevalier J.-C., *L'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de Ferdinand Brunot*, Les lieux de mémoire, paris, Gallimard Quarto, 1997, 조홍식(2008a: 114)에서 재인용.

적 구성이라는 근대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을 발명하고 실천한 프랑스가 언어라는 무기로 통일성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홍식(2008a: 108)은 흠스봄과 레인저의 입을 빌어 전통의 발명이요, 웨버에 따른 근대 국민의 형성이자, 부르디외의 사상인 언어를 통한 지배를 읽어 낸다.

프랑스어가 원칙적으로 프랑스 민족의 언어에서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언어로 발전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프랑스 민주정치를 상징하는 공화주의는 ‘하나의 불가분의 공화국(République une et indivisible)’이라는 이념을 기둥으로 삼는다. 이 단일성과 불가분성은 다시 언어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프랑스 사회에서 이질적인 이민인구가 증가하자 민족정체성에 새로운 위기를 느낀 프랑스는 단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 정책을 펴게 되었다.²⁴⁷⁾

1980년대와 90년대에 극우정치 세력에 의해 이민 집단의 문제가 정치적 핵심으로 부상하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언어정책을 강화하였다. 1989년에 ‘프랑스어 총괄국(DGLF,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²⁴⁸⁾과 ‘프랑스어 고등위원회(CSLF, 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에는 공화국 헌법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2006년도의 ‘통합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2006)’이 나오기 전, 프랑스의 이주민 사회통합에 있어서 체류허가가 이민자의 프랑스어 언어 습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사르코지법을 기본으로 하는 이주민 통합정책인 ‘통합계약’이 나오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프랑스의 사회적 연대정책과의 관련 하에 시민 언어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체류허가를

247) 1970-1980년대에 차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마그레브 국가들이 교사들을 프랑스로 파견하여 자국의 문화나 언어를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원국가의 언어와 문화(Langues et Cultures d’Origine)’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주당 세 시간의 짧은 언어수업과 학과 시간의 중첩으로 오는 학업부진, 낮은 참여도, 구분되고 격리되는 데서 오는 불이익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생기며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박단 2005: 143-144).

248) 이 기구는 2001년 지방어(langues régionales)를 포함시키기 위해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 총괄국(DGLFLF,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으로 명칭이 바뀐다.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어의 충분한 활용능력이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하였다.²⁴⁹⁾

이러한 원인은 가족 재결합 정책으로 프랑스에 온 남성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아내를 집에 있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이주 남성들을 맹비난하면서 이주 여성의 프랑스어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고 의미가 전제되었다. 언어를 통한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한 것이다. 가정에서의 칩거는 동화의 우선조건이 되는 언어의 습득을 막게 하고,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원출신 국가의 언어로 소통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이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확대되는데 언어를 통하여 전통문화와 관습이 전수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프랑스는 동화의 가장 큰 적으로 그러므로 프랑스어의 미사용과 언어 능력의 부재라 판단할 만한 것이다. 다음의 <표 IV-18>은 이민자의 가정에서 쓰이는 언어사용에 대한 조사를 연도별로 나타낸다.

<표 IV-18> 프랑스 거주 이민자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단위: %)

자녀와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합계	1965 이전	1965-1969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1995
아버지							
프랑스어만 사용	14	22	18	11	14	12	9
자주 프랑스어, 간간이 다른 언어	44	49	48	47	43	38	29
원칙적으로 프랑스어	58	71	66	58	57	50	38

249) 프랑스에서 이러한 성년 이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 혹은 필수적인 기제가 된 배경에는 언어 강좌 제공을 통한 이주민 통합 정책의 긍정적 모델로 인정되었던 네덜란드 통합 방식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주민의 국적 취득의 과정에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언어시험을 둔다.

자녀와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합계	1965 이전	1965-1969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1995
아버지							
자주 다른 언어, 간간이 프랑스어	8	5	4	8	6	11	14
다른 언어만 사용	34	24	30	34	37	39	48
어머니							
프랑스어만 사용	12	38	19	14	10	9	6
자주 프랑스어, 간간이 다른 언어	44	44	66	54	43	42	30
원칙적으로 프랑스어	56	82	85	68	53	51	36
자주 다른 언어, 간간이 프랑스어	12	3	1	10	1	14	22
다른 언어만 사용	32	15	14	22	36	35	42

출처 :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그리고 다음의 <표 IV-19>는 유럽 이민자와 무슬림 이민자 가정 그리고 이민자 혼합가정²⁵⁰⁾의 언어 사용형태를 나타낸다.

250) 이민자 가정은 부모의 양측 모두 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정이거나, 자녀를 가진 편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혼합가정(Couple mixte)은 배우자 중 1명이 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2002-2005년도에 프랑스에서는 약 275,000의 결혼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 8,000여건의 결혼은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이고, 약 45,000건의 결혼식은 혼합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결혼식만 외국에서 하고 프랑스의 호적에 결혼신고를 한, 약 45,000건의 혼인 건수를 합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혼합가정이 늘어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마그레브나 터키에서 결혼식을 올린 프랑스인이 10년 사이에 731%나 증가하였다.(http://www.fr.wikipedia.org/wiki/Population_fran%C3%A7aise)

<표 IV-19> 출신국가에 따른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형태

(단위: %)

자녀와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민자 가정						혼합 가정		
	포르투갈	기타 유럽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기타 아프리카	터키	비이민자 아버지, 유럽인 어머니	비이민자 어머니, 유럽인 아버지	비이민자 어머니, 마그레브 아버지
아버지									
프랑스어만 사용	10	24	17	9	23	3	91	74	75
자주 프랑스어, 간간이 다른 언어	56	31	50	49	41	19	8	20	22
원칙적으로 프랑스어	66	55	67	58	64	22	99	94	97
어머니									
프랑스어만 사용	13	21	14	8	20	1	69	93	84
자주 프랑스어, 간간이 다른 언어	61	38	48	43	48	16	26	6	15
원칙적으로 프랑스어	74	59	62	51	68	17	95	99	99

출처 :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édition 2005.*

이민자의 프랑스어 사용 비율과 빈도에 대한 프랑스의 이러한 우려 섞인 인식은 위의 도표로서 이해가 된다. 이민자 가정에서는 프랑스 거주자의 해가 갈수록 프랑스어의 사용빈도 수는 <표 IV-18>에서 보여준 것처럼 적어지고, 다른 언어 즉 출신 국가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IV-19>에서는 북아프리카 이민자 가정에서의 불어 사용률은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유럽 이민자 가정과 혼합가정의 프랑스어 사용률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에서 부모의 사용 언어가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주목한다. 이민자의

동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프랑스 언어의 사용임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는 이민자의 언어 소통 미숙이 사회통합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체류허가의 조건과 통합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언어를 통한 동화의 정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지만 지배와 차별화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프랑스의 통합계약은 우선 프랑스 국적소유자의 외국인 배우자, 동반가족으로 프랑스에 온 외국인, 난민과 노동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이 대상이다. 이 계약은 프랑스의 가치, 즉 민주주의, 기본법의 존중, 정교분리주의, 평등기본법에 의한 권리 인식과 동시에 언어지식이 이주민에게 필수적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강좌를 제공한다. 강좌 내용은 프랑스의 제도와 관공서, 기본법, 프랑스 사회의 가치인 자유, 특히 견해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표현의 자유, 정교분리주의, 평등기본법, 특히 남녀평등, 세금, 사회보장과 관련된 연대기본법, 정치 참여, 국적 취득, 사회적 분열 거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언어강좌가 제공되고, 문맹자를 위한 강좌도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09년 새로운 이민법은 장기간 체류한 이들에게도 프랑스어 능력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언어’도 이민자들이 넘어야 할 새로운 장벽이 되었다.²⁵¹⁾

6.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

198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이민 2세대들을 주목한다. 1세대 이민자를 부모로 둔 후속세대(이민 2세대)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연령에 이르

251) 2009년도 새로운 이민법은 장기간 체류한 이들에게도 프랑스어 능력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언어’도 이민자들이 넘어야 할 새로운 장벽이 됐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불어 강의를 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급격히 줄면서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렸기 때문이다. 1세대들은 일시적으로 노동계약을 맺고 초청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투표권이 없었으나, 이민 2세대들은 프랑스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적법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²⁵²⁾

그리고 1981년도에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사회당의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집권하자 합법화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민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테랑이 대통령 선거에서 행한 이민자에 관한 공약은 이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종식, 이민 노동자에게 프랑스 국민과 같은 사회적 권리 부여, 프랑스에 5년간 거주한 이민 노동자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 부여, 국립 이민청의 민주화 등이었다(박단 20005: 121). 이러한 미테랑의 선거 공약은 곧 이루어진 1983년 시의회 선거(le s élections municipales)에서 커다란 패배를 안겼다.²⁵³⁾ 이는 미테랑이 이민자에게 약속한 선거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표시이다. 특히 투표권 허용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반대는 결코 이민자를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정치적 배제를 의미한다. 결국 이 선거의 결과로 반 이민자 정책을 주장하는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프랑스 정치의 장에서 부상하였다. 르펜(Jean-Marie Le Pen)은 사회불안을 이민과 연결 지으면서 유럽인이 아닌 이민자들을 프랑스에서 내보내는 것을 투쟁의 우선 축으로 삼았다. 그럼으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국민정체성과 국적 권리에 관하여 논쟁과 이민의 정치화가 전개되었다.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와 인종, 종교의 전통을 갖고 있던 국민국가가 다름과의 공존을 요구하는 다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 실현에 두 가지 차원의 위기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표의

252)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알제리, 모로코 등)에서 태어난 부모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프랑스의 국적법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253) 이후 1988년 미테랑은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국가와 관습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표권 허용에 대한 미테랑의 의지는 결과적으로 민족전선(FN)의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라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 이를 두고 빨간 걸레를 흔들었다(agiter un 'chiffon rouge')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http://www.eleves.ens.fr/pollens/seminaire/seances/citoyennete%20locale/DVE.htm>)

위기이고, 둘째는 연대의 위기이다. 오늘날 많은 문화적 소수집단들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스스로를 대표할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대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한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분명히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김남국 2005: 100). 당연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경계의 밖에서 머무른 것은 사회적 연대를 기대할 수 없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의사를 읽을 수 있는 현대적 표현은 투표이다. 투표를 통하여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체가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실천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투표권을 가진 자는 국민이며 국적의 소유자가 된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허용할 수 가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실정법상의 지위와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의 이질적인 사회적 존재에 대한 인정 거부라는 표현이다.

전통적인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대표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참여의 통로를 갖지 못하였다(한명숙 2006: 159).²⁵⁴⁾ 결과적으로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 정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 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사회에 대한 요구나 불만에 하나의 단초가 제공된다면 즉흥적인 방법으로 돌맹이나 차량 방화라는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여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정부 역시 이들의 요구에 단순하고 단편적인 처방만을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깊은 사회적 상처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이민 2세대들의 등장은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

254)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서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개인의 소속을 국적의 범주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초국가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규정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선거권의 일부(전국 차원의 선거는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아일랜드(1963), 스웨덴(1981), 노르웨이(1982), 네덜란드(1986) > EU가 시민들에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인정받도록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공존을 위한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확산되었다(한명숙 2006: 159).

으켰다. 이들의 부모세대가 거주조건이나 실업의 문제 등 개개인의 빈곤에 관련된 산발적인 요구를 하였다면, 이들은 조직적인 운동을 통하여 사회적 불이익이나, 인종차별, 종교적 다양성 문제, 실업 등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법적 시민권과 문화적 권리를 요구하였다.²⁵⁵⁾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에 대한 주장은 부모세대부터 이어져 온 종속적이고, 피지배적인 구조들을 해체하고자 했다. 부모의 세대들처럼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인 행위자에게는 타의에 의해 불리하게 주어진 조건들은 언제나 재생산되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그렇기에 매우 프랑스적인 사고를 가진 후속세대들은 당연히 이들은 프랑스인이었기에, 취약한 사회적 조건은 이들에게 개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의 발견하는 계기를 던져줌으로써 불합리한 지배양식에 항거할 수 있는 이념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인식된 이민자 후속세대의 존재는 프랑스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집단이다. 그럼으로써 무슬림 청소년 소요사태와 언론에 의해 밝혀진 무슬림 이민자의 규모에 놀란 프랑스인은 프랑스의 잠재적 위협으로서 인식되기에 충분하였다.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La France aux Français!)’²⁵⁶⁾라는 반 이민자 구호가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이민 후속세대들의 등장과 요구는 프랑스 정부의 이민에 대한 강경책과 국적법의 강화, 이민 정지 등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법적개정과 통합의 까다로운 요구조건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정책의 강조와 강화를 프랑스는 선택하였다.

이민자의 정치적 대표성은 다인종사회에서 정치를 통한 통합의 사례로 볼

255) 1980년 이후 이민 2, 3세대들(비르, beurs)의 대중적인 사회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일례로 1983년 ‘인종차별반대, 권리평등추구를 위한 행진(Marche contre le Racisme et pour l’Egalité des Droits)’, ‘격차줄이기84(Convergence84)운동’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당 정부는 ‘SOS Racisme’이나 ‘프랑스 플러스(France Plus)’같은 기구들을 창설한다.

256)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라는 구호는 1892년 프랑스의 열렬한 반유대주의자 언론인 에두아르 드뤼몽(Édouard Drumont)이 그의 저서 『자유발언(La Libre Parole)』이라는 책의 부제(sous-titre)에 내건 것이다. 그에게 있어 조국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인들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점령당한 ‘유대인의 프랑스(La France juive)’였던 것이다. 그는 이 구호로서 프랑스 대중들 사이에 반유대주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 오늘날 다시 등장한 이 구호는 무슬림 이민자에게 점령당했다는 프랑스인들의 당혹스러운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http://fr.wikipedia.org/wiki/%C3%89douard_Drumont)

수 있다. 이민자 출신의 후보자가 정치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통합의 지표이다. 소수인종출신의 개인이 고위직장에 들어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은 소수인종에게 공공선(公共善)의 균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분배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한 공권력의 이민정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다음의 <표 IV-20>는 이민자가 수용국가에서 얼마나 잘 통합되었나를 살펴볼 수 있는 이민자의 정치적 통합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이민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혹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지표이다.

<표 IV-20> 이민인구의 정치적 통합

(단위: %)

	인구	유권자	주/지역의원	국회의원
프랑스	5%	2.7%	3.3%	0% 하원 0.6% 상원
영국	7.9%	6.6%	2.6%	2.3%
미국	12.5%	7.4%	3.2%	5.3% 하원 3.0% 상원

출처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Washington DC, OECD, 2006

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이 이 방면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이며, 프랑스는 가장 최하위의 기록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자 인구나 이민자의 유권자의 비율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가지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되었던 미국은 유럽의 다른 이민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통합정도가 높다. 그러나 프랑스는 옛 식민지였던 해외영토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을 제외한다면 현재 흑인 및 북아프리카 출신의원은 하원에 오직 1명, 상원에는 4명만이

있다. 결국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이 프랑스 모델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도 내세울 수 있다.²⁵⁷⁾

프랑스 국민들은 극우 정당들의 정치적 선동도 한 몫을 하였지만 시민성과 국민성의 상징인 투표라는 제도적 권리에서 외국인과 동등한 입장에 서길 꺼린다. 지난 미테랑의 지방선거의 결과 후 국민들의 의지를 간파한 우파정당들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허용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이민과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우파로서는 이들에게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다.²⁵⁸⁾ 반면 완화된 이민자 정책을 고수하는 좌파 정당은 이민자들에게 선거권 보장을 허용할 것을 거의 20년 간 주장해 왔다.

좌파 정당은 1999년 10월 21일 공산당(PC)의 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비유럽 출신의 외국인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합법적으로 부여하자는 헌법제안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권 부여의 제안은 국회의 법사위원회(Commission des lois)에서 거부당한다. 같은 해 12월 23일 녹색당(Verts) 의원들도 이민자 투표권 제안을 하였다. 이듬해 2000년 1월 12일에는 사회당(PS)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 제안을 하였으나 결국 법사위원회에 의해 반려된다. 오랜 시간을 걸쳐 지방선거에서의 이민자 투표권의 허용여부에 대해 논란과 법안 상정을 벌여왔으나 결과는 허용불가였다.

2000년도에 다시 한 번 리오넬 조스팽은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상원의 찬성을 주장하였다. 조스팽이 주장하는

257)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시절 사회통합담당 비서관을 지냈고 자신 역시 토고 출신의 이민자였던 코피 얀난(Kofi Yamgnane)이 르몽드에 한 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결국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모델이 프랑스모델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Le modèle américain fonctionne mieux que le modèle français.)”(OECD자료,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Washington DC, OECD, 2006*, p. 73; 김복래(2009: 229)에서 재인용.

258) 2005년 발레르 악뒤틀(L'hebdomadaire Valeurs Actuelles)주간 신문은 만일 비유럽 출신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었을 때를 예상하여 선거 결과에 대해 주목하였다. Ifop에 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좌파에 지지하는 프랑스인들보다 +11.2%나 더 높은 지지도를 보내었고(특히 사회당(PS)에게는 +8.4%), 무슬림이라 밝힌 응답자의 56.3%가 좌파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비유럽출신의 외국인 중에서도 민족전선(FN)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8.5%나 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http://www.civitas-institut.com/content/view/204/>)

근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모든 유럽 출신의 외국인들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회 역시 회원국의 국가들에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 모든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 주기를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이젠 투표권이 더 이상 국적과 관계된 것이 아니어서 비유럽 이민자에게도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우파 정부의 반대에 의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투표권의 부여는 시민권의 부여이며, 시민권의 부여는 국적의 부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적에 관계된 문제가 투표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²⁵⁹⁾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법적 논란이 프랑스 정치사에서 늘 좌파와 우파 정당 간의 대립이 지속된 것처럼 이민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부여는 정치적 실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시민권(citoyenneté)의 또 다른 얼굴이다. 시민에게는 모든 법적 권리가 명백하게 열려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교육 등에의 접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에 대한 접근을 투표권 제한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막는다. 이처럼 정치적 권리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 출신의 거주자들에게는 투표권이 허용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국적과 관련된 투표권이라는 것과는 상반된다. 프랑스는 비유럽권 특히 북아프리카나 터키 등 무슬림 국가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의 시민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주저한다.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프랑스의 이러한 행태에 ‘이민’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인종의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공화국의 시민들은 ‘이민자들’을 ‘출신’의 의미에서 찾으려 하면서 ‘그들’ 안에 지울 수 없는 출신의 낙인들(피부색, 습속, 태도, 종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²⁶⁰⁾ 최종적으로 이들의 모습에서 그들 부모와 조상을 통제했던 식민체계를 다시 그리며 ‘외국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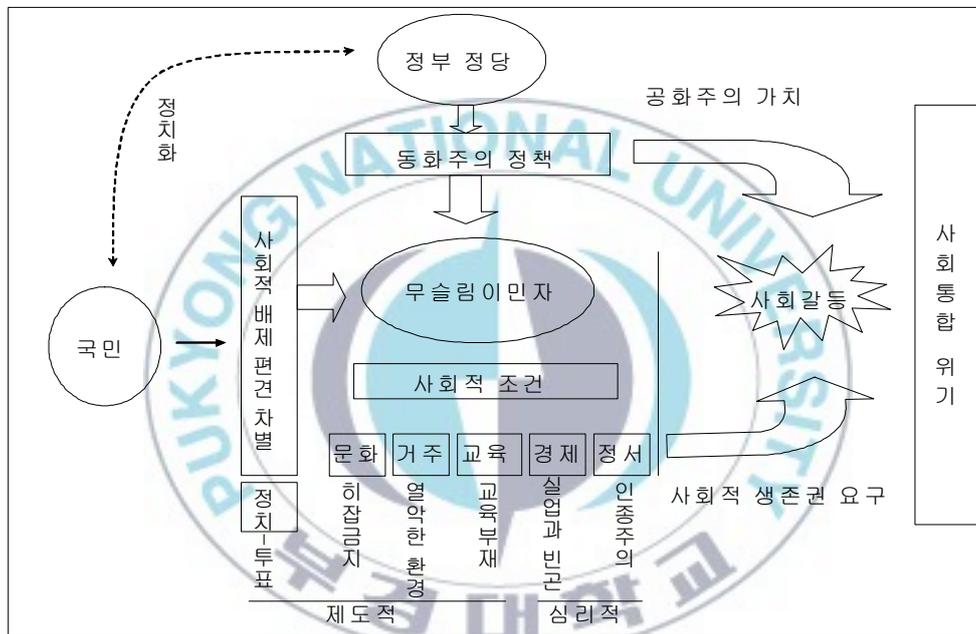
259) <http://www.eleves.ens.fr/pollens/seminaire/seances/citoyennete%20locale/DVE.htm>

260) 에티엔 발리바르, “방리유에서의 붕기들”, 『공존의 기술』, 그린비, 2007, p.428.

지칭하고, 이들을 배제의 중심에 두는 식민지 담론을 정치의 영역에 두었다.

위와 같이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거의 전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은 이민의 정치화와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프랑스 사회통합 갈등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IV-1> 무슬림 이민자 사회통합과 위기



V.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와 사회통합 위기

1.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

1) 제노포비아 현상

이주 외국인의 증대와 더불어 나타난 이방인 내지 외국인 혐오로 불릴 수 있는 제노포비아(Xenophobia)현상은 이민자와 자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질적인 타종족, 타민족, 타문화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배타의식은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나 자기보존 등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본능일 수 있다.²⁶¹⁾ 그러나 이러한 정서나 의식이 인종적 우월감이거나 문화적 우월감에 기반을 두어 인종주의적 차별을 만들어 내고 심화시킨다면 이민자와 자국민들과의 문화적·종교적 차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쟁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나 결속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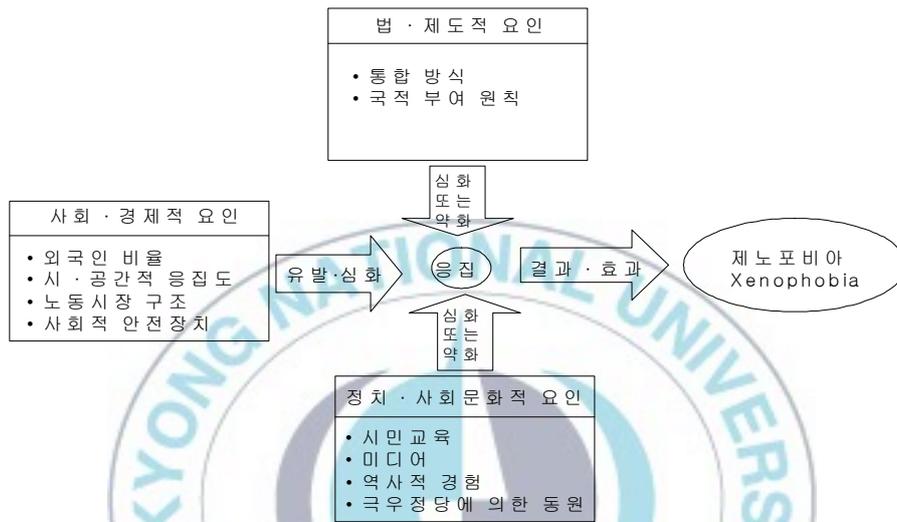
제노포비아 현상은 서구사회에서 지배체제를 성립하기 위해 과학으로서도 검증할 수 없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 우월주의라는 생물학적 인종주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사회경제적 차원의 경쟁시장 논리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인종주의가 나타났다. 즉 인종중심성은 약화되었으나 종교나 문화적 요인의 규정에 의해 우월성 또는 지배성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것이다.

김세균(김세균 외 2006: 20-34)은 제노포비아 현상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261) 제노포비아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즉, 제노포비아는 외부인(outsider)으로 인지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성향을 서술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혐오성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합리·비합리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외국인 혐오적'이라고 말하거나 명시하는 것은 그 이유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E. Cashmore(1994). "Xenophobia", *Dictionary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London: Routledge, p.346, 김세균 외 (2006: 13-14)에서 재인용.

정치·사회문화적, 법·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 <그림 V-1>과 같이 설명한다.

<그림 V-1> 제노포비아에 대한 요인별 영향관계



출처 : 김세균 외(2006: 28)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과 이들의 장기적인 체류 및 정주라는 시간적 요인과 이러한 인력이 특정 도시나 지역에 편중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적인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을 수용한 사회는 영구 정착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이주자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러므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선거권, 피선거권의 시민권의 부여, 의료, 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등에서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거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통합의 유형에 따라 제각각 갈등이 내재하기 마련이다.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제노포비아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민자의 존재를 부정하

고 추방하려는 극우정당의 유무와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다. 극우정당은 이민과 이민자를 정치화하면서 국민이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분하게 하여 집단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닌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집단적인 심리를 형성하게 한다.

2) 프랑스의 이슬람포비아와 정치화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혐오주의(islamophobia) 현상은 극우정당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대량의 무슬림 이주민의 유입으로 정교분리원칙과 복지국가, 공화주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제적 위기마저 닥치자 반이민자 정책을 강령으로 하는 FN(민족전선)의 정치적 선동과 도약은 제노포비아 현상을 프랑스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시킨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슬람혐오주의는 국민전선의 출현 및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²⁶²⁾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이민자들이 인구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민전선에 의한 무슬림 이민자 문제는 정치 전선의 표적이 되었다. 극우세력의 정치적 담론이 여론 속에 광범위하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무슬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는 산업사회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점점 사회적 불안의 원천, 즉 프랑스 민족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의 문제로서 인식되었다.

국민전선은 ‘프랑스인들의 프랑스’를 내세우며 무슬림에 의해 소멸되는 민족 정체성의 심각한 도전을 부각시켰고, 무슬림 이민자 2세들의 잦은 경범죄를 치안 이데올로기로 확대하여 선동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의 상이한 삶의 양식을

262) 국민전선(FN)은 1972년 창당 후 이민을 실업, 법과 질서의 붕괴 등 프랑스의 사회 불안정과 연결시키면서 1980년대부터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좌파정부의 이민에 대한 너그러운 입법과 형벌정책으로 우파 유권자는 국민전선의 반이민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1983년 지방선거로 국민전선은 정치적 부상을 한다. 1995년 르펜은 대통령 선거에서 1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까지 오르게 되면서 제 3당으로 커나갔다. 따라서 국민전선은 이민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최대 수혜자이다.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위협으로 채색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간 것이다(김세균 외 2006: 147-149). 국민전선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인종 간의 우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프랑스적 가치와 프랑스 문화가 다른 나라의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프랑스 민족의 정체성이 알제리, 튀니지 혹은 모로코의 민족 정체성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는 ‘차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것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국인들은 인위적인 행위, 즉 귀화를 통해서 한 국가에 편입될 수 있으나, 희생적인 행위, 자신들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프랑스에 통합될 수 있는, 오랜 노력과 수 세대가 흘러야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은 프랑스 문화에 흡수될 수도 없고, 흡수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문화는 프랑스 문화와 전통의 보전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적·종교적 전통을 가진 이민자의 위협적인 쇄도에 대해 프랑스 민족이 자신들의 특징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며, 프랑스 민족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그레브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한 예로 국민전선의 당수인 르펜은 “이민자들이 내일 당신이웃으로 이사 와서 당신의 수프를 먹을 것이고,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딸, 아들과 잠을 잘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정체성의 보전이라는 프랑스 국민들의 감정에 반이슬람 정서를 확고하게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국민전선의 이러한 주장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인종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 즉 신인종주의 혹은 문화적 인종주의라고 한다(박단 2005: 106-111).

국민전선의 인종차별적 선동이 10-15%에 이르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성장하자, 전통적인 정당들은 애써 이들의 제노포비아적 선동은 무시하려 했지만 극우정당이 제기한 무슬림 집단의 사회적 문제와 국민들의 극우정당 지지에 대한 여론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민의 정치화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억제하며, 입국조건의 강화, 불법이민자 격리와 강제출국, 가족재결합정책의 강화 등 이민통제정책으로 나타났다. 동화에 대한

제도적 노력 또한 병행되었는데 프랑스에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자는 10년 기간의 체류증을 부여하는 법안(loi du 17 juillet 1984)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환식(김세균 외 2006: 153-154)은 프랑스에서의 제노포비아 담론은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태생된 정치투쟁의 도구로 본다. 즉 좌우파의 정권 교체에 따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시소게임처럼 이민자 관련 정책과 법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²⁶³⁾ 다음 <표 V-1>는 좌우파 정당의 집권에 따른 주요 이민자 정책을 보여주는데, 이주민과 이민자 후속세대들을 프랑스 사회로 동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²⁶⁴⁾

<표 V-1> 좌우파 집권에 따른 주요 이주민 정책

집권당(시기)	이주민 관련 정책
사회당 정부(1981-1986)	-불법 이주민의 합법화 조치 -가족재결합 정책, 10년 체류증 부여
1차 동거정부(1986-19888)	-입국조건 강화, 의지에 기초한 국적취득 -공공질서 위배 외국인에 대한 체류증 거부 권한
사회당 정부(1988-1993)	-이주민 통합을 위한 고위통합위원회 설치 -국적법 제정을 통한 통제 및 국적취득 조건 강화
2차 동거정부(1993-1995)	-의지선언, 출생지주의 축소
우파정부(1995-1997)	-이민법(loi Debré) 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경찰 감시 강화 및 외국인 장기 체류 요건 강화
3차 동거정부(1997-2002)	-반소외법 제정을 통한 이주민 주거지역 개발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조치
우파정부(2002-현재)	-사르코지법으로 이민정책 강경화 -선별적 이민정책, 불어능력시험 도입 -유전자 법안으로 가족 재결합 정책 강화

263) 실제로 2005년 소요사태 직후, 이민자 강경정책을 주도해 온 당시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의 지지도는 11% 상승한 68%의 놀라운 수치를 보여준다(Le Monde, 2005년 11월 17일자). 정치인들은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이 프랑스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07년 선거에서 강경한 이민정책과 치안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사르코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무슬림 이민자 문제가 결국 프랑스의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264)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대통령별, 집권 성향별, 정책과 내용의 시기별 특징은 김민정(2007:16)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전선의 르펜이 17%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결선 투표에까지 진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정치적 정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이민의 정치화에 따른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국민의 인식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주의는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인 사회국부적 현상이 아니라, 프랑스인의 전반적인 의식 변화와 함께 시민적 연대를 해체하면서까지 사회를 불안정 속에 내몰아가고 있다. 국민전선은 이민의 수, 실업, 사회 안전성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정치화하면서 프랑스 국민의 이민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무슬림 이민자가 어떻게 정치화되면서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는가를 살펴본다.

(1) 무슬림 인구수의 정치화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에 있어서는 어떤 통계에서는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수는 약 350만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²⁶⁵⁾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고 추산을 하고 있지만 전체인구의 6-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계속해서 증폭되곤 했다. 2005년의 소요기간 중에도 국내 신문뿐만 아니라 프랑스 신문에서도 꾸준히 이슬람 이민자의 수를 500만 명 혹은 600만 명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유명 인구학자인 미셸 트리발라(Michèle Tribalat)²⁶⁶⁾는 500만 혹은 600만 설은 하나의 허구로 지적하면서 370만 설을 제시하였다.²⁶⁷⁾ 그녀에 따르면, 최근 20년 내에 반 이민을 선동하는 흑자들에 의해 무슬림 숫자

265) 2002년도 2월 21일자 Le Nouvel Observateur에서는 프랑스의 무슬림 수는 5백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5 millions de musulmans, Le vrai visage de l’islam français” *A la une du Nouvel Observateur*, 2002년 2월 21일자. (http://hebdo.nouvelobs.com/p1946/dossier/a67759-le_vrai_visage_de_l%C2%92islam_fran%C3%A7ais.html)

266) Michèle Tribalat et Jeanne-Hélène Kaltenbach, *La République et l’Islam, entre crainte et aveuglement*, Paris, Gallimard, 2002.

267) “3,7 millions de musulmans en France, Les vrais chiffres”, *L’Express du décembre* 2003.

가 배로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1989년 역사가 브뤼노 에티엔느(Bruno Etienne)는 프랑스 내 무슬림 숫자를 약 250만 명으로 평가하였다. 1993년에는 통합고위위원회가 한 보고서를 통해 300만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1994년에는 르몽드지가 무슬림 이민자 수를 프랑스 인구의 6.5%, 즉 370만으로 평가하였다. 1996년 이슬람 관계처(Le Secrétariat des relations avec l'islam)는 그 수를 420만으로 제시하였으며, 1996년 당시 내무부장관 샤를르 파스쿠아(Charles Pasqua)가 테러를 언급하면서 500만 무슬림을 거론하였다. 최근에는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법에 반대하면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5-6백만 명의 무슬림을 언급한 바 있으며, 민족전선은 800만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트리발라에 따르면 이러한 수적 과대표장은 이슬람 혐오주의를 선동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이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을까? 프랑스에서는 1872년부터 인구조사 때, 특정인이 어느 종교를 믿는지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인종적 기원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이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무슬림의 숫자를 알기 위해 인구 학자와 사회학자는 '무슬림 문화에 속하는(relevant de la culture musulmane)' 사람들을 셀 수밖에 없었다. 즉, 이슬람이 지배 종교인 마그레브국가, 블랙아프리카, 터키, 파키스탄, 중동 지방 국가 출신의 이민과 '프랑스인'을 헤아릴 뿐이다.

여기에 개종자, 알제리로부터 온 아르키(les harkis)²⁶⁸와 불법 이민자들을 추가한다지만, 외국출신 '프랑스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학자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함으로써 대략 5-6백만이라는 평가에 도달한 것이다. 검증되지 않는 추정 통계에 대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구 학자들은 '국립통계청(insee)'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하였다. 이에 국립통계청은 1999년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380,481명의 익명을 표본으로 하여 부모의 출신국가를 알 수 있는 형태로 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인구 학자들은 처음으로 3세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이용될 수 있었다.

268) 아르키(les harkis)는 프랑스에 충성을 맹세한 식민지 출신 알제리인들을 말한다.

트리발라는 이 자료로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인구표, 이슬람이 지배적인 나라 출신의 이민 수와 그들의 후손의 수를 작성할 수 있었다. '혈통에 의해 무슬림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수는 '공식적인' 무슬림 수보다 훨씬 적었다. 프랑스에는 5-6백만의 무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무슬림인 사람'의 수가 단지 370만 명일뿐이다. 이들은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각각 170만 명, 그리고 3세대가 30만 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실시된 '국립인구청(L'INED)'의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의 약 3분의1이 정기적으로 모스크(회교사원)에 가는 신자로 추정되었다. 미셸 트리발라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수는 극우파가 주장하는 무슬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즉, 극우파 혹은 우파 정치인들은 무슬림의 수를 과대 포장함으로써 주류 프랑스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들 무슬림을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여기게끔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insee의 자료²⁶⁹⁾에 따르면 이민자의 인구는 490만 명으로 추산한다. 1999년도에 비해 760,000 명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한다. 490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인구는 귀화나 결혼을 통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외국인으로 분류된 인구는 약 350만 명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와,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를 합한 수치이다. 원국적을 프랑스인으로 가지지 않은 이민자와 외국인으로 분류된 자를 모두 합하면 5,480,000에 이르면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는 무슬림의 인구는 전술했듯이 약 350만에서 500만 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6-8%에 이르는 수치로 추정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1999년도에 이어 올해 2009년에 프랑스 인구 총 선세를 시행하였기에 그 결과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향후 인구통계조사의 결과의 내용이 발표되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69) Insee, Enquête annuelles de recensement 2004 et 2005, 앞의 도표 참조.

(2) 무슬림 청소년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정치화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치안불안의 담론은 몇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중 중요한 연결 고리가 바로 이민과 범죄행위이다. 즉 이민 문제의 정치화의 핵심기제는 바로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치안문제로 환원시킨 것이었다(엄한진 2007: 266). 다른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에서도 그렇듯이 프랑스에서도 이민자의 이미지는 치안불안(insécurité)과 연계된다. 국민전선은 이민으로 사회 불안이 상당히 심화되었으며, 본국에서 실업상태에 있던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일을 얻지 못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10년 이상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에 들어와 도둑질, 마약밀매, 노인과 여성들에 대한 공격 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상당수가 범죄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불법 이민을 추방하고, 각종 범죄에 연관된 이민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경찰력의 강화와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형벌의 도입과 감옥의 증설을 주장하였다. 물론 국민전선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아프리카 이민자이다(박단 2005: 112-114). 국민전선의 이 같은 선동으로 이민에 대한 언론-정치적 담론과 국민의 한결같은 우려의 표현에서 이민자는 범죄의 이미지와 강하게 결부되었다.

이민자와 범죄라는 이미지 결합은 보다 세부적으로 외국인의 범죄와, 이민자 청소년의 범죄 행위로 갈래지어진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프랑스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지목하고 있고, 이민자 청소년의 범죄는 마그레브인 출신이나, 사하라이남 출신의 흑인 청소년들에 연계된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민자와 범죄라는 연결 짓기는 오랫동안 우파정당과 극우정당에 의해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좌파 정당이나 반인종주의 운동은 이를 비난해 왔었다. 어쨌든 히잡 사건이나, 도시 소요사태, 제 1차 걸프전이 출현하던 1980년대나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2001년의 9.11테러는 프랑스 내 이슬람 존재와 아랍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1997-2002년의 조스팽 정부와 사회당(Parti socialiste)은 치안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부담감으로 전통적으로 이민자를 옹호하던 입장에서 약간 선회하게 된다. 좌파 정당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민자를 옹호할 수 없게 되자, 이민자는 노골적으로 치안불안에 대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건 일반 시민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²⁷⁰⁾ 반 인종주의 시민단체의 상징이었던 SOS Racisme과 1980년대 초반 마그레브 청소년 단체를 이끌던 들롬(Delorme) 신부는 2001년 12월 3일자의 르몽드에 이민자 출신의 청소년들에 의해 수없이 양산되는 범죄행위를 알고선 무슬림 청소년에서 돌아선다.

<표 V-2> 1975년부터 2000년 사이 각 유형별 외국인 범죄의 추이

(단위: %)

범죄의 종류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절도	16.3	17.7	16.9	14.8	15.2	13.5
불법침입	15.6	17.4	1.5	10.1	11.3	9
사기, 위조	9.4	10.9	16.4	11.5	12.2	11.7
폭력, 상해	-	-	-	16.5	16.2	14.7
강간	27.2	28.8	23.4	17.2	13.3	12.9
살인, 살인미수	23.3	20.3	26.1	14.8	16.6	15.9
매춘	21.4	27.6	22.2	2.2	2.2	40.8
가정과 아동에 대한 범죄	6.5	7.1	7.1	7.4	6.9	8.7
위협, 협박	-	-	-	14.2	14.1	13.1
마약운반	69.2	74.5	61.5	38.1	30.6	27.1
마약복용, 판매	-	-	-	20.1	18.1	7.9
건물 방화, 파괴	9.9	10.3	11.4	12.3	11.3	8.6
공권력에 대한 모욕, 폭력	1.3	13.4	14.1	12.7	11.4	12.1
불법무기 소지	25.4	19.9	18.3	16.8	15.6	12.2
국가 기본권 침해	-	-	-	2.3	1.8	2.9
합계	12.4	13.1	12.7	12.8	13.6	10.9

출처 : ministère de l'Intérieur, "Délinquance et immigration en France : un regard sociologique", *Criminologie*, vol. 36, n. 2, Automne 2003, p. 27-55.

270) Mucchielli Laurent(2003). "Délinquance et immigration en France : un regard sociologique", *Criminologie*, Vol.36, n. 2, Automne, p.27-55.

프랑스에서의 치안문제의 부상은 2000년을 전후해 나타난다. 그 주된 양상은 소수민족 집단을 위시한 배제된 집단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강화였다. 극소수 좌파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조하였고, 2002년 대선 기간 중에 시락 대통령은 치안문제를 전면 부각시키면서 치안위원회(Conseil de sécurité intérieure)를 창설하기까지 했다. 2001년에는 ‘일상적 안전에 대한 법’이 태동되어 무임승차, 불심검문과 차량수색 등을 강화했고, 2004년의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법’은 경찰의 도청과 압수수색 등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작고 사소한 범죄(delinquance)’를 저질러 왔던 무슬림 청소년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강경한 범죄 처벌에 의해서 2000년대 들어 매년 이민자 청소년의 재소자가 늘자, 언론 역시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확대 보도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엄한진 2007: 266-267).

이젠 무슬림 집단들이 머무는 지역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프랑스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무슬림 청소년들은 증오를 가진 위험한 집단으로 내몰린 것이다. 물론 방리유의 치안은 심각하고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97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는 외국인인 전체범죄의 1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 배의 수치에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위반이 전체범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한데 따른 것으로, 일반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은 프랑스 국적 소유자의 2배 정도 일 뿐이다. 사소하고 작은 경범죄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검문을 통해 구속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범죄는 범죄의 정도에서 증폭되고, 비율에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현실에서 이질적인 외양과 태도, 불량스러운 태도 등에서 기인하는 ‘작은 범죄’가 핵심이다(Lévi et Zauberman 1999, 엄한진 (2007:268-269)제인용). 그러나 이민자들의 작은 범죄에 대한 심판의 핵심은 이민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심판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치안불안의 문제는 이민문제의 정치도구화로 나타난 것이다.

(3) 실업주범으로서의 정치화

이민에 관한 가장 널리 퍼져있는 편견 중 하나는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있다. 이민자는 실업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의 저임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적 악을 촉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비바 촘스키는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미국에 확산된 잘못된 이민에 대한 편견을 들면서 이것은 제한적 이민정책의 필요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장 공통된 주장이라고 말한다(아비바 촘스키 2007: 36-37).

국민전선의 르펜도 실업에 의한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이민자들을 지목한다. “200만 실업=200만 이민”이라는 왜곡되고 극도로 단순한 도식에서 이민자에 대한 증오를 심화시켰다.²⁷¹⁾ 그러나 이는 이민을 실업률의 원인으로 만들어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예에서 보면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4%에서 6%사이를 맴돈다. 그러나 이민자의 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인 1930년대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20% 이상 치솟았다. 그 비율은 2차 대전과 함께 1940년대에 다시 떨어졌다. 세계경제 공황이 다시 재개된 1970년대 후반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나, 경제적 불황 요인이 사라지는 1980년대 이후에는 다시 5%-8% 사이를 유지하였다. 이는 경제적 침체에 나타나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실업이 증가한 것이지, 이민자의 유입과 이민자의 수가 실업과 직접적인 상관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 역시 1982년도 프랑스인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8.8%이고, 2002년도에는 7.4%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자국민이 실업에 처한 원인으로서 이민자의 유입을 거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271)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 역시 180만 명의 프랑스 실업자를 프랑스 내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180만 명과 연관 지으면서 실업의 주체는 이민자들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박단 2005: 121). “200만의 이민 = 200만의 실업”은 1980년대 국민전선의 이민 통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슬로건이며, 이민이 없는 일본은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박단 2005: 112).

이민에 관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은 임금 하락에 대한 편견이다. 아비바 촘스키(2008: 47-50)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이민의 증가가 임금 하락과 임금 불평등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국 내의 국민이 임금의 불평등에 의해 가난한 상태로 방치되고, 법적 수단에 의해 배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동력의 새로운 원천으로써 이민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낮으며 노동조건은 위험하고, 법적 보호 장치가 결여된 규제를 받지 않는 2차 노동시장에 이민자를 배치하였다. 기업은 비용을 낮추기를 원하며, 그로 인한 기업의 낮은 비용은 국내 물가상승의 저하 등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국민들의 후생복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노동조건이 형성되었고 이에 자국민 대신에 이민자로 대체되었다. 최악의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민자는 본국에서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을 해외에서는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²⁷²⁾ 따라서 임금의 하락은 산업구조의 전환²⁷³⁾과 더불어 글로벌 자유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경제적 성장의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지, 이민자들에게 돌려야 할 책임이 아니다.

(4) 복지혜택의 수혜자

1981년 집권에 성공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이 추진한 자동차, 에너지, 금융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통한 개혁정책은 당시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의 국제적 환경에 역풍을 맞아 실패하였다. 결국 주요한 실업 억제수단이었던 소비확대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을 포기하고 안정적 물가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고

272) 실제 자국민들은 생계임금, 의료 및 안전 기준, 복리 후생을 보장하는 1차 노동시장을 선호하며 열악한 환경과 임금 조건의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되는 것을 꺼려한다.

273) 프랑스 제노포비아의 원인 중의 한 요인으로 산업사회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산업사회 시기에는 자본과 노동운동이 대립하는 구조적 갈등의 토대 위에서 이민자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 산업이 해체되거나 소멸되고 생산자동화와 포스트테일러 체제로 전환되자 노동운동의 쇠퇴가 초래되었고,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표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결국 산업사회의 붕괴는 개인주의 경향을 가져오고, 노동운동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경제위기 시 정치선전의 표적이 되었다.

용의 불안정과 실업의 증가로 나타났다. 당시 실업인구가 3백만을 넘어서고, 극빈계층은 7백만을 기록하고 있었다.

성장 둔화로 세수 감소와 실업에 따른 공공지출 수요의 증가는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불가피하게 복지지출의 축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는 복지국가(Etat-Providence)를 천명한다. 국가의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빈곤층의 삶을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복지재정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실업자와 빈곤층의 지원을 강화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민자 집단은 실업과 빈민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복지의 재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면서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눈에는 사회적 기여가 없는 이민자들은 혜택만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국민전선은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이주민 적대감으로 전환하는 전선을 펼침으로써 프랑스인과 이민자의 갈등 구조를 제노포비아의 확대 재생산해 내었던 것이다(김세균 외 2006: 145-147).

2. 무슬림 이민자 소요사태와 프랑스의 선택

프랑스에서의 무슬림 이민자의 수는 유럽에서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²⁷⁴⁾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 만큼의 이주민을 유입한 나라에서 이민자를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없을 리는 없다. 특히 식민지국이었던 마그레브 국가에서 넘어 온 대규모 노동자들은 문화적 이질성

274)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국가 내에서의 무슬림 인구(이슬람 종교를 믿는 인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통계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마그레브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10%인 약 600만 명을 추정하는 연구 논문들도 많다. 이러한 추정치는 극우정당이 주도한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써 프랑스 정체성의 소멸에 경각심을 주며 인종주의의 정치화에 따른 부풀려진 숫자일수도 있지만 프랑스 전체인구의 세 명중 한 명은 외국인을 조부모 또는 부모를 가진다고 했을 때 전혀 미덥지 못할 수치는 아니다.

까지 동반하였다. 게다가 상호 간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 담론으로 인하여 치유하기 쉽지 않은 갈등과 충동을 가져왔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마그레브 이민자와 연관된 제 소요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설명해보기로 한다.

1) 1960년대: 1961년 10월 7일 사건

1961년 10월 17일의 사건은 프랑스인들이나 무슬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되어왔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슬림 이민자 관련 조작 사건이다. 프랑스 경찰에 의하여 시위에 가담했던 알제리 이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는 프랑스 이민사 최대의 사건이다.

당시 1961년 봄부터 알제리 공화국 임시 정부와 프랑스 간의 알제리 독립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 해 여름 알제리 전쟁은 극을 치닫고 있을 때이다. 당시 파리에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²⁷⁵⁾이 알제리 독립을 주장하며 프랑스를 테러 목표로 삼아 암약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8월 초에만 파리와 인근지역에서 이들에 의해 경찰 1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 테러 사건 때문에 9월부터는 북아프리카인들을 대량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검거된 일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이 때 풍문으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는데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북아프리카인들의 시체가 센강(la Seine)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알제리인들의 분노는 프랑스 경찰에 대한 공포와 함께 극에 달했다. 반면 파리시의 경찰들은 테러를 일삼는 알제리 이민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

275) 1954년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이 무장봉기를 하고 알제리 각지로 프랑스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하자 진압에 나선 프랑스는 알제리인 약 100만 명을 전쟁으로 사망하게 한다. FLN은 알제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 각 도시에서도 정치적이고 무력을 동반한 투쟁을 지속하였다. 결국 프랑스의 드골은 1960년부터 예비양에서 정치적 교섭을 하였고, 1962년 3월 성립된 예비양 협정으로 전쟁은 막을 내리고 알제리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이민자, 특히 전쟁 중이었던 알제리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주의는 극도에 달했다. 이 때 10월 2일 숨진 프랑스 경찰관의 장례식 때 파리의 경찰청장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은 공공의 장소에서 테러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²⁷⁶⁾ 그러면서 알제리인의 야간통행 금지와 길거리에서 북아프리카인들이 모여 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10월 17일, 통행금지령과 식민지 해방을 요구하는 알제리인들은 평화스러운 가두시위²⁷⁷⁾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격분해 있던 무장경찰과 특공대는 시위대에게 폭력과 살상을 동반하는 무자비한 진압을 하였다. 경찰은 약 10,000명의 시위자들을 파리 각처에다 구금하고 고문하였다. 그러면서 이튿날 프랑스 경찰은 무력충돌이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알제리인 범죄자의 진압 과정에서 상호 간의 총격이 발생하였고, 단 3명의 알제리인만이 숨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경찰 중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으로서 사건의 결론은 났고, 이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혀져갔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정부의 철저한 검열과 언론의 은폐로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²⁷⁸⁾

침묵의 긴 시간이 흐르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던 ‘파리 대학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었다. 1998년도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가

276) 모리스 파퐁은 자신의 분노를 다음과 같이 공적 장소에서 표현하였다: “한 대를 맞으면 그 열 배로 갚아야한다(Pour un coup rendu, nous en porterons dix)”. 1958년도 파리 경찰청장에 부임 하면서부터 파퐁은 ‘혐의가 있는 북아프리카인(les Nord-Africains suspects)’들을 간단한 행정절차만을 통해 구속하였고, 1958년 9월 1일 시위자들을 향한 실탄 발사, 아르키(harkis)라는 경찰특공대를 창설하여 검거되는 많은 알제리인들이 실종되는 사건의 중심에 있게 하였다. 파리시와 근교에 거주하던 북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아르키의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구금, 실종으로 공포에 떨었으나 어떠한 요청도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Charlotte Nordmann, “Ce qui s’est passé le 17 octobre 1961”, *Histoire et oubli*, 2005. <http://17octobre1961.free.fr/pages/Histoire.htm>)

277) 1961년 10월 17일 FLN가 주최한 집회에 파리 각지에서 모인 알제리인들은 이전 날에 있었던 프랑스 인종주의자들의 알제리인들에 대한 총격을 고발하고 이미 7년 간 지속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알제리 전쟁의 종식과 알제리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그랑 볼바르 드 파리(les Grands Boulevards de Paris)에 모였다.(“17 octobre 1961: Le devoir de mémoire”. (http://www.alterinfo.net/17-octobre-1961_a3989.html))

278) 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 베리메-리베르메(Le journal Vérité-Liberté) 신문의 사건 경위와 경찰에 대한 고발, 페주(Péju)의 책(*Ratonnades à Paris*), 장 빠니엘(J.Panijel)의 필름(*Octobre à Paris*), 까강(Kagan)의 사진들 등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은 경찰 당국에 의해 압수된다.

알제리 시위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사망자 수가 40명이라고 밝히면서부터이다.²⁷⁹⁾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비밀과 망각된 채로 있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까? 사건의 발생 10년이 지난 후 비달-나끄(P. Vidal-Naquet)가 1961년 10월 17-18일의 대학살에 대한 『공화국에서의 고문(La Torture dans la République)』이란 책을 내었다. 이 책이 언론계나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1961년과 관련된 많은 책들과 기사자료, 르포 심지어 소설까지 등장하게 된다. 결국 1997년 좌파정당인 사회당이 정권을 차지하자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뢰를 받았던 브리네(J-P. Brunet)와 만델케른(Mandelkern)의 보고서대로 축소되어 발표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한 행정 서류들은 오늘날 이미 사라짐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에이노디(J.-L. Einaudi)의 주장²⁸⁰⁾에 따르면 공동묘지의 기록대장과, 증언 그리고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의 내부 자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적어도 사망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C. h. Nordmann).²⁸¹⁾ 오늘날 1961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공식적인 기념도, 어떠한 기념물도, 어떠한 기억의 장소도 없다. 프랑스의 망각과 비밀 속에서 다만 알제리-프랑스인의 기억 속에서만 떠돌고 있을 뿐이다.

279) 40명의 사망자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1998년 장-피에르 브뤼네(J-P. Brunet)와 만델케른(Mandelkern)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280) J-L. Einaudi, *La Bataille de Paris*, Ed. du Seuil, 1991, réédition Points-Seuil septembre 2001.

281) “그날 빛의 도시 파리는 야만의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 모리스 파퐁 파리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아르키의 본대 경찰 병력들은 평화롭게 시위하던 알제리인들을 센강에 빠져 죽게 하고, 매달았으며, 총으로 사살하였으며, 심지어 파리 경찰청의 뜰에서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였다. 여기에는 여자와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수천 명은 수감되었고 그리곤 추방되었다.” (http://www.alterinfo.net/17-octobre-1961_a3989.html)

2) 1970~1990년대

(1) 1970~1980년대

1979년 9월 리옹의 방리유 보-장-벨랭(Vaulx-en-Velin)에서 첫 도시 소요사태가 일어난다. 무슬림 청소년들이 경찰과 대립하면서 차량들을 방화를 하였고 이 소요사태는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간헐적이지만 반복되었다.²⁸²⁾

1980년 2월에는 발-드-마른(Val-de-Marne)의 비트리-쉬르-센느(Vitry-sur-Seine)에서 건물의 수위에게 총을 맞아 사망한 15세 소년(Abdelkader Lareiche)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러한 유형의 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청소년들은 모하메드 동아리(Collectif Mohamed)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이유의 한 시떼에서 검문을 하던 보안 경찰특공대(CRS) 한 명이 17세 소년(Lahouari Ben Mohamed)을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해당 경찰은 단지 10개월만의 감금형을 구형 받았으나 4개월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6개월 후 출소하였다.

1981년 7월에는 중부의 론(Rhone)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격렬한 소요가 발생하면서 9월까지 지속되었다. 1983년 12월에는 반인종주의, 평등을 위한 도보행진 ‘마르쉬 데 뵈르(Marche des Beurs)’가 출범하여 마르세이유에서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한다. 1984년 12월에 두 번째의 뵈르들의 행진이 평등을 주제(Convergence 84 pour l'égalité)로 거행되었다.

(2) 1990년대

1990년 10월, 리옹(Lyon)의 방리유 보-장-벨랭(Vaulx-en-Velin)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 검문으로 이슬람계 어린 소년(Tomas Claudio)이 오토바이 충돌

282) Olivier Pironet, "Banlieues: chronologie1973-2006".(<http://www.monde-diplomatique.fr/mav/89/PIRONET/14098>). (검색일: 2009.8.23.)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를 경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격렬한 시위와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1991년 3월에는 이블린(Yvelines)의 사르투르빌(Sartrouville)에서 한 대형마트의 보안요원에 의해 18세의 소년(Djamel Chettouh)이 사망한다. 그 해 5월 달에는 이블린에서 시경찰서 내에서 심문을 받던 18세 소년(Aissa Ihiche)이 사망하자 발 푸레(Val-Fourré), 망트-라-졸리(Mantes-la-Jolie)에서 사망의 원인과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며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다. 망트-라-졸리(Mantes-la-Jolie)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재발되었다. 23세 되는 청년(Youssef Khaif)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의해 목덜미를 맞고 사망하였다.

1993년 4월에 그랑드-보른(Grande-Borne)에서 며칠 동안 폭동이 일어나는데, 한 주민이 무슬림 두 소년을 향해 총을 쏜 것이 원인이었다. 차량이 방화되고 상가들이 약탈을 당하였다. 10월에는 센-생-드니의 올네-수-부아(Aulnay-sous-Bois)에서 한 경찰이 총을 쏘면서 술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소년을 검거한다. 이 일로 시떼에서는 4일 밤 동안이나 상가를 불태우며, 경찰과 소방관들을 위협하였다. 11월에는 파리 북동부 센-에-마른(Seine-et-Marne)의 머랭(Melun)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젊은 한 소년이 죽자 며칠 밤 동안 폭동이 일어났는데 경찰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지고, 상가와 차량들을 불태웠다.

1994년 2월 루앙(Rouen)에서 18세의 세네갈 소년(Ibrahim Sy)이 훔친 자동차 안에서 헌병(gendarme)의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격렬한 소요가 발생했다. 3월에는 발 두아즈(Val-d'Oise)의 가르쥬 레 고네스(Garges-lès-Gonesse)에서 16세 소년(Philippe Huynh)의 죽음으로 시위가 발생하였고, 아비뇽(Avignon)에서는 17세 모하메드 타이라(Mohammed Tajra)의 사망으로 소요가 발생하였다. 9월에는 우스-데-부아(Ousse-des Bois)에서 24세의 청년(Azzouz Read)의 죽음으로 무슬림 청소년들과 경찰들 간의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

1995년 6월에 센-생-드니(Seine-Saint-Denis)의 누와시-르-그랑(Noisy-le-Grand)에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23세 벨카셈 벨아비브(Belkacem Belhabib)가

사망하자 이슬람 청소년들의 폭동이 발생한다. 9월에는 오프-드-센(Hautes-de-Seine)의 낭페르(Nanterre)에서 25세 소년(Nouredine Benomari)의 죽음으로 청소년들과 경찰 간의 대치와 폭력이 발생하였다. 11월에는 라발(Laval)의 생-니콜라 거리(rue de St. Nicolas)에서 폭동이 발생하는데 시경찰관에게 26세 청년(Djamel Benakka)이 총을 맞은 사건이 원인이었다.

1997년 12월에 센-에-마른(Seine-et-Marne)의 다마리-레-리(Dammariè-lès-Lys)에서 경찰특공대 여단의 총격으로 머리에 맞은 16세 소년(Abdelkader Bouziane)이 사망하였다. 청소년들과 경찰 간의 격렬한 대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같은 달, 리옹에서는 경찰서 내에서 24세의 파브리스 페르낭테즈(Fabrice Fernandez)가 사망하자 청소년들의 소요와 폭동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로 하룻밤 사이에 약 50여 대의 자동차가 전소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1998년 7월에 툴루즈(Toulouse)에서 17세의 소년(Habib Ould)이 경찰의 검거 도중 발사한 실탄에 의해 사망하였다. 며칠 동안 밤마다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1999년 5월에는 프랑스 남부 가르(Gard) 지방의 보베르(Vauvert)에서 19세 되는 소년이 같은 마을의 프랑스인에게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요가 발생하였다.

3) 2000년대 이후

(1) 2000년대 초반

2000년 9월 : 센 에 마른(Seine-et-Marne)의 콩브 라 빌(Combe-la-Ville)에서 경찰과의 대치중에서 소형화물차로 바리케이드를 밀어내던 19세의 소년(Ali Rezgui)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다. 꼬르베이-에손느(Corbeil-Essonnes)에서, 타르페레(Tarterêts)에서 그리고 에손느(Essonnes)의 그리니(Grigny)에서 경찰과 무슬림 청소년들 간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2001년 7월에는 메츠(Metz)에서 두 소년이 경찰과의 대치 중 사망하자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같은 해 10월 오프-사부아(Haute-Savoie)의 토폰-레-뱅(T honon-les-Bains)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던 4명의 소년이 사망하자 경찰병 력과 청소년들 간의 격렬한 대치가 발생하였다. 12월에는 발-드-마른(Val-de-Marne)의 비트리-쉬르-센느(Vitry-sur-Seine)에서 소매치기를 하던 한 소년이 경찰에 맞아 사망하자 이에 분노한 젊은이들의 소요가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

2002년 1월에는 17세 소년이 경찰에 의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블린(Yvelines)의 뮈로(Mureaux)에서 소요가 발생하였다. 2월에는 위르(Eure)의 에브러(Evreux)에서 경찰서 안에서 어린 마약중독자가 사망하자 경찰과 청소년들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10월에는 스트라스부르그의 오프피에르(Hautepierre)에서 물품 창고를 도둑질하던 17세의 소년이 경찰을 피해 도망치 다 익사하여 사망하자 격렬한 대치와 폭력이 발생하였다.

2004년도에는 19세의 소년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의 검문에 피 하려다 사망한다. 1월의 새해 저녁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는 무슬림 청소년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324대의 자동차가 불에 전소되었다.

(2) 2005년의 소요사태와 그 이후

2005년도 6월에는 센-생-드니(Seine-Saint-Denis)의 라 꾸르너브(La Courneuve)에서 이민자 청소년들의 두 패거리가 싸움을 벌이는 도중 11세의 소년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동네 청소년들의 소요와 시위가 있자 내 무부 장관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진공청소기로 이들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net toyer au Karcher)’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이민자의 분노를 초래하였다. 이미 대규모 소요로 확산될 수 있는 전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5년 프랑스 전역을 소요와 폭동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사건, 일 명 ‘2005년 이민자 소요사태’는 10월에 시작되었다. 파리로부터 15km 떨어진 한 도시 클뤼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어린 두 소년이 변전소를 넘다가 감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1일 간의 전국적인 폭동과 소요로 9,193대의 차가 불에 탔고, 2,921명이 검거되었다. 597명(그 중 108명이 미성년자)이 투옥되고, 56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였다. 비상계엄령이 발동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시행되었다. 소요가 끝난 뒤 보험회사들은 당시 소요사태의 피해로 약 2억 유로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²⁸³⁾

2006년도의 이민 청소년의 소요 사건들은 2005년에 있었던 소요사태가 연장선상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보다 덜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5년도 11월의 소요사태에 연류된 2명의 외국인이 추방을 당하고, 5월에는 센-생-드니의 몽페르메일(Montfermeil)에서 경찰의 강경한 가택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흡사 지난해의 끌뤼시-수-부아에서처럼 청소년과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시의 시장은 3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금지하였다.

2005년과 2006년의 소요사태의 원인은 해를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각종 소요와 폭동의 사건들의 발생 원인들과 차별적이지 않다. 경찰의 거리 불신검문과 도피 그리고 총격에 의한 어린 무슬림 소년들의 사망,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시위와 무력을 사용하는 폭동들이 일상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 청소년에게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이며 분노를 살 만한 지속적인 사망 사건이었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시각과는 정 반대의 인식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 또는 경찰 측의 생각은 이민 2·3세의 불량 청소년들과 경찰 검문과정에서의 아주 사소하고 미비한 지엽적인 충돌 사건으로만 늘 인식하였다.

각종 소요의 확산과 발전은 경찰의 강경 진압책과 사건 결과의 은폐와 축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내무부 장관 사르코지의 연이은 신랄한 독설에 대한 분노와 퐁레랑스 제로라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그 대상을 무슬림 청소년

283) 공식적 수치는 내무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http://fr.wikipedia.org/wiki/%C3%89meutes de 2005 dans les banlieues fran%C3%A7aises](http://fr.wikipedia.org/wiki/%C3%89meutes_de_2005_dans_les_banlieues_fran%C3%A7aises))

년으로 지목하였다. 이 시기 충분히 이슬람 청소년들의 잠재된 분노가 폭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3. 무슬림 이민자의 현실

앞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제 소요사건들을 살펴보았다.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크고 작은 사망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또 지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민자의 후속세대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집단과 이를 제어하려는 공권력과의 마찰 양상은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인 일상의 모습으로 정형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찰과 갈등이 폭력사태로까지 재현되는 현실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에 뒤따르는 장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간략한 설명으로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처한 일상적인 현실을 나열해 보기로 한다.

소요사태들의 동기와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민자들의 경제적 삶의 조건에서의 오는 빈곤이다. 프랑스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이민자 집단의 빈곤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은 항상 잠재된 폭발력을 갖는다. 이들은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한 이민 1세대와 -직업을 가지더라도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비기능적 노동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세대들의 빈곤에 따른 교육부재와 실업의 고위험군에 처한 현실은 빈곤의 대물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²⁸⁴⁾ 오늘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문화적 수용과 권리, 상호 존중 등을 이야기하지만,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집단의 문제와 논란의 핵심을 현실적으로 짚어볼 때,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에 반사회적인 정서가 강하게 깔려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84) 방리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은 2005년도 통계를 참고해 보면 일반 프랑스 거주 지역의 두 배에 해당한다.(http://www.efj.fr/article.php3?id_article=104)

두 번째로 논의 될 수 있는 것은 거주지의 문제이다. 거의 대부분의 소요사태는 대도시의 외곽지역(banlieues)인 변두리의 이민자 집성지역(cités)에서 발생하고 있다.²⁸⁵⁾ 주로 북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민 온 자들의 최종 정착지가 되어버린 방리유(banlieues)와 시떼(cités)라 불리는 이러한 거주지는 프랑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된다. 프랑스 안의 고립된 섬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주변화된 이들 거주지역의 특성은 ‘게토화(ghettoisation)’이다. 경제적으로 가난과 실업에 처한 이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다른 프랑스 도시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열악한 거주 조건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인구 구성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도시 환경적으로도 프랑스라는 나라와 동떨어진, 결코 통합이나 동화되지 못한 공간이 바로 방리유의 시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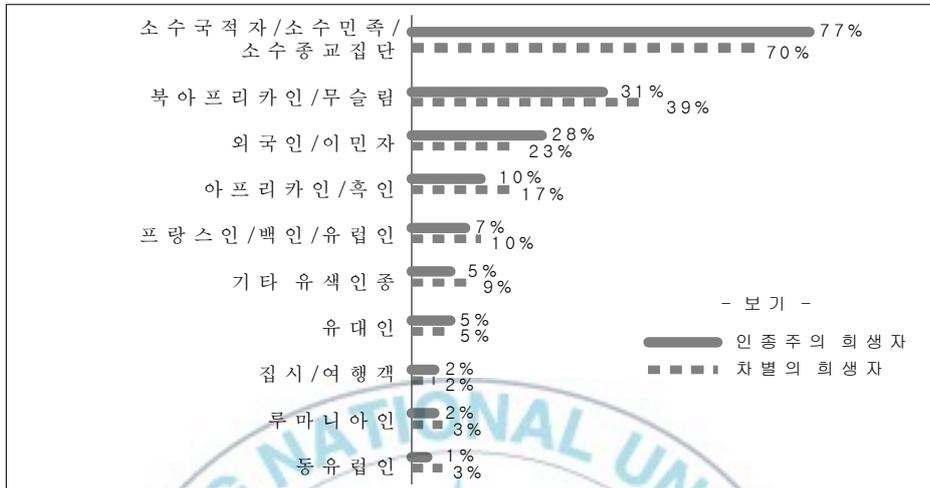
세 번째는 인종주의에 대한 분노이다. 이는 프랑스인이 이민자에 갖는 혐오라는 정서적 측면이 일상생활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랍계나 아프리카계 청소년들이 클럽에 출입을 하려해도 제지를 당하거나, 입사 원서를 넣더라도 서류상의 이름에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닌 이질성을 느낀다면 이미 탈락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다. 대부분의 프랑스 회사들은 ‘진짜 프랑스인(vrais français)’을 원하기에 그 결과로써 이민자(immigrés)가, 또는 이민 온 프랑스인(français immigrés)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²⁸⁶⁾ 2005년 소요사태가 끝난 후 정부가 시행한다는 ‘익명의 이력서 정책(loi CV anonyme)’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로 인한 차별(discrimination raciale)과 배제의 사회적 구조에서 이민자들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절망감을 가지며, 프랑스에 스스로 동화되지 못하고 ‘경제적 정체성’ 또는 ‘주변의 정체성’을 갖는 원인이 된다.

다음 <표 V-3>는 인종주의의 대상과 차별의 희생자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285) 2005년 소요사태의 진원지인 파리 북쪽 지역의 센-생-드니를 보면 프랑스에서 수적으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역시 이들은 경찰의 폭력적 검거와 검문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곳에서의 발생하는 경찰 폭력의 약 60%의 희생자는 모두 외국인이다.

286) 프랑스 회사들은 방리유 출신의 이민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주 낮은 교육을 받았거나 아예 자신의 이름조차도 쓸 줄 모른다고 항변한다.

<표 V-3> 당신이 보기에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주의의 주요 희생자와 차별의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 www.bva.fr

2003년도에 이루어진 인종주의에 대한 BVA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인종주의는 프랑스에 '어느 정도 확산(plutôt répandue)'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6%는 매우 폭넓게 사회에 저변확대(très répandue)되어 있으며, 반대로 단지 11%만이 프랑스에서의 인종주의는 비교적 드문(plutôt rare) 현상이라 답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의 인종주의는 매우 드물(très rare)다고 응답한 피조사자는 0%에 불과하였다.²⁸⁷⁾ 이처럼 프랑스 사회 내의 인종주의는 소수인종과 소수민족, 그리고 북아프리카나,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위의 <표 V-3>에서도 알 수 있었다.

같은 설문의 다른 항목에는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personnes d'une autre nationalité)과 프랑스 국적(personnes d'origine étrangère)을 가진 이민자에 대

287) "Xénophobie, Antisémitisme, Racisme et Antiracisme en France", *BVA Actualité*, mars 2003. 조사 대상이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종주의 흐름이 프랑스에 폭 넓게 확대되어 있다고 이 조사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한 프랑스인의 인식을 보여준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의 존재가 프랑스인의 일상생활을 다소 풍요롭게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하는 반면, 국적 취득에 의한 이민자 프랑스인에 대한 같은 질문의 긍정적인 대답은 36%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의 이미지가 귀화한 프랑스인의 이미지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문화와는 이질적이고, 그 문화에 동화하려 애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위험을 양산하는 주범으로서 이민자라는 인식을 프랑스인은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배제에 따른 이민자 청소년들의 좌절이다. 위의 <표 V-3>에서 보여 주듯이 인종주의에 노출되었다고 인식되는 그룹에서 거의 같은 비율의 차별과 배제된 삶을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러한 차별에 대한 정서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나 폭동의 주도적인 자들이 바로 어린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민자 부모를 둔 후속세대로서 프랑스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 나라의 전통과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으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엄연한 프랑스인임에는 틀림없다.²⁸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을 프랑스의 가치와 정체성을 소멸시키려는 타락한 이방인처럼 대우하는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한다. 방리유의 젊은 청소년들은 프랑스 사회를 향해 그들의 분노를 시위와 폭력으로써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사회를 향한 소요나 외침은 정부를 갈아 치우자는 혁명도 아니고, 사회를 파탄에 빠트리게 할 의향도 없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전수 받은 이슬람 문화를 프랑스의 주류 문화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문명의 전도사들도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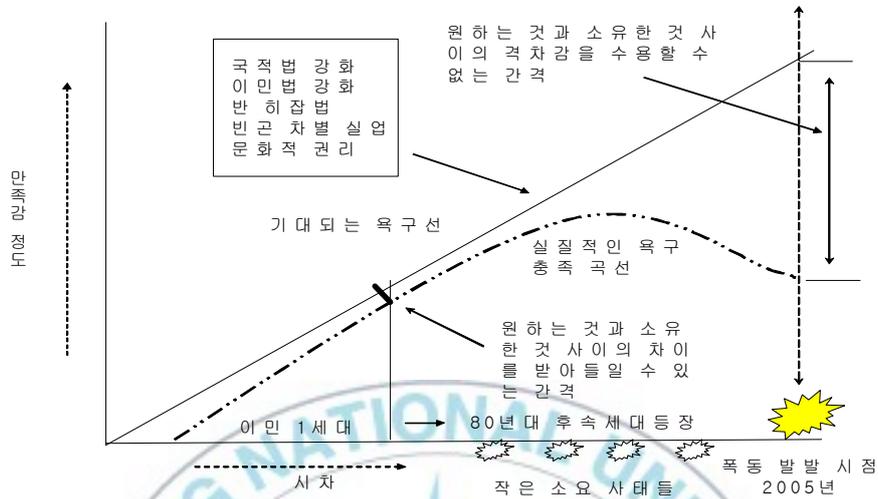
288) 실제 이들은 처음에는 프랑스 국적을 가졌다는 국적의 문제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인으로 태어났고, 프랑스인으로 교육 받았기에 정체성을 겪는 청소년이 될 때까지 프랑스에 대한 저항이나 권리의 요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사회에 진입하여 참여하는 연령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외국인으로서, 이민자 후속세대로서 겪는 차별과 편견으로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주었음에 틀림없다.

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 없다는 사실은 사회로의 분노를 배출하게 하였다. 좌절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성에 대한 책임보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의 외침을 가져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사회적 배제와 편견으로 프랑스인으로서의 시민성만을 요구할 때 부모의 국가와 프랑스와의 경계에서 이중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브카리안은 사회에 대한 욕구 불만은 관계에서의 갈등의 결과라 본다. 시민 폭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분출된 시민의지로서 주로 일정 기간의 심각한 가치 박탈에 이어서 급격한 기대상승이 나타날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아브카리안·팔머 1985: 162-163).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들은 미래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그것을 믿게 되지만,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폭력이 난무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소요사태의 경우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회적 차별과 편견, 빈곤 그리고 문화적 생존의 요구가 프랑스 정부나 사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각한 가치 박탈감이 반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극단인인 좌절감은 폭력의 형태로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좌절감에 대한 모든 요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슬림 청소년의 소요사태이다. 2005년도의 폭동을 비롯한 각종 소요사태는 프랑스가 외면해 왔던 이민자의 문제점들이 반사회적 양식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프랑스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치학자 제임스 데이비스(James Davis)는 미국 흑인에 대한 배제가 폭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혁명의 J-곡선(J-curve)’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의 <그림 V-2>는 데이비스의 J-curve를 프랑스의 이민자 청소년들의 소요사태로 적용하여 변형시킨 모형이다.

<그림 V-2> 지위박탈과 기대상승의 박탈감에 따른 혁명의 J-곡선



출처 : 가치 박탈감의 모형, James C. Davis, "The J-Curve of Rising and Declining Satisfaction as a Cause of Some great Revolutions and a Contained Rebellion", in Hugh Davis graham and Ted Robert Gurr, eds., *The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A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Violence*, New York, Bantam Books, 1969, p.691.(아브카리안·팔머(1985: 163)에서 재인용하고 재적용)

4. 프랑스인의 대 무슬림 인식

무슬림 청소년들의 소요사태는 프랑스인들에게 여러 가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곧 2001년도의 9·11사태에서 연상되는 현실이 국내에서도 일어났다는 맥락에서 프랑스 사회의 위기적 상황에 따른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소요 당사자들에 대한, 즉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를 가져왔다. 어쨌든 대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이 2005년의 소요와 폭동의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갖기 보다는 테러리스트 혹은 프

랑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암적 존재로의 인식의 확산에 동조하였다. 프랑스 인들은 유럽계나 동양계 이민자와는 달리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수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도 이유가 되겠지만, 프랑스인들의 눈에 는 결코 내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잠재적 위험이자 사회불안의 주 범으로 인식한다. 일탈의 행하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프랑스 실업의 주체이자 프랑스 경제에 부담자로 취급하는 것이다.²⁸⁹⁾

게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히잡사건과 함께 끊이지 않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들에 의한 테러 사건들은²⁹⁰⁾ 이슬람 혐오주의를 갖게 하였다. 이슬람이 유럽의 통합과 유럽의 문명을 위협한다는 편견은 프랑스 사회에 이슬람 혐오주의를 가져왔다. 특히 반 이슬람 정서는 민족전선(FN)의 출현 및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80년대 이래 민족전선이 즐기차게 주장해 온 무슬림 이민반대 정책은 ‘문화적 인종주의(인종 없는 인종주의)’라는 이론으로까지 발전하였다(박 단 2005: 98).

민족전선의 대표적 구호는 반 이민정책인데, 그 적용대상이 바로 무슬림 이 민자이다. 민족전선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인종간의 우열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문화적 차이 로 인하여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는 프랑스 문화에 흡수될 수 없고, 흡수되 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는 프랑스 문화와 전통의 보전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반되었다. 인구 지도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 거의 전 분야에 서의 점진적인 구조의 변화가 왔다. 다만 변화 속도의 문제와 원국민의 체감도 에 따라 감지의 폭이 달라질 뿐 진행은 여전히 지속되었던 것이다. 변화의 속

289) 같은 이유로 인하여 무슬림과 멀리 떨어져 살았으면 하는 응답자의 수치는 독일 88%, 스페인 68%, 네덜란드 65%, 영국 61% 그리고 프랑스는 59%에 이른다.

290)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는 프랑스 내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리 지하철 폭탄 테러(1995.7), 모로코, 유대교 교회 폭탄 테러(2003. 5), 네덜란드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 살해(2004. 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2004. 3), 런던 지하철 연쇄 폭발(2005. 7) 등 유럽 내 연이은 테러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다.

도가 빠를 시에는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강도가 세어서 스스로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등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이고 소리 없이 이루어진 거대한 변화들이 한 번에 쏟아졌을 때에는 변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변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격렬한 감정을 갖기 마련이다. 프랑스인이 느끼는 감정과 인식은 후자가 더 가깝게 느낄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프랑스의 작은 소요들은 프랑스인들에게 그저 대도시의 외곽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이민자들의 불만의 작은 표출로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의 소요사태는 이들의 이러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비상계엄령(Etat d'urgence)까지 발동되던 프랑스의 위기적 상황의 발생은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대다수의 국민 개개인에게 던져주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이민자 문제는 정치권의 목적에 의해 정치화되어 있었다. 논쟁과 담론의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였고,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형성되는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작동되던 흐름은 사회전반에 있었다. 그 결과로써 민족전선의 정치적 구호와 선동에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극우 성향의 표심 형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도 성향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5년의 소요사태 이후의 국민 여론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프랑스 여론 전문조사기관인 CSA(Institut de sondages d'opinion et d'études de marché en France)에 의해 실시되고 2005년 11월 17일 르 파리지앵-디망쉬(Le Parisien-Dimanche)에 발표된 여론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2005년 소요를 한 층 더 격발 시켰던 사르코지의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지지도는 상당히 높다. 소요사태 때 발동한 '비상사태법'의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68%, 가족 재결합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56%로 나타난다. 더욱이 체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55%

에 이른다.²⁹¹⁾

다음의 <표 V-4>는 2005년 방리유 소요사태 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내무부 장관이 이민자를 ‘쓰레기’라 부른 것에 대한 프랑스인의 인식이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이민자 청소년들의 소요사태를 부채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6%, 절반에 가까운 프랑스인들이 무슬림 이민자를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다는 조사이다. 타문화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도 기성세대 못지않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향후 이민자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표 V-4> 이민자를 “쓰레기(racaille)”라고 표현한 사르코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²⁹²⁾

	프랑스인 전체	30세 이하	30세-49세	50세 이상
옳다	46	38	41	53
옳지 않다	51	59	56	43
무응답	3	3	3	4
합계	100	100	100	100

출처 : “Les attitudes ideologiques des Français après la crise des banlieues”, sondage de l’Institut CSA, *Marianne*, novembre 2005.(<http://www.csa.fr.com>)

2006년도 인권위원회(CNCDH,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30%가 스스로 인종주의자라는 응답을 하였다. 조사자의 48%는 프랑스에 너무 이민자가 많다고 대답하였다. 비록 2005년도에 비해 자신이 인종주의자라고 답한 비율은 10%나 줄었지

291) Le Monde du 22 novembre 2005. 박단 외(2009: 574)에서 재인용.

292) CSA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무슬림의 69%가 니콜라 사르코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나쁜 29%, 매우 나쁜 의견40%)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강경정책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해 온 영향으로서, 사르코지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압박을 줌으로써 선호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30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사르코지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Sondage de l’institut CSA, “Portrait des musulmans”, *La vie*, août, 2006.)

만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여전하다. 반면 인종주의자들에 의한 유색인에 대한 폭력의 건수나 위협은 2005년도에 비해 5%나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이민자 역테러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²⁹³⁾ 이질적인 문화와의 공존은 이제 프랑스인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충격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체성의 소실 위기, 공화국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인식을 받는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정서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상호 간의 인식이 시산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려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는 무슬림에 대한 인식 -그러한 것들이 비록 이민의 정치화 현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은 어떠한 것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비바 촘스키는 그의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²⁹⁴⁾에서 미국의 몇 가지 대표적인 이민 논쟁을 나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촘스키는 이민자와 이민에 대한 논란의 문제와 국민들이 갖는 인식은 잘못된 신화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과 관련한 세계적 논쟁은 국내적 위기의 주요원인을 이민자에게 덮어씌우는 희생자 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민정책은 신식민지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종차별주의, 문화적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녀의 분석은 미국의 이민 논란에 관한 것이지만 전 세계의 이민논쟁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시선을 갖춘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나열해 보기로 한다.

- ㄱ. 이민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ㄴ. 이민자가 임금을 하락시킨다.
- ㄷ.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를 다 써버려서 경제를 고갈시킨다.
- ㄹ. 이민자는 이민 수용국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동화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수

293) L'EXPRESS.fr, publié le mercredi 21 mars 2007, (http://www.lexpress.fr/actualite/societe/30-pourcent-des-francais-se-disent-racistes_463558.html. 검색일 :2009. 9.20.)

294) 아비바 촘스키, 백미연 역, 2008,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전략과 문화, p.5-11.

용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훼손한다.

ㄱ. 그리고 이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ㄴ. 나는 이민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이민에 반대할 뿐이다.

이민자들은 수많은 사회적 위협의 요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이민 1세대들과 비교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을 던져주게 만드는 이들의 후속세대들은, 이민 3세대까지 사회에 진출한 오늘날 프랑스 내의 문젯거리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입지를 가진다. 앞에서 자주 언급된 것처럼 이들은 엄연한 프랑스인으로서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프랑스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시민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시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된다. 각종 소요사태와 폭동을 동반하여 프랑스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등 아예 동화를 거부하는 성격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다. 프랑스 내부의 잠재적 위협 존재, 이들이 바로 무슬림 후속세대들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통계조사가 발표되었다. 2003년도 3월에 시장과 여론의 전문조사 연구기관인 BVA 연구소²⁹⁵⁾가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프랑스인들이 우려하는 프랑스 사회의 문제점들을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과는 치안불안과 실업, 빈곤을 우려하는 사회문제를 가장 염려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을 <표 V-4>에서 살펴보면 15개의 조사항목 중에서 치안 불안, 실업, 빈곤, 테러리즘, 인종주의, 프랑스의 정체성 소멸, 종교통합, 불법이민의 8개 항목을 나열할 수 있다. 이민자와 관련되어 나타난 항목의 비율은 전체 응답비율의 무려 72%나 차지

295) Institut BVA(www.bva.fr/) : Institut d'études de marché et d'opinion. Sondages, études sectorielles et outils d'analyse. 시장과 여론의 전문조사 연구기관으로서 분야별 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하고 있다. 본문의 설문조사는 국가정보서비스와 인권에 관한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et du Service d'Information du Gouvernement)의 요청에 따라 BVA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1010명에게 설문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Xénophobie, Antisémitisme, Racisme et Anti-racisme en France", Publiée dans le rapport annuel de La Lutte contre le Racisme 2003, Enquête BVA.)

하고 있다.

<표 V-5> 당신이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출처 : www.bva.fr/

특히 프랑스인이 가장 우려하는 항목은 치안불안으로서 이민자와 연관된다. 1998년 IFOP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80%를 넘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지역과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에 대하여 다음의 <표 V-6>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표 V-6> 방리유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프랑스인 인식조사

도시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예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폭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82
예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17
무응답	1

출처 : Sondage IFOP-Libération 1998, Les Français et la violence urbaine.

그리고 이러한 치안 불안에 대하여 66%의 프랑스인은 범죄에 민감한 지역의 치안 개선을 위하여 경찰 인원의 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많은 수의 경찰 병력이 상주하였을 때 민감한 지역 청소년들과 마주치면서 긴장과 소요를 유발시키는 위험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표 V-7> 치안 불안지역의 경찰 주둔에 대한 인식

치안불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의 주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대규모 경찰 병력을 주둔시켜 치안을 개선해야 한다.	66
대규모 경찰의 주둔은 긴장과 소요를 유발 시킬 수 있음으로써 피해야 한다.	29
무응답	5

출처 : Sondage IFOP-Libération 1998, "Les Français et la violence urbaine".

결론적으로 프랑스인이 느끼는 사회불안에 대한 주된 요인은 이민자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중 무슬림 이민자에 의해 야기되는 치안불안과 테러의 공포, 프랑스 정체성의 소멸에 대한 우려는 그와 반대로 인식하는 우려 즉, 프랑스 내 이들 소수자에 대한 인종주의나 반유대주의를 걱정하는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분명 소수민족과 인종, 문화의 차별과 배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민들은 사회의 위협이 되는 각종 문제에 한 가운데에 이민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일정부분 고려해 볼 수 있는 프랑스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식구조는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사회통합의 성패 여부가 노동시장과 교육 등의 객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수용국의 국민들의 주관적인 지표, 즉 대응하는 태도와 인식, 가치관 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다음의 <표 V-8>은 향후 프랑스 사회통합 정책의 재정비와 방향수정에 있어 고려해 볼만한 의미를 가진다.

<표 V-8> 사회통합의 주관적 지표

국명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소수인종이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종의 다양성은 자국의 문화를 풍부케 한다 (찬성율%)	합법적인 이주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제이주민을 위한 차별시정 조치에 대한 찬성율	국제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찬성율%)	노동시장에서 인종차별이 심하다. (찬성율%)
	좋다	좋지 않다	무응답/모름					
영국	80	11	9	2/3	-	72.9	67.8	50+
스웨덴	76	12	11	86.2	2/3	67.3	80	-
스페인	76	16	8	63	2/3	81.3	71	61.5
네덜란드	74	16	10	3/4	3/4	3/4	3/4	71.9
이탈리아	70	19	11	-	71.1	2/3	75	50+
프랑스	66	18	16	3/4	50+	2/3	80	78
독일	65	17	17	-	45.2	2/3	47	-
그리스	59	33	8	50	절대다수	절대다수	76.1	60
핀란드	59	24	17	81	52.0	-	2/3	-

출처: <http://gallup.com/poll/103258/Europe-Good-Place-Ethnic-Minorities.as>. (재인용:정영태 2009: 335)

비록 프랑스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이민국가에 비해 다소 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해 온 것에 비한다면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인종의 다양성이 프랑스의 문화를 풍부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3/4, 즉 70%를 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차별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동일한 비율을 기록하였고, 노동시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는 개인들은 78%에 이른다. 즉 프랑스인들은 이주민이 프랑스 내에서 당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인종주의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자국민과의 동등한 권리의 보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50%)을 나타낸다. 이민자 투표권 허용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 저변에 나타난 차별의 분포(80%)는 개개인의 인식과 현실적인 태도간의 양태에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V-9>는 프랑스인의 이민자와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민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V-9> 프랑스인의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인식

(단위 : %)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인들의 이민은 바람직한가	이민이 국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무슬림들이 이민 온 국가의 관습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독실한 무슬림으로 사는 것과 근대사회의 삶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가	이슬람의 정체성이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한가?
프랑스	58%	46%	45%	74%	11%
영국	57	43	22	35	27
미국	x	52	33	42	37
스페인	62	45	21	36	13
독일	34	47	17	26	11

출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Washington DC, OECD, 2006; 김복래(2009: 231)에서 재인용

앞의 <표 V-8>의 설문조사에서 보여준 인종의 다양성이 프랑스의 문화를 풍부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70%를 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인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에서 58%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민이 프랑스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고 있는 자는 46%이다.²⁹⁶⁾ 무슬림이 수용국가 즉 프랑스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고 인식하는 프랑스인은 55%를 차지한다.²⁹⁷⁾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위의 <표 V-9>에서 나타났듯이 이와 연관해서 이슬람의 정체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단지 11%로서 응답자의 89%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드러내었다. 곧 이슬람 정체성의 확산은 프랑스 국가 정체성과 충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 증거이기도 하다. 응답자의 74%가 무슬림과 라이시메에 대한 거부와 갈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는 이질적인 정체성의 출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다. 결과적으로 이민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인적이동과 더불어 유입되는 문화와 전통, 종교의 유입과 출현에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사회전반에 분포되어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이민에 관한 가정들과 의견들은 과거에 대한 일련의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들은 사회연구, 역사수업, 교과서, 정치인, 매스미디어에 의해 형성되었다. 결국 이민자의 반사회적 이미지는 사회 전반에, 국민의 인식 속에 공기처럼 스며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아비바 줍스키 2008: 19-24). 인종과 인종적 차이에 대한 사고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물인 것처럼 이민과 관련된 부정적인 제 담론들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구조에 있어서 내부 통치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296) 반면 CSA에 의해 2006년 11월에 이루어진 설문에서는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79%의 응답자는 노동 이민자들은 프랑스의 경제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야 하며, 64%의 응답자 역시 프랑스에서 이민자의 존재는 여러 분야의 직종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대답하였다.("30% des Français se disent racistes", LEX PRESS.fr, publié le mercredi 21 mars 2007. http://www.lexpress.fr/actualite/societe/30-pourcent-des-francais-se-disent-racistes_463558.html)

297) 같은 해(2006년) 이루어진 인권위원회(CNCDH)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인 54%의 프랑스인 응답자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이민자가 동화를 애쓰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대로 37%의 프랑스인 응답자는 바로 프랑스 사회가 외국인 이민자가 동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하면서 프랑스의 배제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30% des Français se disent racistes", LEXPRESS.fr, publié le mercredi 21 mars 2007, (http://www.lexpress.fr/actualite/societe/30-pourcent-des-francais-se-disent-racistes_463558.html))

5. 무슬림 이민자 통합의 정도와 항변

프랑스 정부의 지원 아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민의 역사는 이제 2세대를 넘어 3세대, 4세대로 이어졌다. 전체 이민의 역사가 150년에 가까운 그 만큼의 세월이 흘러 온 것이다. 다행히 프랑스의 인접 국가들에서 유입되거나 동유럽에서 모집되어 온 이주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주의 역사와 함께 프랑스 사회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융합되었다. 이들의 동화 정도는 외국인 이민자라 보기보다는 전형적인 프랑스인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민 2세대, 3세대라고 불리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현 프랑스의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이민자 후속세대이다. 2차 대전 이후 공산 정권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한 헝가리인 아버지와 유대계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헝가리 이민자 2세이다. 이민 2세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에서 보더라도 프랑스 이민자의 동화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프랑스 이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치안과 방리유 지역의 범죄에 대하여 초강경 정책만을 실시해오는 사람이 이민자 2세라는 사실도 분명 놀랍다. 그 정도로 유럽인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에 완벽하게 융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슬림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에 융합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고, 프랑스 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 되는 요인의 주체이다. 다음의 <표 V-10>는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설문조사 내용이다. 무슬림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견해와 정체성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의 의지 정도를 보여 준다.

<표 V-10>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 : 정체성, 동료시민, 근대성에 대한
무슬림의 인식

(단위 : %)

	기독교인 들에 대한 긍정적 견해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 견해	무슬림으 로서 문화적 갈등과 마찰은 없는가	당신은 이민국가 의 시민인가	당신은 이민국가의 시민으로보 다 는 무슬림이라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민국의 관습을 받아들이 는가
프랑스	91	71	72	42	46	78
영국	71	32	49	7	81	41
스페인	82	28	71	3	89	53
독일	69	38	57	13	66	38

출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washington DC, OECD, 2006* ; 김복래(2009: 231)
에서 재인용

이슬람에서 다른 신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려는 관용의 마음은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²⁹⁸⁾는 말로 표현된다. 관용의 상대적 평가에서, 이슬람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지난 200년 동안 발전된 서구의 민주주의에 비해서는 관용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 중세의 기독교 세계에 비해서는 훨씬 관용적이라 할 수 있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지만 이슬람 정부들은 기독교나 유대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들의 공존을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표 V-9>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 관대한 관용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민 수용국가의 시민인가’를 묻는 항목에서 42%의 응답자만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절반이 넘는 이들이 정체성의 부분에서 수용국가가 원하는 동화나 통합의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고

298) 꾸란 제2장 256절

보아야한다. 즉 떠나온 고국의 국민도, 이민으로 정착한 현재 수용국의 국민도 아닌 경계적 국민성을 가진다. 히잡 착용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의 예에서 보듯이 정체성의 모호함과 혼란은 결국 종교적 정체성을 찾아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이슬람은 생활종교로서 특성을 가지기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무슬림으로서의 생활방식의 유지는 굳건하다. 그러한 전통적인 종교적 요인 때문인지 무슬림으로서의 정서적, 심리적 정체성의 유지는 서구 유럽의 기독교적 관습을 따르지 않는 강경함(78%)을 가진다.

하지만 프랑스의 무슬림은 비교적 영국 무슬림이나, 스페인, 독일의 무슬림 보다는 보다 나은 무슬림의 동화 정도를 보여준다. 무슬림이 프랑스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이슬람 사원에 가는 횟수와 코란을 읽는 횟수로 나타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이슬람 종교의 특성과 비교하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인식변화를 읽을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표 V-11> 모스크에 가는 횟수와 코란을 읽는 횟수

(단위: %)

	모스크에 가는 횟수	코란을 읽는 횟수
일주에 1회 이상	17	20
한 달에 1회 이상	8	12
1년에 여러 번	9	11
아주 드물게	16	26
전혀 가지/읽지 않는다	49	30
무응답	1	1
합계	100	100

출처: “portrait de musulmans”, sondage de l’Institut CSA, *La vie*, août 2006.

<표 V-11>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 응답자의 50%가 예배를 위해서 모스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슬림 이민자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중심이 되는 것은 종교이기에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를 해석하자면 어느 정도 종교관이 소멸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이슬람 사원(mosquée)을 방문하여 예배를 하는 것이 사회 여건상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무슬림이라면 아주 중요한 코란을 읽는 횟수로 비추어 볼 때 프랑스 정착에 따른 동화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5주(柱) 중의 하나인 정기예배(살라트)를 하는 비율에서도 ‘따른다’는 응답자는 43%이며, ‘따르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은 56%에 이르고 있다. 다만 라마단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비율은 88%로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²⁹⁹⁾ 한편으로는 이민국의 관습을 받아들인다는 무슬림 이민자가 78%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의 가치와 관습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거나 소극적이 아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로써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의 통합 정도가 영국이나 독일보다 더 잘 되었으며, 프랑스의 동화에 의한 통합정책이 더 효과 있으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내릴 수 없다. 김복래(2009: 231)는 위의 <표 V-10>를 토대로 프랑스 무슬림들이 프랑스 문화와 문화적 충돌이 가장 적은 편이며, 가장 ‘프랑스화’에 성공하였고, 가장 ‘통합적’이며, 무슬림과 국가적 정체성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다. 비록 프랑스인의 인식 조사나 프랑스 무슬림들의 인식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상호 간의 인식에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민자 통합 문제에 가장 두드러진 사회갈등과 충돌을 보이는 곳은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 Le Monde에 의해 발표된 “이슬람과 시민성(Islam et citoyenneté)”

299) Sondage de l’Institut CSA, “portrait de musulmans”, *La vie*, août 2006. 이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진승되어진 하나의 진통문화로 인식한다면 라마단의 관습을 지킨다는 높은 비율의 결과가 이해되어 진다.

에 대한 조사는 이를 잘 반영한다. 다음의 <표 V-12>은 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표 V-12> 정체성에 대한 무슬림 이민자의 인식

(단위: %)

	합계	무슬림 = 프랑스인	무슬림	프랑스인	무응답
전체	100	60	22	14	4
30세 미만 연령	100	64	24	9	3
- 15-24세	100	64	24	11	1
- 25-29세	100	65	23	5	7
30-49세 사이 연령	100	55	17	23	5
- 30-39세	100	60	16	18	6
- 40-49세	100	46	19	30	5
50세 이상	100	49	31	17	3

출처: Sondaeg de l'Institut CSA, "Islam et citoyenneté", *Le Monde*, août 2008.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전적으로 프랑스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14%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무슬림인의 정체성을 가진 만큼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0%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경계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사회적인 삶과, 국적에 있어서는 프랑스인으로서 존재감을 갖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나는 프랑스인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들의 연령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약간은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30세 이하의 청소년층에서 보여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프랑스인으로서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대나 50대 연령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 후속세대가 겪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

별, 사회계급, 빈곤, 무슬림 이미자의 정치화에 대한 심리적 반발로서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도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존재는 동화되지 않는 자이고 전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위협적인 집단인가? 그렇다면 무슬림 이민자들의 동화정도는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그리고 이들이 동화되지 않는 자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들이 프랑스와 프랑스 정부, 그들의 눈에 비치는 진짜 프랑스인에게 하고 싶은 말, 그들에 대해 프랑스가 가지는 인식에 대한 항변 그리고 동화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민 후속세대들은 2세대를 거쳐 3세대, 4세대까지 등장하였다. 이들 2·3세대는 첫 이민 정착인인 부모의 세대와 달리 프랑스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프랑스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자들이다. 대다수가 국적을 취득한 프랑스인이자 프랑스 사회의 작동논리를 체득한 세대이다. 비록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국에 대한 전통과 관습, 종교, 언어, 역사의 기억을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후속 세대들을 작동하게 하는 행동과 인식 원리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 완전하고 전적인 기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체득한 사고와 인식의 유형은 학교라는 공적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의 습득이 자연스럽게 배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 동화정책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정부가 노력한 것처럼 언어적 측면과 역사인식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생활의 반경은 충분히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

다음의 <표 V-13>은 종교적 관용, 남녀 사이의 평등의식과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대하여 무슬림 이민자들의 인식을 살펴 본 설문조사이다.

<표 V-13> 종교적 관용, 남녀평등, 정교분리에 대한 무슬림 이민자의 인식

	찬성	반대	무응답
어떠한 방식일지라도 개인의 종교적 자유 허용	94	5	1
남녀평등	91	7	2
정교분리원칙	73	21	6

출처: Sondage de l'institut CSA, "Portrait des musulmans", *La vie*, août, 2006.

<표 V-13>에서 보여주듯이 히잡이 무슬림에게 있어서 남녀 불평등과 남성에 대한 지배를 표상한다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제고될 수 있다.³⁰⁰ 적어도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 남성들은 오늘날 남녀 간의 평등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교분리원칙 또한 무슬림 이민자들이 폭넓게 받아들이는 프랑스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종교 자유에 대해서는 94%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프랑스 사회에서 히잡착용으로 인한 논란과 종교적 자유의 제약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자, 기독교 사회에서도 타 종교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바라는 측면에서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나왔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 소요와 분노의 형태에는 프랑스 일반인이 예상하고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 사회시스템의 전복이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단을 이루는 이민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민자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또한 피해의식에서 오는 정체성 위기의 문제, 그리고 이를 방관하며 법적 잣대만을 적용하고 있는 공화국 이념의 충돌에서 온다. 이는 또한 언론의 지나친 부각과 과장으로

300) CSA에 의해 2008년도 무슬림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는 질문 항목에 18%만이 '찬성한다'로 조사되었고, 79%의 응답자는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다.(Sondaeg de l'Institut CSA, "Islam et citoyenneté", *Le Monde*, août 2008.)

가시화 되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정치화되었다. 소요사태는 프랑스에 의해서 방조된 빈민문제와 이민문제, 민족문제, 무슬림 문제, 인종차별문제 등 복잡한 요인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전체적인 사회통합의 문제였지만 외면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비쳐진 모습은 프랑스를 위협하는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폭력적 테러행위였다. 프랑스와 프랑스인에 의한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 편견은 시정하지 않은 채 ‘프랑스인으로서’만의 시민성을 요구한 것이다. 프랑스가 원하는 이민자들의 주류사회의 편입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즉, 정서적인 것에서부터 경제적 통합과 문화적 통합까지 완전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무슬림 청소년들은 항변하고 있다.

6. 사회통합정책의 위기

2005년의 소요사태는 프랑스식 통합모델의 위기를 보여주었다. 이민자 문화가 주류 문화에 융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동화주의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위기가 온 것이다. 프랑스가 지금까지 가져 온 사회통합의 노력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폭력 사태의 등장은 어떠한 방식이었든지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증거이다. 소수집단의 인구 규모가 커지고 문화 다양성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 동화의 원리는 일정 부분 방향선회를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소요사태로 사회통합의 정책들이 위기이던 실패의 결과이든 간에 프랑스가 이민자 사회통합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고 있다.

이처럼 2005년도의 소요사태는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크고 작은 폭력사태나 물리적 소요를 통하여 무슬림 이민자들의 사회적 불만과 항변을 겪었다. 그러나

2005년도의 소요사태는 그 이전의 사건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 사건은 높은 실업과 빈곤상태에 있으면서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이민자 후속세대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해 단순한 불만을 터트린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 이 사건이 프랑스에 남긴 결과는 적어도 이민자 사회통합의 영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반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 소르망(Guy Sorman)은 소요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민자 사회통합모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까지 한다.³⁰¹⁾ 그는 통합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가져온 원인으로 이민계층에 대한 차별과 이민 청소년의 높은 실업률을 들고 있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체득하지 못한 채 자라온 것이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며,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외곽지역의 폭력문화를 방기한 국가의 부채도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들은 20~30년 전부터 인종, 문화적 구성 등 많은 내적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모된 모습을 감지하지 못한 것도 소요사태를 불러 온 이유라고 덧붙였다. 즉 프랑스에는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흑인, 아랍인, 아시아인 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들도 프랑스가 완전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집해온 동화주의 원칙만 고수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프랑스 통합모델은 이제 현실적으로 수정되거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기 소르망의 언급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이민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현실, 그에 따라 영향 받는 프랑스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양상을 모른 척 했거나 적어도 방기했다는 책임을 프랑스는 가진다. 외부의 비난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제하는 이민자 정책이

301) 중앙일보, 2005년 11월 14일자. “프랑스 플레랑스의 실패...문명충돌은 아니다”. 기 소르망(Guy Sorman) : 21세기의 몇 안 되는 인류의 지성뿐만 아니라 유전적 감성에 의해 지배되는 갈등·충돌·내분·경계의 문명 충돌의 프랑스인 전문가이다. 주로 정치·문화·과학·사상의 충돌 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열린 세계와 문화창조』,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신국부론』, 『사회주의 종말의 여로』,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세기』, 『자유주의적 해결방법』 등의 책을 서술하였다.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프랑스의 동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일정부분 성공하였다고 나타난다. 이슬람문화의 특징적인 관습과 전통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이민자들은 특히 후속세대들은 이슬람 종교의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세속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통계가 동화의 부분적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인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유지했다고 각종 설문에서 나타난다.³⁰²⁾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로의 적응이나 통합에 대한 저항이 완강하게 거셴다거나, 동화의 의지가 전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프랑스에서 이민자 통합의 갈등이 나타났지만 프랑스 동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이 완전한 실패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이다.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무슬림 이민자들과 갈등이 나타난 원인으로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법과 제도적, 사회적, 정서적 등의 요인이 그것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첫째, 전적으로 프랑스 위주로만 진행되는 동화의 문제이다. 이민자들에 대한 문화의 일방적인 동화는 비록 오랜 기간을 거쳐 상당히 진척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한 동화는 쉽지 않다. 문화는 오랜 기간 민족과 인종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특수성은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의 변화 요구는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쉽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쉽게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집단을 정의하는 정체성의 변화와 융합은 오랜 시간의 문화적 융합에 따른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이민자 동화정책이 위기에 처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집단에 그렇지 못한 집단의 문화는 융해되어 소멸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교육이나 사회복지 등 프랑스인과 동등하고 평등한 서비스 정책을 펼침으로써 비자발적이거나 짧은 시간에 동화가 가능하리

302) Michèle Tribalat, *De l'immigration à l'assimilation, Enquête sur les population d'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Paris, La Découverte, 1996.

라고 판단한 것이 통합의 위기를 가져왔다.

둘째, 이민자 집단이 현실적으로 처한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배제에 따른 소외된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통합 정책은 유입된 이민자를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일체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적법, 이민법 등 국민통합의 문제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는 추방이나 국적부여 문제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방적으로 프랑스의 경제 번영과 인구증가를 위한 도구적 방편으로 이민자들을 임시 사용하고 난 후 폐기하여 도시외곽의 빈민가 지역에 방치하고 감시하는 정책을 이어온 것이다. 시선에서 사라지고, 한 번씩 나타나는 이들의 미디어적인 실체는 범죄자이고 실업의 주체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체성을 위협에 빠트리는 사회적 위협의 주범으로서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사회통합 위기로인의 하나로서 정서적인 거리감과 편견에 의한 상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나름대로 이러한 모든 이민자들을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프랑스에 동화되지 못할 집단으로 여겨왔다. 프랑스인에게 이민자는 실업의 주범이며, 사회적 생산은 없으면서 각종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동화할 의지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시민성이 결여된 사회불안의 주체로서 본다. 반면 이민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책은 철저하게 수용자인 프랑스 위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프랑스 사회는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여 주지 않고, 사회의 밖에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참여의 기회를 배제와 차별을 통하여 박탈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인들이 우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처럼 기존 사회의 시스템을 뒤집거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다만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배제 요인들을 철폐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분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VI. 결 론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 온 이민 국가이다. 19세기 이후 낮은 인구문제, 제 1,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토재건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이행되는 성장시점에 대규모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대규모로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이들의 유입과 정착은 프랑스의 인구 정책에 안정을 주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은 프랑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정주하게 된 이주 노동자들이 프랑스 구성원으로 되면서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

이민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된 프랑스를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동화주의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동화주의가 갖는 의미는 인종과 민족,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질적인 것을 프랑스적인 것으로 융합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이민자 정책은 공화주의 가치에 기초한다. 어떠한 가치로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프랑스’의 유지이다. 따라서 프랑스가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갖는 이질적인 문화집단의 출현은 프랑스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위하여 금지된다.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소수 문화 집단들이 지녀 온 가치와 생활양식, 종교 등은 프랑스의 정체성과 문화에 융해되어 사라져야만 하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이주민은 프랑스 사회와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와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프랑스인으로 거듭나야 하며, 동화의 끝은 프랑스인이라는 국적의 부여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동화주의는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의 상징이며 실체이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은 다문화주의 모델을 수용한 국가들에서 자주 제기되는 연대의 위험성 문제를 비껴가면서 프랑스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를 프랑스 사회로 완전하게 통합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델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05년의 방리유 소요사태는 프랑스

가 시행하는 통합모델의 긍정적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프랑스 이민자 통합정책의 위기 혹은 실패까지 거론하게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이민자 집단과 공존하는 현실에서 나타난 갈등과 마찰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그 반증이다. 많은 학자들은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의 위기는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모델에서 원인을 찾는다.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 갈등의 중심에 무슬림이 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북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이주민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을 형성한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하라 이남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슬람 문명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문명이 주류이며 동화를 원칙으로 하는 유럽 사회에서 이슬람 문명의 소수집단 이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 못하다. 주류집단의 관용에 기대거나 유럽 출신의 이주 노동자처럼 프랑스 사회에 완전한 적응을 하는 것이다. 이민 초기 시절 1세대 무슬림 이민 집단이 이후의 후속세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적응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에 순응하며 동화되는 듯하였다.

공존의 문제로 무슬림 이민자와 주류 문화간에 사회적 갈등과 마찰의 시작되고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임시 노동이민에서 가족재결합이나 불법이민 등 영구 정착의 사회적 이민으로 전환되면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프랑스 국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이민 2세대가 등장하는 시기였다. 무슬림 집단의 정치적 세력화 문제가 불거졌다. 이때부터 프랑스 사회에서는 무슬림의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족과 국가 정체성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은 1970년대 이후 이민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치화하였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자 경제적 위기를 사회적 위기로 전환시키면서 반이민자 정서를 확산시켰다. 특히 무슬림 이민자는 프랑스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실업의 당사자이고, 각종 사회적 범죄를 일으킨다는 국민전선의 선전과 선동으로 무슬림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의 갈등과 불안정의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불안해하는 국민의 표심을 의식한 다수 정당들의 정치적 방관과 의도적 방

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결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노포비아와 이슬람 혐오주의가 프랑스에 폭넓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주류사회의 경계 밖에 고립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을 형성하며 소외된 집단이 된 상태로 오늘날까지 있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이민 후속세대들의 사회적 권리 자각은 프랑스가 의도한 동화에 의한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져왔다. 이민자 집단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적 조건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배제, 편견 그리고 차별이 작동한 결과가 이민자의 생존 조건들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증명하듯이 프랑스는 이민을 소위 ‘쓰고 버릴 이민(l’immigration jetable)’으로 인식하였고, 이민자를 ‘쓰레기(racailles)’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권리의 자각에 따른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생존에 대한 무슬림 집단의 요구는 결국 하나의 프랑스라는 프랑스의 공화주의 가치와 충돌하였고, 동화주의 정책은 위기를 겪는다.

본문의 각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민자의 취약한 사회적 환경은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각종 통계수치에서 잘 나타난다. 이민자들의 고립되고 계도화된 거주 환경은 프랑스 정부의 도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방치된 이민 1세대의 높은 실업률로 파생된 빈곤, 차별, 배제라는 사회적 조건들은 그대로 후속세대들에게 대물림되었다. 가난과 실업, 교육부재, 문화적 억압, 이슬람 혐오주의는 변함없이 이민 후속세대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현실이 되었다. 후속세대들은 사회 참여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프랑스 사회에 불만을 가졌다. 자신들을 배제하는 사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이들은 반사회적인 물리적 행동으로써 생존권과 문화적 권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불안으로 이민자 통합정책의 위기가 제기되었다. 결국 이민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권리의 배경에는 프랑스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결과로서 빈곤과 정서적 좌절을 가진 경계 밖의 주변인으로서의 사

회적 조건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민자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프랑스의 입장은 다르다. 하나의 프랑스라는 가치는 프랑스 제일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동화에 의한 통합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시 되었다. 프랑스는 무슬림 이민자의 문화적 권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민자에 대해 보다 강경하고 엄격한 법 적용과 제도적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슬람 문화와 관습을 저지하고 제한하였다. 히잡과 범죄, 소요사건들은 프랑스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이슬람 공동체주의의 출현으로 규정되었다. 이같이 서로간의 인식과 주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회통합의 논리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논란과 논쟁 그리고 무슬림 청소년의 시위와 폭력은 프랑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국민 또한 이들의 반프랑스적, 반사회적 행태와 공동체적인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문화간 갈등으로 프랑스는 하나의 국가라는 통합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민자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 또는 사회 불안과 갈등의 주체가 무슬림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 프랑스인, 이민자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가 지탄하는 무슬림 이민자의 시민성 부재의 책임보다, 프랑스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모든 것 - 법, 제도, 정당, 정치인, 국민, 프랑스의 정체성과 가치 등 - 에 더 책임의 무게를 둘 수 있다.

소요사태의 경험은 소수자의 문화적 정체성 포기를 통한 일방적 동화의 통합방식으로는 다양한 문화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어렵다는 인식을 깨닫게 하였다. 결국 무슬림 이민자의 법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의 취약성은 동화정책에 의한 사회적 통합 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정책의 재편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자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변화와 재편을 기대했던 이민자 정책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반차별 기구 설치, 교외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교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재정적 지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15개 특별 경제구역 창설, 익명의 이력서 도입 등 임시 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화난 이민자를 달랠지만 미

봉책에 불과하였다.

한편, 이주민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법이 등장하였다. 2006년 ‘사르코지법’의 제정과 2007년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 설립,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 ‘유전자 법안’ 등을 통해 프랑스는 이주민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을 계층화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통제 방식과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계약’ 역시 이주민들에게 프랑스 사회, 언어에 대한 교육 및 이해를 강요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에 동화해 나가기 를 한층 더 압박해나가는 정책이다. 교육과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권리 등도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프랑스가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이주민의 통합방식은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던 무슬림의 사회통합의 갈등이 동화주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민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은 없을 듯하다.

프랑스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위기와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빈곤, 둘째 교육의 부재, 셋째 격리된 공간 속에서의 거주, 넷째 문화적 불인정의 문제, 다섯째 정치적 배제의 문제, 여섯째 이민자에 대한 프랑스인의 배타적 심리, 일곱째 무슬림 이민자의 시민성 결여 문제, 여덟째 프랑스 정부의 공화주의라는 국가가치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이때 북아프리카 국가나 사하라 이남에서 유입된 무슬림 이민자나 그들의 후속세대의 사회갈등에 국한한다.

첫째, 경제적 빈곤이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사회적 배제로 인한 장기간 고실업군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의 실업률은 약 26%로써 비이민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ZUS거주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5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면서 각종 범죄와 소요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에 있는 무슬림 이민자의 경제적 빈곤은 이민자 사회통합의 최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의 부재이다. 프랑스 내 이민자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실패는 열악하다. 북아프리카 출신 자녀들은 남녀 각각 40%와 32%의 고등학교나 대학의

중퇴율을 갖는다. 이민자 밀집지역의 교육환경 역시 충분하지 않다.

셋째, 격리된 공간에서의 거주이다. 이민자들의 거주환경은 특정구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으로 존재한다. ZUS같은 물리적 경계지역의 설정은 주류사회와 유리되어 사회적 배제를 더욱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민들은 사회적·심리적 소외와 연계되어 거주 공간 내에서 반사회적 사고와 행동을 일으키며, 증오를 생산한다.

넷째, 문화적 불인정의 문제이다. 공화국의 가치, 라이시떼에 의거한 동화주의 정책은 무슬림의 문화와 관습까지 제한하고 있다. 히잡 사건이나 이슬람 사원의 건립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은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의 표시이다. 그러나 차별받고 배제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틀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가해지는 동화의 요구나 금지의 제도는 하나의 폭력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문화적 권리를 자각하는 이민 후속세대들의 등장은 문화간 마찰, 공존의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정치적 배제의 문제이다. 합법화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의 허용문제와 투표권을 가진 이민 후속세대의 등장으로 1980년대 이민의 정치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유럽 이민자외의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지방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사회참여의 통로로써 스스로 대표할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이민자들은 정치적으로 통합의 대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합법화된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외국인의 영역에 두기를 프랑스는 원하는 것이다.

여섯째, 이민자에 대한 프랑스인의 배타적 심리이다. 즉 심리적·정서적 요인이다. 프랑스인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사회적 배제이다. 이민의 정치화로 나타난 제노포비아 현상과 이슬람혐오주의는 이민자의 사회적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를 위협하는 주체로서 인식된다. 즉 실업의 주체이며, 각종 범죄를 발생시키는 치안불안의 주범이다. 그리고 프랑스를 이슬람화하는

공동체주의 집단으로서의 위험존재 집단이다. 그러나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랑스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거나, 체제의 전복이나 새로운 가치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이 결국 프랑스의 구성원인 것이다. 사회 참여를 통한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배제는 이들을 사회의 취약한 계층과 계급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일곱째, 무슬림 이민자의 시민성 결여 문제이다. 프랑스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무슬림 청소년에 의한 치안불안을 꼽고 있다. 프랑스인의 82%가 무슬림 청소년들의 도시폭력에 우려하고 있다. 대도시나 방리유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소요는 무슬림 청소년들의 배제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눈에 비친 이민자들은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비시민성의 인간으로 비친다. 실제 이민자의 정체성을 살펴 본 자료(<표 V-12>)에서처럼 이민자 자신은 '전적으로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14%에 불과하다. 무슬림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가 가지는 가치와 관습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적 자질의 자발적 함양에는 무관심한 듯 보인다.

여덟째, 프랑스 정부는 공화주의라는 국가 가치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식에 강력한 동화의 의지만 보였고, 이민자들의 문화적 권리 요청이나 이민자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실효적 방안을 세우면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 오랜 기간 이민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가 올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공화주의라는 국가의 가치에만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강화된 이민자 정책과 문화적 차별을 드러내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이민자 집단과의 정서적 괴리감을 배가했던 것이 또한 사회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를 안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아야 한다. 이상

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가치 있는 통합의 방식은 이민자들의 자발적 동화에 의한 통합의 기대이다. 즉 자신이 원래 속했던 문화보다는 삶을 지속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선호하면서 기꺼이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의 동화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랑스적인 동화주의라는 이민자 정책의 기본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상정한 후, 이민자의 자발적 동화를 기대하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기에 는 결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다문화 공존이라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제 III장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원리인 동화주의를 검토하였고, V장에서는 프랑스에 확산되어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과 무슬림 이민의 정치화에 따른 이민문제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동화주의 정책의 시행이 무슬림 이민자의 각종 소요와 반(反)프랑스적 성향을 초래하고 이러한 총체적 요인들이 프랑스 사회의 불안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II장에서 논했던 것처럼 다문화주의가 갖는 현실적 도전과 논쟁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즉,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 그리고 ‘비지배적 상호성’을 다문화 공존을 위한 대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인정의 문제와 재분배의 문제는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각자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정의의 규범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팽팽하게 대립하여 왔다. 재분배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차이의 인정에 대한 요구를 ‘허위의식’이나 사회정의의 추구에 대한 방해물로 파악한다. 반대로, 인정을 주창하는 일부 이론가들은 분배적 정치를 문화적 지배와 억압, 불인정, 기회박탈 등 부정의(cultural injustice)를 해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문화 갈등의 해결은 특수한 사회적 영역마다 제각기 차이가 있기에 다문화주의 논쟁과 담론만이 무성한 이때 프레이저(Nancy Fraser)의 통합이론은 주목받는다. 프레이저의 이론적 논리를 빌려오면 프랑스 이민자 통합의 갈등의

해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프랑스 무슬림에 의한 사회통합의 위기는 어느 한 진영의 주장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연구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법과 제도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재분배나 인정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의 수용과 융합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화주의적 동화주의를 유지하는 프랑스의 사회통합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어떠한 인식론과 정책적 방향으로써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를 펼치며 무슬림 이민자를 프랑스 사회 속으로 원만하게 통합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프랑스라는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다문화 공존의 이론적 틀과 기대가 무슬림 이민자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들을 해결하며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의 다문화 공존을 기대하기 위해서 역시 인식론적이며 이론적인 프레임의 두 차원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재분배의 문제와 인정의 문제이다. 재분배의 차원에서는 경제와 정치 부분으로 나누고, 인정의 차원에서는 문화적 인정과 심리적 상호인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재분배의 정치이다. 재분배의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의 평등이다. 무슬림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들은 자원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 재화를 할당하거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분배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지나치게 높은 이민자들의 실업률로 인해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회에서의 평등이 아니다. 경제적 사회 조건의 결과에서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적 조건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라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것은 제도적 규범과 규칙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이다. 2005년 소요직후 정부가 보여준 무슬림 이민자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일시적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기대되는 일정수준까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치적 권리에서의 분배 약속이다. 즉 정치적 권리에의 수용이다. 정치적 권리의 수용과 타협은 소수집단과 국가 또는 사회집단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지정을 말한다. 상호 존중 가운데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場)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이익의 제공만으로 소수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정치 참여의 장에 끌어들여야 한다. 정치참여의 유도로서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합의를 함께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참여의 결과는 이민자 자신이 속한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 운명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한다. 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자연스레 사회적 연대를 불러오고, 구성원의 시민성을 갖추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공동의 귀속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모두에 의해 공유된 국가 정체성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정치적 권리의 수용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대표성의 허용이다. 국적을 갖지 않았지만 장기 체류증을 가지며 프랑스에 영구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투표권의 허용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민자를 통합하는 좋은 정책이 된다.

셋째, 문화에 대한 인정 정치이다.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으로 갈등이 표출된 오늘날 소수집단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은 분배의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타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배제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화 정체성의 차이에 따른 배제와 추방의 논리는 인종차별이다. 인종주의는 소수를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무슬림 청소년들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의 시선, 외부의 인식, 차이의 강요 때문이었다.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물질적으로 겪는 빈곤 못지않게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더욱이 편견은 무슬림 이민자의 배제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형성하였다. 여러 정체성이

공존하는 한 국민국가 안에서 다수가 소수집단의 경제적 생존이나 법적 권리의 보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인정’ 여부라는 것이다. 사회는 문화를 이루는 인간은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당연하게 인정해야 한다. 문화적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이자 개인들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얻게 되는 심리적 조건이다. 사회는 그 당연한 조건들을 다시 이민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예로써 프레이저는 프랑스의 히잡착용 금지에 대한 반대를 피력한다. 히잡은 문화적인 것을 통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근거하는 인정의 요구를 주장하는 실체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인정을 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 의한 인정이 중요하다면 무슬림 문화에 대한 관용과 히잡 금지법의 철폐가 필요하다. 소수집단에게 예외적인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화합이나 문화적 다원성, 공동의 귀속감 등 집합적인 목표를 위해 가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진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심리적인 상호 인정이다.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라는 두 차원의 실행은 정서적인 상호 인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심리적인 수용과 이해, 관용은 합리적인 대화를 가져온다. 합리적인 대화는 소통과 타협을 이끌어 낸다. 소수 집단이 배타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사회에 갖는 항변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야만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진정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존중과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된 대화와 타협은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 사회 내 문화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다. 파레크는 다양한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국가 정체성의 역할을 앞세우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국

가 정체성의 논의가 인종과 문화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가능한 넓은 범위의 입장들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는 최선의 생활양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는 정체성 논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유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Parekh 2000b). 국가 정체성의 논의의 필요와 그 역할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다수 인종과 문화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성격을 갖거나, 과거의 원형에만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다음은 문화 간 사회통합이 성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소수집단인 이민자와 주류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필요한 조건들을 <그림 VI-1>로 제시하였다.

<그림 VI-1>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주류사회, 국가의 역할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경제, 정치, 문화, 거주, 교육, 심리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갈등은 잉태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프랑스의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 요구라는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보인다. 갈등의 주체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 실로 어느 한 진영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수용한다거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자발적 증여의 역할이 오늘날 중시되는 이유이다. 분배와 인정은 문화적 권리요구에의 수용을 의미한다. 상호 인정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가져온다. 특히 이민자에게 정치적 권리의 허용은 분배와 인정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다.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한 두 문화권의 시민들이 동일한 정치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참여 의지에 기여를 하게 된다. 다문화 사회의 사회구성에서 오늘날 대표와 연대의 중요성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집단 간 불평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프랑스'라는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 내 소수집단은 문화적 생존권을 위해 프랑스 사회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정부도 그동안 프랑스 사회 내 유지되어 오던 가치만을 내세우면서 소수집단이 가져야 할 보편적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제도 앞에 소수집단이든 다수집단이든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길버트 아브카리안·몬테 팔머, 서사연 역(1985). 『갈등의 사회이론』, 학문과 사상사.
- 김세균 외(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학과학사.
- 디터 쟁하스. 이은정 역(2007). 『문명내의 충돌』, 문학과 지성사.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 밀스(찰스W.). 정범진 역(2006), 『인종계약』, 아침이슬.
- 박경태(2009). 『인종주의』, Vita Activa.
- 박 단(2005). 『프랑스의 문화전쟁-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 박 단 외(2009).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출판부, 박단 엮음.
- 버나드 루이스. 서정민 역(2002). 『무엇이 잘못되었나, 서구와 중동, 그 화합과 충돌의 역사』, 나무와 숲.
- 벤 젤룬(타하르). 홍세화 역(2004). 『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 상형문자.
- 브루노 레온. 김호성 역(1993). 『민족주의』, 인간사랑.
- 파트리스 보네위츠. 문경자 역(2000). 『부르디와 사회학 입문』, 동문선.
- 시안 존스. 이준정·한건수 역(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사회평론.
- 어네스트 겔너. 이재석 역(1988).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 앤더슨(B). 윤형숙 역(2007).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 앤더슨(B). 윤형숙 역(1993).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 이양호 역(2007).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 친디루스.

- 이기라·양창렬 외(2007). 『공존의 기술-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 조너선 섉스(Jonathan Sacks). 임재서 역(2007).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말·글·빛남.
- 존 버거·장 모로. 차미레 역(2004). 『제7의 인간-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눈빛.
- 츨스키 아비바. 백미연 역(2008).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전략과 문화.
- 테일러(찰스). 김선욱 등 역(2003). 『세속화와 현대문명』, 철학과 현실사.
- 한경구(1997). 『문화상대주의』, 신인문 여름 창간호.
- 한국서양사학회(2002).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지식산업사.
- 한국유럽학회·유럽시민권연구단(2004).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높이깊이.
- 한스 울리히 벨러. 이용일 역(2007). 『허구의 민족주의』, 푸른역사.
- 홉스봄(E.J.). 강명세 역(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 헌팅턴 새뮤얼, 이희재 역(2005). 『문명의 충돌』, 김영사.
- 호네트(A.). 문성훈 외 역(2009). 『정의의 타자』, 나남.
- 킴리카(W.). 장동진 외 역(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Abdelmalek, Sayad(1999). *La double absence*, paris, Seuil.
- Barry, Brian(2001).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nard Alidières(2006). *Géopolitique de l'insécurité et du Front national*, paris; Armand Colin.
- Blanc-Chaléard(M.-C.)(2007). *Histoire de l'immigration*, La decouvert.
- Baubérot, Jean(2004). *Laïcité 1905-2005, Entre Passion et Raison*, Seuil.
- Berlin, Isaiah(2002).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ard, Pierre(2002). *Immigration: le défi mondial*, paris, Folio actuel.

- Cesari, Jocelyne(1998). *Musulmans Et Républicains*, Editeur: Complexe.
Cités: Islam en France, Hors série, paris, 2004
- Coq, Guy(2003). *Laïcité et république: Le Lien Necessaire*, Felin,
- Coq, Guy(2005). *La laïcité principe universel*, Felin.
- Dupaquier Jacques(1988). *Histoire de la population française*, paris, Puf.
- Étienne, Bruno(1997). *La France et l'islam*, paris, Hachette.
- Fourastié, Jean(1979). *Les Trente Glorieuses, ou la révolution invisible de 1946 à 1975*, paris, Fayard.
- Fraser(N.) and Honneth(A.)(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 Geisser et Zemouri(2007). *Marianne & Allah*, La Découvert.
- Henri Rey(1996). *La peur des banlieue*, paris, Presse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 Khellil, Mohand(1991). *Integration Des Maghrebins En France*, Puf.
- Kymlicka, Will(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urence(J.) · Vaisse(J.)(2007). *Intégrer l'islam: la France et ses musulmans*, éd: Odile Jacob.
- Lequin, Yves(1988). *La Mosaïque France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immigration*, Larousse.
- Lequin, Yves(1974). *Les Ouvriers de la région lyonnaise 1948-1914*,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 Marie-Claude Blanc-Chaléard(2003). *Les immigrés et la France XIX-XX siècl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iller, David(2000).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Cambridge: Polity
- Noiriel, Gérard(2006). *Introduction à la socio-histoire*, La Découverte.
- Noiriel, Gérard(2002b). *Atlas de l'immigration en France*, paris, éd. Autrem

ent.

Noiriel, Gérard(2001). *Etat, Nation et immigration: vers une histoire du pouvoir*, Berlin.

Noiriel, Gérard(1988). *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 XIX-XX siècle*, paris, Seuil.

OECD(2008). *Jabs for Immigrants*, volume 2: Labor Market Integration in Belgium, France, the Netherlands and Portugal, OECD.

Ouellet(J)(2002).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t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Vel Enjeux.

Parekh, Bhikhu(2000a).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onty, Janine(2003). *L'immigration dans les textes: France, 1789-2002*, Collection: Belin Sup, 2003.

Poulat, Emile(2003). *Notre Laïcité Publique;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Classique*, Berg International.

Raz, Joseph(1995). *Ethics in the Public Domain*, Oxford: Clarendon Press

Roy, Olivier(2006). *La Laïcité face à l'Islam*, Les Essais Stock, 2005.

Schlesinger, Arthur(1998).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Tocqueville(A.-de)(1968). *Democracy in America*, London: Fontana.

Vincent Geisser et Aziz Zemouri(2007). *Marianne & Allah*, La Découverte.

Withol de Wenden, Catherine(1987). *Citoyenneté, nationalité et immigration*, Paris, éd. Arcantère.

2. 논문

- 강수돌(2005). “독일 내 국제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 S』 .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전망』 봄호, 제66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강정숙(2001). “독일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연구』 , vol.7, 한국민족연구원.
- 강진희(2007). “이민과 프랑스 사회의 공존”, 『공존의 기술-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 그린비.
- 강철구(2008).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민족, 민족적 정체성, 민족주의”, 『프레시안』 , 2008년 11월 19일.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 제20권, 제2호, 국가정책연구소.
- 강휘원(2007). “기독교의 정교분리사상: 성서시대부터 계몽주의 사상까지”, 『신학사상』 , 제136집.
- 곽준혁(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 제15집 2호.
-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 90호.
- 김남국(2005).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 제39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 김남국(2004).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제44집 4호.
- 김민정(2007). “프랑스 이민자 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세계지역논총』 , vol.25, n.3,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복래(2009). “프랑스, 영국,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찰: 삼국의 이민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 제27권, 1호.
- 김비환(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

- 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제10권 2호.
- 김용신(2008). “다문화주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 연구』, vol.4, n.2.
- 김용우(1994). “프랑스-프랑스를 프랑스인들에게”, 『역사비평』, 겨울호, 제29호.
- 김용찬(2007). “영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민족연구』, vol.30, 한국민족연구원.
- 김용찬(2008).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6집, 6월.
- 김용찬(2001).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 『민족연구』, vol.6.
- 김창근(2009).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윤리연구』, vol.73, 한국윤리학회.
- 노서경(2005). “알제리 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과거 성찰: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사연구』, 제12호.
- 르누치·황명진(2008).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관한 인구 사회통계: 우리나라 외국인 통계 제도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인구학』, 제31권, 제2호.
- 박 단(2007). “프랑스 이민자 정책과 공화국 통합 모델”, 『이화사학연구』, vol. 35, 이화사학연구소.
- 박 단(2006).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제14호.
- 박 단(2001).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서양사론』, vol.70, 한국서양사학회.
- 박명선(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집, 2호.
- 설동훈(2007). “외국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행정분야 종합보고서, 재정경제부.

- 설한(2005).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vol.21.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제107집.
- 송재룡(2009).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vol.35, 한국사회이론학회.
- 송태수(2006).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 비교”, 『유럽연구』, vol.23, 한국유럽학회.
- 시안 존스, 이준정·한건수 역(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사회평론』.
- 양승태(2007). “뮐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1호, 봄(5), 한국정치사상학회.
- 엄한진(2009).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이민인증연구회 2009년 제 2회 학술대회.
- 엄한진(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한국사회학』, 제 41집 3호.
- 오영주(2007). “프랑스 공화국, 왜 비종교성인가?”, 『불어불문학연구』, vol.71.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vol.28. n.1.
- 은재호(2005).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실태 분석”, 『정세와 정책』, 12월호.
- 이가야(2009).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동화에서 통합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28집.
- 이경일(2009). “프랑스의 이탈리아 이민 연구”, 『서양사론』, vol.100, 한국서양사학회.
- 이상환(2006).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플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12호.
- 이용승(2007).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vol.30, 한국민족연구원.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vol.8.
- 이용재(2003).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인: 식민통치의 상흔과 기억의 정치학”, 『역사비평』, 제63호.
- 이태주(2009). “호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담론”,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이민인증연구회 제2차 학술대회, 2009년 8월.
- 이혜경(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8월호.
- 장명학(2006). “세계화와 인종갈등: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노포비아와 그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6집 4호.
- 장한업(2009).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상호문화교육”, 『불어불문학연구』, vol.79.
- 정미라(2005).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 제36집.
- 정상준(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여름호.
- 정영태(2009). “서구 다문화사회의 국제이주민 정책과 실태”, 『한국학연구』, 제20집.
- 정인철·배미애(2007). “도시정책논리에 의한 사회공간적 배제: 프랑스 ZUS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1호.
- 정희라(2007).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이화사학연구』, vol.35.
- 정희라(2008). “영국의 문화전쟁: 무슬림 이민자의 갈등과 원인”, 『영국연구』 vol.19, 영국사학회.
- 조승래(2008). “공화국과 공화주의”, 역사학보, vol.198.
- 조흥식(2005). “민족의 개념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9월, 한국정치학회.
- 조흥식(2008a). “민족국가와 언어의 정치: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3호.
- 조흥식(2008b). “민족, 그림자인가 의복인가?”, 경희대학교 『대학원보』, 2008년 6월 9일자, 제159호.

- 조희선(2001). “억압과 저항의 기체로서의 이슬람 여성의 베일과 히잡”, 『한국 중동학논업』, 제22호.
- 지규철(2009). “프랑스 공교육에서의 비종교성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이슬람스 카프논쟁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vol.54.
- 최충옥(2009). “외국어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 한명숙(2006). “프랑스 무슬림 공동체의 현황과 국적법”, 『인문학연구』 vol.10, 경희대인문학연구소.
- 한명숙(2008).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 논쟁을 통해서 본 무슬림 이민자 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3집, 한국이슬람학회.
- 한명숙(2009).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프랑스사 연구』, 제20호, 한국프랑스사학회.
- 한승준(2008a).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3, 한국정책학회.
- 한승준(2008b).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 홍지영 · 고상두(2008). “공화주의 시각에서 본 프랑스의 반 이슬람 정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 홍태영(2005). “프랑스 공화주의모델의 형성: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3.,

Benedict(A.)(1992). “The New World Disorder”, *New Left Review*, vol.193.

Boeldieu(J.) · Borrel(C.)(2000). “La proportion d’immigrés est stable depuis 25ans”, *Insee Première*, n.748.

Eiz Macé(2002). “Le traitement médiatique de la sécurité”, *Crime et sécurité* é: *L’Etat des savoir*, paris, Découverte.

Hall, Stuart(1991). “Ethnicity, Identity and Difference”, *Radical America* 23,

n.4.

Hall, Stuart(1933). "Culture, Community, and Nation", *Cultural Studies* 7, n. 3.

Higham, John(1993).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ly*, vol.45, n.2

Honneth(A.)(2002). "Recognition or Redistribution?: Changing Perspectives on the Moral Order of Society", *Recognition & Difference: Politics, Identity, Multicultures*(eds), Scott Lash & Mike Featherstone, London: Sage.

L'Express(1991), "Banlieue, immigration: L'état d'urgence", *L'Express*, juin 6.

Sondaeg de l'Institut CSA, "Islam et citoyenneté", *Le Monde*, août 2008.

Mucchielli, Laurent(2003). "Délinquance et immigration en France : un regard sociologique", *Criminologie*, Vol.36, n. 2, Automne, p.27-55.

Noiriel. G(2002a). "Petite histoire de l'intégration à la française", *Le Monde diplomatique*, janvier.

Nordmann, Charlotte(2005). "Ce qui s'est passé le 17 octobre 1961", *Histoire et oubli* ; <http://17octobre1961.free.fr/pages/Histoire.htm>

Parekh, Bhikhu(2000b). "Defining British National Identity". *Political Quarterly* 71, n.1.

Renan, Ernest(1887). "Qu'est-ce qu'une nation?", *Discours et conférences*, Calmann Lévy.

Taylor, Charles(1997). "Cross-Purposes: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Philosophical Argumen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253.

Taylor, Charles(1994). "Politics of Recognition",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Weil, Patrick.(2002). “Qu’est-ce qu’un Français ?”, in http://www.edition-grasset.fr/chapitres/ch_weil.htm

Zizek(S.)(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sep/oct).

3. 웹 출처 자료

동아닷컴. “유럽서 히잡·부르카 금지 논란 확산”, 2006/11/19일자 ; <http://www.donga.com/fbin/output?rss=1&n=200611190016>

서울신문. “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2009/08/18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8016015&relation=hit&spage=1>

한국경제신문. “일자리 잃은 이민자 유럽 떠나라”, 2009년 03월 16일자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1687481&intype=1>

<http://www.insee.fr/fr/>

Insee, Enquête annuelles de recensement 2004 et 2005,

<http://www.vie-publique.fr/politiques-publiques/politique-immigration/chronologie-immigration/>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

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nationalite_histoire.pdf

<http://www.bva.fr/>

<http://www.lacse.fr/dispatch.do>

<http://www.ined.fr/>

<http://www.senat.fr/>

<http://www.histoire-immigration.fr/index.php?lg=fr&nav=1&flash=0>

<http://ofii.fr/> ; Office Française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